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5호 2009. 9

차례

특집 1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와 변경문제

김종현 ▣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간도 7

반병률 ▣ 러시아 연해주 한인마을 연추의 형성과 초기 모습 39

이성환 ▣ 일본의 대륙정책에서 본 간도

- 러일전쟁 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를 중심으로 75

특집 2 한일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김창록 ▣ 토오쿄오재판에 관한 법사학적 고찰

- '문명의 심판' 대 '승자의 심판' 그리고 아시아 119

박배근 ▣ 대일전후보상소송과 국제인도법 149

이장희 ▣ 도쿄국제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 연구 195

논문

김일권 ▣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교와 유교적 신화 도상 분석 249

김경록 ▣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의 수집·보존체계 291

신영숙 ▣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위안부'의 정체성

- 여자 군속의 종군간호부와 비교 연구 325

이신철 ▣ 한일 역사갈등 극복을 위한 국가 간 역사대화의 성과와 한계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371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415

Contents

Special Issue 1 International Relations and Border Issue in Northeast Asia

Kim, Jonghun | Russia's Far East 7

Ban, Byungyool | The Formation and Early Appearances of a Korean Village "Jan'chikhe" in the Russian Maritime Province 39

Lee, Sunghwan | A Study of Japanese Continental Policy and Gando 75

Special Issue 2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Issues in Korean-Japanese Relations-from the Point of International Law

Kim, Changrok | A Legal Historical Study on the Tokyo Trial : "Justice of Victors" vs. "Justice of Civilization," and Asia 119

Park, Paekeun | After War Compensation Suits against Japan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149

Lee, Janghie | A Comparative Study on the Nuremberg War Crimes Trial & the Tokyo War Crimes Trial from International Law Point of View 195

Articles

Kim, Ilgwon | Analysis of Taoist and Confucian Mythic Images in Koguryo Mural Paintings 249

Kim, Kyungrok | The diplomatic documents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diplomatic information Gather-Storage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291

Shin, Youngsook | The Identity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s during the Asia-Pacific War : A Comparative Study of Military Nurses as Civilian Women in the Military 325

Lee, Sincheol | The fruit and the limit of historical dialogue betwee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Korea-Japan Joint History Reach Committee 371

특집 1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와 변경문제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간도

김종헌 |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I. 머리말

1860년의 북경조약으로 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된 이후부터 러시아의 극동정책은 한국¹⁾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이것은 극동지역에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정치적·전략적 가치 등과 관련이 있다.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한국정책의 분기점을 청일전쟁으로 잡을 수 있다. 즉 청일전쟁 이전 시기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한국정책이 소극적 의미에서의 현상 유지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청일전쟁 이후에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현상유지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러시아의 이런 태도 변화는 자신이 추구하던 극동정책의 목적 변화에 따른 것이었으며, 간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 역시 그것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었다.

※ 투고일 : 2009년 7월 31일, 심사일 : 2009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 2009년 9월 4일.
1) 이 글의 시기적 연구범위로 인하여 조선과 대한제국의 두 명칭 모두가 언급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명칭을 '한국'으로 통일하여 표기했다.

청일전쟁 이후 만주를 상대로 적극적 침략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던 러시아는 그해 청의 중국에게서 여순을 조차했다. 통치권 이외의 한국인들이 간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즈음에 러시아는 만주 침략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강대국은 종종 그 스스로의 행위로 국제정치적 환경을 형성한다. 또한 그렇게 조성된 국제정치 환경은 강대국의 대외목표 실현에 용이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은 모두 러시아라는 세계 강대국과의 접경 국가였다. 특히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한국과 중국은 러시아의 침탈 대상이었다. 러시아가 간도 문제로부터 국외자로 남을 수 없으며, 동시에 간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극동정책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 글은 청일전쟁 전·후시기와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극동정책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의 간도 인식과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의 시기적 범위는 1860년의 북경조약 체결 이후부터 1909년 간도협약 체결까지이며, 연구 대상은 만주와 한국을 둘러싼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러·일 교섭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서 수집된 사료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외 러시아와 한국 학계에 소개된 연구서도 이용되었다. 연구 주제의 특성에 상응할 수 있도록, 분석 수준을 세계적 관점보다는 극동이라는 지역적 관점에 맞추려 했다.

II. 청일전쟁 이전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간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가 연해주를 편입한 1860년 이후부터 청일전쟁까지 러시아의 초기 극동정책은 ‘현상유지(status quo)’로 규정된다. 이런 현상유지 정책이 러시아의 초기 극동정책에서는 ‘관망정책(Вижидательная политика)’으로 나타났

다.²⁾ 즉 사태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것으로, 한 나라의 외교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구체성이 상당히 결여되고 소극적인 것이었다. 이런 소극적 극동정책의 원인은 인구 부족, 미약한 경제력과 군사력, 중앙과의 연락을 위한 교통수단의 미비 등에서 유래한다. 또한 부족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아도 공격적 대외정책이 적절할 수 없었다.³⁾

그러나 관망정책이 불변의 원칙은 아니었다. 1868년 동시베리아 총독 카르사코프(М. С. Карсаков)는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하고 있다는 소문이 남우수리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북경주차 러시아 공사 블랑갈리(Александр Георгиевич Влангали)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후자는 자신의 지휘하에 있었던 소볼(Соболь)호를 한국의 서해안으로 급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명했다.⁴⁾ 소볼호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관망정책이 완전한 수수방관과 무관심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기실 1860년 이후부터 러시아 극동정책의 주 목표는 영국을 비롯하여 러시아에 적대적인 여타 서구 열강들이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자신의 기반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2) 1866년 10월 중국주차 러시아 공사 블랑갈리는 고르차코프(А. М. Горчаков) 외무대신에게 “시베리아 동부지역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한국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보다 다른 나라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알렉산드르 2세 역시 동의를 표명했다. 또한 丙寅洋擾 이후 중국주차 미국 공사 벌링게임(A. Burlingame)이 한국에서 “…… 프랑스, 영국과 함께 조약을 체결하자”고 권유했을 때도 고르차코프 외무대신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해군 원정을 해도 러시아는 현재의 국경에 만족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러시아 극동정책의 성격을 잘 설명해 준다. Б. Д. Пак, 1979,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 сс. 44~45.

3) 한·러 간의 국경무역에서 한국으로부터 러시아로의 주요 수출품은 주로 비육우를 비롯한 가축류였다. 러시아는 식량 확보의 차원에서 가끔류를 함경북도에서 수입했다. 비록 거래량은 많지 않았지만, 극동의 러시아로서는 사활적인 사안이었다. 따라서 베베르는 부임 직후부터 본국의 훈령에 의거하여 한국과 육로통상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Б. Б. Пак, 1998, *Россий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и Корея*, М-Ирк., -СПБ, сс. 190~207.

4) ГАИО, Ф, 24, Оп. 11/3, Д. 24, Лл. 157~158, 190~192об.

만드는 데 있었다.⁵⁾

당시 러시아는 적절한 시기, 즉 경제적 자립이 확보되어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극동에서의 적극적 대외정책을 자제했던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국 그 자체로서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지만, 만약 러시아의 이웃 중 한 국가의 지배권하에 들어가게 될 경우, 연약한 한국은 러시아에게 적대적인 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⁶⁾는 정치적 이유에서 한국의 독립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남우수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식품이나 가축 같은 일차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⁷⁾는 사실을 감안하면 러시아에게 한국의 독립은 더욱 절실했다.

자국의 극동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1860~1870년대의 상황에서 러시아가 한국의 간도 문제에 관심을 표명할 입장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 시기에 간도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수집한 사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의 극동정책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⁸⁾ 당시 러시아의 대한정책을 이해하려면 서울주차 러시아 초대 대리공사에 임명되었던 칼 프레드리히 테오도르 폰 베베르[Karl Friedrich Theodor von Weber, 러시아명 칼 이바노비치 베베르(Карл Иванович Вебер)]에게 하달된 훈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훈령은 러시아가 구상한 대한정책의 총체였다. 따라서 간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설명해 줄 수 있

5) 러시아는 한국이 서구 열강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이 러시아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중국의 대신들을 설득하여 한국의 개방을 막으려 했다. 즉 한국의 개방을 막기 위해 중국과 친선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러시아 스스로도 한국과의 수교를 미루었다. РГАВМФ, Ф. 410, Оп. 2, Д. 4122, Лл. 4~5.

6) Б. Д. Пак, 2004,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 с. 193.

7)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49, Лл. 5~30об.

8) 청국의 만주 식민과 군사력 강화가 러시아를 자극했으며, 결국 러시아는 극동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부설에 착수했다고 한다. A. 말로제모프 지음, 석화정 옮김, 2002,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지식산업사, 43~66쪽.

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이 훈령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베베르에게 하달된 임무는 총 4개로 구성되었다.⁹⁾ 그중 비준교환을 제외할 경우, 한국에서 러시아의 이익 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원래 러시아는 청과의 충돌을 피하고, 외국의 대한침탈에 비교적 손쉽게 대응하려는 의도에서 한·청 양국 간의 주종관계를 한국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었다.¹⁰⁾ 그러나 뮐렌도르프의 밀약안을 확인하고 갑신정변으로 청일 간의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자 러시아의 대한정책이 변화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재정과 군사력이 취약했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가장 바람직하지 못했다.¹¹⁾ 베베르에 하달된 훈령의 내용은 바로 이런 방침에 입각해서 작성되었다. 베베르에게 하달된 훈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한국을 ‘러시아의 단독보호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극동지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했다.” 결국 러시아가 찾아낸 해법은 “보호관계의 실질적 수립 이전에 러시아에 대한 한국 측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직접적인 군사 지원보다는 한국의 독립과 완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면 정신적·물질적으로 언제든지 실질적인 협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주되, “협력의 방법은 상황에 따른 만큼 예견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하는 것이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과 제안을 러시아와 의논하도록 가르칠 것”¹²⁾을 하명하고 있다. 즉 ‘지원과 지

9) 훈령을 통해 베베르에게 하달된 임무는 ① 비준교환, ②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응하여 한국에서 러시아의 이익 수호, ③ 거문도 점령사건의 해결, ④ 육로통상조약 체결 등이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은 두 번째 임무에 해당된다. АВПРИ, Ф., 앞의 글, ЛЛ. 5~30 ; 김종현, 2008a, 「슈페이예르와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조선 내 외교활동」, 『대동문화연구』 제61집, 145쪽.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A. 말로제모프 지음, 석화정 옮김, 2002, 앞의 책 ; 최문형, 2007,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 Б. Б. Пак, там же.

11) Б. Б. Пак, 1998, 앞의 책, cc. 144~145.

12) АВПРИ, Ф., 앞의 글, ЛЛ. 5~30.

지'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제공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이용하여 한국의 내정에 관여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¹³⁾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이익을 수호”하는 두 번째 방법은 “러시아 군사교관단이 직접 한국 군대의 훈련을 책임짐으로써 한국이 실질적 방어력을 확보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것이었다.¹⁴⁾ 러시아는 청이 한국의 자주권을 인정한 것은 만주가 비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조의 고향인 만주로의 인구 유입이 늘면서 경제적 부가 발전되자, 러시아는 머지않은 장래에 “태평양으로 향하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이 한국을 침탈할 것”으로 판단했다.¹⁵⁾ 따라서 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자체의 방어력을 증강시켜야 했다. 한국 정부가 상기와 같은 국제정치적 현실을 더 잘 이해할수록 러시아 군사교관단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더욱 확고하게 러시아를 신뢰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¹⁶⁾ 이는 곧 러시아가 “한국이 복잡한 상황에 말려들거나 타국의 이익범위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국외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¹⁷⁾는 의미였다.

따라서 1888년 5월 8일의 특별각료회의에서 입안된 대한정책은 한국을 러

13) АВІРИ, Ф., 앞의 글. 베베르는 고종의 개인 고문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고문 활동을 통해 한국 내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동시에, 내정 개입의 가능성을 확보해 두었다. 고종은 그런 베베르를 훌륭한 고문이라고 극찬했다. 김종헌, 2009a, 「러시아 외교관 베베르와 아관파천」, 『역사비평』 86, 375쪽.

14) АВІРИ, Ф., 앞의 글.

15) 실제로 청은 만주에서 동해로 진출하기 위하여 고슈케비치(Гoшкeвич)만을 한국으로부터 할양받으려 했으며, 松田灣을 점령하려는 계획도 입안했다. A. 말로제모프 지음, 석화정 옮김, 2002, 앞의 책, 50쪽.

16) 러시아 본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보호관계 설정과 군사교관 초청을 한국 측이 되풀이하여 요구할 경우”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훈령을 한국으로 향하는 중이었던 베베르에게 전달했다. A. Л. Нарочницкий, 1956, *Колон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х держа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60–1895*, М., с. 389.

17) АВІРИ, Ф., 앞의 글.

시아의 “배타적인 보호하에 두게 될 경우 러시아에게 득될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가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 것”인 만큼, “중국이 한국으로 파병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을 억제하고, 만약 중국이 한국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립하려 할 경우, 러시아 분함대를 중국 해역으로 파함하거나, 한국의 중요 지점을 점령해야 한다”고 했다.¹⁸⁾ 즉 한국에서 가장 큰 위협은 한국의 완전한 속국화에 방향 맞춘 청의 정책이며, 청의 한국 점령은 극동에서 청의 지위를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에게 극도로 위협¹⁹⁾하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러시아 대한정책은 현상유지를 위해 청을 견제하면서도 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입각한 것으로, 청일전쟁의 강화조건이 명확하게 밝혀진 시점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1893년 한국에서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1894년 청·일 양국이 한국에 부대를 파병했을 당시에 러시아는 외교적 방법을 통하여 상기 양국의 군부대를 동시 철병시킨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청일전쟁의 발발 이후에는 “전쟁에 간섭하지 않으며 …… 전후 한국에서의 현상을 유지한다”²⁰⁾는 외교방침을 수립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부동항 확보 문제에서도 러시아는 논리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²¹⁾하자, 부동항 확보가 주변국과의 긴장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²²⁾는 점을 고려하여 한반도에서의 부동항 확보를 포기했다.²³⁾ 즉 한국 문제에 대한 간섭의 구실을 청에게

18) Б. Б. Пак, 1979, 앞의 책, с. 185~188.

19) Б. Б. Пак, 1979, 앞의 책.

20) Б. Д. Пак, 2004, 앞의 책, с. 210.

21) 한반도 북부에 위치하며 러시아 본토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러시아의 대상이 되었던 부동항은 ‘라자레프(Лазарев, 원산의 송전만)’와 ‘셰스타코프(Шестаков, 前津灣)’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한해협을 ‘극동의 보스포루스’로 이해했으며, 대한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행보장을 위해서는 한반도 전체가 러시아에게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В. А. Золотарев, 1994,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на заре XX столетия, аналит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енной ориенталистики*, М., с. 28.

22) АВПРИ, Ф., 앞의 글, Лл. 5~30.

23) 이에 러시아는 부동항의 확보 이전에 “모든 항구에 대한 예비 탐사를 완수”하기로 결정했다. АВПРИ, Ф., 앞의 글.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상기와 같은 대외정책 방침에 입각한 러시아가 간도 문제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박종효의 문서요약집에 따르면, 러시아의 베베르는 간도 문제와 관련하여 대체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이었다고 한다.²⁴⁾ 그럼 과연 베베르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대표하고 있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러시아 극동정책과 대한정책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 중앙정부는 극동에서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청국 세력을 견제하려 했다. 그러나 가능하면 무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외교적 행보를 취하고 있었다. 한국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특히 거문도 점령 사건 이후 영국이 청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하에서²⁵⁾ 러시아로서는 영국과 청의 공동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던 만큼 양국과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전혀 소망스럽지 못했다.²⁶⁾ 그런 러시아가 베베르를 통하여 간도 문제에서 한국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청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행위로서 러시아의 극동정책 방침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더구나 당시 리홍장[李鴻章]의 발언²⁷⁾을 감안하면 간도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양국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간도 문제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 간도 문제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대외정책적 방침과 양립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베베르의 행동은 본국의 극동정책과 훈령을 동시

24) 박종효, 2002, 『러시아 國立 文書保管所 所藏 韓國 關聯 文書 要約集』, 한국국제교류재단, 566쪽.

25) 최문형, 2007, 앞의 책, 215~216쪽.

26) Б. Б. Пак, там же, с. 145.

27) 당시 리홍장은 “만약 어떤 국가이고 서울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주장하려한다면, 거기에 맞서 싸울 것은 물론, 우리의 권위를 복구하기 위해 서슴지 않고 무력에 호소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었다. 이에 러시아는 한국 문제로 중국과 충돌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АВИРИИ, Ф., 앞의 글, II, 1, II, 102.

에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최소한 대외적으로 표명된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박종효의 자료집에 설명된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위의 훈령에 입각하여 생각해 볼 때, 베베르는 한국 정부의 신뢰를 사기 위해 개인적으로 한국 측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베베르가 청국과의 갈등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망각했을 리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베베르의 지지는 분명히 개인적 수준이었을 것이다.²⁸⁾

이후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의 강화조건이 알려지면서 러시아는 일본의 만주 진출을 억제하는 것에 모든 외교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은 결코 일본을 압도하지 못했다.²⁹⁾ 그렇다고 러시아의 입장에서 일본의 遼東半島 점령을 묵인할 수도 없었다.³⁰⁾ 이런 상황하에서 1895년 3월 말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러시아는 일본의 대륙진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동년 4월 11일에 개최된 특별회의에서 러시아는 일전을 불사하더라도 일본의 요동 할양을 철회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했다.³¹⁾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전이 위와 같이 급박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간도 문제는 자연히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관심 대상 밖이었을 것이다.

28) 물론 러시아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베베르의 지지 행위를 인정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문서로써 밝혀지지 않았다.

29) 실제로 러시아의 대구경포 보유수가 105 : 70으로 일본을 앞서고 있었으나 전함의 총 배수량에서는 일본 함대가 러시아 태평양함대를 앞서고 있었다. Н. А. Левицкий, 2003,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1904-1905*, М., с. 15.

30)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시 러시아와 영국 간에는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하에서 러시아가 일본을 상대로 개전할 경우 영국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컸다. 따라서 러시아가 일본을 상대로 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1) 한편 태평양 분함대 사령관에게는 모든 우발적 상황에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라는 훈령이 하달되었다. Красный архив, Т. 52, сс. 80~81[В кн. Б. Д. Пак, 1998, 앞의 책, с. 218].

Ⅲ.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 극동정책과 간도 인식의 변화

삼국간섭을 전후한 시기는 러시아 극동정책의 전환점이었다. 삼국간섭 이후 한국에서는 친러정책³²⁾이 추진되었으며, 그것은 다시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으로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대한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1897년 무라비요프(Михаил Николаевич Муравьев)가 외무대신에 임명되면서 러시아의 극동정책이 변하기 시작했다. 무라비요프는 만주 점령이 한국 점령에 우선한다고 보아 만주에 관심을 집중했다.

1897년 11월 2일 山東半島에서 두 명의 독일인 선교사가 피살된 것을 계기로 독일은 함대를 동원하여 동년 11월 14일 교주만을 점령했다. 이에 러시아 역시 어딘가를 점령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³³⁾ 11월 26일자의 특별어전회의에서 해양성 국장 티르토프(П. П. Тыртов)의 입장이 존중되었다. 만주보다 한국의 항만을 더 선호했던 해양성은 향후 2~3년이 경과한 뒤, 적절한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에 위치한 항만을 점령하자고 제안했다.³⁴⁾ 그러나 여타 열강의 항의를 고려하여 당분간 어느 곳도 점령하지 말자는 내용이 결론으로 채택되었다. 이런 결정과는 달리 1897년 11월 26일과 12월 11일 사이에 니콜라이 2세와 무라비요프는 여순을 점령하기로 결심했다.³⁵⁾ 1898년 3월 27일

32) 한국의 적극적인 친러정책을 이른바 引俄拒日策이라고 한다. 본 정책이 등장한 시점은 정확하지 않으나, 정황상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대체로 1895년 6월을 전후하여 구상되고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종현, 2009b, 「청일 전쟁 이후 재한 러시아 외교관의 활동에 관한 고찰」, 『슬라브학보』 제24권 2호, 275~277쪽.

33) С. Ю. Витте, 1960, *Воспоминания*, т. 2, М. сс. 124~125.

34) A. 말로제모프 지음, 석화정 옮김, 2002, 앞의 책, 151쪽.

35) 니콜라이 2세가 그런 결정을 내린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테의 회고록을 보면, 보드카 한 잔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술을 입에 달고 살았던 무라비요프는 타고난 입담으로 황후와 황제를 즐겁게 해 주었다고 한다. 그 덕분에 황제와 황후의 총애를 받았던 무라비요프가 니콜라이 2세를 설득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이에 대해서는 С. Ю. Витте, 1960, 앞의 책 참조). 학문적 근거는 될 수 없겠지만, 제정러시아의 경우 각부 대신들이 현안에 관해 차르

러시아는 청나라에서 부동향을 확보할 수 있었다.³⁶⁾

러시아가 간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청의 세력이 제거되고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하면서 러시아는 간도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러시아가 간도 관련 자료를 최초로 수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 서울주차 러시아무관 스트렐비츠키(Стрельбицкий)³⁷⁾ 보고서이다. 그의 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白頭山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하나의 경계비가 있다. 이 경계비는 1860년에 손으로 제작된 한국 지도에서 分水嶺이라는 곳에 표시되어 있는 그 경계비인 것으로 보인다. 경계비에서 서쪽으로는 국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국경선이 남동쪽으로는 그 고개로부터 두만강의 江源으로 향하는데, 오른쪽에 국경선이 흠터미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고, 그것을 지나면 1712년의 국경이었던 울타리가 있다. 현재 상기의 흠터미와 울타리는 사라진 상태이며, 고개의 명칭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³⁸⁾

위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트렐비츠키가 수집한 정보는 당시의 중국과 한국 양측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로서 초보적이며 독창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불과하다.³⁹⁾ 한국과 만주의 접경국가인 러시아가 간도 문제에

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보고를 했던 만큼, 친분이나 만남의 횟수, 기타 비공식적인 요인들이 차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컸음도 고려해 볼 만하다.

36) 당시 러시아는 리홍장을 매수했다. 거액을 받은 리홍장은 웃는 모습으로 러시아 외 무대신과 함께 있던 방에서 나왔다고 한다. С.Ю. Витте, 1960, 앞의 책 참조.

37) 그가 한국에 부임한 것은 1896년 8월 초였다. РГВИА, Ф. 448, Оп. 1, Д. 9, Л. 13; 심현용, 2007, 『한러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08쪽.

38) Н. В. Кюнер, 1912, *Очерк Кореи*, Владивосток, с. 13.

39) 스트렐비츠키의 보고서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저술된 쿠네르(Н. В. Кюнер)의 한국지에는 土門江에 관한 청국 統理衙門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 역시 한국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다. 참고로 본서에 기록되어 있는 전문을 여기에 게재한다. “상기의 ‘토문’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光緒 16년(1890)자 統理衙

대해 전혀 무관심할 수 없었음이 당연함에도 청일전쟁 이후에야 간도에 대한 정보 수집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러시아의 간도 인식을 잘 설명해 준다. 즉 당시 러시아의 관심은 차후 극동지역에서의 팽창정책에 대비하여 한국과 만주의 국경선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의 세력이 한반도에서 일소된 만큼, 타 열강의 만주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간도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러시아가 간도 문제를 국경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은 이후 발생한 ‘義和團사건’의 진압과정에서 확인된다.

1900년 봄 산둥반도에서 ‘의화단사건’이 발생하자 러시아는 우선적으로 6,000명의 병력을 만주로 파병한 뒤, 열강들을 상대로 “이 지역에서 공고한 안정이 복구되는 시점에 철병이 이루어질 것이며, 만주에 대한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⁴⁰⁾ 러시아군은 의화단사건을 진압하면서 청국의 패잔병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했다. 이에 육군대신 쿠로파트킨(A. H. Куропаткин)은 1901년 4월 외무대신 람즈도르프에게 공한을 발송하여, 한국과 청국의 정확한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⁴¹⁾ 쿠로파

門의 상주 보고서에 있는 흥미로운 부분을 발췌·인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중국인들의 土門江이 국경 하천이 아니라 국경 하천은 海蘭江(즉 圖們江)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문이라는 의미와 유사한 땅의 언덕, 즉 圖們이라는 뜻에 토문(땅의 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덧붙이고 있다. 중국인들에 따르면, 도문은 송화강(Р. Сунгари, 松花江)의 강원이 위치하고 있는 환화고우즈(Хуанъхуасунъгоуцзы)에 있다.” Н. В. Кюнер, 1912, 위의 책.

40) Б. А. Романов, 1928, *Россия в Маньчжурии* Л., с. 259. 그러나 로마노프의 연구서에는 쿠로파트킨의 실제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밝힌다. 즉 쿠로파트킨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을 상대로 어떠한 영토적 획득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단 다른 정부, 특히 중국 정부 자체의 행동 양식이 그런 러시아의 의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렇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북경 정부가 만주의 폭동 확산에 직접 상응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러시아가 중국 정부를 도운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 대항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며, 따라서 “러시아는 자신이 행한 자발적 약속을 철회하고, 러시아에게 제공된 형태로서의 보상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즉 러시아는 만주로부터의 철병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ГАРФ, Ф, 543, Оп. 1, Е.Х, 182, Лл, 1~92 참조.

트킨은 러시아의 군부대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의 국경을 월경함으로써 외교문제가 발생하거나 일본군과 충돌할 수도 있음을 우려했던 것이다.

본 공한에 대한 답변이었던 1901년 10월 4일자 비밀회신에서 람즈도르프는 “한·청의 국경이 두만강과 惠山山脈이라는 기존의 견해가 있다. 한인들 역시 두만강 間島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현재 간도는 청국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곳에 거주하는 한인들 역시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1894년까지 효력이 있었던 조청조약에서도 두만강 좌안지대에서 해산산맥까지를 중립지대로 인정하여 한·청 양국인의 이주가 금지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한인이 두만강 좌안에 이주했다. 그러나 현재도 청국 영토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다”⁴²⁾는 외무부의 의견을 쿠로파트킨에게 전달했다.

위의 문서가 작성된 1901년은 러시아가 만주 점령을 완료한 후, 만주 병합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청국과 교섭을 진행⁴³⁾하는 한편, 일본에게는 한국의 중립화를 제의했던 시기였다.⁴⁴⁾ 만주에서 가장 확고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러시아는 만주 점령이 한국 문제와 불가피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한국의 중립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다.⁴⁵⁾ 그러나 만

41) 박종효, 2002, 앞의 책, 565쪽.

42) 박종효, 2002, 앞의 책, 566쪽.

43) 러시아 외무부 외교사무총장 코로스토베츠(Коростовец И. Я., 1908년 8월 30일부터 1912년까지 북경주차 러시아 공사 역임)로 하여금 무크덴(Мукден, 盛京) 장군 增祺와 예비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본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철도의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무크덴과 무크덴 성에 속한 일부 지역에 러시아군을 배치한다(2조). 둘째, 폭동에 참가하고 이 지역에 잔존해 있는 청병은 무장 해제된 뒤 해산된다(3조). 셋째, 무크덴 지방정권은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경비대를 조직한다(6조). 넷째, 이 경찰경비대의 수장은 러시아 위원이 담당하며, 무크덴 지방정권의 모든 중요 업무와 명령은 러시아 위원에게 보고된다(7조). 다섯째, 만약 상기 경비대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지방정권은 러시아 위원을 통하여 러시아 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8조). 본 협약의 전문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Б. А. Р оманов, 1928, 앞의 책, сс. 267~269.

44) 당시 한국 역시 중립국화를 원하고 있었다.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고종의 인식과 한국의 중립화 정책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엄찬호, 2008, 「韓末 高宗의 中立 化政策 연구」, 『江原史學』 第22·23合輯, 171~192쪽 참조.

45) 러시아 재무대신 비테는 의화단이 한국 북부에 침입할 경우, 일본이 한국으로 파병

주 문제가 일본과의 협상 대상은 아니었으며, 한반도의 중립화는 일본으로부터 만주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⁴⁶⁾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국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⁴⁷⁾함으로써, 한국으로 출병할 수 있는 기회를 일본에게 제공하지 않으려 했다.⁴⁸⁾

이상과 같이 의화단사건으로 만주를 점령한 러시아는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쿠로파트킨의 질의서와 러시아 외무부의 답신이 갖는 외형적 의미는 러시아군의 무의식적인 월경으로 인하여 일본과의 관계에서 혹시나 야기될 수 있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려 했던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해당 부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러·일 양국의 정확한 행동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 따라서 그는 1900년 7월에 이미 한반도 중립화를 제시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19일에 이즈볼스키는 이토 히로부미와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青木周藏]에게, 파블로프는 한국주차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게 각각 한국 내에서의 세력권 분할을 제안했다. 석화정, 1999, 『러시아의 한반도 중립화정책』, 『중소연구』 통권 83호, 165~166쪽. 한편 석화정은 이 글에서 1907년 1월 7일 이즈볼스키가 일본 측에 제출한 ‘열강의 공동보장에 의한 중립화’안을 러·일 양국의 한반도 세력권 분할 안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을 ‘비밀스러운 조정’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양보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러시아는 한반도를 일본에게 완전하게 양보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세력권 분할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러시아가 한국을 일본에 양보할 의사가 없었으며, 남만부의 양보 역시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다음의 러시아 측 사료에 잘 나타나 있다. АВПРИ, Ф., “Китайский стол,” Оп. 491, Д. 36, Лл. 8~19.

46) 서울주차 러시아 공사였던 파블로프(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Павлов)는 의화단 사건이 한국 영토로 이동, 확산될 수 있음을 본국에 타전했다. АВПРИ, Ф., 앞의 글, Д. 183, Л. 30. 프리아무르 총독 그로데코프(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Гродеков) 역시 육군대신 쿠로파트킨에게 전문을 발송하여 “이번 폭동은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한국을 영구 점령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여 한국으로 인해 만주의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АВПРИ, Ф., 앞의 글, Д. 183, Лл. 32~33. 한편 파블로프의 예상은 적중했다. 의화단원들은 1899년 5월에 이미 평안북도로 월경했으며, 1900년 후반에는 대규모의 부대가 한국으로 넘어왔다. 의화단원이 마지막으로 월경한 것은 1902년 2월 갑산군 근처였다. *История Кореи*, 1974, Т. 1, М., сс. 377~378.

47) АВПРИ, Ф. 앞의 글, Д. 23а, Лл. 80~81.

48) РГАВМФ, Ф. 32, Оп. 1, Д. 134, Лл. 1~6.

처 간에 확인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위에서 잠시 언급된 러·일 간의 한반도 중립화 논의는 몇 차례의 단절을 경험하며 지속되었으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중단되었다.⁴⁹⁾ 1902년 8월 23일 상트페테르부르크(Петербург)주차 일본 공사 구리노 신이치로(栗野慎一郎)가 러시아 측에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안⁵⁰⁾을 전달하면서 다시 한반도에 관한 러·일 간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위의 안에 대한 파블로프와 로젠의 견해를 각각 문의했다. 로젠은 1902년 9월 12일에, 파블로프는 9월 10일과 25일에 자신의 견해를 본국으로 발송했다. 이 중 황제의 재가를 받은 파블로프의 견해가 주목할 만하다.

파블로프의 9월 10일자 보고서는 한반도 중립화에 따른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는 한반도의 중립화에 미국이나 서구 열강이 호응하면, 그들의 압력에 일본이 한국의 중립화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

49) 일본 정부는 북경주차 일본 공사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의 권고에 따라 “만주 문제가 완전히 해명될 때까지 회담을 연기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이즈볼스키의 제안을 거절했다. 신승권, 1999, 「러-일의 한반도 분할획책」,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41, 239쪽. 러시아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의회 모두 니시-로젠 협정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중립화 논의에 대한 러시아의 제안에 동감했으나, 만주 문제와 관련하여 서방 측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도쿄내각이 러시아의 의도를 오해함에 따라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АБИРИИ, Ф. 앞의 글, Ⅱ, 30, Ⅲ, 31, 6406.

50) 본 조약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I. 중국과 한국의 독립과 영토적 완전성을 상호 보장할 것. II. 한국의 그 어떤 부분도 군사적 또는 전략적 목적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III.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 이익의 우월권을 인정하여, 한국의 내정이나 한국의 평화적 이익과 관련된 일본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특별히 다음에 열거된 대한제국 내 일본의 이익을 인정할 것. ① 상업적 이익의 발전에 관한 행동의 자유, ② 효과적인 통치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국에 충고하고 원조할 수 있는 권리, ③ 폭동 또는 내부적 혼란이 평화적 관계를 위협할 경우 불가결한 수의 군부대를 파병할 권리. 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군부대는 즉시 철병할 것, ④ 전신선과 철도 보호를 위해 이미 파견된 수비대와 경찰을 주둔시킬 권리. IV. 일본은 1898년 러시아가 일본 정부에 제시한 근거에 기초하여 여순과 대련만의 조차를 형식적 형태로 인정할 것. 또한 만주에서 철도와 이익보호를 위한 러시아의 행동의 자유를 인정할 것. V. 한국과 관련된 일본과 러시아 간의 모든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АБИРИИ, Ф., 앞의 글, Ⅱ, 39, Ⅲ, 46.

국의 중립화가 극동에서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는 만주에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가 불가결하지만, 한국의 중립화가 일본 정부와 여론을 진정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이즈볼스키(Извольский Александр Петрович)가 지적한 대로 한국의 중립화가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계획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인 만큼, 일본의 악화된 여론이 러시아로 향하게 되면서 오히려 만주 문제가 격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일본이 이미 만주 문제와 한국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립화는 곧 만주의 중립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상황에서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지지할 경우 그 결말은 러시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일본 정부는 여론에 밀려 만주의 완벽한 환부를 그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일본의 결박된 손을 풀어 주는 격으로,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지위 강화와 러시아군 철병에 시비를 걸 수도 있으며, 그런 일본의 주장에 유럽이 찬성을 표명하면 결국 한국의 중립화 이후에도 러시아를 향한 위협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파블로프는 일본의 극단주의자마저 러시아와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개전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중립화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러시아에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⁵¹⁾ 이 보고서를 일독한 차르는 “파블로프의 견해를 보다 더 공유해야 할 것”이라는 결정을 본 보고서의 첫째 쪽 뒷면에 기재했다.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면 첫째,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와 만주 문제가 결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만주 문제를 한국 문제와 의도적으로 분리하려 했다.⁵²⁾ 그러나 1902년은 영일동맹이 체결되었으

51) АВІРИ, Ф., 앞의 글, II, 36, Лл, 1~7. 한국의 중립화와 한반도 내 중립시대 설정에 관한 최근의 국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이항준, 2008, 「영일동맹과 제정러시아의 극동정책-1902년 일본의 대리협상안과 한국중립화방안을 중심으로」, 『사림』 제31호; 玄光浩, 2006, 「대한제국기 주한러시아공사의 활동-義和團 사건과 英日同盟체결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第190輯; 현광호, 2006, 「대한제국의 對러시아정책-대한제국 수립과 義和團사건시기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52) 반면 일본은 한만문제를 일체화하여 처리하려 했다. 이른바 滿韓一體論에 대해서는

며, 1902년 4월 8일 만주 철병협정에 의거하여 러시아군의 제1차 만주 철병이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만주에서의 러시아 입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만은 아니었다.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일본의 개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⁵³⁾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게 가장 소망스러운 점은 열강에게 개입의 구실을 제공할 수 있는 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간도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것은 파블로프가 極東總督 알렉세예프(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Алексеев)에게 발송한 1902년 1월 25일자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증명된다. 그의 보고서 전문을 보자.

얼마 전(1901년임 - 필자 주) 압록강의 중국 측 연안, 추잔(Чузан)시 근교에서 한국 병사들의 무법활동 상황에 관하여 약간 언급하고자 합니다. 각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중국 국경지대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유사한 돌발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지방관헌들 간의 끊이지 않는 오해와 충돌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 정부는 물론 서울주차 청국 공사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의논을 했으며, 그에 더하여 한·중 양측은 통상적으로 본인에게 조정을 위해 중재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남우수리 주 국경위원회에 소속된 러시아의 5등 문관 스미르노프(Смирнов) 씨가 서울에 체류하고 있을 당시인 작년 11월 한국의 외부대신은 본인의 조언에 따라 그리고 전적으로 비공식적이었지만 본인의 참석하에 상기 언급된 한국 이주민들과 중국 지방관헌은 물론, 한국 국경관헌과의 관계 조정을 위한 조약의 특별 추가 협약안을 서울주차 청국 공사와 함께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번역본을 동봉하는 본 협약안은 이미 대한제국 황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청국 공사는 우선적으로 무크덴(Мукден)⁵⁴⁾성⁵⁴⁾과 吉林省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이성환, 2005, 「러일전쟁과 대한제국의 중립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정치연구』 제8집 2호, 165~186쪽.

53) 러시아는 일본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다. 즉 일본의 행위를 개전비용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АВРПШ, Ф., 앞의 글, Д. 185, Лл. 163~164об; АВРПШ, Ф., 앞의 글, Д. 191, Лл. 66~67об.

장군의 검토를 받은 다음, 상기 장군들이 북경 정부의 승인을 받고자 협약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그 자신이 협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어떤 사안이건 간에 자신은 절대 최종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청국 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이미 12월 초에 위사안에 대해서 상기 두 장군에게 공한을 발송했으나, 현 시점까지도 장군들은 물론 북경으로부터도 아무런 답신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 가능하시다면, 각하께서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상기 두 명의 장군이 서울주차 청국 공사로부터 위의 문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수령했는지의 여부와 이 문제의 처리결과를 무크덴과 길림에 위치한 러시아의 군사위원회에 조회하도록 하명해 주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많은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바람직하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고려할 때, 이 문제의 조속한 결정을 위하여 양 장군에게 일부 조력해 주심에 불편이 없으신지 또한 삼가 문의 드립니다.⁵⁵⁾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중국 측 연안’이라는 용어를 통해 러시아는 이미 간도 지역을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간도 문제가 한·청 양국 간에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안이었음을 러시아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간도 문제가 더 이상 국경이나 영토 분쟁이 아닌, 청국으로 이주한 한인 문제의 수준에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외에도 중국 측에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알렉세예프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 어떻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간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만주를 점령했다. 따라서 한만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했던 일본에 의한 개전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54) 도시의 명칭으로는 盛京, 즉 현재의 瀋陽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省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 러시아인들은 만주의 동북3성 중 하나였던 遼寧省을 무크덴성으로 표기했다.

55) РГАВМФ, Ф. 32, Оп. 1, Д. 137, Лл. 1~100б.

영일동맹의 체결도 임박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화였다. 파블로프가 문제의 해결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위의 보고서에도 직접 언급되어 있듯이 러시아의 만주 경략을 위해서는 안정과 평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만주에서 분쟁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만주가 열강의 관심지역으로 부상되면, 이해관계를 지닌 열강들이 만주 문제에 개입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정책은 만주나 한반도 모두를 장래의 러시아 영토로 삼는다는 가정하에서 진행되고 있었다.⁵⁶⁾ 따라서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되고 만주를 완전히 점령하게 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었다. 즉 그때까지 최소한 일본과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지연시켜야 했다. 한국의 중립화가 한반도 내 중립지대 설정으로 후퇴된 것 역시 시간 벌기의 전술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⁵⁷⁾

러시아가 간도 문제를 이주민 문제로 축소시킨 것에는 다른 이유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만주를 점령해야 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간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할 경우 당장 점령지가 축소된다. 또한 그곳이 영토분쟁 지역임을 인정할 경우 러시아는 만주 점령을 위해 청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마저 상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것은 문제해결의 복잡화를 의미한다. 굳이 한국을 만주 문제와 연계시킬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⁵⁸⁾

56) 이 글의 주 45를 참조하십시오.

57) 이에 대해서는 И. Ж. Ким, 2001,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884-1904 гг.* М., сс. 169~209 참조.

58) 일부에서는 1902년 당시 러시아가 베베르를 통하여 한국에게 간도의 공동통치를 제안했다는 설이 존재하며, 쿠네르 역시 자신의 저서 속에서 각주로 그런 설이 존재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베베르는 1902년 말에 서울에 입경했으며, 위의 설은 1902년 초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본인의 생각에는 여기 인용된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파블로프의 활동이 후대로 오면서 과장되고 거기에 약간의 오류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네르는 이에 대해 특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측 자료를 인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 두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설에 대해서는 Н. В. Кюнер, 1912, 앞의 책, с. 19 참조.

파블로프의 보고서 이후, 러시아의 간도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러일전쟁 직전 한반도 문제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진행된 논의 과정에서 발견된다. 이 사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간도를 완전하게 중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중립화 문제로 일본과 담판을 진행할 당시 한국과 만주의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해 두었다. 한반도 중립화는 한반도의 국경이 어디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양국의 담판이 한국의 중립화가 아닌, 한반도 내에서 39도선 이북을 중립지대로 설정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굳이 한·만 국경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이 한·만 국경을 중심으로 양측 50km 지역을 중립지대로 설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러시아 정치권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한·만 국경이 어디인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군소장 아바자(Абаза)는 39도선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한반도 내에서 일본 영향력의 북부 한계선은 두만강과 압록강이 되어야 하는바, 두 강에 따라 형성된 자연국경선이 러시아와 일본 간의 방벽 구실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⁵⁹⁾

아바자의 주장을 통해서 첫째, 한반도의 중립화 또는 한반도 내 중립지대 설정 등은 만주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음이 확실해진다. 따라서 러시아는 만주의 안전이라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만주의 일부인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간도를 한·청 양국의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앞서 언급한 영토의 축소라는 문제 이외에도 근대 유럽에서 가장 선호하던 이른바 자연국경선의 설정이라는 군사적 측면이 고려된 결과였음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간도 문제는 러시아의 국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러일전쟁 이후에 더욱 극명하게 증명되었다.

59) АВІРИ, Ф. 앞의 글, Д. 191, Лл. 194~195об ; Ч. Ж. Клим, 2001, 앞의 책, сс. 204~205.

IV. 러일전쟁 이후 간도 문제와 러시아

러일전쟁에서 패한 러시아는 일본 설욕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을 상대로 우호적 대외정책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이 韓國統監府를 설치하자, 러시아 역시 한국에 재차 외교대표부를 개설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의 반대와 열강의 냉담한 반응으로 결국 총영사를 임명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새로 부임할 총영사의 신임장은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⁶⁰⁾

서울주차 러시아 총영사로 임명된 플란손(Пласон Георгий Антонович)에게 내려진 훈령⁶¹⁾에 나타나 있듯이, 러시아는 포츠머스 강화조약의 불완전성을 지적함으로써 승전으로 획득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일본 영향력의 강화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것은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면 일본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를 상대로 대립각을 형성하기에는 러시아의 국내 사정이 너무나 긴박했다. 결국 러시아는 1906년 새로이 외무대신에 임명된 이즈볼스키의 권고에 따라 대외정책의 중심을 극동에서 유럽으로 옮긴다는 결정을 내렸다.⁶²⁾ 러시아의 대외정책 노선은 영국과의 동맹이라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이것은 곧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60) АВПРИ, Ф, 앞의 글, Лл, 83, 24.

61) 본 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포츠머스 강화조약은 한국의 독립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② 포츠머스 강화조약에는 한국으로부터 러시아군의 철병이 거론되지 않았으며, 러시아군의 한국 주둔에 대한 제약도 없다. ③ 어업이나 다른 산업적 목적에서의 한국연안항해권, 입항권, 광산채굴권 역시 부정되지 않았다. ④ 1884년과 1888년에 체결된 조약은 한국이 일본에게 합병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Б. Д. Пак, 2004, 앞의 책, сс. 386~387.

62) 이즈볼스키는 러시아의 극동정책이 “근 50년이나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А. В., Маринов, 1974,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перед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 ы, М., с. 45.

1907년 2월 4일 이즈볼스키는 일본에게 협상을 제의했으며, 3월에는 러시아 군함이 영국의 항구를 방문하여 동맹체결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영국 또한 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러시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더구나 대외적 팽창을 기도하는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러시아와 동맹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⁶³⁾ 일본 역시 만주의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에 입각한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러시아와의 긴장상태를 완화시켜야 했다. 러·일 양국의 상호이익이 일정 부분 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 문제로 협상과정에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1907년 7월 28일 어업협정이 체결되고 한 달 뒤에는 제1차 러일협약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체결되었다.⁶⁴⁾ 이 협약에 따라 러시아는 북만주를, 일본은 남만주를 각각 자신의 영향권으로 설정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인정하며, 향후 양국 관계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협약으로 일본은 러시아의 복수전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나 일본의 한국 병탄을 완전히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한편 일본과 러시아에게는 미국 문제가 남아 있었다.

위의 협약으로 간도가 일본의 영향력하에 들어가면서, 러시아는 간도 문제로부터 관련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일본의 외교적 행보로 볼거진 간도 문제와 그에 따른 러시아의 외교적 선택이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본은 한국의 보호와 러시아를 상대로 한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그리고 한국 보호국의 자격으로 전반적인 대한정책과 연관시켜 간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⁶⁵⁾ 1907년 8월 18일 일본이 간도 파출소를 설치한 것 역시 위와 같은 목

63) 김중현, 2008b, 「러일전쟁과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대립—청일전쟁에서 한국전쟁까지』, 동북아역사재단, 101~102쪽.

64) 1907년 6월 10일과 8월 31일 일본은 프랑스와 러시아는 영국과 각각 동맹조약을 체결했다.

6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성환, 2000, 「간도협약과 한일합방」, 『대한정치학회보』 8권 1호 참조.

적에서 간도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런 일본의 행보는 문호개방원칙과 중국의 영토보전원칙(The Territorial Integrity of China)에 입각하고 있었던 미국과 서구 열강의 간섭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를 의식한 일본은 1909년 9월 4일에 중국과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미국을 위시한 열강의 압력하에 일본이 간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것이다. 반면 일본은 간도 포기의 대가로서 ‘만주 5안건 협약’을 통해 간도에서의 이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협약으로 일본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으로부터의 외교적 항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러일전쟁 당시 미국이 일본을 도운 것은 러시아에 대응하여 만주에서 자신의 상·공업적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⁶⁶⁾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만주 5안건 협약안’은 만주에서 상업상의 기회균등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간도협약은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일본이 吉會鐵道를 부설할 경우 러시아 연해주의 방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기 때문이었다. 이에 러시아 외무대신 이즈볼스키는 주러 일본 공사 구리노[栗野]에게 길회철도가 갖는 위험성에 우려를 표명했다.⁶⁷⁾

미국은 경제적 이유에서, 러시아는 전략적 이유에서 청·일 양국의 간도협약에 반대하고 있었다. 바로 여기서 미국과 러시아의 제휴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실제로 한국주차 러시아 영사 소모프(A. C. Соколов)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이 루트-다카히라협정(The Root-Tarahira Agreement of 1908)을 위반하고 남만주에서 철도와 광산이권을 획득하는 것에 미국이 격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⁶⁸⁾

66) 러일전쟁 발발 이전 만주의 문호개방 정책에 유일하게 반대한 것은 러시아였는데, 바로 이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친일 진영에 가담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로스투노프 편저, 김종현 역, 2004, 『러일전쟁사』 1장, 건국대학교 출판부; 최문형, 2007, 앞의 책, 335쪽.

67) 이성환, 2000, 앞의 글, 260쪽.

68) Б. А. Романов, 1955, *Очерк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Русско-Японско й Войны, 1895-1907*, М.-Л., с. 661.

러일전쟁 이후 만주에서 배타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했던 일본의 만주 정책이 미국의 외교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면, 1909년의 간도협약은 러시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대외 행위가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국익을 침해한 것이다. 전략적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문제에 입각하여 일본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던 미국과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다. 한편 미국의 외교적 압력을 무산시키려 했던 일본은 러시아의 외교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다.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문제 해결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1909년 11월 러시아 외무대신은 러시아주재 미국 대사와 일본 공사를 번갈아 맞이하며 대담을 가졌다. 당시 미국은 러시아에 만주철도 증립화를 제안했으며, 일본은 러일관계를 공식적 동맹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즈볼스키의 선택은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다. 일본 공사와의 대담석상에서 이즈볼스키는 첫째, 러시아는 한국의 병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둘째,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약체제를 구상해 볼 수 있다⁶⁹⁾고 제안했다. 팽창을 추구하고 있던 일본이 이런 제안에 동의할 수 없었음은 당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러시아 몫이 되었다. 당시 러시아의 재무대신 코코프초프(Кокочцов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는 동청철도의 매각을 주장하며 미국과의 제휴를 주장했다. 반면 이즈볼스키는 일본과의 제휴를 주장했다. 이즈볼스키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과 제휴할 경우 일본과의 전쟁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니콜라이 2세 역시 “이제 일본과 가장 긴밀한 화해·협력의 길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여 대일동맹을 지지했다.⁷⁰⁾

69) РГИА, Ф. 1276, Оп. 5, Д. 610, Л. 1~5.

70) Б. А. Романов, 1955, 앞의 책. 이즈볼스키는 만주에 있는 일본인들이 러시아로 진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만철의 증립화는 위험성만을 가중시킬 뿐이지만, 만약 러시아가 미국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일본의 반감은 미국으로 선회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러시아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РГИА, Ф. 1276, Оп. 20, Д. 40, Лл. 149~151об.

1910년 7월 4일 2시 30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제2차 러일협약이 체결되었다. 본 협약을 통해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 병탄을 인정했다. 그 대가로 일본은 몽골과 북만주가 러시아의 특수 이해 지역임을 인정했다. 간도협약으로 인해 러시아는 자국 극동지역의 방어에 근심을 표명했으며, 그런 근심의 해결이 바로 제2차 러일협약이었던 것이다. 결국 러시아는 자국 극동영토의 안전과 몽골이라는 대가에 만족하며, 일본의 한국 병탄을 인정했던 것이다.

제2차 러일협약이 체결된 지 한 달 후인 8월 16일 일본은 한국의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했으며, 8월 22일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와 이완용은 합병조약에 조인했다.

V. 맺음말

간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그들의 극동정책 변화와 맥을 같이했다. 청일전쟁 이전 소극적 극동정책을 전개하던 당시에는 베베르가 한국 측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그것이 간도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적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서 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측의 환심을 사기 위한 베베르 개인의 행위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청일전쟁 이후, 특히 러시아 외무대신의 교체와 극동정세의 변화에 따라 러시아의 우선적 관심이 만주로 향한 이후에는 러시아의 입장이 변하게 된다. 특히 의화단사건의 발발 이후 러시아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한국의 국경선으로 규정했다. 또한 러일전쟁 이전 한만문제로 일본과 담판을 진행할 당시에도 러시아가 생각한 한국과 만주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었다. 즉 한반도 내 중립지대 설치에 대한 대안으로 한반도 국경을 중심으로 한·만 양측으로 각각 50km를 중립지대로 설정하자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그 기준선이 바로 압록강과 두만강이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간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득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은 물론, 한국마저 상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을 자초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간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러일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러일전쟁에서 패전한 러시아는 국내적 상황으로 인하여 재개전을 포기하고 일본과 제1차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체결한 간도협약이 러시아의 입장 정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은 만주에서의 경제적 측면에서 간도협약을 이해했다. 반면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안전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간도 문제에 대응하고 있었다. 즉 자국 영토의 안전이라는 지상의 과제 앞에서 그리고 미국의 만주철도 중립화 제안이 궁극적으로 러시아 세력을 만주로부터 축출하려는 것이며,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일본의 공격 방향이 러시아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러시아는 대일접근을 결정했다. 간도 문제로 인해 불거진 현실적 위협과 실리 앞에서, 긴박한 국내의 사정을 고려한 러시아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더 이상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간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시기별로 구분된다. 청일전쟁 이전에는 청과의 갈등 회피라는 극동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며 간도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단지 베베르만이 개인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소극적으로 지지했다. 청일전쟁 이후 시기는 한국의 간도 영유권 부정 시기였다. 의화단사건으로 만주를 점령하게 된 러시아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한국의 국경으로 규정하여 간도를 철저히 만주로 인정했다. 러일전쟁 패전 이후에는 자국 극동지역의 안전에 입각하여 간도 문제에 대응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러시아에게 간도는 팽창의 대상이자, 자국의 안전을 위한 양보의 대상이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경 문제가 약소국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강대국의 입장에 맞도록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한국은 세계열강이 일정한 패권의 대한정책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의 약소국이었다. 반면 러시아는 유럽의 강국이었다. 따라서 극동에서 러시아 지

위의 부침과 그에 따른 극동정책 노선의 변화에 따라 간도 문제 역시 다른 형태로 이해되었다.



참고문헌

〈러시아 문서〉

- АВПРИ, Ф., “Китайский стол,” Оп, 491, Д. 30.
 АВПРИ, Ф., “Китайский стол,” Оп, 491, Д. 39.
 АВПРИ, Ф., “Китайский стол,” Оп, 491, Д. 36.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 1.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 5.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 23а.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 49.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 183.
 АВРП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 185.
 АВРП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 191.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 197.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 905.
 ГАРФ, Ф. 543, Оп. 1, Е.Х. 182.
 ГАИО, Ф. 24, Оп. 11 : 3, Д. 24.
 ГАИО, Ф. 24, Оп. 11 : 3, Д. 104.
 РГАВМФ, Ф. 32, Оп. 1, Д. 134.
 РГАВМФ, ф. 32, Оп. 1, Д. 137.
 РГИА, Ф. 1276, Оп. 5, Д. 610.
 РГИА, Ф. 1276, Оп. 20, Д. 40.

〈국내외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 김종현, 2008a, 「슈페이예르와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조선 내 외교활동」, 『대동문화연구』 제61집.
 김종현, 2008b, 「러일전쟁과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대립—청일전쟁에서 한국전쟁까지』, 동북아역사재단.
 김종현, 2009a, 「러시아 외교관 베베르와 아관파천」, 『역사비평』 86.
 김종현, 2009b, 「청일전쟁 이후 재한 러시아 외교관의 활동에 관한 고찰」, 『슬라브학보』 제24권 2호.

- 로스투노프 편저, 김종현 역, 2004, 『러일전쟁사』, 건국대학교출판부.
- 말로제모프, A. 지음, 석화정 옮김, 2002,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지식산업사.
- 박종효, 2002, 『러시아 國立 文書保管所 所藏 韓國 關聯 文書 要約集』, 한국국제교류재단.
- 석화정, 1999, 『러시아의 한반도 중립화정책』, 『중소연구』 통권 83호.
- 신승권, 1999, 『러-일의 한반도 분할획책』,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41.
- 심현용, 2007, 『한러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엄찬호, 2008, 『韓末 高宗의 中立化政策 연구』, 『江原史學』 第22·23合輯.
- 이성환, 2000, 『간도협약과 한일합방』, 『대한정치학회보』 8권 1호.
- 이성환, 2005, 『러일전쟁과 대한제국의 중립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정치연구』 제8집 2호.
- 이항준, 2008, 『영일동맹과 제정러시아의 극동정책-1902년 일본의 대리협상안과 한국중립화방안을 중심으로』, 『사림』 제31호.
- 최문형, 2007,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지식산업사.
- 현광호, 2006a, 『대한제국기 주한러시아공사의 활동-義和團사건과 英日同盟체결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第190輯.
- 현광호, 2006b, 『대한제국의 對러시아정책-대한제국 수립과 義和團사건시기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 Витте, С. Ю., 1960, *Воспоминания*, т. 2, М.
- Золотарев, В. А., 1994,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на заре XX столетия. аналитическое материалы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енной ориенталистики*, М.
- История, Кореи, Т. 1, М., 1974.
- Ким, Ч. Ж., 2001,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884-1904 гг.*, М.
- Кюнер, Н. В., 1912, *Очерк Кореи*, Владивосток.
- Левицкий, Н. А., 2003,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1904-1905*, М.
- Маринов, А. В., 1974,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перед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ой*, М.
- Нарочницкий А. Л., 1956, *Колон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х держа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60-1895*, 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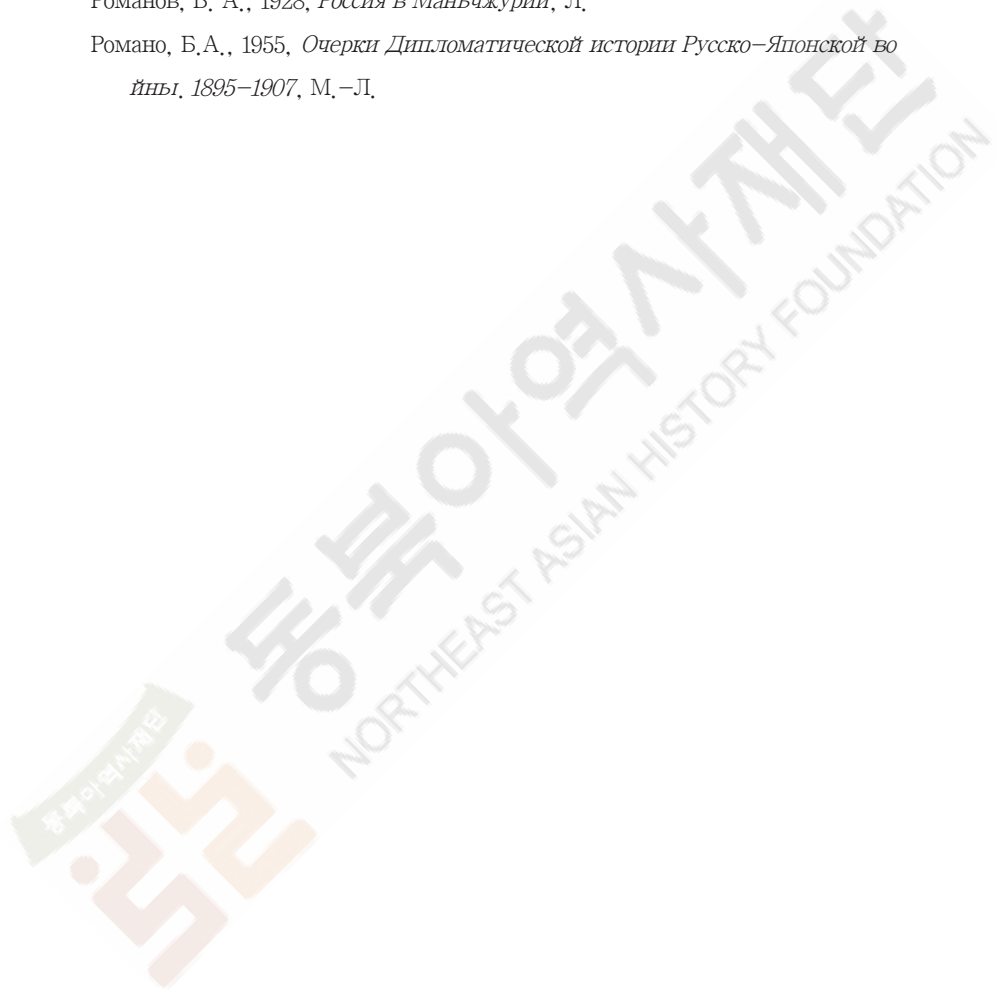
Пак, Б. Б., 1998, *Россий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и Корея*, М–Ирк.–СПБ.

Пак, Б. Д., 1979,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

Пак, Б. Д., 2004,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

Романов, Б. А., 1928, *Россия в Маньчжурии*, Л.

Романо, Б.А., 1955, *Очерк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1895–1907*, М.–Л.



[ABSTRACT]

Russia's Far East

Kim, Jonghun

Russia's Far East policy is divided into two phases. From 1860s to the Sino-Japanese War Far Eastern policy of Russia was a "Temporizing Policy." In this period Russia did not participate at all in Gando matter between Korea and China. Only Bever just personally supported Korean Government. His support fo Korea had no official posi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After Sino-Japanese War, Russian Far East policy was actively promoted and Russia began to show her interest in the Gando matter. When the Boxer Rebellion occurred, Russia mobilized a military power and occupied the Manchuria. After that Russia regarded Gando as a part of Manchuria and She recognized Amnok River and Dooman River as the international border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Russian position on Gando was continued until beginning of Russo-Japanese War.

After Russo-Japanese War in 1904~1905 years, Japan singed a Gando treaty with China. But the Gando treaty was a threat to the safety of the Russian Far East territory. Russia which worries the safety of Far Eastern territory signed the Second Treaty with Japan and after that Japan could annex Korea.

keywords

Far Eastern Policy of Russia, Russian Foreign Policy toward Korea, Gando, Neutralization of Korea, Establishment of Neutralized Zone in Korea, Agreement on Gando between China and Japan



러시아 연해주 한인마을 연추의 형성과 초기 모습

반병률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러시아 연해주의 연추(Ian'chikhe, 煙秋·延秋)마을은 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인 地新墟(Tizinkhe)와 더불어 남부 연해주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한인마을이었다. 연추마을은 두만강을 경계로 한·러·중 3국 국경이 가까운 지점에 위치했고, 국경지방을 관할하던 러시아 군영이 있던 노보키예프스키(Novokievskii)와 가까웠다. 연추마을은 또한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중심지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琿春 및 한반도 북부를 연결시켜 주던 군항 포시에트[Pos'iet, 木許(圃)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 군사·지리·교통상의 유리한 여건 때문에 연추마을은 1867년에 형성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남부 연해주지역 최대의 한인마을로 성장하였으며, 연해주 남부지역 한인사회의 행정·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연추마을은 제정러시아 시기 한인사회에서 대표적인 原戶村(러시아 입적자들의 마을)로 알려졌던 연해주 중

※ 투고일 2009년 7월 31일, 심사일 2009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4일.

부지방 수이푼강[緩芬河, 현재의 라즈돌리노예강] 유역의 '秋風四社'와 함께 남부 연해주 한·중·러 국경지역의 '南七社' 가운데 대표적인 한인마을이었다.

연추마을은 특히 한국 침략의 주역이자 기획자였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했던 安重根이 1908년 봄 崔在亨·李範允·李瑋鍾 등 한인지도자들과 同義會를 조직하였던 곳이며, 그 해 여름 국내로 진격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던 연해주 의병운동의 중심거점이었다. 안중근이 12명의 동지들과 斷指同盟하며 同義斷指會를 결사조직한 연추 下里, 즉 '아랫마을'은 연추마을의 아래쪽에 위치하였고, 교회·학교·면사무소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연추마을을 비롯한 연해주 남부 국경지역 10개 한인마을을 관할했던 연추면 한인사회의 행정·문화적 중심지였다.

1908년 이후 의병운동이 퇴조하고 교육문화운동이 중시되면서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이 연추마을을 대신하여 한인사회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는 20세기 초반까지 연추마을은 러시아 한인사회의 행정·문화적 중심지였다. 연추마을은 1880년대 후반 이후 연해주 남부 국경지대 한인 밀집지대를 관할했던 연추면 도(회)소의 소재지였으며, 연해주 한말 항일운동의 중심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명한 망명 애국지사들이 북조선과 중국의 훈춘, 북간도를 왕래할 때면 어김없이 거쳐야만 하는 곳이기도 했다.

이 글은 남부 연해주지역의 대표적인 한인마을이었던 연추마을의 형성과정과 초기 모습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현지답사와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러시아지역 최초의 한인마을인 지신허마을에 대하여 학계에 보고한 바 있는데,¹⁾ 이 글은 러시아 연해주지역 한인마을들의 형성과 발전과정 그리고 러시아혁명 이후 소비에트 건설기의 변화양상과 한인(고려인)들이 부딪쳤던 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²⁾과 연관된 연구라 할 수 있다.

1) 반병률, 2003,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 地新墟」, 『한국근현대사연구』 26, 한국근현대사학회, 209~239쪽.

2) 반병률, 2008, 「'전면적 집단화' 시기 러시아연해주 수청(水淸) 지방 한인농촌사회의 제문제」, 『역사문화연구』 3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53~232쪽.

II. 연추마을의 형성과 성장

연추마을의 이름은 한자로 ‘延秋’, ‘煙秋’ 또는 ‘烟秋’로, 러시아어로는 ‘얀치헤(Ian'chikhe)’라 표기했는데, 그 기원은 이 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가로질러 탐험대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강, 즉 연추하(延秋河·煙秋河·烟秋河, 현재의 Rechka Tsukanovka)에서 비롯된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중국식 발음을 그대로 따서 이 강을 ‘얀치헤’라고 했는데, 연추마을의 이름은 마을이 위치하고 있던 강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지역에 있었던 한인마을 대부분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러시아 원동지방(Russian Far East)의 중국식 지명에 관한 권위자인 러시아 학자 솔로비예프(F. V. Solov'ev)는 ‘얀치헤’는 매우 오래전부터 알려진 이름이나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18세기 초의 중국 지도에 ‘얀추헤(Ian'chukhe)’로 표기하다가 그 후 ‘얀치헤(Ian'chikhe)’로 바꿔 표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연추의 원래 한자 표기를 ‘延汉溝’ 즉, ‘얀차헤(Ian'chakhe)’로 밝혀 놓고 있다. ‘길게 물이 차서 흐르는 강’으로 번역할 수 있겠다.³⁾

한편 발해사 연구의 권위자인 송기호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발해를 찾아서』에서, 크라스키노(Kraskino, 1936년 이전에는 Novokievskoe, Novokievsk) 지역이 발해 東京龍原府에 속했던 鹽州이고, 현재 크라스키노 앞 해안의 추카보프카 강 하구의 삼각주(delta)에 위치한 크라스키노 성터가 염주의 소재지였다면서, 이후 중국 청나라 때 연추[顏楚], 眼春로 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얀치헤’는 鹽州河의 중국어 발음이라고 추정했다.⁴⁾

어쨌든 얀치헤강(Rechka Ian'chikhe)에서 비롯된 ‘얀치헤’는 크라스키노

3) F. V. Solov'ev, 1975, *Slovar' Kitaiskikh toponimov na territorii Sovetskogo Dal'nego Vostoka*, Vladivostok, p. 151 · 171.

4) 송기호, 1990, 『발해를 찾아서』, 솔, 155~156쪽.

주변의 다양한 지리적 명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안치헤강(Rechka Ian'chikhe)과 안치헤마을(Selo Ian'chikhe)을 비롯하여, 안치헤곶(Mys Ian'chinkhe, 크라스키노 남쪽 해안에 위치함), 파드 안치헤(Pad' Ian'chikhe, 깊은 골짜기) 등이 그것이다.⁵⁾

이들 지명은 1972년 소련 정부가 종래의 중국식 지명들을 러시아식으로 전면 개칭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개칭된다.⁶⁾ 즉, '안치헤'강은 '추카노브카(Chukanovka)'강으로, '하연추마을'을 뜻하는 '셀로 니즈네에 안치헤(selo Nizhnee Ian'chikhe)'는 '추카노보(Tsukanovo)' 마을로, '안치헤곶(Mys Ian'chikhe)'은 '델타곶(Mys Del'ta)'으로, '안치헤 골짜기(Pad' Ian'chikhe)'는 '말라야 골짜기(Pad' Malaiaia)'로 각각 개칭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⁷⁾

이러한 전면적인 지명개칭 이전에 '연추'라는 말은 마을이나 강 등의 특정한 지명을 일컫기도 하지만, 특히 1880년대 후반 연추마을이 남부 연해주지역 한인사회의 행정·문화적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면서 '연추지방', '연추 연해안' 등의 예처럼 '연추'란 지명은 이 지역 전체를 통칭하는 지명이기도 했다.

연추마을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북한·중국의 국경지대를 향하여 남쪽으로 기차길로 280km 가량 떨어져 있는 노보키예프스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1867년 탐험대만 북쪽 해안에 군요새로 건설된 노보키예프스키는 1900년에 노보키예프스코예(Novokievskoe)로, 1929년 이후에는 노보키예프스크(Novokievsk)로 불리다가, 1936년 5월 10일 오늘날의 명칭인 크라스키노(Kraskino)로 바뀌었다. 현재의 명칭인 크라스키노는 1936년 3월 25일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4명의 병사들과 함께 영웅적으로 전사한 크라스킨

5) F. V. Solov'ev, 1975, 앞의 책, p. 211.

6) Institut Instorii, Arkheologii i Etnografii Narodov Dal'nego Vostoka · Arkhivnyi Otdel Inpolkoma Primorskogo Kraevogo · Akademiia Nauk SSSR Ordena Trudovogo Krasnogo Znameni Dal'nevostochnyi Nauchnyi Tsent, 1984, *Administrativno-territorial'noe delenie Primorskogo Kraia, 1856-1980(Spravochnik)*, Vladivostok, p. 68.

7) F. V. Solov'ev, 1975, 앞의 책, p. 211.

(M. V. Kraskin) 중위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지명이다. 과거 노보키예프스키에는 시내를 가로지르는 길을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 양편에 '南營'·'北營' 두 개의 러시아 군영이 주둔하고 있어서, 한인들은 노보키예프스키를 '延秋營'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특히 노보키예프스키에는 군대 외에도 경찰서·전신국·세무서 등의 행정기관들이 있어 탐험대만 주변, 훈춘과의 접경지대, 두만강 하구지역을 포괄하였던 연해주 남부지역의 군사·행정적 중심지였다. 이런 사정에서 한인들은 부르기 편한 '연추'를 '노보키예프스키'에 대신하여 엄밀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했다.

연추에 한인마을이 들어서기 전 탐험대만 일대 해안지역에는 중국인[漢人] 10여 호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 주민은 煮鹽업이나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했고, 멀리 두만강 하구와 가까운 핫산(Khasan) 부근의 黑頂子(Sabyolovka) 마을로 한인들은 1875년 이곳에 마을을 형성하고 '新羅'와 '朝鮮'의 끝 글자를 따서 '羅鮮洞'이라고 명명했다)에 러시아 수비병들이 주둔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후 최초의 한인마을 지신허가 생기면서 흉년과 지방관리들의 착취를 피해 월경하게 된 국경지방 농민들의 대량이주가 시작되었는데, 연추마을의 형성은 1860년대 후반기에 함경도 농민들의 대량이주로 인하여 지신허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게 된 사정과 관련이 있다.⁸⁾

1895년에 출간된 러시아황실지리학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주해 온 함경도 국경지대 농민들에 의하여 1867년에 下延秋·下烟秋(니즈네에 얀치헤 Nizhniaia Ian'chikhe)와 上延秋·上烟秋(베르흐네에 얀치헤, Verkhniaia Ian'chikhe)의 두 개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하연추가 상연추에 앞서 형성되었다.⁹⁾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연추마을은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 지신허마을에 이어 두 번째로 형성된 한인마을이었다. 다른 러시아 측 기록에는 지신허마을이 1863년에 형성되어 다음 해인 1864년에 러시아의 변강구 당국에

8) 뒤바보, 1920. 3. 1, 「俄領實記」, 『獨立新聞』, 8쪽. 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 지신허(Tizinkhe)에 대하여는 반병률, 2003, 앞의 글, 209~239쪽 참조.

9) *Trudy Priamurskago Otdela Imperatorskago Russkago Geograficheskago Obshchestva*, I, Khavarovsk, 1895, p. 8.

〈표 1〉 러시아 연해주 초기 한인마을의 형성시기

한인마을 명칭	형성시기 (1)	형성시기 (2)	형성시기 (3)	비고
지신허	1864	1864	1863	‘Rezanovo’ 마을
얀치혜	1867		1864, 1865	延秋, 煙秋 상, 하
시지미	1867	1867	1866	상, 하
니콜라예프카	1868			新英溝, 新英洞
바라노브카	1869	1869		
파타쉬	1871		1878	바도쇠[所都所]
블라고슬로벤노예		1871		사만리(沙滿里)
아지미	1872		1873	상, 하
블라디보스토크		1874		海蔘威, 海蔘, 구개척리
나고르나야	1875	1875	1880	누블뫼 臥峰
흑정자	1875	1875		羅鮮洞, Sabyolovka
크라스노 셀로	1875	1875	1880	(2) 鹿島, 鹿屯島
아보			1876	Abo
노바이 제레브나	1878			珠留河
부르시예	1878		1889	
자레치예	1880		1880	
랴자노브카	1880		1880	
페스차나야	1884			
크라베			1873	
크레르키	1884			
암바-비라	1884		1898	
수하노브카	1885	1884		南石洞
케드로바이 빠지			1885	
명구가이	1885		1885	孟嶺, 멩고개, 멩고개
수하야 레츠키				
로마노브카		1883		都兵河
카자케비체바				
수청 청지동		1896		(2) 水淸의 淸支洞
푸칠로브카	1869	1869		六城

소왕령(니콜스크 -우수리스크)		1870		蘇王營, 宋皇營, 雙城子
코르사코프카	1872			河口
크로우노브카	1872			黃口
시벨리니코보	1872			大甸子 永安坪
오시포프카	-			아래농평, 仁洞
다우지미	1888년경			大烏吉密
안드레예브카				

출처 : ① *Trudy Priamurskago Otdela Imperatorskago Russkago Geograficheskago Obshchestva*, I, Khavarovsk, 1895, pp. 7~13.

② 뒤바보, 1920, 『俄領實記』, 『獨立新聞』 3월 1일자 8쪽, 3월 4일자 3쪽.

③ L. A. Siniakina, “Khronologiya: Obrazovaniia naselyonnykh punktov na territorii Khasanskogo raiona,” *Kolleksiia dokumentov po Khasanskogo raiona*, Khasanskii RGA.

알려졌으며, ‘베르호네예 안치혜(상연추)’가 1864년에, ‘니즈네예 안치혜(하연추)’가 다음 해인 1865년에 형성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의 출처 ③ 참조).

1867~1869년 사이에 동시베리아총독의 파견을 받아 남부 연해주지역을 답사한 바 있는 러시아의 지리인문학자이자 여행가였던 프르제발스키(N. M. Przheval'skii, 1839~1888)에 따르면, 당시 지신허마을 외에도 지신허마을로부터 다시 이주한 한인농민들에 의하여 연추(烟秋, 안치혜) 마을, 시지미(Sidimi, 현재의 Poima강 분지)마을, 명구가이(Mongugai, 현재의 Barabashvka강 분지)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지신허는 204가구 1,226명(여기에는 연추마을의 인구가 포함된 것인데, 지신허마을 인구는 최대 1,00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함), 시지미마을에는 11가구 54명, 명구가이마을에는 8가구 35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⁰⁾

두만강 국경지방 농민들의 무단월경과 지신허마을 정착은 조선 정부에게

10) N. M. Przheval'skii, 1869, “Inorodcheskoe nacelenie v iuznou chasti Primorskoi oblasti,” *Zhurnal Zacedaniia Sobeta*, 11 Marta, pp. 195~196.

도 통보되어 기정사실화되었다. 1865년 3명의 러시아 관리가 병사 10명과 최초의 한인 이주를 이끌었던 崔運甫를 통역으로 경흥부사를 찾아와 교섭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韓俄交涉의 初歩요 이민문제로 발생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이어 지신허마을 한인들이 만주 마적인 홍후즈(紅鬍賊)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로 조직한 私砲營의 私砲 25명이 함경북도 국경지대의 六鎭지방을 몰래 다니면서 주민들의 이주를 권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육진지방 주민들이 소달구지 60여 개와 말 30여 필에 나누어 타고 월경을 시도하다가 경흥 관군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충돌로 관군 측에서는 安孝一이 즉사하고, 이주민 측에서는 노파와 어린 여자아이가 잡혔는데, 후일 이 사건은 下三洞戰事로 불려졌다.¹¹⁾

무단월경 농민들의 지신허마을 개척과 정착 소식이 국경의 육진지방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월경하는 농민들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대부분이 지신허마을로 이주하였다. 그리하여 지신허마을 주민의 수는 국경지대의 육진지방의 농민들이 대거 월경해 넘어오게 되면서 급증하였다. 즉, 지신허마을은 1863년 최초의 이주민 13가구에서 1864년 가을에는 30가구 140명으로, 1865년에는 65가구 343명으로,¹²⁾ 그리고 1866년에는 100여 가구로 주민수가 크게 증가했다.¹³⁾ 1867년에는 500명이 지신허마을로 이주해 왔고,¹⁴⁾ 1868년에는 900명이 국경을 넘어 몰려왔다.¹⁵⁾

1869년 육진지방에 몰아친 대흉년은 이전의 간헐적인 이주와는 달리 한층 폭발적인 규모의 대이동을 가져왔다. 러시아 자료에 기록된 1869년 가을·겨울의 대이주를 살펴보면, 1869년 9월 말~10월 초 1,850명의 농민(남자 1,300명, 여자 550명)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신허마을로 이주해 왔는데, 이들은

11) 뒤바보, 1920. 3. 1, 앞의 글.

12) B. D. Pak, 1993, *Koreits v Rossiskoi Imperii*, Moskva, Mezhdynarodnyi Tsentr Koreevedeniia Moskovskogo Gosudarstvennogo Universiteta p. 21.

13) 리항우, 1909. 6. 9, 「何不往海參威(왜 히삼위로 아니가오)」, 『新韓民報』.

14) B. D. Pak, 1993, 앞의 책, p. 25.

15) B. D. Pak, 1993, 앞의 책, p. 29.

여벌 의복이나 휴대한 식량이 없었다.¹⁶⁾ 이어 같은 해 11월 말·12월 초에는 훨씬 더 많은 4,500명이 지신히로 몰려들었다.¹⁷⁾

러시아 당국은 지신히마을로 몰려드는 한인 이주민들의 대거 유입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지신히마을로 몰려든 이주민들을 다른 지방으로 이주시켜 정착케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지신히마을로 몰려든 이주민 중에서 일부 주민들이 지신히마을에서 서쪽으로 14km가량 떨어져 있는 연추강가의 연추마을로 이주하였다. 지신히마을에 이어 연추마을이 새로운 정착지로 알려지면서 1867년 조선에서 150가구가 연추마을로 이주해 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연추마을에 남고, 나머지는 1868년 8월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는데, 이들은 다시 영구적인 정착을 위해 수이푼강[綏芬河, Suifenkhe, 현재의 Rechka Razdol'noe]으로 보내졌다. 그 결과 1869년에 수이푼강가에 푸칠로브카마을[六城村]이 형성되었다. 푸칠로브카마을은 추풍지방 한인마을들의 연원이 되는데, 이 마을의 명칭은 정착계획의 책임자였던 러시아 관리(Putillo)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¹⁸⁾ 이 푸칠로브카마을[육성촌]에 정착한 지신히 빈민 35호를 이끌었던 인물은 1863년에 지신히마을을 개척한 崔運甫였다. 이어 1870년에도 역시 지신히마을 빈민 60호가 러시아 관리의 지도를 받아 추풍으로 이주하였다.¹⁹⁾

러시아 정부는 또한 1871년 여름 지신히마을 70여 호 315명을 포함한 연추 등지의 빈민 103가구 431명을 아무르주(흑룡주)의 아무르강 지류 사마르카강가의 블라고슬로벤노예(Blagoslovennoye, '축복받은 마을'이라는 뜻의 러시아어로, 한인들은 '사만리'라 불렀다)마을로 이주시켰다.²⁰⁾ 블라고슬로벤노예는 러시아 당국이 원동러시아 지역에서 한인들의 러시아화를 목표로 정책적

16) B. D. Pak, 1993, 앞의 책, p. 29.

17) B. D. Pak, 1993, 앞의 책, p. 30.

18) B. D. Pak, 1993, 앞의 책, p. 25.

19) 뒤바보, 1920. 3. 1, 앞의 글.

20) 뒤바보, 1920. 3. 4, 「俄領實記」, 『獨立新聞』; B. D. Pak, 1993, 앞의 책, p. 41.

으로 조성한 최초이자 유일한 모범마을이었다.

이처럼 지신허마을은 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로, 이후 초기 이주민들의 대부분이 거쳐갔다는 점에서, 러시아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원동지역 각지에 형성되는 한인마을의 시원이라 할 수 있다. 당초 지신허마을로 이주했던 이주민들이 남부 우수리지역 각지의 한인마을들을 개척함으로써 수많은 한인마을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1871년 1월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남부 우수리 일대에는 총 3,750명의 한인들이 정착해 있었는데, 지신허 1,200명, 연추 300명, 시지미 80명, 노보고르드灣 주변 120명, 포시에트만 주변 150명, 수이푼 분지(추풍) 1,200명, 나훗카·수찬(수청) 500명 그리고 러시아 마을에 20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²¹⁾

프르제발스키는 1869년에 간행한 자신의 저서 『우수리스크 크라이 여행 (Puteshestvie v Ussuriskom krae, 1867-1869)』에서 한인마을 안치헤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노보고로드만은 탐험대만보다는 작은 대신에 탐험대만보다 더 폐쇄된 형세를 갖추고 있어서 선박의 정박에 한결 편리하다. 탐험대만의 초입에는 노보고로드 초소가 배치되어 있는데, 장교와 병사들이 살고 있는 8개 동의 관사와 미역을 구입할 수 있는 외국상인 소유의 집 두 채 그리고 몇 채의 중국인 농가가 있다. 이 외에 얼마 전에 탐험대만 북쪽 해안에는 노보키예프스키 마을이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1개 보병대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로부터 몇 베르스타 떨어진 곳에는 한인마을 안치헤(Ian'chikhe)가 자리잡고 있다.²²⁾

프르제발스키는 지신허마을이 안치헤마을보다 규모가 크다고 하여 아직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기 안치헤마을의 주민수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²³⁾

21) B. D. Pak, 1993, 앞의 책, p. 37.

22) N. M. Przheval'skii, 1869, 앞의 글, p. 146.

23) N. M. Przheval'skii, 1869, 앞의 글, p. 146.

연추마을에 관한 이후의 기록은 1880년대에 연해주 일대를 조사한 바 있는 조선 정부의 관리들의 것이 남아 있다. 즉, 金光薰과 申先郁은 1882년경에 노보키예프스키, 즉 延秋營만을 답사하고 돌아갔는데, 귀국 후인 1882년 말 또는 1883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江左輿地記』에서 연추영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延秋營으로 곧장 향하였다. 洋人에게 경치를 감상하고 싶다는 뜻을 표하고 몰래 주위를 둘러보니, 높은 산이 하나 앉아 있는데, 북쪽으로부터 남쪽을 향하고 있어 널리 퍼져 있는 형국을 이루고 있다. [연추영]은 西에서 東으로 향하는 큰 길이 있는데, 길의 남쪽과 북쪽에 두 개의 군영을 창설해 놓았다. 주위는 동서가 5~6리이고 남북이 7~8리인데 주위에 관공서가 누각을 이루고 있다.²⁴⁾

노보키예프스키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군영의 군인수는 1,0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김광훈과 신선옥은 이들 러시아 장병들의 연습광경을 관람하였는데, 장교와 병졸들이 일사불란한 명령체계에 따라 “한 치의 차이도 없이 만인이 한마음인 것처럼” 규율 있게 훈련하고 있다고 적었다.²⁵⁾

이들은 한 달여 동안 수이푼[秋風] 일대 등을 둘러본 후 귀국하는 길에 연추에 다시 들렀는데(음력 10월 23일), 이때 러시아 군영에서 通辭, 즉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던 20여 세 약관의 최재형(Pyotr Semyonovich Tsoi)을 만났다. 후일 한인사회의 최고원로로 존경받게 되는 최재형은 당시 18세로 1878년 이후 러시아 군영의 통역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만 최재형의 이름이 崔子衡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²⁶⁾

김광훈과 신선옥은 1885년경 연해주지역을 두 번째 방문하고 난 후에 작성한 『俄國輿地圖』에서 연추마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江北日記·江左輿地記·俄國輿地圖』, 한국학자료총서 2, 133쪽 신승권 해제 참조.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위의 책, 133쪽.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앞의 책, 151쪽.

延秋我民村圖

동서 6~7리 남북 27리 남쪽으로 [러시아] 군영이 10리 거리에 있고, 북쪽으로 30리 거리에 고개를 넘어 [중국의] 훈춘과 경계를 이룬다. 동쪽으로는 한인마을 서계동이 30리, 芝新墟 마을이 35리 떨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한인마을 所道所 '바도소'로 읽어야 함, Fatashil가 20리, 珠河마을[珠留河, Churikhe Novaia Derevnial이 50리 떨어져 있다. 연추에 거주하는 주민은 237호이며 인구는 1,623명이다. [연추는] 己巳年(1869)과 庚午年(1870)의 흉년에 경원의 농민들이 들어와 개척하니 계속해서 [농민들이] 도망하여 살게 되었다.²⁷⁾([]은 필자의 附記)

김광훈과 신선옥의 보고는 앞에서 인용했던 러시아황실지리학회 보고서의 기록에 비하여 2~3년 늦은 己巳凶年과 庚午渡江 당시 연추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이 조선 관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해주지역에는 이미 총 29개의 한인마을이 형성되어 2,640가호 2만 313명의 한인들이 이주해 살고 있었다. 연추마을은 237가호 1,623명의 인구로 당시 추풍지역의 大村인 추풍3사의 푸칠로브카(274가호 2,827명), 시넬리니코보(237호 2,673명), 지신허(236호, 1,665명)에 이어 연해주지역에서 네 번째로 큰 한인마을로 성장해 있었다.²⁸⁾ 연추마을의 237가호는 한곳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서 6, 7리 남북 27리'의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다.

약 10년 후인 1895년에 출간된 러시아황실지리학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연추마을은 상연추·하연추 두 개의 마을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다. 연추강(레츠키 안치혜) 하류 분지에 먼저 형성된 하연추에는 1895년 당시 169농가(1884년 이전의 제1범주 141가구와 1884년 이후에 이주해 정착한 28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하연추 마을은 노보키예프스크로부터 0.5베르스타 지점에서부터

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앞의 책, 174쪽.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앞의 책, 169쪽. 다른 한인마을들의 주민수를 보면, 녹둔도[크라스노 셀로] 113호 822명, 서계동 23호 162명, 도비해[Daubikhe] 7호 52명, 허커우[河口, 코르사코프카] 229호 1,569명, 소성[蘇城, 水淸] 38호 263명, 사만리[블라고슬로벤노예] 147호 986명이었다.

연추강 분지에 15채 혹은 40채씩으로 된 작은 마을들이 분지 꼭대기까지 5베르스타(약 5km)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분지의 폭은 3/4에서 1과 1/2베르스타이고 길이는 12베르스타(12km)이다. 토양은 돌이 많아서 1895년 당시 1테샤친에서 평균 50푸드에서 70푸드의 수수와 콩, 250푸드의 감자를 수확하였다. 상연추마을은 1895년 당시에 연추강 상류의 분지에 위치하여 2베르스타 정도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는데, 98가구(제1범주 80가구, 제2범주 18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분지의 토양은 돌이 많았고 산비탈이나 경사지에는 점토질 토양으로 농작물 수확은 아래 분지의 반 정도에 불과했다. 마을의 집들은 전체가 한곳에 몰려 있었는데, 7채만이 마을 중심에서 3베르스타 떨어진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거의 위치해 있었다. 군초소에는 하사관이 포함된 제9 동시베리아 보병대 소속의 12명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 국경지역의 한인 주민이 이들 군인에게 주택, 난방, 조명을 제공하고 식량을 운송해 주고 있었다.²⁹⁾

이보다 늦은 1902년 당시 이민국 관리 다닐첸코(I. V. Danil'chenko)가 수집한 우수리스크 크라이(지방) 마을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연추마을 인구는 상연추(베르흐네예 얀치헤)마을에 60농가 63세대 442명(남자 223명, 여자 219명)이, 하연추(니즈네예 얀치헤)마을에는 132농가 135세대 1,057명(남자 527명, 여자 530명)이 거주하고 있어 전체 연추마을에는 총 192농가, 198세대 1,499명(남자 750명, 여자 749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하연추 마을은 이미 남부 우수리지방의 연추면과 아지미면을 통틀어 최대 한인마을로 성장해 있었고, 상연추를 합치면 더욱 큰 마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한인마을 지신허는 124 농가, 128세대로 주민수가 1,048명(남자 524, 여자 524명)이었다.³⁰⁾

29) *Trudy Priamurskago Otdela Imperatorskago Russkago Geograficheskago Obshchestva*, I, Khavarovsk, 1895, p. 8.

30) "Statisticheskiiia Dannyya za 1902 god' o seleniakh Ussuriiskago kraia sobrannyya chinovnikam osob. Pereselencheskago upravleniia I. V. Danil'chenko."

연흑룡주총독 운체르베르게르(P. F. Unterberger)의 저서에 첨부된 1906~1907년 당시의 한인마을 분포도에 따르면, 상연추(베르흐네에 안치헤)와 하연추(니즈네에 안치헤)는 남북으로 크게 떨어져 있었다. 이로써 우리는 상연추마을과 하연추마을의 양단간 거리가 최대 27리(11km)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연추마을의 인구는 296가구 1,882명으로, 상연추에 96가구 584명, 하연추에 200가구 1,298명이 거주하고 있어, 연추마을은 이미 최대 규모의 한인마을로 성장해 있었다.³¹⁾

이 지도에는 연해주지역 한인마을의 주민구성을 입적인(原戶人 또는 元戶人)과 비입적인(餘戶人)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하연추마을(니즈네에 안치헤)에는 입적인인 171가호 1,158명, 비입적인인 29가호 140명으로 총 200가호 1,298명, 상연추마을(베르흐네에 안치헤)에는 입적인인 86가호 543명, 비입적인인 10가호 41명으로 총 96가호 584명이 거주하고 있어 연추마을 주민은 총 296가구 1,882명이었다. 1890년대 이후 러시아 정부가 한인들의 입적을 허용하게 되면서 연추마을은 다른 초기 한인마을처럼 입적인인이 절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던 원호인 마을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한인들이 꼽았던 남부 연해주지역의 대표적인 원호인 마을들인 ‘南七社와 北四社’ 가운데, 연추마을은 ‘남7사’를 대표하는 중추적 마을이었다.³²⁾

7~8년 후인 1914년에 일제당국이 조사한 연추마을은 가구수 400호에 주변지역 인구수가 2,000명이었는데, 수이푼강 유역 일대 秋風四社의 하나였던 푸칠로브카 마을과 시넬리코보 마을이 각각 1,200명, 코르사코프카 마을이

31) P. F. Unterberger, 1912, “Karta Primorskoj Oblasti : Iuzhno-Ussuriskago Kariia,” *Priamurskii kraj, 1906-10 gg.*, St. Petersburg, V. F. Kirshbauma, Appendix. 이 지도는 1906~1907년에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1908년에 작성한 것이다.

32) 리인섭, 「되온대로 팔니운 조선로력대원(手稿本), 7쪽. ‘남7사’는 연추마을을 비롯하여 지신허·첫언덕이(자레치예)·아지미·시지미·강어재·차머우 등 7개 농촌을, ‘북4사’ 즉 ‘추풍4사’는 코르사코프카(초기 명칭 미하일로브카, 河口)·크로우노브카(黃口)·푸칠로브카(六城村)·시넬리니코보(대전자, 영안평) 등 4개 마을을 말한다. 이외에 수청지방에는 신영거우(신영동, 니콜라예프카), 다우지미, 아누치노 지방의 리포마을 등이 대표적인 원호촌이었다.

1,000명이었던 점에서 볼 때 연추마을은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어느 마을보다 훨씬 컸던 大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³⁾

Ⅲ. 연해주 남부 한인사회의 중심, 연추마을의 초기 모습

앞에서 인용한 바, 1885년경 연해주지역을 두 번째 방문하고 난 후에 김광훈과 신선욱이 작성한 『아국여지도』에는 연추마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延秋我民村圖

마을 가까운 군영요새에서의 토목공사로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재물이 넉넉하고 윤택하여 물화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冠婚喪葬은 의연히 본국[조선]의 예를 따르고 있어 비록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관습을 따르지 않음을 책망하기는 하나 본국의 법도를 잊지 않고 본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한다며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것을 칭찬한다. 각 마을[社]에는 老翁가 있어 마을의 일을 모두 총괄하고 있다. 만약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에는 관청에 품(稟)한다. 마을 내의 설비로는 서당을 세워 생도들을 가르치고 또 西學을 세워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글과 말에 익숙하고 통하게 함으로써 학문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³⁴⁾

노보키예프스크 러시아 군영의 토목공사 덕택으로 연추마을 주민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관습은 여전히 조선의 전통적인 冠婚喪祭를 지키고 있어서 러시아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촌장격인 노야가 마을 일을 처

33) 淺山書記生, 1914, 「露領極東에 있어서 朝鮮人」(1914년 3월 조사),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部 在西比利亞』(日本外務省史料館 所藏) 5권(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3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앞의 책, 174쪽.

리하고 있고, 그 외 감당할 수 없는 중대사는 러시아 관청에 보고하여 처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연추마을에 러시아식 학교[西學]와 전통적 서당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추마을에 러시아 정부의 지원으로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설립된 것은 1873년 연해주군정순무지사 크로운(A. G. Kroun)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연추마을의 러시아 학교는 1868년에 설립된 지신허마을의 학교에 이어 두 번째이다. 연추마을 학교의 한인교사는 채가[蔡, Kachai]였으며, 당시 학생수는 지신허마을 학교 남학생 33명, 연추마을 학교가 10명이었다. 1876년 초 교사 급여를 주지 못하여 폐교했던 이들 학교는 1879년에 다시 문을 열었다.³⁵⁾

그렇지만 곧 교사 급여가 지불되지 않아서 연추마을과 주변 한인마을들에 살며 러시아정교로 개종한 아이들은 러시아어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상태로 방치되었다. 이러한 상태를 타개하고자 1878년 새로 주교로 임명되어온 마르치니안(Martinian Mikhail Semyonovich Muratovskii)이 연해주 순정군무사에게 청원하여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인 밀집지역에 대한 선교를 목적으로 하여 독자적인 선교단체가 설립되었는데, 1882년 포시에트에는 안치혜 선교단이 설립되었고, 다음 해에는 니콜스코예(현재의 우수리스크) 부근의 한인마을들(추풍4사)을 담당할 코르사코프카 선교단이 설립되었다. 이들 선교단이 선교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연추마을에는 선교학교가 설립되어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정교의 선교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³⁶⁾ 김광훈과 신선욱이 기록한 ‘서학’은 바로 이 선교학교를 말하는 것이다.

1880년대 러시아정교 선교단이 주관하던 선교학교들은 그다지 좋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연추마을 선교학교의 경우 1885년에 12명, 1886년에는 16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다. 연추마을 선교학교의 문제는 마

35) 올가 보리소브나 린샤, 2006, 「19세기 후반 남부 우수리지방 한인주민들 사이에서의 학교교육의 발생 : 최초의 학교들」, 『역사문화연구』 24,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40~41쪽.

36) 올가 보리소브나 린샤, 2006, 위의 글, 40~41쪽.

을 성직자인 치프체프(Fillip Tiptsev)가 주민들의 校舎 건립을 방해하고, 주민들이 쌓은 담장을 헐었으며, 학교 통나무 25개를 압수하고, 한인촌장인 鄭 나니에게 모욕을 주었다. 결국 치프체프는 1885년 사직하였다. 1885년 당시 코르사코프카와 푸칠로브카의 선교학교에는 각기 21명, 연추마을에는 15명의 한인아동들이 공부하고 있을 뿐이었다(취학연령 한인아동은 남자 756명, 여자 588명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방치되는 것을 원치 않은 한인들은 한인 이주민 교사들이 가르치던 조선식 학교[서당]에 아이들을 보냈다. 당시 연추에는 15개의 한인학교가 있었는데, 이들 학교에서는 성경이나 러시아어 수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들 한인교사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망이 커서 대부분의 취학연령 한인아동들이 다녔다.³⁷⁾

이보다 약 10년 후인 1894년 가을 연추지역을 방문하였던 영국의 저명한 여행가였던 비숍(Isabella Bird Bishop)은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urs)』에서 연해주 남부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농민들의 생활을 매우 인상적인 필치로 기록하여 놓았다. 비숍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증기선을 타고 7시간 걸려서 60마일 거리의 군항인 포시에트항에 도착하였다. 포시에트항에는 달구지를 끌고 온 한인들이 증기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포시에트灣은 멋진 막사와 상점들이 있는 커다란 군 주둔지로, 민간인이 사는 것 같지 않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한인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어, 블라디보스토크에 공급되는 소고기의 대부분이 이곳으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강건하고 운택해 보이는 한인들이 60마리의 매우 살찐 소를 몰고 증기선으로 내려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편마차를 타고 우편배낭들 사이와 위에 끼여서 우리는 얼어붙은 바다 유입로를 따라가다가 얼어붙은 강을 건너, 한인 농토들이 없어 전혀 생기가 없는 계곡의 풀 많은 시골 언덕길을 넘어 2시간을 질주하여 일

37) 올라 보리소브나 린샤, 2007, 「한인들의 학교교육 보급을 위한 러시아정교의 활동-19세기 70년대와 90년대 초 남우수리스크 지방」, 『러시아의 大韓정책과 한·러관계의 역사적 성격』, 동북아역사재단·한러협력연구소 주최, 2007 한·러공동 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 73~74쪽.

몰 후에 노보키예프스크에 도착하였는데, 상사건물이 커다란 벽돌석 재로서, 이 지역의 명물인 쿤츠 앤 알버스 상사(Messrs. Kuntz and Albers) 대표의 환대를 받았다. 노보키예프스크는 주로 한인과 중국인들이 대부분인 1,000명의 민간인들이 돈을 벌고자 몰려와 있는 커다란 군 주둔지였다. 한인들은 정말로 이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달구지로 온갖 종류의 짐과 기름연료를 실어 날랐다.³⁸⁾

여기에서 흥미로운 첫 번째 사실은 김광훈과 신선옥이 전한 바, 노보키예프스크[煙秋營]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제활동이 인접한 연추마을 한인들의 윤택한 생활의 배경이 되고 있었음을 전해 준다는 점이다. 비숍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포시에트항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生牛를 공급하고 있는 “강건하고 윤택해 보이는 한인”들의 존재이다. 함경도와 중국 만주지방에서 생우를 구입하여 도축한 후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연해주 각지의 러시아 군인과 민간인들에게 소고기를 공급하여 재산을 모으고 있던 한인 포드라드치크[청부업자]들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기록인 것이다.

내가 보고 들은바 인군의 전체 농업인구는 한인들이는데, 이들은 매우 풍요로운 상태에 있다. 이곳과 조선의 국경지역으로 가면 이들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주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은 러시아 군대에 육류와 곡물 공급계약을 맺어 富를 모으고 있다. 이 점에서 이들은 이웃 중국인들을 압도하고 있고, 실제로 이들은 중국 만주로 들어가 여원 소를 사서 육류용으로 살찌게 만든다. 조선 국내의 한인들만을 보아온 사람들에게 이는 거의 믿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를 뒷받침할 아주 좋은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바로브스크 근처에 거주하는 한인주민들이 도시에 채소를 공급하는 원예시장에서 중국인들과 매우 성공적으로 경쟁하여 왔고 이제는 완전히 이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³⁹⁾

38) Isabella L. Bird(Mrs. Bishop), 1986, *Korea and Her Neighbors*, Vol. 2, Charles E. Tuttle Co., pp. 2~3.

39) Isabella L. Bird(Mrs. Bishop), 1986, 위의 책, p. 4.

이제 비숍 여사가 전하는 연추마을의 모습을 살펴보자. 비숍 일행은 남쪽(두만강 하구의 국경지대)으로의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기다리는 3일 동안 노보키예프스크 경찰서장의 안내로 주변의 한인마을들을 둘러보게 되었다.

[노보키예프스크] 경찰서장 소유의 4륜마차 타란타스(tarantas) 덕분에 한인통역을 수소문하기로 한 안치혜로 가는 길이 수월하였다. 평평한 평지의 농촌은 아름다운 산들로 경계지어진 골짜기로 들어가면서 좁아지고 있었는데, 깊고 기름진 검은 땅 위에 곡류와 根菜 채소들은 거의 다 자란 상태였다. 거의 모든 곡식들은 이미 수확이 끝나 있었고 땅은 깔끔하게 갈아엎어져 있었다. 조선의 농촌마을보다 훨씬 좋은 상급의 집들이 들어찬 작은 한인마을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큰 마을 속에 드는 한 마을은 140가호가 750에이커의 기름진 땅 위에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들은 여러 집을 방문했는데,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관리(경찰서장)를 환영하기 위해 부인네들까지도 매우 즐거운 모습으로 나왔다. …… 마당은 깨끗하고 잘 청소되어 있었고, 가축들은 깔끔한 외양간에 가둬 놓고 있었다. 집들은 순전한 조선식으로 5~6개의 방이 있고, 꼼꼼하게 이엉으로 지붕을 엮었으며, 내부가 매우 깨끗하고, 중국 관리들이 집에서만 꿈꿀 수 있는 정도의 편안한 가구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 …… 조금 더 가니 안치혜(Ian' chikhe)라는 큰 마을이 있는데, 러시아인·한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깔끔한 학교가 있고, 내부장식이 두드러지게 화려하고, 사제의 사택이 붙어 있는 러시아정교 교회가 있다. 매우 부유한 마을이다. 깨끗한 파출소에서 한인경찰이 내가 필요한 사항을 적더니, 푹푹하게 생긴 한인경찰을 통역을 찾으러 내보냈다. 이 마을과 부근지역에서 모두 400명의 한인들이 러시아정교에 입교하고 세례를 받았다. 교양이 있다기보다는 볼품이 있고, 그의 젊은 가족수가 사택에 비해 너무 많은 사제에게 한인들이 어떠한 종류의 신도가 될 것인가를 물어 보았다. 그는 그들이 배울 것이 많고, 다음 세대에게 보다 많은 희망이 있다고 암시적인 답변을 하였다.⁴⁰⁾

40) Isabella L. Bird(Mrs. Bishop), 1986, 앞의 책, pp. 5~6.

안타깝게도 비숍이 연추마을에 앞서 방문했던 마을, 즉 140가호가 살았던 적지 않은 규모의 한인마을의 명칭과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추정하자면 파타쉬[Fatash, 바도소, 所都所] 또는 풍토이(Punktoi)마을일 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인용한 비숍의 기행문에서 안치혜마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덧붙이고 싶다. 우선 첫 번째로 비숍이 방문한 ‘안치혜’마을은 ‘니즈네에 안치혜’, 즉 하연추마을이었고, 이 하연추마을에 학교와 함께, “내부장식이 두드러지게 화려하고, 사제의 사택이 붙어 있는 러시아정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앞에 언급한 바 조선 정부에서 파견했던 김광훈과 신선옥이 1885년경 연해주지역을 두 번째 방문하고 난 후에 작성한 『아국여지도』에도 ‘연추아민촌’ 입구에 러시아정교 사원인 ‘佛堂’과 러시아정교 사제관인 ‘僧屋’이 그려져 있다.⁴¹⁾

러시아 측 기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1860년대 후반 노보키예프스크에 교회가 세워진 데 이어, 연추에는 기도소(chavnaia)가 설치되었다.⁴²⁾ 1872년에는 ‘니즈네에 안치혜’ 즉 下煙秋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다. 1895년 3월에 작성된 러시아황실지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연해주지역의 한인마을 32곳에 모두 4개의 러시아정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세 개가 수이푼지방의 코르사코프카 마을, 푸칠로브카 마을, 시벨리니코보 마을에 있었고, 연추마을에 하나가 설립되어 있었다.⁴³⁾ 이처럼 연추마을은 행정적으로는 물론 연해주 남부지역 한인 러시아정교들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숍의 여행기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이 마을이 한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이 함께 섞여 살던 마을이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비숍은 연추의 소학교를 “러시아인·한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깔끔한 학

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신승권 해제), 1994, 앞의 책, 173쪽.

42) A. I. Petrov, 2000, *Koreiskaia Diaspora na Dal'nem Vostoke Rossii 60-90-e gody XIX veka*, Vladivostok, Possiiskaia Akademiia Nauka, p. 230.

43) *Trudy Priamurskago Otdela Imperatorskago Russkago Geograficheskago Obshchestva*, I, Khavarovsk, 1895, p. 19.

교"라고 기록했던 것이다. 이는 앞에서 인용한 바, 『아국여지도』에 연추마을에 이미 西學이 설립되어 러시아어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기록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또한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간행된 『한인신보』 1917년 9월 23일자 연재기사 「강동신헤」에 “연추용평과 추풍에 아문학교를 설하고 학도 20여 명이 공부하다”고 한 데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김광훈과 신선욱이 기록한 ‘西學’이나 「강동신헤」에서 언급한 ‘아문학교’는 비숍 여사가 묘사한바 “러시아인·한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깔끔한 학교”와는 다른 학교였다. 1890년대에 비숍 여사가 방문했던 연추마을, 즉 하연추에 위치했던 학교는 러시아 어린이와 한인 어린이들이 함께 공부하던 러시아 소학교로,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의 방문을 기념하여 1891년 11월 14일 신축 개교하였는데, 연해주 농촌학교 가운데 최초로 황태자 니콜라이의 이름을 따서 학교 명칭을 ‘안치힌스코예 니콜라예프스코예’ 소학교라고 하였다.⁴⁴⁾

니콜라예프스코예 소학교 건물은 마을기금 4,750루블로 지었는데, 학교 기구 구입비용으로 300루블이 들었다. 1895년 당시 학생은 25명으로 19명이 연추마을(상연추와 하연추) 거주 학생들이고, 나머지 6명이 크라스노 셀로(4명)와 지신허마을(2명)에서 온 학생들이었다. 연추 니콜라예프스코예 소학교 건물은 폭이 5m 70cm, 길이가 7m 10cm이며 5개의 창문이 달려 있는 높고 밝은 건물이었다.⁴⁵⁾

연추 니콜라예프스코예 소학교의 초대 교사는 최초의 한인교사이기도 한 알렉산드라 세묘노바 보프로바(Aleksandra Semyonova Bovrova)였다. 1870년 7세 때 언니와 함께 연해주로 越江移住할 때에 고아가 된 후, 연해주 군정순무지사 크라운에게 입양되어 교육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페테르부르크의 바실리에프 오스트로프 여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졸업 후 독일인 가정과

44) 올라 보리소브나 린샤, 2007, 앞의 글, 76쪽.

45) *Trudy Priamurskago Otdela Imperatorskago Russkago Geograficheskago Obshchestva*, I, Khavarovsk, 1895, p. 20.

러시아인 가정에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동포들이 살고 있는 한인사회에서 교사로 활동할 희망을 가졌다. 마침내 페테르부르크에 살던 페트로파블로프스키(N. I. Petropavlovsky)가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연해주 군정순무지사 운테르베르게르(P. F. Unterberger)에게 그녀를 연해주지역의 학교 교사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우수리스크 관구 책임자인 수하노프(A. V. Sukhanov)로부터 “농촌에 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운테르베르게르는 그녀를 연추 니콜라예프스코예 소학교 교사로 임명하였다. 1891년 연추 니콜라예프스코예 소학교 교사로 부임한 알렉산드라 세묘노바는 연추 도헌인 최재형과 결혼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1893년 6월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하여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다.⁴⁶⁾

한인자제들의 교육사업을 열성적으로 후원했던 인물이 바로 연추 니콜라예프스코예 학교의 첫 교사였던 알렉산드라 세묘노바 보프로바의 남편 최재형(1860~1920)으로 그는 1893년 최초의 한인 都憲(面長)에 임명되었다.⁴⁷⁾ 연추 마을의 역사는 물론 제정러시아 시기 한인사회의 역사를 말할 때 최재형을 빼놓고는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최재형은 러시아 한인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최재형은 9세 때인 1869년에 아버지를 따라 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 지신허마을로 이주한 인물로, 이후 지신허마을의 러시아어 소학교에 다니다가, 한인학생들인 최세문·정이반·김일리아 등 3명과 함께 페름(Perm') 대주교관구 신부 바실리 피얀코프(Vasilii P'iankov)가 설립한 블라디보스토크의 기숙사에 입양되어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바실리 신부의 청원과 연해주 군정순무지사 크로운 장군의 동의하에 시험을 본 후에 ‘소볼(Sobol’)함의

46) 올가 보리소브나 린샤, 2007, 앞의 글, 76쪽. 비극적인 한인여성 엘리트였던 알렉산드라 세묘노바에 관하여 소개한 학자는 올가 보리소브나 린샤 교수이다. 그동안 최재형 연구에서나 최재형의 가족들의 회상록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로서 린샤 교수의 발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알렉산드라 세묘노바는 최재형의 두 번째 부인이 된다.

47) 이하 최재형과 관련된 사항은 반병률, 2006, 『최재형(崔在亨)』, 최표트르 세묘노비치-러시아 고려인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자』, 국가보훈처 참조.

수병으로 임명되었다.⁴⁸⁾ 이처럼 초기 한인 이주민 과정에서 양산된 고아들이 러시아 관헌들의 선의로 입양되어 교육을 받게 된 사례는 초기 한인 이민사에서 비밀비재했던 일로, 한편으로는 무작정 러시아 연해주로 월경이주한 한인들의 비참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관헌들이 이들 한인이주 아동들에게 인도주의적 선행을 베푼 좋은 사례였다.

최재형은 10년 동안 경찰서장(경관)을 위한 통역으로 활동하다가 1893년에 연추도현에 임명되었다. 최재형은 한인마을에 세워진 대표적인 러시아식 한인학교인 연추 니콜라예프스코예 소학교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2,000루블의 장학금을 내는 등 열성으로 학교운영을 후원하였다. 설립 이후 연추 니콜라예프스코예 소학교의 많은 졸업생이 중학교, 사범학교, 동양학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는데, 최재형의 장학금을 받고 사범학교에서 공부한 졸업생들이 모교의 교사로 와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는 최재형의 장학금을 받은 데 대한 의무이기도 했지만, 동포 자제들을 위한 교육을 헌신적 의무로 자각한 결과이기도 했다. 또한 졸업생 가운데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군 장교나 하사관으로 러시아를 위해 공헌을 남긴 자도 적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김콘스탄 페트로비치(1917년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제10소학교 교장)는 13년간 모교 교사로 전력을 기울인 공을 인정받아 神聖 ‘안나’ 제3등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⁴⁹⁾

연추 니콜라예프스코예 소학교는 1899년 하바로프스크에서 개최된 박람회 교육부문에서 동메달의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⁵⁰⁾ 김 콘스탄 등과 같은 모교 출신 교사의 헌신으로 연추 니콜라예프스코예 소학교는 연해주 내 최우수 러시아인 소학교와 쌍벽을 이루게 되었다.⁵¹⁾

48) 올라 보리소브나 린샤, 2007, 앞의 글, 69~70쪽.

49) 「朝鮮人の近狀에 關한 報告의 件」(1917. 8. 31),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部 在西比利亞』(日本外務省史料館 所藏) 6권(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50) 「朝鮮人の近狀에 關한 報告의 件」(1917. 8. 31).

51) 「朝鮮人の近狀에 關한 報告의 件」(1917. 8. 31). 연추 니콜라예프스코예 학교에 관한 이 기록은 “재연추 ‘안치힌스코예 니콜라예프스코예’ 소학교 연혁기사”라는 표제로 1916년 11월 14일 『연흥강관보』에 니콜스크-우수리스크 관구 학무감독관인 ‘쇼소스’가 기고한 것이다. 1905년 니콜스코예 소학교는 블라디보스토크 학무감독

최재형은 또한 교회와 학교 건물 외에도 교사와 사제를 위한 건물을 지었다. 연추마을 입구에 세워진 이들 건물은 매우 견고하고 넓게 지은 벽돌건물이었다. 이 건물에 대하여는 앞서 소개한 바 1894년에 이곳을 방문한 영국의 여행가 비숍이 자신의 여행기에서 연추마을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이후 1904년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 이곳에 온 러시아정교회 서울 僧院管長인 흐리산프(Khrisanf)의 여행기에도 잘 소개되어 있다. 특히 흐리산프는 여성을 위한 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여성이 정교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등 진보적이며 개혁적인 최재형의 지도력에 크게 감동하였다고 기록했던 것이다.⁵²⁾ 1895년 최재형의 주선으로 1875년에 최봉준이 개척한 한인마을 香山社에 러시아정교회와 학교가 설립되었다.⁵³⁾ 최재형은 또한 연추에 又新學校를 설립하고 교장으로서 학교운영을 담당했다.⁵⁴⁾

최재형은 각 촌락마다 러시아정교회와 한인 소학교가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⁵⁵⁾ 이를 위해 그는 교회와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했다. 다행히 한인들은 그의 모금운동에 적극 호응했다. 1890년대 말 연해주지역의 32개 한인마을에 있었던 러시아소학교들은 한인농민들의 주도로 설립된 것인데, 그의 지도력에 힘입은 결과였다.⁵⁶⁾

도헌 시절 최재형은 자신의 봉급 3,000루블을 전부 은행에 맡기고 그 이자

관구 소속으로 되어 연 1,400루블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고 마을기금에서 1,000루블을 지출하여 학교의 기초가 공고하게 되었다. 이후 다시 니콜스크-우수리스크 학무감독관구 소속학교로 되었다. 1912년에는 학생들로 조직된 소년대를 페테르부르크에 보내어 황제 니콜라이 2세를 친람하고 상을 받았다. 1913년에는 연흥룡주 총독인 곤닷치와 연흥룡주 군관구사령관이 친히 학교를 방문하고 교비의 일부지원을 조처하였다. 이후 본교직원의 봉급과 교비는 1913년 7월의 칙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다. 1916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교내에 황제의 塑像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52) V. V. Tsoi, 2001, *Chve Dxhekhén-Tsoi Petr Semenovich 1860-1920*, Potomki Borstov za Nezavisimost' Korei, Moskva, Almaty, 2001, pp. 67~68.

53) 「강동선해」, 『한인신보』, 1917. 9. 30.

54) 반병률, 2006, 앞의 책, 5쪽.

55) V. V. Tsoi, 2001, 앞의 책, p. 63.

56) V. V. Tsoi, 2001, 앞의 책, p. 65.

로 매년 1명을 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도시의 학교로 유학을 보냈다. 그가 마련한 장학금으로 러시아 각 도시의 사범학교나 사관학교로 유학을 가서 고등 교육을 받은 40여 명의 청년들 가운데는 김아파나시·김미하일·한명세·오하묵·최고려·박일리아 등 후일 저명한 사회·정치적 지도자로 성장한 인물들이 많다.⁵⁷⁾

최재형의 교육사업을 가능케 했던 것은 그가 유능한 사업가로 재력을 모았던 덕택이었다. 최재형은 연추의 러시아 군대에 소고기를 납품하는 청부업자였으며, 슬라방카에는 러시아 병영 건축과 官給의 벽돌제조공장을 경영했던 사업가였다. 그는 러시아 군대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고기와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며 재력을 모았는데, 블라디보스토크와 연추에서도 가옥임대업을 하고 있었다.⁵⁸⁾

최재형은 한인사회를 위한 교육과 실업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재력 있는 한인 사업가들과 의기투합하였다. 1898년 그의 뜻에 동조하여 두터운 의형제의 결의를 한 인물들은 한 엘리세이 루키치(한익성)와 그의 동생 한 바실리 루키치, 김 표트르 니콜라예비치, 최 니콜라이 루키치(최봉준) 등이었다. 특히 최 루키치 니콜라예비치는 최재형에게 자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한 인물인데, 1900년의 의화단사건과 1904~1905년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군대에 소고기를 납품하여 재산을 모았다. 이들은 각자의 회사들 간에 사업상의 자매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하며 한인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마련했다.⁵⁹⁾

연추마을은 1880년대 후반 이후 이주 한인사회의 행정 중심지로 부상하고, 교육과 종교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1884년 조선과 러시아가 국교를 수립하여 한인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보장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한인 농촌사회를 러시아 행정단위에 편입시켰다. 그리하여 都憲

57) V. V. Tsoi, 2001, 앞의 책, pp. 63~65.

58) 반병률, 2006, 앞의 책, 5쪽.

59) V. V. Tsoi, 2001, 앞의 책, p. 58 · 134.

(volosnaia starshina)·社憲 제도가 도입되어 ‘인민의 자치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⁶⁰⁾ 연추마을에 연추도회소를 설치하여 두만강 및 중국 훈춘과의 국경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한인마을을 관할하였다. 이후 그 이북지역의 아지미마을에 도소를 두고 그 주변의 한인마을을 관할케 하였다. 그리하여 한인들은 연추도회소를 ‘南都所’, 아지미도회소를 ‘北都所’라 불렀던 것이다.

1895년 3월에 연추면, 즉 안치힌스카야 볼로스치(Ian'chikhinskaia Volost')에는 22개의 한인마을이 속해 있었는데, 이는 당시 연해주지역 총 32개의 한인마을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⁶¹⁾ 이후 이들 한인마을 가운데 지신허마을 이북의 한인마을을 아지미면[아지민스카야 볼로스치, Adiminskaia Volost']에 속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899년 1월 1일 현재 연추면, 즉 안치힌스카야 볼로스치(Ian'chikhinskaia Volost')에 속한 마을은 8개로 상연추·하연추를 비롯하여, 크라스노예 셀로[녹둔도], 나고르나야[臥峰, 누블뫼, 현재의 Khasan], 자레치예[첫언덕이], 노바야 제레브냐[珠留河], 바라노브카, 크라베였다. 한편, 아지미면, 즉 아지미면[아지민스카야 볼로스치, Adiminskaia Volost']에 속한 마을은 상아지미·하아지미를 비롯하여 지신허, 수하노브카[남석동], 페스차나야, 라자노브카, 클레르카, 부르시예, 상시지미, 하시지미, 케드로바야 파디 등이었다.⁶²⁾

러시아혁명 당시 연추면, 즉 ‘안치힌스카야 볼로스치’에는 10개 마을이, 아지미면에는 22개 마을이 소속되어 있었다.⁶³⁾ 1895년에 출간된 러시아황실 지리학회 조사보고서에 연추면 도회소 건물과 최재형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60) 「강동순해」, 『한인신보』, 1917. 9. 23.

61) *Trudy Priamurskago Otdela Imperatorskago Russkago Geograficheskago Obshchestva*, I, 1895, Khavarovsk, p. 4.

62) A. I. Petrov, 2000, “Zemel'nye nadely, otvedennye v pol'zovanie Russkopoddannym Koreiskim krest'ianam po soctoianiu na 1 Ianvaria 1899,” *Koreiskaia Diaspora na Dal'nem Vostoke Rossii 60-90-e gody XIX veka*, Vladivostok, Possiiskaia Akademiia Nauka, pp. 273~274.

63) 「朝鮮人の近狀에 關한 報告의 件」, 1917. 5. 15.

연추면 도회소는 아름다운 석조건물에 자리 잡고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본래 도회소 사무실로, 다른 큰 방은 먼(volost')의 회의를 위한 것이다. 모든 사무는 러시아어로 처리된다. 마을에 전달되는 명령은 조선어로 번역된다. 도현(Starshina) 포트로 최는 1893년부터 일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경찰서장의 통역이었다. 그는 스타니슬라브(Stanislav) 綬章 은메달, 襟章, 기타 목걸이를 갖고 있는데, 도로건설에 쏟은 노력과 열성을 인정하여 수여한 것이다. 면서기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민인 알렉산드르 바실리예프인데, 1894년부터 일하고 있다.⁶⁴⁾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건설'이란 최재형이 연추경관의 명령을 받아 연추영의 군인 300여 명을 데리고 연추(크라스키노)에서 멩구가이(현재의 바라바시)까지 도로를 건설하게 된 사실을 말한다.⁶⁵⁾ 러시아 정부는 1888년 최재형의 공로를 인정하여 훈장을 수여한 것이다. 그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받은 첫 번째 훈장이다.⁶⁶⁾

IV. 맺음말

연추마을은 1867년 함경도 월경농민들이 건설하였는데, 그 마을 이름의 어원은 이 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가로질러 탐험대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강, 즉 연추하(延秋河·烟秋河, 현재의 Rechka Tsukanovka)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기원은 발해 東京龍原府에 속했던 鹽州에서 비롯되었다.

64) *Trudy Priamurskago Otdela Imperatorskago Russkago Geograficheskago Obshchestva*, I, Khavarovsk, 1895, p. 5.

65) 「강동선해」, 『한인신보』, 1917. 9. 23.

66) 반병률, 2006, 앞의 책, 5쪽.

연추마을은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 최초의 한인마을인 지신허마을(1863년 형성)에 이어 두 번째로 형성된 한인마을로 조선과 러시아 간의 국교가 수립된 1884년 이후 러시아 연해주 한인사회의 행정·교육·종교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1884년 조선과 러시아가 국교를 수립하게 되어 한인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보장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한인 농촌사회를 러시아 행정단위에 편입시켰다. 그리하여 都憲(volosnaia starshina)·社憲 제도가 도입되어 '인민의 자치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연추마을에 연추도회소를 설치하여 두만강 및 중국 훈춘과의 국경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한인마을들을 관할하였다. 이후 그 이북지역의 아지미마을에 도소를 두고 그 주변의 한인마을들을 관할케 하였다. 그리하여 한인들은 연추도회소를 '南都所', 아지미도회소를 '北都所'라 불렀던 것이다.

1914년경에 이르면 연추마을은 가구수 400호에 주변지역 인구수가 2,000명이 거주하고 있어서, 수이푼강 유역 일대 秋風四社의 하나였던 푸칠로브카 마을과 시넬리코보 마을이 각각 1,200명, 코르사코프카 마을이 1,000명이었던 점에서 볼 때,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어느 마을보다 훨씬 컸던 大村으로 성장해 있었다.

1872년에는 '니즈네에 안치헤' 즉 下煙秋에 교회가 세워졌다. 1895년 3월에 작성된 러시아황실지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연해주지역의 한인마을 32개 가운데 4개의 마을에 러시아정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세 개가 수이푼 지방의 코르사코프카 마을, 푸칠로브카 마을, 시넬리니코보 마을에 있었고, 연추마을에 하나가 설립되어 있었다.

연추마을은 한인과 러시아인들이 함께 섞여 살던 마을이었다. 연추마을의 소학교는 1873년에 설립되었는데, 한인과 러시아 아동들이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았다. 1891년에는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의 방문을 기념하여 1891년 11월 14일 '안치힌스코예 니콜라예프스코예' 소학교가 마을 기금으로 신축·설립되었다.

연추마을의 역사에서 최재형[최 포트로 세묘노비치]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1893년 최초로 연추면의 道憲으로 임명된 이후 사회·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연추마을을 비롯한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모국 조선이 국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연추마을은 1906년 최재형·李範允을 중심으로 시작된 연해주 의병운동의 중심지로 되었다. 연추마을은 1908년 봄 최재형·이범윤·李瑋鍾, 안중근 등이 한인지도자들이 同義會를 조직하고, 그 해 여름 국내로 진격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던 연해주 의병운동의 중심거점이었다. 연추마을이 차지했던 한말 일제 초기 러시아 한인사회의 조직화와 교육문화운동에서 차지했던 역할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1906~1907년까지 연추마을은 ‘베르흐네에 안치헤’, 즉 상연추와 ‘니즈네에 안치헤’, 즉 하연추의 두 개 마을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이 두 연추마을 중간에 위치한 곳에 농촌가호들의 정착이 늘어나면서 ‘스레드네에 안치헤’ 즉, 중연추마을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한인들은 上別里, 中別里, 下別里라 하여 상연추마을, 중연추마을, 하연추마을의 별칭으로 사용했다.

러시아혁명 후에 ‘러시아 관헌들의 위신이 완전히 실추하게 되자’ 1917년 6월 남부 연해주 한인들은 연추와 아지미에 한인민회 본부를 두고, 각 한인마을에 지부를 조직하여 한인들의 자치행정을 실시하였다.⁶⁷⁾

1923년 이후 소비에트화 과정에서 이들 연추마을은 집단농장으로 재편되었지만, 역사의 격랑에 휩쓸리면서 각기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된다. 세 연추마을 가운데 ‘스레드네에 안치헤’ 즉 중연추마을이 가장 먼저 폐쇄되었다. 즉, 중연추마을은 1929년 중국 만주 군벌 張學良의 동중철도 점령으로 빚어진 중소간의 무력충돌 당시 폐쇄된 연해주 남부의 하산스키 구역의 161개 한인마을과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1929년 張學良의 만주 군벌과 소련 적군 간의 동중철도를 둘러싼 무력충돌로 하산스키 구역의 한인마을 160여 개가 폐쇄되었다. 이런 사정으로 1937년 강제이주로 폐쇄된 440여 개 한인마을 가운데, 연추마을이 속했던 하산스

67) 『露嶺煙秋地方在住鮮人の狀況』, 1919. 9. 9.

키 구역에서 폐쇄된 큰 한인마을은 10개에 불과했다. 이들은 '베르흐네에 안치헤'를 비롯하여 지신희, 바라노브카, 이바노브카, 노보부르쉬예, 노바야 데레브냐[珠留河], 풍토이, 나고르노예, 박석골, 크라스노 셀로 등으로 대부분 중국과의 국경지방에 위치해 있는 마을들이었다.

이어 1937년 한인들이 강제이주되면서 상연추(베르흐네에 안치헤)는 폐쇄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후 어느 시기엔가 한인농민들이 떠난 상연추마을에는 러시아 농민들이 들어와 살았던 것으로 짐작되나 이 역시 1964년에 폐쇄되고 말았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이 함께 살았던 '니즈네에 안치헤,' 즉 하연추는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한인들이 떠난 후 순연한 러시아 마을로 남게 되는데, 1972년 극동지역의 중국식 지명을 러시아식 지명으로 바꾸면서 현재의 추카노보(Tsukanovo) 마을로 개칭되었다. 한편, '니즈네에 안치헤' 마을의 중심 구역은 러시아정교 교회와 러시아학교가 자리잡고 있었던 '니즈네에 안치헤' 마을의 남쪽 부분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마을 동쪽 끝에서 연추강(현재의 추카노브카강)에 합류하는 수하강(Rechka Sukhaia) 남쪽 강안에 위치해 있었는데, 1970년에 소멸되고 말았다.⁶⁸⁾

68) 1890년대 후반 비슈이 여행기에서 묘사한 연추마을의 교회와 학교가 위치했던 곳이다. 현재의 추카노보 마을(과거 '니즈네에 안치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의 수하야강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곳이 1937년 강제이주까지 연추마을의 중심지였으나 이후 폐허로 변했다. 필자는 2001년 7월, 2002년 7월 두 차례의 현지답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는데, 이들 교회와 학교의 건물터와 벽돌 등이 남아 있다. '니즈네에 안치헤' 마을 전체의 아래쪽에 위치하여 '아랫마을[下里]로 불렸던 이곳에서 1909년 2월 안중근 등 12명이 1909년 2월 단지동맹 '同義斷指會'를 결성한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문헌

- 「강동신헤」, 『한인신보』, 1917. 9. 30.
- 뒤바보, 1920. 3. 1, 「俄領實記」, 『獨立新聞』.
- 뒤바보, 1920. 3. 4, 「俄領實記」, 『獨立新聞』.
- 리인섭, 「되온대로 팔니운 조선로력대원」(手稿本).
- 리향우, 1909. 6. 9, 「何不往海蔘威 (웨히삼위로 아니가오)」, 『新韓民報』.
- 일본외무성사료관 소장,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 部在西比利亞』, 5~7권,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Bird, Isabella L.(Mrs. Bishop), 1986, *Korea and Her Neighbors*, Charles E. Tuttle Co.
- Przheval'skii, N. M., 1869, "Inorodcheskoe nacelenie v iuznou chasti Primorskoi oblasti," *Zhurnal Zacedaniia Sobeta*, 11 Marta.
- Unterberger, P. F., 1912, "Karta Primorskoi Oblasti : Iuzhno-Ussuriskago Kariia." *Priamurskii kraj, 1906-10 gg.*, St. Petersburg, V. F. Kirshbauma, Appendix.
- Trudy Priamurskago Otdela Imperatorskago Russkago Geograficheskago Obshchestva*, I, Khavarovsk, 1895.
- 반병률, 2003,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 地新墟」, 『한국근현대사연구』 26, 한국근현대사학회.
- 반병률, 2006, 「최재형(崔在亨)」, 최표트르 세묘노비치-러시아 고려인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자」, 국가보훈처.
- 반병률, 2008, 「'전면적 집단화' 시기 러시아연해주 수청(水淸) 지방 한인농촌사회의 제문제」, 『역사문화연구』 3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송기호, 1990, 『발해를 찾아서』, 숲.
- 올가 보리스브나 린샤, 2006. 6, 「19세기 후반 남부 우수리지방 한인주민들 사이에서의 학교교육의 발생 : 최초의 학교들」, 『역사문화연구』 24,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올가 보리스브나 린샤, 2007, 「한인들의 학교교육 보급을 위한 러시아정교의 활동-19세기 70년대와 90년대 초 남우수리스크 지방」, 『러시아의 대한(大韓)정책과 한·

- 리관계의 역사적 성격』, 동북아역사재단·한러협력연구소 주최, 2007 한·러공동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江北日記·江左輿地記·俄國輿地圖』(한국학자료총서 2).
- Daniľchenko, I. V., “Statisticheskiia Dannia za 1902 god’ o seleniakh Ussuriiskago kraia sobrannia chinovnikam osob. Pereselencheskago upravleniia I.V. Daniľchenko.”
- Institut Instorii Arkheologii i Etnografii Narodov Dal’nego Vostoka · Arkhivnyi Otde Inspolkoma Primorskogo Kraevogo · Akademiia Nauk SSSR Ordena Trudovogo Krasnogo Znameni Dal’nevostochnyi Nauchnyi Tsent, 1984, *Administrativno-territorial’noe delenie Primorskogo Kraia, 1856–1980(Spravochnik)*, Vladivostok.
- Pak, B. D., 1993, *Koreits v Rossiskoi Imperii*, Moskva · Mezhdynarodnyi Tsentr Koreevedeniia Moskovskogo Gosudarstvennogo Universiteta.
- Petrov, A. I., 2000, *Koreiskaia Diaspora na Dal’nem Vostoke Rossii 60–90-e gody XIX veka*, Vladivostok, Possiiskaia Akademiia Nauka.
- Siniakina, L. A., “Khronologiiia : Obrazovaniia naselyonnykh punktov na territorii Khasanskogo raiona,” *Kollektsiia dokumentov po Khasanskogo raiona*, Khasanskii RGA.
- Solov’ev, F. V., 1975, *Slovar’ Kitaiskikh Toponimov na Territorii Sovetskogo Dal’nego Vostoka*, Vladivostok.

[ABSTRACT]

The Formation and Early Appearances of a Korean Village
“Ian’chikhe” in the Russian Maritime Province

Ban, Byungyool

The village of Ian’chikhe (Yeonchu) was initially founded by Korean farmers who had illegally crossed over the Tuman River from the Hamgyeong Province into Russian territory in 1867. The name Ian’chikhe was borrowed from the Ian’chikhe River (煙秋河, 延秋河, currently Rechka Tsukanovka) which flows southward into the Expedition Bay. The name of Ian’chikhe River originates from the name of the district “Yeomju (鹽州)” which belonged to the Donggyeong Yongwon Province of the Balhae (渤海, Pohai in Chinese) kingdom.

Ian’chikhe was formed after the Tizinkhe village, the first Korean village in Russia. Over time, it grew into an administrative, educational and religious center of Korean society in the Russian Maritime Province, particularly after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Russia and Korea in 1884. Eventually, the Russian government decided to incorporate Korean villages into the Russian administrative system and established the Ian’chikhe township (*volost*, *myon*) office which oversaw the Korean villages near the Tuman River and the border area between Russia, Korea and China.

By 1914, about 400 households (2,000 people) were reported to have lived in Ian’chikhe. The number of its population outnumbered those of the three large villages in the Suifen area such as Putillovka

(1,200 people), Sinel'nikovo (1,200 people) and Korsakovka (1,000 people).

A Russian Orthodox church was established in the Lower Ian'chikhe village (Ha-Yeonchu) in 1872. According to a report prepared by the Russian Imperial Association of Geography in March, 1895, four Russian Orthodox churches were established among 32 Korean villages in the Russian Maritime Province : each in Korsakovka, Putillovka, Sinel'nikovo and Ian'chikhe.

In Ian'chikhe, Koreans lived together with Russians. An elementary school opened in 1873 and Korean and Russian students were taught together in Russian. In 1891, the building of the Ian'chikhinskoe Nikolaevskoe Elementary School was completed and opened in commemoration of the visit of the Russian Heir Apparent to the Throne, Nikolai, to the Russian Far East.

We should not exclude Choe Jaehyeong (Pyotr Semyonovich) from the history of the Ian'chikhe village. Choe contributed enormously to the social, education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Korean community which included the village of Ian'chikhe, particularly after he was appointed to head (都憲, *volosnaia starshina*) the Ian'chikhe township in 1893.

In the early 1900s, during the upcoming national crisis of Korea, Ian'chikhe became a center of anti-Japanese military activities (*euibyeong*, righteous Army) whose leaders included Choe Jaehyeong and Yi Beomyun. In the spring of 1908, Choe Jaehyeong, Yi Beomyun, Yi Wijong and An Junggeun organized the Donggeuhoe (Association of Righteous Comrades) in Ian'chkhe and participated in attacks against Japanese border guards who were stationed in the Korean Peninsula.

Around 1906 and 1907, there were at least two Ian'chikhe villages,

the Lower Ian'chikhe (Ha-Yeonchu) and Upper Ian'chkhe (Sang-Yeonchu) villages. As increasing number of farmers gradually began to settle in the area between the two villages, a new village called the Middle Ian'chikhe village (Jung-Yeonchu) came to be formed. These three villages were known respectively as "Sangbyeolli," Jungbyeolli' and "Habeyolli" by Koreans.

The Ian'chikhe villages were later reorganized into the collective farms after the end of 1920s and came to face different fates within that process. The Middle Ian'chikhe village was the first to be abolished. The Middle Ian'chikhe village disappeared altogether with 161 other Korean villages from the map of the Russian Maritime Province after the border conflicts between the Chinese Chang Tso-lin and the Soviet Red Army in 1929.

The Korean farmers in the Upper Ian'chikhe village were deported to Central Asia in 1937 and Russian farmers might have lived there up to 1964 before the village was abolished completely. The Lower Ian'chikhe village, however, eventually became a Russian village after the deportation of Koreans to Central Asia and the name was changed to Tsukanovo in 1972 when the Russian government gave new Russian names to all villages which had names of Chinese or other foreign origin.

keywords

Ian'chikhe village, Lower Ian'chikhe, Choe Jaehyeong (Pyotr Semyonovich), Nikolaevskoe Elementary School, Ian'chikhe Township Office

일본의 대륙정책에서 본 간도

- 러일전쟁 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를 중심으로 -

이성환 |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I. 머리말

근대 일본의 대외정책의 기본적인 특질은 섬나라를 탈피하여 대륙국가화하는 것이었다. 사상적으로는 막부 말기의 혼다 도시아키[本田利明]의 ‘북방 식민 지론’과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의 ‘중국[支那]정복론’ 그리고 이들의 사상을 계승한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아시아 침략론’ 등에서 출발하고 있다.¹⁾ 일본은 서구 열강의 위협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고 제국주의의 대열에서 뒤처 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대외 팽창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²⁾

일본의 대외 팽창의 대상은 이른바 대륙이었으며, 이것은 대륙국가 구상으로 구체화되었다.³⁾ 대륙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륙정책은 일차적으로는

투고일 2009년 7월 31일, 심사일 2009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4일.

- 1) 古川万太郎, 1991, 『近代日本の大陸政策』, 東京書籍株式会社, 13~60쪽 참조.
- 2) 北岡伸一, 1978, 『日本陸軍と大陸政策』, 東京大學出版會, 1쪽.
- 3) 庄司潤一郎, 2003, 『日本の對アジア政策の歴史的背景』, 『국제학논총』 제8집, 계명대학교, 327~328쪽.

한반도 지배이며, 이차적으로는 한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만주와 중국으로 세력을 확대해 가는 것을 의미했다.⁴⁾ 따라서 일본의 대륙정책의 핵심은 중국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만주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간도는 조선·중국·러시아의 3국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간도는 지리적으로는 만주의 일부로 여겨지면서 지형적으로는 조선과 매우 가까우며,⁵⁾ 주민의 대다수가 조선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수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중 간의 국경을 획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근거로 일찍이 조선 정부가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여 간도는 한중 간에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간도는 한반도와 만주 및 중국을 목표로 전개되는 일본의 대륙정책에 다양한 형태로 관련되었다. 간도가 일본의 대륙국가 구상의 일환으로 전개된 만주 정책(대륙정책)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간도에 대한 연구는 영유권 문제, 간도협약 체결과정,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족독립운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⁶⁾ 특히 이 글과 관

4) 일본의 대외 팽창론은 남진론과 북진론으로 나뉘나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남진론에서 북진론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남진론은 대만을 발판으로 중국 남부로, 북진론은 한반도를 기점으로 만주와 중국 본토로의 팽창을 의미했다. 남진론이든 북진론이든 한반도는 일본의 팽창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 小林道彦, 1996,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 南窓社, 17·39쪽.

5) 간도는 지형적으로는 조선에 가깝다. 예를 들면 몇 번에 걸쳐 간도를 답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나이토 코난(內藤湖南)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간도에서 한국 六鎭에 이르는 데에는 한 겹의 흑산산맥을 넘을 뿐이지만, 돈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老頭溝嶺을 넘어 다시 합이파령을 넘어야 한다. 영고탑에 이르는 데에도 高麗嶺에 연속된 太平嶺을 지나 다시 노야령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거리로도 간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龍井村, 즉 청나라의 명칭으로 六道溝에서 한국의 회령에 이르는 데에는 우리[일본]의 里로 12, 3리나 되고, 종성에 이르는 데는 더 가까우나, 敦化 또는 영고탑에 이르는 데에는 다 같이 35, 6리 내지는 40리 이상 된다고 한다”, “이상의 사실은 간도가 지형상 한국에 속하는 것이 청국에 속하는 사실보다 편리한 것이 至當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 실로 간도는 청국보다는 한국에 緣故가 깊다”(內藤湖南, 『韓國東北疆界攷略』, 內藤乾虎吉, 1972, 『內藤湖南全集』 第6卷, 筑摩書房, 564~567쪽).

6) 지금까지 이루어진 간도에 관련된 연구성과는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학회, 2003,

련해서는 종래의 연구는 간도협약 체결과정에서 일본이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청국에 양보하는 대신 만주에 대한 권익(이른바 만주 5안건)을 확보했다는 교환설을 중심으로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전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간도협약을 전후한 시기에 간도가 일본의 대륙정책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의 검토는 전무하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넓은 범위에서 일본의 대륙정책과 간도 문제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일본의 대륙국가 구상 - 주권선과 이익선

근대 일본의 대외정책의 원점은 한반도에 대한 끊임없는 세력 팽창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대륙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일보였다. 이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이론화된 것은 1890년 제1회 의회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밝힌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수상의 주권선과 이익선론이다. 야마가타는 주권선(자국 영토)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익선(주권선의 안위에 긴밀하게 관련되는 지역)의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한반도는 일본의 이익선이라고 밝혔다.⁷⁾ 그 이후 야마가타는 육군과 더불어 일본 대륙정책의 가장 핵심적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고성훈의 「조선후기 조·청 국경문제에 대한 연구사 검토」와 한철호의 「근대 한중 국경조약과 국경문제의 연구 현황과 과제」가 있으며, 중국 측 연구에 대해서는 김춘선의 「조선인의 동북 이주와 중조(한) 국경문제 연구동향-중국학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가 실려 있다. 그 외 간도 문제에 대한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김종건, 2007, 「백두산 간도문제 연구의 현황과 쟁점」, 『동북아역사논총』 제18호 ; 배성준, 2005, 「중국의 간도문제 연구동향」, 『중국의 민족·변강문제 연구동향』, 고구려연구재단 ; 김기훈, 1996, 「근대 중국 동북(만주)사 연구의 동향」, 『백산학보』 제47호 ; 김춘선, 2002, 「압록·두만강 국경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연구동향」, 『한국사학보』 제12호 등 참조.

인 역할을 하게 된다.⁸⁾

야마가타의 이익선론은 구체적으로는 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면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⁹⁾ 이는 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시베리아 철도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러시아의 위협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익선인 한반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개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본이 '조국방위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¹⁰⁾

이러한 야마가타의 이익선 개념은 일본이 종래에 해안방위를 중심으로 한 수세전략에서 일본의 고유영토 밖으로 국가전략을 확장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익선은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토와 세력권 확보를 위한 공세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청일전쟁 종결과 동시에 야마가타가 천황에게 上奏한 「군비확충 의견서」에서 청일전쟁에서 획득한 영토와 권익을 지키고 장래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익선의 開張(확장)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¹¹⁾ 그 후 일본은 주권선과 이익선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대륙으로 침략의 범위를 넓혀 가게 된다.¹²⁾ 이러한 관점에서 청일전쟁을 통해 일본이 할양받은 요동반도는 지리적·전략적으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지리적으로 요동반도는 북경을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만주로의 관

7) 大山梓 編, 1996, 『山縣有朋意見書』, 原書房, 196~201쪽.

8) 야마가타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伊藤之雄, 2009, 『山縣有朋』, 文藝春秋, 333~350쪽 참조.

9) 조선이 일본의 이익선으로 설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村中朋之, 2004, 「明治期日本における國防戰略轉換の背景－朝鮮を利益線とするにいたるまで」, 『日本大學大學院總合社會情報研究科紀要』 제5호; 村中朋之, 2006, 「山縣有朋의 「利益線」概念－その源泉と必然性」, 『軍事史學』 제42권 1호 참조.

10) 조명철, 2004, 「일본의 러일전쟁에 대한 인식」, 『아시아문화』 제21호 참조. '방위전쟁'론은 최근 일본의 자유주의 사관론자들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11) 大山梓 編, 1996, 앞의 책, 230~231쪽.

12) 이성환, 2005, 『전쟁국가 일본』, 살림출판사.

문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이다. 또 할양받은 요동반도가 주권선이 됨으로써 일본은 북경과 만주를 이익선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된다. 메이지 초기의 계몽주의자 도쿠도미 소호(徳富蘇峰)가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한 것은 “대일본 팽창사의 첫 페이지에 特書할 대사실”이며, 이로써 청국과 조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¹³⁾

이러한 팽창적인 이익선의 논리는 러일전쟁 후에 한반도를 ‘보호’하에 둬으로써 일본은 만주를 새로운 이익선으로 삼게 된다. 특히 러일전쟁 후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만주에 대한 권익을 승계받음으로써 만주는 일본의 대륙국가 구상을 실현하는 데 이익선의 의미를 넘어 생명선으로서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삼국간섭으로 요동반도를 환부함으로써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좌절되고, 러시아와의 대립이 격화된다. 요동반도의 환부로 일본은 대륙과의 접점을 상실했으며, 반면에 러시아는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일본의 이익선인 조선을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배경으로, 아관파천이 상징하듯이, 고종의 친러정책은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1900년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한 러시아의 만주 점령은 이러한 상황을 현실화시켜 러시아의 만주에 대한 지배력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한반도에 대한 세력 확대를 통해 만주(대륙)로의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위기적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러일 양국에게 한반도와 만주는 현실적으로 분리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러일전쟁의 원인도 여기에 있었다.

13) 후지무라 미치오 지음, 허남린 옮김, 1997, 『청일전쟁』, 소화, 167쪽.

Ⅲ. 만주와 조선-분리론과 일체론

그러면 이상과 같은 주권선과 이익선의 개념 속에서 한반도와 만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러일전쟁 직전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개된 만주와 한반도의 처리방안, 즉 滿韓交換論과 滿韓一體論의 논리에서 찾아보자.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은 대만을 발판으로 중국 남부로의 세력 확장을 꾀하는 이른바 北守南進策을 전개하고 있었다.¹⁴⁾ 중국 남부로의 세력 확대를 위해 복건성 아모이[廈門]에 출병을 기도한 사건은 북수남진론의 일환이었다. 메이지유신 이래 한반도를 통한 중국으로의 세력 팽창을 도모하고 있던 일본이 이 시기 북수남진으로 방향을 전환한 데에는 러시아의 존재가 있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수상이 1900년 8월의 「북청사변 선후책」에서 “이전에 遼東을 환부하고 威海衛를 버리고 이어서 러일협상을 한 것은 깊이 동아의 대세를 살피고 국력의 을 고려하여 北守南進의 국시를 정하게 되었다”¹⁵⁾고 밝히고 있듯이,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세력 확장을 위해서는 북수남진이 불가피했다.

그렇다고 이익선으로서의 한반도와 대륙정책을 일본이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북수남진은 기본적으로 북으로는 러시아와의 타협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남으로는 열강에 의한 중국 분할에 대비하여 복건성을 중심으로 중국 남부에 세력권을 형성하는 것이었다.¹⁶⁾ 나아가 중국 남부의 세력권 형성은 궁극적으로는 중국 대륙으로의 팽창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진론과 북진론의 최종 목표는 같은 것이었으며,¹⁷⁾ 한반도는 여전히 이익선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금후 우리[일본]의 국리민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북수남진책 이상은 없다”고 하면서 “어떠한 정황에 직면하더라도

14) 小林道彦, 1996, 앞의 책, 17쪽.

15) 大山梓, 1966, 앞의 책, 261~263쪽.

16) 小林道彦, 1996, 앞의 책, 39쪽.

17) 조명철, 2008, 「근대일본의 전쟁과 팽창의 논리」, 『사총』 67호, 330쪽.

도 한국의 방어를 상실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다”고 단언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¹⁸⁾

이와 같은 같은 복수남진론을 배경으로 한반도 문제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滿韓交換論으로 등장하게 된다. 러시아와의 대립을 피하면서 조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를 분리하여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세력을 배제해야만 했다. 1900년 7월 22일 당시 대표적인 제국주의 외교관으로 알려진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주러시아 공사의 보고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른 열강은 한국에 중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문제는 다른 열강과는 관계가 없고 러일 간에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 러시아의 만주 점령은 결국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또 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은 한국에서 일본 산업의 진출을 후퇴시킨다고 생각되는 바 추구해야 할 최선의 길은 세력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다. 즉 러일 양국은 각각 한국과 만주에 대해서 자유 수단을 보유하고 각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서로 통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¹⁹⁾

즉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조선에 대해 상호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이른바 ‘만한교환론’이다. 이러한 만한교환론은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비롯해서 이토 히로부미 등 러시아와의 대립을 피하고자 한 당시 일본의 지도자들이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만한교환론에는 당시 조선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고무라-웨버협정, 야마가타-로바노프협정(1896), 니시-로젠협정(1898) 등을 통해 삼국간섭 이후 상실되었던 조선에서의 세력을 만회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우선 위협정 등을 통해 확보한 한반도에서의 상업과 공업상의 우위를 유지해야 했다. 러시아와의 대립을 피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18) 大山梓, 1966, 앞의 책, 300~301쪽.

19) 外務省 編, 1956a, 『日本外交文書』第33卷, 巖南堂書店, 699쪽.

러시아 세력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만한교환론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지위를 일본이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손상시키는 일을 러시아는 동의할 수 없다”는²⁰⁾ 이유를 들어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고, 한반도를 중립화할 것을 제안했다. 만주 점령을 통해 한반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러시아는 한반도의 중립화를 통해 일본의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만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러시아의 중립화론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이익선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일본의 대륙진출 구상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다. 일본이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1902년 당시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영국과의 동맹을 성립시킴으로써 러일 간의 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영일동맹은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 영국의 海權을 배경으로 일본 육군의 대륙지향성을 크게 만들었다.²¹⁾ 영일동맹의 성립과 동시에 일본은 러시아와의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대러시아 군사전략을 구체화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²²⁾

4년간의 러시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나가 기이치[田中義一, 후에 육군 대장, 수상 역임]를 중심으로 작성된 전략은 해군이 제해권을 장악하고, 육군은 主作戰을 만주에서, 副作戰을 우수리 방면에서 전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남포와 나진을 상륙지점으로 상정하고 있다.²³⁾ 여기에서 처음으로 일본은 한반도를 넘어 만주를 직접적인 활동영역으로 상정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한반도 중립화안을 만주의 현상을 유지하고 한국에서 일

20) 金正明 編, 1967, 『日韓外交資料集成』 第8卷, 巖南堂書店, 406쪽.

21) 小林道彦, 1996, 앞의 책, 57~59쪽.

22) 谷壽夫, 2004, 『機密日露戰史(新裝版)』, 原書房, 16~17쪽.

23) 谷壽夫, 2004, 위의 책, 19쪽.

본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이를 거부했다.²⁴⁾ 나아가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청국주재 공사를 중심으로 한 대외강경론자들은 “만주 문제와 관련시키지 않으면 한국 문제의 해결은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만주를 中立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제의를 용인할 수 없다”고²⁵⁾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제안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어서 고무라는 1901년 외상으로 취임한 후 원로회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운명은 일본의 사할문제로 …… 만주에 러시아가 있으면 한국 역시 온전하지 못하다”며 러시아에 대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결의를 밝혔다.²⁶⁾ 만주와 한반도를 같은 맥락에서 취급하면서 그 관련성을 강조한 이른바 ‘만한일체론’이다.²⁷⁾

만한일체론은 주권선과 이익선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정세가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고, 만주의 상황이 일본의 이익선인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만주 문제는 곧 일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약된다. 이러한 연쇄구조 하에서 일본은 만주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게 되며, 만주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밀접한 관련하에서 취급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한 이후 일본의 북수남진론은 점차 북진론으로 변화해 가게 된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러시아는, 만주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 한국 문제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별개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만한분리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의 주장을 거부했다. 일본의 ‘만한일체론’과 러시아의 ‘만한

24) 구대열, 1999, 「대한제국기 국제관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대한제국사 연구』, 백산자료원, 39쪽.

25) 外務省 編, 1956b, 『日本外交文書』 第34卷, 巖南堂書店, 527쪽.

26) 古川萬太郎, 1991, 앞의 책, 290~291쪽.

27) 석화정, 1999, 「러시아의 한반도 중립화 정책」, 『중소연구』 제83호 참조. 이러한 일본의 주장이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완전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인지, 한국 문제를 발판으로 해서 만주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전환을 시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분리론'은 러일전쟁 발발 때까지 양국의 일관된 정책으로 유지되면서 타협을 불가능하게 했다.²⁸⁾ 이것이 러일전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IV. 간도-조선과 만주의 접점

러일전쟁의 승리를 통해 한반도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대륙국가 구상을 현실화하게 된다. 한국통감부(1906년 2월 설치), 관동도독부(1906년 8월 설치),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일반적으로 만철이라 함, 1906년 11월 설립), 봉천 총영사관(1906년 6월 설치) 등을 중심으로 대륙경영 체제를 확립했다.

그리고 1907년 4월에는 이른바 '제국국방방침'을 결정하여,²⁹⁾ 국가목표와 국가전략, 국방목적과 국방방침 등을 중심으로 일본이 지향해야 할 기본 정책과 방향을 제시했다. 국방방침의 초안이 된 다나카 기이치의 『隨感雜錄』에는 “중래의 섬나라의 환경을 벗어나 대륙적 국가를 이루어 국권신장을 꾀한다”고 되어 있으며,³⁰⁾ 그 연장선상에서 국방방침은 러일전쟁에서 얻은 “한반도와 만주의 권익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지상목표로 하는 대륙국가 실현을 분명히 하고 있다.³¹⁾

28) 이에 대해서는 千葉功, 2008, 『舊外交の形成－日本外交一九〇〇－一九一九』, 勁草書房, 69~118쪽에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29) 일반적으로 제국국방방침은, 「제국국방방침」, 「국방에 필요한 병력」, 「제국군의 용병요령(用兵要領)」을 총칭한 것으로, 제국 국방방침은 당시 일본의 국가적 목표와 방향을 집약한 것이다.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編, 1967, 『大本營陸軍部(1)』, 戰史叢書, 朝雲新聞社, 159~161쪽.

30) 「田中義一關係文書」(山口縣文書館 소장),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編, 1967, 위의 책, 132~133쪽; 角田順, 1967, 『滿洲問題と國防方針』, 原書房, 662~674쪽에도 부분적으로 실려 있음.

31) 北岡伸一, 1978, 앞의 책, 13쪽.

일본의 대륙국가 실현은 내용적으로 다음의 2단계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러일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일본으로서는 러시아의 복수전 이른바 ‘제2의 러일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제2단계로는 러일전쟁과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통해 확보한 조선과 만주에 대한 권익과 지배력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복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권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권익과 지배력 강화는 러시아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간도는 일본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간도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된다.³²⁾ 러일전쟁 직후 군, 외무성, 대륙론자들을 중심으로 간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탐험이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가운데 조선군과 통감부의 의뢰를 받은 나카이 긴조[中井金城]와 외무성 촉탁으로 간도를 조사한 나이토 고난[内藤湖南]의 보고서가 대표적이다.³³⁾ 대부분의 보고서는 간도 영유권과 관계없이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간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간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가?

32) 일본이 언제부터 어떤 의도로 간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간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문서를 모아 놓은 일본 외무성 기록 「간도의 판도에 관한 청한 양국 분의 일진[間島ノ版圖ニ關シ清韓兩國紛議一件]」은 明治 34년(1901) 11월 30일부터 시작되고 있다[일본 외무성 기록(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B-1-4-1-076 「間島ノ版圖ニ關シ清韓兩國紛議一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http://www.jacar.go.jp>) Ref.B03041192600]. 이때부터 일본이 간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간도가 한중 간의 영토분쟁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추측된다. 첫 문서는 하야시[林權助] 주한 일본 공사 가 고 무라[小村壽太郎] 외무대신과 우치다[内田康哉] 수상에게 보낸 電文이다. 전문은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만주를 점령하고 간도에 군정을 실시하고 있는 러시아가 간도에서의 한중 간의 알력에 대해 거중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양국의 경계와 간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당시 한국과 만주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시점에서 일본의 관심은 간도 그 자체보다는 러시아의 동향에 있었다.

33) 정애영, 2008, 「러일전쟁 직후 일본의 간도 조사와 지역구상」, 『일본역사연구』 제 28집 참조.

러일전쟁 직후 일본의 간도에 대한 관심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적 성격이 강했다. 러일전쟁은 러시아의 군사적 거점이었던 여순과 대련을 중심으로 남만주에서 전개되었으나 전쟁에서 패한 러시아가 만주에서의 군사적 거점을 상실했기 때문에 '제2의 러일전쟁'은 북만주가 주전장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한반도 북부와 만주의 접점에 위치하면서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간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제2의 러일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明治 39년(1906) 日本帝國軍隊作戰計劃」은 대러시아의 주작전지역을 북만주로, 從작전지역을 “함경도에서 길림성 동북부와 남부 연해주에 걸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작전 전개와 관련하여 간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³⁴⁾

일본의 작전을 유리하게 지도하는 유일한 설비는 길림에서 장춘까지 부설하려는 철도를 더 연장하여 敦化, [간도의] 局子街를 거쳐 琿春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 철도 부설은 만주에서 일본의 세력권을 증대시키고 확실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兵略上뿐만 아니라 政略上 얻는 이익도 적지 않다. …… 간도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여 간도에서 일본의 자유행동이 가능하면 烏蘇利 방면에서의 우리의 작전을 아주 유리하게 지도할 수 있다. …… 장래 이 철도를 더욱 연장하여 나진항 또는 웅기에 도달하게 하면 부유한 간도의 물자와 북부 만주와 함경도 물자는 경제상 아주 유리하게 運轉될 것이다. 이 연장 노선이 완성되어 東淸, 奉安 양철도와 연계되어 3대망으로 만주를 관통하게 됨으로써 전략상 지대한 이익을 얻으며, 러시아는 이들 교통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군으로 송화강 이남에 작전을 전개할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간도 문제의 해결은 원래 외교적인 문제이나 우리는 제국[일본]의 장래를 위해 유리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를 해결할 것을 희망해 마지않는다.

이 작전계획의 책정과 거의 병행하여 한국 주차군 참모부는 1906년 3월

34)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編, 1967, 앞의 책, 162~166쪽.

29일 육군성과 외무성에 제출한 「간도에 관한 조사 개요」³⁵⁾라는 보고서에서 “우리가 공격을 취해 咸北 方面에서 길림 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우선 간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쉽게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대러시아 작전을 위해 간도 확보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이 간도 지역을 중요시 여기는 데에는 러일전쟁에서의 경험도 반영되었다. 러일전쟁이 종결되는 마지막까지 러시아군은 나진, 중성, 경원, 웅기, 경흥 등 한국 북부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으며, 간도는 만주에서 러시아군의 철수가 가장 늦은 지역이었다. 또 러일전쟁 기간 중 일본군은 한국 동북부 지역의 작전을 전개하는 데 양식과 마초의 공급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³⁶⁾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은 러일 간의 전쟁에서 간도 지역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간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1906년 8월 다나카 기이치가 작성한 「(원안)제국 국방방침」과 야마가타가 수정한 「(수정)제국국방방침」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일본에게 있어서 대러시아 작전상 “조선의 방어는 절대적”이며³⁷⁾ 간도를 포함한 조선 북부지역에서부터 烏蘇利에 이르는 지역에서 전개되는 “從作戰이 본作戰으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기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³⁸⁾ 나아가 “일본군의 최종 전투목표인 블라디보스토크 요새를 공략”하기 위한 연해주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간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대러시아 작전의 기본방침은 1907년 4월 천왕의 재가를 얻어 확정된 「제국국방방침」에 “한국을 근거로 하여 주작전을 북만주로 하고, 종작전을 한국 함경도 方面에서 길림성 동북부와 남부 연해주에 걸친 지방으로 유도하여 작전의 진행에 따라 종작전을 본작전으로 한다”는³⁹⁾ 내용으로 전면 수용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이 대러시아 작전을 전개하는 데 간도는 절

35) 韓國駐屯軍參謀部 1906, 「間島ニ關スル調査概要(明治 39年 3月)」, 『陸軍省密大日記』(明治 39年 5月),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所藏.

36) 千葉功, 2008, 앞의 책, 190쪽.

37) 角田順, 1967, 앞의 책, 690쪽.

38) 角田順, 1967, 앞의 책, 680쪽.

39)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 編, 1967, 앞의 책, 159~161쪽.

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게 러시아의 위협을 방어하는 것이 한반도를 포함한 대륙국가 실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간도는 일본의 대륙정책을 전개하는 데 가장 핵심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⁴⁰⁾ 다시 말하면 한반도와 만주를 상정하고 전개되는 일본의 대륙국가 구상에서 만주와 한반도의 접점에 있는 간도의 확보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7년 7월에 체결된 제1차 러일협약은 러일 간의 대립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이 협약을 통해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재확인받았으며, 북만주와 외몽고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넘겨주는 대신에 간도를 포함한 남만주를 세력권으로 확보했다. 러일협약으로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대륙국가 구상의 제2단계-로서 일본은 한국과 만주에 대한 권익과 지배력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게 된다. 러일협약과 거의 동시에 정미7조약(제3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을 장악하고 또 만철(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선로를 국제표준궤로 고치는 등 본격적으로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가는 것도 이 무렵이다.

제1차 러일협약 체결 약 1개월 후 일본은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간도를 장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러일협약의 체결로 지금까지 대러시아전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시되었던 간도의 군사적 가치는 러일협약의 체결로 그 의미가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즉 간도 파출소 설치를 계기로 중일 간의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간도 문제는 일본의 종래의 구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한국 및 만주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면서 전개된다. 여기에서 간도는 한국 문제와 만주 문제의 접점에 위치하게 된다.

40) 전상숙, 2006, 「러일전쟁 전후 일본의 대륙정책과 테라우치(寺内正毅)」, 『사회와 역사』 제71집, 135쪽.

V. 일본의 만주 권익과 간도 영유권

1. 일본의 간도 진출과 만주 문제

일본의 간도 파출소 설치의 주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 중이다. 일본이 파출소를 설치한 목적이 간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당시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을 ‘보호’하고 간도에서의 반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일본이 만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목적 때문이었느냐 등을 두고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동기와 목적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간도 파출소 설치에는 위의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1차 러일협약의 결과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대륙국가 구상의 제1단계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즉 대륙국가 구상의 제2단계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관점이 아닌 측면에서 간도의 가치를 논해야 한다. 일본의 간도 파출소 설치의 조선과 만주의 권익 확보와 강화라는 측면이 중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간도 파출소 설치를 조선 문제와 만주 문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07년 2월 8일의 각의 결정에서 “제국정부(일본-필자)는 우선은 해당지역의 소속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피하고 종래 한국 정부가 실행한 예를 따라 단순히 재류 韓民 보호를 위해 상당수의 관헌을 출장 보내, 가능하면 두드러지지 않는 방법으로 점차 우리의 지반[地歩]을 확립한다”는 이유를 들어 간도 파출소 설치방침을 확정했다.⁴¹⁾ 여기에서 간도 파출소 개설의 1차적 목적은 한인 보호이다. 당시 간도 파출소 설치에 적극적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한국통감이 1906년 11월 16일의 ‘한국시정에 관한 협의회’에서 “한국 측에 충분한 確證이

41) 外務省 編, 1961a, 『日本外交文書』 第40卷 第2冊, 巖南堂書店, 84쪽.

없기 때문에 지금 境界論을 주장하는 것은 유리하지 않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토는 1907년 7월 2일의 제20회 시정개선협의회에서 “간도는 장래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명의는 韓人 보호로 하여 관리를 파견하나, 실체는 간도의 지형, 物産을 조사하게 하는”데 있으며, “장래에 청진으로부터 회령, 국자가를 거쳐 길림, 장춘으로 철도를 부설하려는 계획”을 밝혔다.⁴²⁾ 이토는 간도 영유권보다는 1930년대에 본격화한 일본의 동해 연안부→청진·회령→간도→만주를 연결하는 이른바 北鮮 루트의 확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⁴³⁾

이상을 종합하면 일본의 파출소 설치하는 간도 한인의 ‘보호’, 간도를 관통하여 한국과 (북)만주, 나아가서는 일본을 연결하는 철도(吉會線, 길림-회령 간 철도) 부설권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⁴⁴⁾ 이는 일본이 간도를 발판으로 하여 만주로의 이권 확대를 꾀하는 대륙정책 구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일 간의 간도 문제 교섭은 일본의 만주 권익확보를 염두에 두면서 진행되게 된다.

간도 파출소 설치 후 일본은 한인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간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여 중일 간에는 외교적 공방이 본격화되었다. 일본으로서는 간도 조선인의 ‘보호’와 만주로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도 간도를 한국의 영토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 것이다. 또 간도 영유권 교섭이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한 이후 한국을 대신해 최초로 전개되는 외교교섭

42) 金正明 編, 1965, 『日韓外交資料集成』 第6卷(中), 巖南堂書店, 568쪽.

43) 이른바 北鮮 루트론에 대해서는 鈴木武雄, 1938, 「北鮮ルート論」,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 第10冊 『朝鮮經濟の研究』 第3, 岩波書店; 鈴木武雄, 1937, 「所謂北鮮ルートに就て」, 京城商工會議所, 『經濟月報』; 芳井研一, 2000, 『環日本海地域社會の變容: 「滿蒙」·「間島」と「裏日本」』, 青木書店, 260~305쪽 참조.

44) 일본이 간도의 영유권에 대해 완전히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당시 일본의 만주 진출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열강들을 의식해서 간도 한인 보호를 표면적 이유로 했을 것이다. 특히 이토의 경우는 열강과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라는 점에서 간도 문제는 한국 ('보호')통치에 대한 일본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일본의 대륙국가 구상은 한국의 지배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도 문제를 한국에게 유리하게 해결하여 보호통치에 대한 신뢰를 높여 한국 지배를 좀 더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절실했다. 이 점에서 한국 지배와 간도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간도 진출의 주된 목적이 만주에 대한 권익확보와 조선인 '보호'에 있었음에도 일본이 간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일본의 만주에 대한 구체적인 권익은 1905년 9월의 포츠머스조약 제5조와 제6조에서 '청국 정부의 승낙'을 조건으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만주에서의 권익을 승계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1905년 12월 22일 체결된 「만주에 관한 일청조약」 제1조에서 청국은 포츠머스조약 제5조와 제6조를 통해 러시아가 일본에게 양도한 모든 권익을 승낙했다. 그러나 이 조약에 규정된 일본의 권익은 요동반도의 關東州⁴⁵⁾와 장춘에서 대련까지의 남만주철도 및 그 부속지에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 조약의 부속협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만주에 대한 권익을 확장,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중국은 1907년 6월 만주의 행정체제를 정비하고 서세창을 동삼성 총독에, 唐紹儀를 奉天巡撫에 임명하여 본격적인 만주 개발에 착수했다. 동시에 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며 일본의 만철에 대항하려 했으며, 이에 호응하듯 러일전쟁 이후 미국도 만주의 권익을 독점하려는 일본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앞세워 만주철도의 중립화, 만주은행의 설립 구상 등을 밝히면서 일본의 권익을 위협했다. 1907년 8월 미국과 중국 동북지방 정부가 新法철도 부설에 대한 각서를 교환한 것은 그 한 예이다. 이처럼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만주의 권익을 승계받기는 했으나, 그것은 매우 한정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45) 요동반도의 여순·대련 지역의 일본 조차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관동주의 수비와 남만주철도 부속지에 대한 경비를 목적으로 관동도독부 소속으로 경비대가 주둔하였으나, 이것이 1919년 관동군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였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당시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 청국의 신법철도 계획을 좌절시킴과 동시에 만주 권익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1908년 9월 25일의 「만주에 관한 제 문제 해결방침 결정의 건」이라는 각의 결정을 통해 지지부진한 간도 문제와 만주에서의 권익확장을 위한 기본방침을 정했다.⁴⁶⁾ 각의 결정은 “간도 문제, 法庫門철도, 大石橋營口철도의 철거, 新奉철도의 연장, 撫順과 煙台탄광 및 安奉線, 그 외 철도연선 광산의 6개 안건을 일괄”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각각 별도로 취급했던 만주에 대한 권익과 간도 문제를 연계하여 일괄 처리하려는 방침은 중요한 변화이다. 간도 영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권익도 중국의 저항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이는 어느 한쪽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현상을 타파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각의 결정에서는 간도에 대해 “조선의 주장은 그 근거가 대단히 박약하며 ……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유권 포기를 확인했다. 지금까지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간도 영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안건을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고무라 외상은 간도에 대한 “청국 영토권의 승인은 다른 만주 현안의 만족할 만한 해결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라는 방침을 일본의 교섭대표에게 전달했다.⁴⁷⁾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간도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정미7조약 등을 통해 거의 식민지와 같은 지배체제를 구축한 상태에서 간도 영유권 문제가 한국의 지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 이미 한국을 확보한 상황에서 일본의 관심이 한국에서 만주로 이동해 감에 따라 간도 영유권보다는 만주 진출을 위한 권익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일본이 간도를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웠다. 간도에는 이미 약

46) 外務省 編, 1965,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卷, 原書房, 305~312쪽.

47) 外務省 編, 1966, 『小村外交史』, 原書房, 787쪽.

10만 명에 가까운 조선인이 거주하고 조선의 연장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선 루트와 같은 간도에 대한 경제적·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일본은 간도 협약을 통해 간도에 대한 영유권은 포기했지만, 간도 조선인에 대한 통제, 북선 루트를 위한 길회철도 부설권 등을 확보함으로써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배경으로 간도 문제는 이른바 만주 5안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개된다. 그 후의 청일 간의 교섭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논하지 않으나, 일본의 만주 권익확보 과정에서 간도가 어떻게 취급되었는가를 살펴 보자.

간도 파출소 설치 후 간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외교교섭은 중국의 강력한 저항으로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중국의 저항에는 당시 중국에 우호적인 국제정세의 형성이 그 배경에 있었다. 영국·프랑스·일본의 3국협상 체제에 대항하고 중국의 영토보전과 문호개방을 목표로 하는 독일·미국·청국의 동맹이 현재화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는 의화단사건 배상금에 대한 감액조치를 취하는 등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봉천주재 미국 총영사 스트레이트(Willard Straight)와 원세개 계열의 奉天巡撫 唐紹儀가 중심이 되어 미국 자본을 만주에 도입하려는 계획이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이민문제와 만주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 등으로 미국에는 일본에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1908년 10월 당소익의 미국 방문길에 동경에 들러 고무라[小村] 외상과 회담을 가졌다.⁴⁸⁾ 회답에서 중국은 만주 6안건 가운데 간도 영유권 문제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간도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주의 다른 안건에 대한 교섭이 진척되기 어렵다고 했다.⁴⁹⁾

48) 당소익의 방미에 대해서는 馬場明, 1966, 「日露戰後における第一次西園寺内閣の對滿政策と清國」, 栗原健 編, 『明治百年史叢書 對滿蒙政策史の一面』, 原書房, 74~80쪽.

49) 外務省 編, 1966, 앞의 책, 781쪽.

만약 위와 같은 우호적인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일본으로서는 자칫하면 간도 영유권뿐만 아니라 만주 권익도 확보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간도 영유권을 포기하면 다른 안건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당소위의 발언에서 보듯이 만주 권익 확보와 간도 영유권 포기는 직결되어 있었다. 이미 내부적으로 간도 영유권 포기를 결정한 일본으로서는 간도 영유권을 협상의 재료로 하여 만주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만 남은 셈이다. 즉 일본에게 간도는 점령의 대상에서 협상의 대상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이다.

당소위의 발언에 대해 고무라는 “제국(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간도]조선인 보호의 목적을 관철할” 것이라며 간도 영유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양국 정부가 무게를 두는 곳이 서로 다른 이상 본 건 타협은 반드시 어려운 것은 아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⁵⁰⁾ 중국과 일본은 서로가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을 중심으로 교환적 타협의 자세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08년 12월 28일부터 만주 6안건에 대한 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중국은 이듬해 1월 11일의 제2차 회담에서 “간도의 소속에 대해 일본이 양보를 하면 다른 안건의 해결은 곤란하지 않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전했다.⁵¹⁾ 일본 측 대표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주청국 공사는 “간도 문제를 다른 안건을 유리하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을 고무라 외상에게 건의했다.⁵²⁾

일본은 2월 6일 5안건과 함께 간도 문제에 대해 영유권 포기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① 조선인과 일본인의 간도 잡거, ② 영사관 설치와 일본 관리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보호, ③ 조선인과 일본인의 기득권 인정, ④ 간도지방의 무역의 자유, ⑤ 길장선의 회령 연장(길회선 부설) 등의 5개 항목을 제시했다.⁵³⁾ 요약하면,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간도 조선인에 대한 지배권

50) 外務省 編, 1966, 앞의 책, 781쪽.

51) 外務省 編, 1961b, 『日本外交文書』 第42卷第1冊, 巖南堂書店, 222~225쪽.

52) 林正和, 1960, 「間島問題に關する日清交渉の經過」, 『駿台史學』 第10號, 178쪽.

53) 外務省 編, 1961b, 앞의 책, 237~238쪽.

(치외법권)을 확보하고, 간도와 한국 사이의 국경 장벽을 낮추어 간도를 한국의 연장지로서의 의미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17일 6차 회의에서는 “청국이 간도 문제에 관한 5개 조건에 동의하고, 동시에 다른 안전에 관한 일본의 제의를 승인하면 간도 소속론은 우리가 양보한다”는 방침을 중국에 정식으로 전달했다.⁵⁴⁾

중국은 “雜居 조선인에 대한 청국의 법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간도의 영유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이유로,⁵⁵⁾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영사재판권을 거부했으나, 그 외 조건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간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인에 대한 법권 문제는 사실상 간도 지배의 향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허용하기 어려웠다. 간도에 대한 영토권 포기론을 진전을 보일 것 같던 양국의 교섭은 조선인의 법적 지배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3월 22일, 간도 문제를 비롯해 모든 문제를 이그 중재재판에 회부할 것을 일본 정부에 통고했다.⁵⁶⁾

2_ 일본의 외교적 위기와 간도, 한국·만주 문제

중국 정부의 이러한 통고는 사실상 교섭 중단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간도 문제와 만주 현안에 대한 제3국의 개입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의 제안은 만주 진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던 열강의 만주 문제 개입을 이용하여 일본과의 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에게, 미국과 독일 등 열강의 개입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을 의미했다. 열강과의 대립을 피하면서 극도로 조심스럽게 대외정책을 전개해 온 일본에게, 열강의 개입 가능성은 청일전쟁 후의 삼국간섭을 연상시키는 외교적 위기였다.⁵⁷⁾

54) 外務省 編, 1961b, 앞의 책, 242쪽.

55) 外務省 編, 1961b, 앞의 책, 242쪽.

56) 外務省 編, 1961b, 앞의 책, 244~246, 248~249, 262~263쪽.

57) 森山茂徳, 1987, 『近代日韓關係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241~242쪽.

당시 일본이 직면한 국제정세 및 그와 관련한 대중국 정책에 대해 야마가타는 1909년 4월의 「第二對清政策」이라는 의견서에서⁵⁸⁾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정세를 “오늘날 열강이 하나같이 적이 되려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만주 경영이 진행되지 않고, 우리의 이권이 확립되지 않고, 우리가 입각하고 있는 지반이 확고하지 않은 채 덧없이 세월이 경과하면 중국에서는 關東반도는 물론 남만주철도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 이러한 형세가 조성되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증대하다. …… 지금 조선을 보호국으로 해놓았을 뿐으로 아직 순전한 附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간도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짐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열강의 개입은 만주의 권익뿐만 아니라 한반도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⁹⁾ 다소 과장은 있을지 모르나, 야마가타의 위기의식은 간도 문제가 근대국가 일본이 추구해 온 대륙국가 구상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거꾸로 간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조선을 확보하고 만주에 대한 권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어서 야마가타는 가쓰라 수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적은 것을 버리고 대청국 정책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여 장래의 큰 목적(대륙국가 구상)을 달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오늘의 급선무이다”라며, 문제 해결을 재촉했다.⁶⁰⁾ 그러면서 야마가타는 만주 경영에서 첫째는 안봉철도의 개축, 둘째는 길회철도의 부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길회철도에 대해서는 “경제적으

58) 大山樺, 1966, 앞의 책, 312~314쪽.

59) 친일 언론인으로 알려진 런던 『타임스』의 외교부 주임 치롤(Chirol Valentine)은 1908년 6월 24일 북경에서 이주인 주청 일본 공사와의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가급적 빨리 현안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오래 끌어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제3국이 개입하게 되어 미국 또는 독일이 간섭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으로서 한층 불리하게 된다”고 충고했다(外務省編, 1961b, 앞의 책, 284쪽).

60) 森山茂德, 1987, 앞의 책, 243쪽.

로나 군사적으로도 …… 이 철도 부설은 간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확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라고 단언했다.⁶¹⁾ 야마가타의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지적한 이토 히로부미의 북선루트 구상과 같은 맥락이다.

그 결과 1909년 8월 6일 일본은 일방적으로 중국에게 안봉철도 개축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러일전쟁 중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한 안동(지금의 단동)-봉천(지금의 심양)을 잇는 안봉선을 일본은 매우 중시하고 있었다. 야마가타 아리도모는 안봉선 개축을 “조선을 방어하고 개발함과 동시에 만주에 대한 세력확장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 戰略幹線”으로 여기고 있었다.⁶²⁾ 협궤였던 안봉선을 국제표준궤(4피트 8인치)로 개축하여 경부선 및 경의선과 연결함으로써 일본→부산→만주를 직접 연결하는 대동맥을 완성하려는 것이었다.

안봉선 공사 강행을 통보한 직후 8월 13일의 「간도문제에 관한 각의 결정」에서는 “잡거지 조선인에 관해서는 군이 재판권의 보유를 주장하지 않고” 간도 조선인에 대한 재판 立會權을 보장받는 것으로 타협 방침을 정했다.⁶³⁾ 한편으로는 안봉선 개축을 통해 만주의 권익 실현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간도 문제에서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교환적 형태로 현안 해결을 도모했다. 그 후 중국과 일본의 교섭은 급진전을 보여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과 만주 5안건에 관한 협약이 동시에 체결되었다. 이로써 러일전쟁 이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 있던 현안이 모두 해결되었다.

이상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만주 5안건과 간도의 교환과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간도 영유권을 둘러싼 교섭이 중국의 저항으로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간도를 희생시키고 5안건과 교환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륙국가 구상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

61) 大山梓, 1966, 앞의 책, 309~310쪽.

62) 大山梓, 1966, 앞의 책, 330쪽.

63) 外務省編, 1965, 앞의 책, 318~319쪽.

본에게는 간도 영유권 확보가 최상의 정책목표였겠으나, 처음부터 일본은 간도의 영유권보다는 만주의 권익확장에 더 큰 무게를 두었으며, 간도 영유권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교섭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거꾸로 지금까지의 교섭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만약에 청일 간에 간도 문제가 없었다면 일본의 만주 권익확보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간도 영유권 포기를 통해 만주 5안건을 확보함으로써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추구해 온 만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열강의 개입 가능성도 해소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909년 초 본격적인 교섭 시작과 함께 간도 문제와 한일합방이 시간적으로 거의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09년 3월 23일 중국이 간도 문제를 중재재판에 회부하려는 결정을 통보함으로써 일본은 간도뿐만 아니라 한국 지배에 대한 열강의 개입 가능성에 외교적 위기를 느끼게 되자, 3월 30일 고무라 외상은 한국 병합방침안을 가쓰라 [桂太郎] 수상에게 제출한다.⁶⁴⁾ 외교적 위기 속에서 우선적으로 한국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고무라 외상과 가쓰라 수상은 한국 병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합방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⁶⁵⁾ 이를 바탕으로 야마가타와 가쓰라를 중심으로 이토 통감 경질 공작을 진행하고⁶⁶⁾ 6월 14일 이토가 사직하고 소네 아라스케 [曾禰荒助] 부통감이 통감으로 승격했다. 가쓰라 등 합방추진론자들에게 합방에 대한 국내적 장애가 모두 제거된 셈이다.

이어서 7월 6일에는 「한국병합방침」을 각의 결정하고, 8월 13일에는 간도 조선인에 대한 재판권을 정식으로 포기하여, 간도와 만주 문제 타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즉 한일합방, 간도 문제, 만주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시

64) 外務省編, 1966, 앞의 책, 835쪽.

65) 春畝公追頌會, 1940, 『伊藤博文傳』下卷(복각판은 原書房, 1970), 836~838쪽; 外務省編, 1966, 앞의 책, 837쪽.

66) 韓相一著, 李建·瀧澤誠譯, 1984, 『日韓關係史의空間』, 經濟評論社, 181~183쪽.

도였다. 대륙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 병합, 간도 문제, 만주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것이며, 특히 만주 진출도 한국을 발판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병합은 최우선 과제였다. 그런데 만약 간도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본이 간도를 점령한 상태에서 합방을 단행하면, 중국과 열강의 비난을 받게 되어 합방은 매우 불안정한 것이 된다. 따라서 한국 병합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간도 영유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⁶⁷⁾ 일본이 간도 문제와 한일합방을 동시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9월 4일의 간도협약 체결과 동시에 일본은 의병에 대한 남한 대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병합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제거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일본이 한국 병합과 만주 권익확보를 동시에 추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간도 협약 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진 남한 대토벌작전은 영토상실에 대한 한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덧붙여 같은 맥락에서 간도협약에 대한 내용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도협약에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면서 간도 조선인의 거주권, 토지와 가옥 소유권, 국경의 자유왕래, 미곡반출의 자유, (제한적이지만) 영사재판권 등이 보장됨으로써 두만강은 국경으로서의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간도협약을 통해 간도는 보더레스 지역(borderless land)이 된 것이다.⁶⁸⁾ 또 협약에 기철도 부설이 규정됨으로써 한국과 간도의 연결성은 더욱 강화되고, 일본으로서도 북선 루트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간도의 보더레스화는 간도 조선인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일본에게는 간도와 한국을 일체화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다. 한국 병합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이를 발판으로 만주로의 세력확장을 의도하고 있는 일본에게 간도는 만주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간도협약에 따른 간도의 보더레스화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간도의 보더레스

67)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성환, 2000, 「간도협약과 한일합방」, 『대한정치학회보』 제8집 1호, 259~263쪽.

68) 鶴嶋雪嶺, 2004, 「朝鮮民族の分斷と滿州」, 『滿州とは何だったのか』, 藤原書店, 435~436쪽.

화는 간도협약 이후에도 조선인들의 간도 이주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간도를 발판으로 한 조선인의 이주는 만주 전체로 확산된다. 간도협약 체결 1년 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투영되면서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더욱 증가했다. 이에 일본은 조선인을 일본의 '신민'으로 간주하여 조선인 '보호'를 명목으로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가게 된다.

Ⅵ. 대중국 21개조 요구와 간도 및 만주 조선인

1. 대중국 21개조 요구와 간도

다음으로 간도협약 이후 간도는 일본의 대륙정책 속에서 어떻게 취급되었는가를 살펴보자.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대륙정책은 한국 병합과 만주에 대한 배타적 권익의 확보로 수렴되었다. 이러한 목표는 한일합방과 만주 5안건의 타결, 미국 자본의 만주 유입의 저지로 거의 실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⁶⁹⁾ 여기에서 일본의 대륙정책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해혁명으로 인한 중국의 혼란은 일본으로 하여금 대륙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만주에서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 본토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그것이다. 신해혁명 발발 2주 후에 이루어진 각의 결정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⁷⁰⁾ 각의 결정은 “만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제국[일본] 정부가 항상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며”, “호기가 오면 점차 우리[일본]의 이권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고 우리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승산이 있을 때 만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 대해서는 열강과 중

69) 北岡伸一, 1978, 앞의 책, 89쪽.

70) 外務省 編, 1965, 앞의 책, 356~357쪽.

국 정부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본이 중점을 둔 것은 신해혁명으로 혼란해진 중국 본토보다는 만주에서의 지위와 권익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만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란 만주의 병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권익확대는 만주를 병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가는 것이었다. 구체적 조치로는 관동주(여순·대련) 및 만철의 조차와 같은 기존 권익의 연장과 일본인 거주권 등 새로운 권익의 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 만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만주와 접하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러시아와의 제휴가 필요했다. 1912년 1월의 각의에서는 러일 간에 만주의 세력 분할선을 내몽고까지 연장하는 교섭을 개시할 것을 결정했다.⁷¹⁾ 1912년 7월 8일에 체결된 제3차 러일협약에서 일본은 동부 내몽고를, 러시아는 서부 내몽고를 각각의 이익 분할선으로 할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일본은 남만주와 동부 내몽고까지 세력권을 확대했다.

거의 같은 시기 대륙정책의 중추세력이었던 육군의 참모본부는 전 중국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을 여러 개로 분리되도록 하여 만주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²⁾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전후하여 육군과 민간의 대륙론자를 중심으로 만주를 중국 본토에서 분리하여 일본의 지배하에 두려는 목적으로 전개된 제1차(1912), 제2차(1916) 만몽독립 운동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대륙정책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한 대중국 21개조 요구라는 형태로 실현된다. 열강이 유럽 전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일본은 중국에 대해 광범위한 권익을 요구했다. 21개조 요구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으나,⁷³⁾ 만주 문제와 직접관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21개조 요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관한 조약'(이후

71) 外務省 編, 1965, 앞의 책, 359~360쪽

72) 上原勇作關係文書研究會 編, 1976, 『上原勇作關係文書』, 東京大學出版會, 55~57쪽.

73) 이에 대해서는 川島眞·服部龍二 編, 2007, 『東アジア國際關係史』, 名古屋大學出版部, 91~103쪽.

‘남만동몽조약(으로 함)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남만동몽조약의 주요 내용은 여순·대련의 조차 및 만철과 안봉선의 사용 기간을 각각 99년간 연장하고, 남만주에서의 일본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기존의 권익을 연장하는 것이며, 후자는 일본이 새로운 권익으로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후자는 일본이 기존의 권익에 더하여 만주를 실질적으로 식민지화해 가는 조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조약에 따르면 일본인은 남만주와 동부 내몽고에서 각종 상공업상의 건물을 건설하거나 또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商租(land lease)⁷⁴⁾ 할 수 있다. 거주 왕래의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각종 상공업에도 종사할 수 있다. 게다가 토지에 관한 소송 이외에는 영사재판권(치외법권)을 가지며 경찰 법규와 과세에 대해서도 일본이 승인한 것에 한해서 복종의 의무가 있다. 요약하면 이 조약은 남만주에서 일본인의 자유행동권을 보장한 것으로, 종래 만철 연변과 개방지에만 한정되어 있던 일본인의 권리를 남만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남만주를 殖民 공간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植民地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만동몽조약이 조인되는 날 나가 무라[中村覺] 關東都督이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외상에게 “이 좋은 기회에 정부는 식민정책의 大計를 세워 이 권리를 실제로 활용하여 제국[일본] 신민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은 이를 말해 주고 있다.⁷⁵⁾ 일본인의 이주를 통해 만주를 식민지화하여 대륙국가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본이 만주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려는 데에는 국내에서 일기 시작한 인구과

74) 상조권에 대해서는 남만동몽조약 체결시 양국 정부 간에 교환된 공문에는 중국어와 일본어의 표기가 다소 애매하게 되어 있다. 중국어 표기에는, 상조는 “30년 이내의 기한부로 무조건 갱신 가능성이 있는 조차[不過三十年之長期限及無條件而得續租]”로 되어 있으며, 일본어에는 “30년간의 장기로 무조건 갱신 가능한 조차”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선택에 따라 ‘무조건’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두고 논쟁이 일어났다.

75) 白井勝美, 1966, 『南滿東蒙條約の成立前後』, 栗原健 編, 『明治百年史叢書 對滿蒙政策史の一面』, 原書房, 125쪽.

잉 문제를 빈곤자들의 만주 이주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었다.⁷⁶⁾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사재판권(치외법권)을 제외한(간도협약에서도 일본은 간도 조선인에 대해 재심요구권 및 재판입회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거주권, 토지소유권, 자유왕래권 등 일본인의 권리가 간도협약상의 간도 조선인(합방 후에는 형식적으로는 일본인 취급)의 지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만동몽조약의 성립에서 일본이 간도협약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남만동몽조약은 결과적으로 간도 조선인(및 일본인)의 권리가 남만주 전체로 확대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만동몽조약을 통해 일본은 간도 조선인의 지위를 남만주 전체의 일본인과 조선인에게 확대적용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간도협약에 의해 형성된 간도의 특수한 조건이 만주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만주의 간도화' 정책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국 21개조 요구의 형성 과정에서 육군을 중심으로 간도 조차론이 부상하고 있었다는 점은 특기할 필요가 있다. 1914년 11월 오카 이치노스케(岡市之助) 육군대신은 내각에 제출한 「중일교섭사항각서」에서 8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나열했다.⁷⁷⁾ 요구사항에는 “① 관동주의 조차기간을 연장할 것, ② 간도를 조차할 것, ③ 만철과 안봉철도를 영구히 일본이 소유할 것”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최종적으로 중국에 대한 21조 요구사항에는 간도 조차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만주 정책과 관련한 육군의 간도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간도 조차론과 관련하여 육군참모본부는 1911년 5월 신해혁명이 발발할 경우 혼란으로부터 만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 주차군을 간도에 출동시켜 북만주의 중국군을 제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⁷⁸⁾ 같은 맥락에서 육군참모부는 1915년 2월, 중국에 대해 21개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출병

76) 吉田忠雄, 『滿州移民の軌跡』, 人間の科學社, 123~129쪽.

77) 長岡新次郎, 1960, 『對華二十一ヶ條要求條項の決定とその背景』, 『日本歴史』 第144號, 80쪽; 北岡伸一, 1978, 앞의 책, 170쪽.

78) 參謀本部, 『對清作戰計劃』(1911년 5월, 『宮崎周一史料』 46, 일본방위청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松田利彦, 2003, 『일본육군의 중국 대륙침략정책과 조선-1910~1915년』, 『한국문화』 제31호, 239쪽에서 재인용.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출병계획에는 북경 공략과 더불어 조선 주차군을 이용하여 通化 방면과 간도에 소부대를 파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⁷⁹⁾ 간도를 이용하여 만주에 세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이러한 기도는 만주사변을 전후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관동군과 연계된 일부 우익세력이 1931년 5, 6월경에 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도에서 폭동음모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또 만주사변 직전의 9월 초순에는 회령과 용정촌 사이의 철도를 폭파하고 조선군을 간도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⁸⁰⁾

그러나 위의 일련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일본 특히 육군이 만주 문제와 관련하여 간도를 얼마나 중시여기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당시 대륙정책의 실질적 담당자였던 육군으로서의 서쪽의 관동주(요동반도)의 조차기간을 연장하고 이어서 동쪽의 간도를 조차하여 군사적으로 만주 전체를 압박하는 체제를 갖추면 만주의 권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간도 조차론은 이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간도의 만주화'

남만동몽조약의 실시를 둘러싸고 중일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이 조약을 간도에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였다.⁸¹⁾ 즉 남만동몽조약을 간도를 포함한 남만주 전체에 적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간도는 특수지역으로 종래와 같이 간도협약의 적용대상지역으로 남겨둘 것인가였다. 이는 간도 조선인의 지배 주체와 관련된 문제로, 핵심은 간도 조선인에게도 일본의 영사재판권(치외법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였다.⁸²⁾

79) 「寺内正毅關係文書6-37」, 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 松田利彦, 2003, 위의 글, 249~250쪽.

80) 神田正種, 「鴨綠江」, 小林龍夫·島田俊彦 編, 1964, 『現代史資料7 滿州事變』, みすず書房, 457~466쪽. 만주사변과 조선군의 간도 개입에 대해서는 서민교, 2002, 「만주사변기 조선주둔 일본군의 역할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2호, 212~213쪽 참조.

81) 天野元之助, 1931, 『間島に於ける朝鮮人問題に就いて』, 中日文化協會, 57~59쪽.

중국은, 간도협약은 특수조약이기 때문에 남만동몽조약과 관계없이 존속해야 하며, 또 남만동몽조약 제8조(만주에 관련된 기존의 조약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대로 시행한다는 것)에 의거 간도 조선인에게는 영사재판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만약 남만동몽조약의 영사재판권을 간도조선인에게 적용할 경우 대다수 조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도는 치외법권 지역화하여 실질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영유권 그 자체가 의미를 상실한다. 나아가 일본이 간도를 포함해 만주 조선인에 대해 치외법권을 가지게 되면 만주에서의 중국의 지배력이 그만큼 약화된다. 뿐만 아니라 만주에 거주하는 다수의 조선인을 이용하여 일본이 중국의 토지를 상호할 경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어 자칫 만주 전체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⁸³⁾

남만동몽조약과 간도협약의 관계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으나,⁸⁴⁾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1915년 8월 13일의 각의에서 남만동몽조약을 간도 및 간도 조선인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⁸⁵⁾ 지역과 관계없이 만주에 있는 조선인을 일괄적으로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조선총독부의 명목상의 이유였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인에 대해 치외법권을 적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간도와 만주에서의 반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되면 총독부(일본)는 조선·만주·간도의 조선인을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속인주의적 차원에서 조선·만주·간도의 일체화가 이루어지게 되며,⁸⁶⁾ 간도·조선·만주는 보더레스화하는 것이다.

82) 이성환, 1999, 「대중국 21개조 요구와 간도문제」, 『일본학지』 제19집, 119~141쪽 참조.

83) 信夫淳平, 1932, 『滿蒙特殊權益論』, 日本評論社, 397쪽.

84) 일본외무성 기록 B·1·2·2·J/C-1 「間島問題調書」, 87~88쪽.

85) 일본외무성 기록 B·1·2·2·J/C-1 「間島問題調書」, 110쪽. 각의 결정의 구체적 내용은 토지 상조권과 재판권에 대해서는 남만동몽조약을 적용하고,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간도협약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일본에게 가장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한 모순된 내용이다.

86) 白榮勳, 2005, 『東アジア政治・外交史研究－間島協約と裁判管轄權』, 大阪經濟法科大學出版部, 156쪽.

만약 간도에 치외법권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만주의 항일운동이 간도로 집중되어 조선 식민지 지배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⁸⁷⁾ 그렇지 않아도 조선인 사회를 기반으로 간도가 항일운동의 기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로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했다. 조선인에게 치외법권을 인정하게 되면 만주에 있는 조선인을 일본이 직접 관할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남만주에서 확보한 '권리'를 간도에도 적용하여 간도와 만주의 조선인을 일괄적으로 지배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른바 '간도의 만주화' 정책이라 하겠다.

일본이 '간도의 만주화'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당시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인구분포도 크게 작용했다. 1915년 만주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10만 1,586명에 지나지 않으며,⁸⁸⁾ 그들 중 약 50% 이상이 관동주 조차지에, 나머지 약 43.6%가 만철 부속지에 거주하고 있었다.⁸⁹⁾ 한편 만주 조선인은 1919년에 43만 1,198명이며(1919년 이전의 만주 조선인의 숫자는 명확하지 않음), 1915년의 간도 조선인은 182,000명에 이른다.⁹⁰⁾ 이러한 인구분포는 조선인의 거주지역이 간도에 한정되지 않고 만주 전체로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인의 만주 지역으로의 확산은 대부분 간도 조선인들의 2차 이주에 따른 것으로, 간도가 만주 조선인의 기점이 되고 있었다.⁹¹⁾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일본의 만주 조선인 정책은 기본적으로 간도 조선인 정책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위의 만주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분포는 남만동몽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본인(관동주 조차지와 만철 연변, 개방지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숫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남만동몽조약의 적용

87) 齊藤實文書827 「在滿鮮人ト間島協約及日支條約トノ關係」(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井上學, 1973, 「日本帝國主義と間島問題-1910年代・1920年代前半」, 朝鮮史研究會 編, 『朝鮮史研究論文集』 第10集, 34쪽.

88) 塚瀨進, 2004, 『滿州の日本人』, 古川弘文館, 46쪽.

89) 中日文化協會, 1931, 『滿蒙年鑑』, 22~23쪽.

90) 李盛煥, 1992, 『近代アジアの政治力學』, 錦正社, 397쪽.

91) 金泰國, 2002, 『滿洲地域 朝鮮人民會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7쪽.

대상지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1914년에 4.9%(5,027명), 1917년에 6.8%(8,199명), 1923년에 2.2%(3,978명), 1929년에 1.7%(3,730명)에 지나지 않았으며,⁹²⁾ 일본인의 만주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만주사변 이후이다.⁹³⁾

이러한 상황에서 남만동몽조약을 일본인에게만 적용해서는 일본이 만주에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는 거의 의미가 없으며, 조선인에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남만동몽조약을 이용한 '간도의 만주화' 정책은 일본이 조선인을 이용하여 만주에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商埠地 밖에 경찰분견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확대해 갔다.⁹⁴⁾ 만주사변의 원인으로 작용한 만보산사건은 조선인을 이용하여 세력확대를 꾀하려는 일본과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의 대립으로 발생한 대표적 인 예이다.⁹⁵⁾

만주사변에 대한 국제연합 조사위원회(리튼 조사단)는 일본이 미곡확보를 위해 만주 조선인에게 토지 획득을 장려했으며, 또 조선인의 '보호'를 명목으로 영사관 경찰을 동원해 세력을 확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⁹⁶⁾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915년 이후 일본이 만주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장해 가는 것은 만주 조선인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일본이 조선인을 이용하여 만주를 식민지화(absorption)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중국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⁹⁷⁾ 일본으로서는 간도를 기반으로 하는 만주 조선인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대해 가는 것이 만주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다.

92) 塚本進, 2004, 앞의 책, 47쪽; 部島昭一, 1984, 「戰前期中國在留日本人口統計」, 『和歌山大學教育學部紀要(人文科學)』第33號.

93) 吉田忠雄, 2009, 앞의 책, 123~145쪽.

94) 金穎, 2004, 『근대 만주 벼농사 발달과 이주 조선인』, 국학자료원, 120쪽.

95) 박영석, 1972, 「일본의 대륙정책과 만보산 사건」, 『건대사학』 제2호; 박영석, 1978, 『만보산 사건연구: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으로서의』, 아세아문화사 참조.

96) 渡部昇一, 2006, 『全文 リットン報告書, Report of the Commission of Enquiry』, ビジネス社, 147·158쪽.

97) 渡部昇一, 2006, 위의 책, 58·155쪽.

따라서 남만동몽조약 성립 이후 중일 양국은 조선인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중국은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토지를 상조하는 자를 엄격히 처벌하고,⁹⁸⁾ 조선인에 대해 일본의 치외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강경 조치를 취했다.⁹⁹⁾ 중국은 일본의 치외법권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인의 중국 귀화를 강요했으나, 일본은 조선인의 귀화를 인정하지 않았다.¹⁰⁰⁾ 그 결과 조선인은 때로는 ‘중국인’으로 때로는 ‘일본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이중국적 또는 무국적자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과 일본은 조선인에 대해 각자의 지배권을 행사하였으며, 조선인은 이중국적의 논란 속에서 중일 양국의 이중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¹⁰¹⁾ 조선인의 관할을 둘러싼 양국의 분쟁 이른바 만주의 조선인 문제는 끊이지 않았으며,¹⁰²⁾ 한중일의 민족적 대립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다.¹⁰³⁾

만주에서의 조선인 문제는 만주의 새로운 문제로 부상했으며, 만주의 불안 요인이 되었다. 일본은 조선인의 ‘보호’를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만주에 세력을 확장하려 했으며,¹⁰⁴⁾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조선인을 ‘탄압’하거나 驅逐하려 했다. 조선인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증폭되면서 만주 조선인 문제는 일본의 대만주 정책과 중국의 대일본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중국이 만주의 조선인을 일본의 만주 침략의 走狗로 인식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만주 조선인을 둘러싼 이러한 대립구도는 만주에 대해 일본이 독점적 지배 체제를 확립하고 본격적인 대륙국가를 실현하는 만주사변 때까지 지속된다.

98) 東亞勸業株式會社, 1927, 『南滿洲に於ける土地高租權問題』, 17~18쪽.

99) 胡春惠, 1990, 「간도의 한국인이 중국의 내정·외교상 조성한 어려움」,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6집 참조.

100) 山本四郎 編, 1984, 『寺内正毅關係文書(首相以前)』, 京都女子大學, 180쪽.

101) 白榮勛, 2005, 앞의 책, 226쪽 이하.

102) 姜龍範, 2007, 「滿州事變以前の間島朝鮮人管轄權をめぐる中日間の紛争」, 『東アジア研究』 第47號, 27~44쪽.

103) 李盛煥, 1992, 앞의 책 참조.

104) 조선인의 ‘보호’를 명목으로 영사관 경찰을 이용한 일본의 세력확장에 대해서는 萩野富士夫, 2005, 『外務省警察史』, 校倉書房가 매우 상세하다.

리트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그 과정에서 간도를 기반으로 하는 만주 조선인 문제는 만주사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¹⁰⁵⁾ 만주 조선인 문제가 만주사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만주 조선인 문제가 일본의 대륙정책 또는 만주 정책에서 그만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Ⅶ. 맺음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만주와 직결되는 간도 지역은 근대 일본의 대륙국가화 구상(대륙정책)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간도가 만주, 러시아, 조선의 접점에 존재하고 역사적으로 한중 간의 영유권 분쟁지역이었으며, 다수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이었다. 일본의 간도에 대한 관심은 일차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군사적 측면에서 중시되었다. 제1차 러일협약 체결 후에는 러시아의 위협이 감소함으로써 간도는 한반도 지배와 만주 권익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었다. 그 후 간도는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를 포함한 대륙정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여 대륙국가화한 이후에는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계기로 간도의 만주화 또는 만주의 간도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간도의 특수성도 약화되었다. 간도협약 이전에는 간도가 일본의 대륙정책의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대중국 21개조 요구 이후에는 간도를 기반으로 하는 만주의 조선인이 일본의 대륙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중국 21개조 요구 이후 만주 조선인 문제는 '만주 문제의 관건'으로 작용하게 되었

105) 渡部昇一, 2006, 앞의 책, 57~64 · 153~166쪽.

다.¹⁰⁶⁾ 위에서 언급한 만주사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 만보산사건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그 이후 일본의 만주 정책에서 간도의 특수한 역할도 약화되며, 간도는 일본의 만주 정책 속에서 새롭게 자리매김된다. 1920년대 초반에 일본의 대륙론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대고려국’ 구상과¹⁰⁷⁾ 만주사변을 전후하여 전개된 간도의 특수지역화¹⁰⁸⁾ 또는 ‘간도의 조선 회귀론’¹⁰⁹⁾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대륙정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는 간도를 만주의 일부로 남겨두기보다는 간도협약 이전의 상태인 조선의 일부로 회귀시키는 것이 간도 조선인에 대한 통제와 조선 식민지 지배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106) 長野朗, 1932, 『滿洲問題の關鍵-間島』, 支那問題研究所.

107) 1921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다이쇼 일일신문[大正日日新聞]』(夕刊) 제1면의 5단 기사로 11회에 걸쳐 연재된 대고려국 관련기사와 이성환, 2006, 「간도문제와 대고려국’ 구상」, 『백산학보』 제74호 참조.

108) 이에 대해서는 이성환, 1992, 앞의 책, 284~290쪽; 間島自立同盟, 「間島自立新政體建設」, 小川平吉文書研究會 編, 1973, 『小川平吉關係文書』 2, みすず書房, 327~331쪽도 참조.

109) 篠田治策, 1931, 「間島協約締結の由來と其改訂の機運」, 『外交時報』 第656號; 神田正種, 1964, 앞의 글, 457~466쪽.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학회, 2003,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 구대열, 1999, 「대한제국기 국제관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대한제국사 연구』, 백산자료원.
- 김기훈, 1996, 「근대 중국 동북(만주)사 연구의 동향」, 『백산학보』 제47호.
- 金穎, 2004, 『근대 만주 벼농사 발달과 이주 조선인』, 국학자료원.
- 김종건, 2007, 「백두산 간도문제 연구의 현황과 쟁점」, 『동북아역사논총』 제18호.
- 김춘선, 2002, 「압록·두만강 국경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연구동향」, 『한국사학보』 제12호.
- 金泰國, 2002, 『滿洲地域 朝鮮人民會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석, 1978, 『만보산 사건연구 :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으로서의』, 아세아문화사.
- 배성준, 2005, 「중국의 간도문제 연구동향」, 『중국의 민족·변강문제 연구동향』, 고구려연구재단.
- 서민교, 2002, 「만주사변기 조선주둔 일본군의 역할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2호.
- 석화정, 1999, 「러시아의 한반도 중립화 정책」, 『중소연구』 제83호.
- 松田利彦, 2003, 「일본육군의 중국 대륙침략정책과 조선-1910~1915년」, 『한국문화』 제31호.
- 이성환, 1999, 「대중국 21개조 요구와 간도문제」, 『일본학지』 제19집.
- 이성환, 2000, 「간도협약과 한일합방」, 『대한정치학회보』 제8집 1호.
- 이성환, 2005, 『전쟁국가 일본』, 살림출판사.
- 이성환, 2006, 「간도문제와 '대고려국' 구상」, 『백산학보』 제74호.
- 庄司潤一郎, 2003, 「日本の對アジア政策の歴史的背景」, 『국제학논총』 제8집, 계명대학교.
- 전상숙, 2006, 「러일전쟁 전후 일본의 대륙정책과 테라우치(寺内正毅)」, 『사회와 역사』 제71집.
- 정애영, 2008, 「러일전쟁 직후 일본의 간도 조사와 지역구상」, 『일본역사연구』 제28집.
- 조명철, 2004, 「일본의 러일전쟁에 대한 인식」, 『아시아문화』 제21호.
- 조명철, 2008, 「근대일본의 전쟁과 팽창의 논리」, 『사총』 67호.

- 胡春惠, 1990, 「간도의 한국인이 중국의 내정·외교상 조성한 어려움」,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6집.
- 角田順, 1967, 『滿洲問題と國防方針』, 原書房.
- 間島自立同盟, 「間島自立新政體建設」, 小川平吉文書研究會 編, 1973, 『小川平吉關係文書2』, みずず書房.
- 薑龍範, 2007, 「滿州事變以前の間島朝鮮人管轄權をめぐる中日間の紛争」, 『東アジア研究』 第47號.
- 古川萬太郎, 1991, 『近代日本の大陸政策』, 東京書籍株式會社.
- 穀壽夫, 2004, 『機密日露戰史(新裝版)』, 原書房.
- 吉田忠雄, 2009, 『滿州移民の軌跡』, 人間の科學社.
- 金正明 編, 1965, 『日韓外交資料集成』 第6卷(中), 巖南堂書店.
- 金正明 編, 1967, 『日韓外交資料集成』 第8卷, 巖南堂書店.
- 內藤乾虎吉 編, 1972, 『內藤湖南虎全集』 第6卷, 築摩書房.
- 大山梓 編, 1996, 『山縣有朋意見書』, 原書房.
- 渡部昇一, 2006, 『全文 リットン報告書, Report of the Commission of Enquiry』, ビジネス社.
- 東亞勸業株式會社 編, 1927, 『南滿洲に於ける土地商租權問題』.
- 鈴木武雄, 1937, 「所謂北鮮ルートに就て」, 京城商工會議所, 『經濟月報』.
- 鈴木武雄, 1938, 「北鮮ルート論」,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 第10冊, 『朝鮮經濟の研究』 第3號, 岩波書店.
- 栗原健 編, 1966, 『明治百年史叢書 對滿蒙政策史の一面』, 原書房.
-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 編, 1967, 『大本營陸軍部(1)』 戰史叢書, 朝雲新聞社.
- 芳井研一, 2000, 『環日本海地域社會の變容: 「滿蒙」・「間島」と「裏日本」』, 青木書店.
- 白榮勛, 2005, 『東アジア政治・外交史研究-間島協約と裁判管轄權』, 大阪經濟法科大學出版部.
- 部島昭一, 1984, 「戰前期中國在留日本人人口統計」, 『和歌山大學教育學部紀要(人文科學)』 第33號.
- 北岡伸一, 1978, 『日本陸軍と大陸政策』, 東京大學出版會.
- 山本四郎 編, 1984, 『寺内正毅關係文書(首相以前)』, 京都女子大學.
- 森山茂徳, 1987, 『近代日韓關係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 上原勇作關係文書研究會 編, 1976, 『上原勇作關係文書』, 東京大學出版會.
- 小林道彦, 1996,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 南窓社.
- 篠田治策, 1931, 「間島協約締結の由來と其改訂の機運」, 『外交時報』 第656號.
- 信夫淳平, 1932, 『滿蒙特殊權益論』, 日本評論社.
- 神田正種, 「鴨綠江」, 小林龍夫・島田俊彦 編, 1964, 『現代史資料7 滿州事變』, みすず書房.
- 外務省 編, 1956a, 『日本外交文書』 第33卷, 巖南堂書店.
- 外務省 編, 1956b, 『日本外交文書』 第34卷, 巖南堂書店.
- 外務省 編, 1961a, 『日本外交文書』 第40卷 第2冊, 巖南堂書店.
- 外務省 編, 1961b, 『日本外交文書』 第42卷 第1冊, 巖南堂書店.
- 外務省 編, 1965,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卷, 原書房.
- 外務省 編, 1966, 『小村外交史』, 原書房.
- 伊藤之雄, 2009, 『山縣有朋』, 文藝春秋.
- 李盛煥, 1992, 『近代東アジアの政治力學』, 錦正社.
- 林正和, 1960, 「間島問題に關する日清交渉の經過」, 『駿台史學』 第10號.
- 長岡新次郎, 1960, 「對華二十一ヶ條要求條項の決定とその背景」, 『日本歴史』 第144號.
- 長野朗, 1932, 『滿洲問題の關鍵-間島』, 支那問題研究所.
- 井上學, 1973, 「日本帝國主義と間島問題-1910年代・1920年代前半」, 朝鮮史研究會 編, 『朝鮮史研究論文集』 第10集.
- 中日文化協會, 1931, 『滿蒙年鑑』.
- 川島眞・服部龍二 編, 2007, 『東アジア國際關係史』, 名古屋大學出版部.
- 天野元之助, 1931, 「間島に於ける朝鮮人問題に就いて」, 中日文化協會.
- 千葉功, 2008, 『舊外交の形成-日本外交一九〇〇-一九一九』, 勁草書房.
- 村中朋之, 2004, 「明治期日本における國防戰略轉換の背景-朝鮮を利益線とするにいたるまで」, 『日本大學大學院總合社會情報研究科紀要』 第5號.
- 村中朋之, 2006, 「山縣有朋の「利益線」概念-その源泉と必然性」, 『軍事史學』 第42卷 第1號.
- 塚瀬進, 2004, 『滿州の日本人』, 古川弘文館.
- 萩野富士夫, 2005, 『外務省警察史』, 校倉書房.
- 春畝公追頌會, 1940, 『伊藤博文傳』 下卷(복각판, 原書房, 1970).
- 鶴鳴雪嶺, 2004, 「朝鮮民族の分斷と滿州」, 『滿州とは何だったのか』, 藤原書店.

韓相一 著, 李建·瀧澤誠 譯, 1984, 『日韓關係史の空間』, 經濟評論社.

「間島ノ版圖ニ關シ清韓兩國紛議一件」[일본외무성기록 B-1-4-1-076(일본 외무성 외
교사료관 소장),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http://www.jacar.go.jp>)Ref.
B03041192600].

「寺内正毅關係文書6~37」, 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일본외무성 기록 B·1·2·2·J/C-1 「間島問題調書」.

1921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다이쇼 일일신문[大正日日新聞]』(夕刊) 제1면의 5단 기사
로 11회에 걸쳐 연재된 대고려국 관련기사.

齊藤實文書827 「在滿鮮人ト間島協約及日支條約トノ關係」(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
실).

參謀本部, 「對清作戰計劃」(1911년 5월, 『宮崎周一史料』 46, 일본방위청방위연구소도
서관 소장).

韓國駐屯軍參謀部, 1906, 「間島ニ關スル調査概要(明治 39年 3月) 陸軍省密大日記」(明
治 39年 5月),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所藏.

[ABSTRACT]

A Study of Japanese Continental Policy and Gando

Lee, Sunghwa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rgue that the significance of Gando area, which is directly connected to Manchuria, in the Japanese continental policy is due to its geopolitical peculiarity. The geopolitical peculiarity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 geographical, historical and political. Geographically, the Gando area borders with three major political players - Manchuria, Russia, and Korea. Historically, Koreans had migrated into Gando throughout history and formed a sizable cultural community. Finally, Gando had great political importance because Korea and China insisted its own sovereignty over the area. Furthermore, for Japan, Gando turned out to be crucial in preparing a war with Russia. Even though Russia became less threat to the interests of Japan after the first Russo-Japanese Convention (1907), Japan continued to consider Gando as an extremely crucial area in order to build a continental state.

With the completion of the first stage of continental state-building process after the forced annexation of Korea, the peculiarity of Gando was diminished due to Twenty-one Demands (1915) along with the phenomena of Manchurization of Gando or Gandorization of Manchuria. After the empire of Japan made the Twenty-one Demands, Japan began to use Koreans in Manchuria a mean of Japanese continental policy. The empire of Japan also treated Gando

as the base of imperial enlargement to the Continent before the Gando Agreement (1909). Therefore, since the Twenty-one Demands, the “Manchurian Korean Problem” turned out to be the center of “Manchurian Problem.” The best example of such tendency is the “Mt. Manbo Accident” (1931) built-up by Japan, which later brought on the “Manchurian Incident”, or “Mukden Incident” (1931).

However, the significance of Gando in the Japanese Manchurian policy decreased as its peculiarity dwindled. In early 1920s, “the Great Korean Nation Plan” was set forth by the Continentalists as a new idea regarding how to control Gando. Around the “Manchurian Incident”, “Gando Special Zone” or “Return of Gando to Korea” were proposed by Japanese Continentalists. They argued that the better option for Japan to effectively control Gando was to force Gando to be returned to Korea, just like before the Gando Agreement. In order Japan to more easily control Manchurian Koreans and to manage the Korea colony, returning Gando to Korea seemed more beneficial than leaving it as a part of Manchuria.

keywords

Gando, Japanese Continental Policy, Gando Agreement, Twenty-one Demands, Manchurian Korean Problem

특집 2

한일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토오쿄오재판에 관한 법사학적 고찰

- '문명의 심판' 대 '승자의 심판' 그리고 아시아 -

김창록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법(국제법)과 역사를 꿰뚫는 통합적인 시각과 일본과 서양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아시아의 관점에서, 토오쿄오[東京]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을 재조명함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현재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정의와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고려 속에서 그 장래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다.

1946년 5월 3일에 개정하여, 약 2년 반에 걸친 심리를 진행한 끝에 1948년 11월 12일에 판결을 내림으로써 종료된 토오쿄오재판은, 일본의 현대사에서만 이 아니라 전 세계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이고, 그 재판으로부터 6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 투고일 2009년 6월 30일, 심사일 2009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4일.

* 이 글의 외국 인명, 지명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필자의 의견에 따라 표기하였다.

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그 사실을 잘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 때문에 토오쿄오재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구들은 일본의 관점과 서양의 관점, 국제법의 관점과 역사의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오쿄오재판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논쟁의 표적’으로 머물러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에 의한 ‘승자의 심판’인가 아니면 포악한 범죄국에 대한 ‘문명의 심판’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특히 1990년대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등장한 일본의 ‘우익사관’의 발흥 이후 가장 가열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조차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가열찬 논쟁에도 불구하고, 토오쿄오재판에 대한 안정적인 자리매김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는, 토오쿄오재판의 자리매김이라는 문제가 법(국제법)과 역사가 밀접하게 뒤얽혀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는 그 점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함으로써, 논쟁이 서로 맞물리지 못하면서 겹돌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승자의 심판’론과 ‘문명의 심판’론 모두가 ‘보편’을 자신의 의지처로 삼고 있지만, 그 ‘보편’의 중요한 부분을 역사적으로 구성하였고 현재적으로도 구성하고 있는 아시아의 관점을 포섭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특수’ 끼리의 싸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법(국제법)과 역사를 통합하는 시각과 아시아의 관점에 입각하여, 토오쿄오재판을 아시아를 포함하는 ‘보편’ 속에 새롭게 자리매김함으로써, 일본의 이른바 ‘전후처리’와 ‘역사인식’의 맹점으로 남아 있는 토오쿄오재판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II. 토오쿄오재판의 전모¹⁾

1. '포츠담선언'의 수락

토오쿄오재판의 직접적인 역사는, 1945년 7월 26일 미국·영국·중국이 일본의 항복을 권고한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 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²⁾에서 시작된다. 선언의 제10항 전단은, "우리는 일본인들을 민족으로서 노예화하거나 국민으로서 멸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하는 일체의 전쟁범죄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재판(stern justice)³⁾이 이루어져야 한다"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포츠담선언'에 대해 일본 군부는, 1945년 8월 8일 소련이 참전함으로써 전세가 확실하게 기운 상황에서도, 그 수락의 4개 조건 중 하나로 '전범 처벌은 일본 측에서 자주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내세웠다. 하지만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일본은

1) 이 장의 내용에 관해 사실관계를 잘 정리한 연구서로서, 박원순, 1996,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 일본의 전쟁범죄 연구』, 한겨레신문사 ; 朝日新聞社, 1995, 『東京裁判』 上·下, 朝日新聞社 ; 赤澤史朗, 1989, 『東京裁判』, 岩波書店 ; 粟屋憲太郎, 2006, 『東京裁判への道』 上·下, 講談社 ; 日暮吉延, 2008, 『東京裁判』, 講談社 ; A. C. Brackman, 1987, *The Other Nuremberg : The Untold Story of the Tokyo War Crimes Trials*, New York : William Morrow and Co. 참조. 또한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집으로서, 東京裁判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會, 1989, 『東京裁判ハンドブック』, 青木書店 참조. 이하 이 장의 내용은 위의 문헌들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특별히 각주를 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http://www.ndl.go.jp/constitution/e/etc/c06.html>. 이하 이 글에서 인용하는 웹 사이트의 방문날짜는 모두 2009년 8월 20일이다.

3) 당초 'stern justice'는 일본 정부에 의해 '엄중한 처벌'로 번역되었으나, 토오쿄오재판의 법정에서는 '엄격한 재판'으로 번역이 정정되었다.

4) We do not intend that the Japanese shall be enslaved as a race or destroyed as a nation, but stern justice shall be meted out to all war criminals, including those who have visited cruelties upon our prisoners.

결국 무조건항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9월 2일 서명된 항복문서⁵⁾를 통해,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무조건항복(the unconditional surrender)과 천황 및 일본국정부의 국가통치의 권한이 연합국최고사령관에게 종속(subject to)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2. 맥아더의 「특별선언」과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1946년 1월 1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이하 ‘재판소’)의 설립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GHQ(General Headquarters,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 연합국최고사령관 총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⁶⁾; 이하 「헌장」)을 공포하였다.

「특별선언」에서 맥아더는, 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은 전쟁범죄인을 재판에 회부한다고 선언해 왔다, ② 일본은 전쟁범죄인 처벌을 항복조항의 하나로 하는 포츠담선언의 수락을 항복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③ 천황 및 일본정부의 통치권은 항복조항 실시를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은 연합국최고사령관에게 종속되어 있다, ④ 연합국은 연합국최고사령관이 항복조항 이행을 위해 일체의 명령을 발한다고 협정을 맺었다, 따라서 연합국최고사령관이 극동국제군사재판소를 설립하였다라고, 「재판소」설치의 법적 근거를 밝혔다.

이어 「헌장」에서는, 먼저 “극동에서의 중대 전쟁범죄인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및 처벌을 위해” 토요일에 ‘재판소’가 설치된다는 것이 선언되었다(제1조). 판사에 관해서는, ‘재판소’는 항복문서의 서명국 및 인도와 필리핀에 의

5) <http://www.ndl.go.jp/constitution/e/etc/c05.html>.

6) <http://www.ibiblio.org/hyperwar/PTO/IMTFE/IMTFE-A5.html>. 또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은 <http://avalon.law.yale.edu/imt/imtconst.asp> 참조.

해 제출되는 인명 중에서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임명하는 6명 이상 11명 이내의 판사로 구성되며(제2조), 연합국최고사령관은 판사 1명을 재판장으로 임명한다(제3조)고 규정되었다. 검사에 관해서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임명하는 수석 검사와 각 연합국이 수석검사를 보좌하기 위해 임명하는 참여검사 1명을 두는 것으로 규정되었다(제8조). 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관해서는, 침략전쟁의 계획·준비·개시·수행에 임하였거나, 그 공동모의에 참가한 죄인 '평화에 대한 죄'와 포로의 살해나 학대 등 전시국제법을 위반한 죄인 '통상의 전쟁범죄' 그리고 인종적 이유 등에 의한 대량학살이나 학살 등의 '인도에 대한 죄'가 명기되었으며(제5조), 이들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공무상의 지위 혹은 피고인이 자기의 정부 또는 상사의 명령에 따라 행위하였다는 사실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다만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규정되었다(제6조). 그리고 재판의 진행에 관해서는, 재판이 영어와 일본어로 진행된다는 것(제9조)과, 광범위한 증거 채용이 인정되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제13조) 등이 규정되었다.

3_ 판사와 검사, 변호단

판사는, 최초의 「헌장」에 따라 우선 항복문서 서명국인 9개국으로부터 선발되었다. 1946년 2월 5일 맥아더는, 위의 9개국으로부터 통고받은 9명(미국 [John P. Higgins, Cramer(1946년 7월부터)], 영국[Lord Patrick], 캐나다 [Edward Stuart McDougall], 오스트레일리아[William Webb], 뉴질랜드 [Harvey Northcroft], 프랑스[Henri Bernard], 네덜란드[Bert Röling], 중국 [梅汝璈], 소련[I. M. Zarayanov])을 판사로 임명하였으며, 그중 오스트레일리아의 웹(William Webb, 1887~1972)⁷⁾ 판사를 재판장으로 임명하였다. 그

7) http://en.wikipedia.org/wiki/William_Webb ; <http://ja.wikipedia.org/wiki/%E3%82%A6%E3%82%A3%E3%83%AA%E3%82%A2%E3%83%A0%E3%83%BF%E3%83%BB%E3%82%A6%E3%82%A8%E3%83%83%E3%83%97> 참조.

후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의 결정에 기초하여, 4월 26일에 「헌장」을 개정하여 필리핀(Delfin Jaranilla)과 인도(Radhabinod Pal)로부터도 판사를 파견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판사와 수석검사, 참여검사를 파견하는 국가의 수는 11개국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들 11개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중립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판사·검사의 중심부분은 미국과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서구의 식민지중주국이 차지하는 형태가 되었다.

1945년 12월 6일 키넨(Joseph Berry Keenan, 1888~1954)⁸⁾이 이끄는 미국 측 검사단 일행 38명이 일본에 도착하였으며, 12월 8일에 맥아더는 키넨을 국장으로 하는 국제검찰국을 발족시켰다. 키넨은 루즈벨트 정권에서 검사총장보를 지낸 적이 있는 인물로 이때 57세였으며, 「헌장」의 발령과 함께 수석검사에 임명되었다. 이후 1946년 2월이 되어 5개국(영국[Arthur Comyns-Carr], 캐나다[Henry Nolan], 오스트레일리아[Alan Mansfield], 뉴질랜드[Ronald Quilliam], 중국[向哲浚]의 검사단이 도착하였으며, 3월 이후에 다른 5개국(프랑스[Robert L. Oneto], 인도[P. Govinda Menon], 네덜란드[W. G. Frederick Borgerhoff-Mulder], 필리핀[Pedro Lopez], 소련[S. A. Golunsky]의 검사단이 도착하였다.

검사단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단도 구성되었다. 변호단의 일본인 변호인은 구육해군성과 외무성 등이 피고인들을 위해 알선한 사람들이었다. 또 외무성은, 재판이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영미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인 변호인⁹⁾도 알선하였다. 변호인들에게는 종전처리비로부터 급여와 사무경비가 지출되었다. 일본인 변호단은 재판 개정 다음 날인 1946년 5월 4일 결성되었으며, 단장은 변호사로서 패전 전에 세이유우카이[政友會]

8) http://en.wikipedia.org/wiki/Joseph_Berry_Keenan ; <http://ja.wikipedia.org/wiki/%E3%82%B8%E3%83%A7%E3%82%BB%E3%83%95%E3%83%BB%E3%82%AD%E3%83%BC%E3%83%8A%E3%83%B3> 참조.

9) 이에 관해서는, Galen Irvin Johnson, 1989, *Defending the Japanese War-lords : American Attorneys at the Tokyo War Crimes Trial 1946-1948*, Ann Arbor : University of Microfilms International 참조.

소속의 代議士를 지냈고 당시에는 메이지[明治]대학 총장으로 있던 우자와 후사야키[澤總明, 1872~1955]¹⁰⁾가, 부단장은 패전 전에는 자유주의적 변호사이자 혁신클럽의 대의사로서 치안유지법에 반대하였으나, 1930년대 이후에는 국가주의자로 변신하였던 키요세 이찌로오[清瀨一郎, 1884~1967]¹¹⁾가 맡았다.

4. 피고인의 선정

1946년 4월 8일에 참여검사회의가 개최되어 이 자리에서 26명의 피고인이 결정되었다. 이 회의의 모두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맨스필드 검사가 천황의 소추를 정식으로 제의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천황의 소추에 관해서는 일본의 패전 전후에 걸쳐 미국 정부 내에서 논란을 거친 끝에 불소추의 방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뒤집을 수 없었다.¹²⁾

4월 13일, 미국 주도의 재판에 반발하여, 대표의 파견을 미루고 있던 소련으로부터 마침내 검사단이 도착하였으며, 소련 검사단에 의해 새로 5명의 피고인의 추가가 요구되었다. 그에 따라 재차 참여검사회의가 개최되어 그중 2명이 피고인으로 추가되었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총 28명이 되었다.

28명의 피고인¹³⁾의 구성은, 수상 경험자가 4명(코이소 쿠니아키[小磯國昭],¹⁴⁾ 토오조오 히데키[東條英機],¹⁵⁾ 히라누마 키이찌로오[平沼騏一郎],¹⁶⁾ 히로

10) <http://ja.wikipedia.org/wiki/%E9%B5%9C%E6%B2%A2%E7%B7%8F%E6%98%8E> 참조.

11) <http://ja.wikipedia.org/wiki/%E6%B8%85%E7%80%AC%E4%B8%80%E9%83%8E> 참조.

12) 이 문제를 둘러싼 연합국 내부의 논란에 관한 상세한 분석으로 中村政則, 1992, 『戰後史と象徴天皇』, 岩波書店, 특히 제5장 참조.

13) 피고인들의 사진 기타의 정보는 <http://ja.wikipedia.org/wiki/%E6%9D%B1%E4%BA%AC%E8%A3%81%E5%88%A4>에 링크되어 있음.

14) 육군성 군무국장으로서 3월사건(1931년 육군 막료층의 쿠데타 계획)에 관여. 1939년과 1940년에 拓務大臣. 토오조오 내각 붕괴 후인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수상.

15) 陸軍統制派의 일원으로서 관동군 헌병사령과, 관동군 참모장을 역임. 1938년 육군 차관.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수상.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수상 겸 육군대신으로서 태평양전쟁을 지도. 1941년부터 1942년까지 내무대신. 1943년부터 1944년까지

타 코요기[廣田弘毅¹⁷⁾], 궁중그룹이 1명(키도 코요이찌[木戶幸一¹⁸⁾], 육군군인이 13명(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¹⁹⁾], 이타가키 세이시로오[板垣征四郎²⁰⁾], 우메즈 요시지로오[梅津美治郎²¹⁾], 오오시마 히로시[大島浩²²⁾], 키무라 헤이타로오[木村兵太郎²³⁾], 사토오 켄료오[佐藤賢了²⁴⁾], 스즈키 테이이찌[鈴木貞一²⁵⁾], 도이 하라켄지[土肥原賢二²⁶⁾], 하시모토 킨고로오[橋本欣五郎²⁷⁾], 하타 로쿠[俊六²⁸⁾], 마쯔이 이와네[松井岩根²⁹⁾], 미나미 지로오[南次郎³⁰⁾], 무토오 아키라

지 군수대신. 1944년에는 육군참모총장도 겸임.

- 16) 국가주의 단체 國本社의 회장이자 일본주의자로 알려진 司法界의 거물.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추밀원 의장. 1939년 수상이 되어 汪兆銘工作, 日獨伊 3국방공협정 등에 관여.
- 17) 1933년부터 1936년까지 외무대신. 1936년 2·26사건 후 수상이 되어, 군부대신 현역무관제를 부활시키고, 일독 방공협정을 체결. 1937년부터 1938년 코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내각의 외상으로서 강경외교정책 추진.
- 18) 1937년부터 1938년까지 문부대신·후생대신. 1939년에 내무대신.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내대신. 1941년 천황 히로히토에게 토오죠오를 수상으로 주청.
- 19) 10월사건(1931년 육군막료층에 의한 쿠데타계획)에서 쿠데타 성공시의 수상 예정자. 1931년부터 1934년 육군대신. 1938년부터 1939년까지 문부대신.
- 20) 관동군 고급참모로서 만주사변 당시 주도적 역할.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육군대신. 1939년 支那파견군 참모장.
- 21) 1934년부터 1935년까지 화북주둔군 사령관.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육군차관. 1939년부터 1944년까지 관동군 사령관으로 관동군 특종훈련에 관여.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육군참모총장으로서 태평양전쟁 말기의 전쟁지도를 담당.
- 22) 1936년 주독대사관 무관으로서 일독 방공협정을 성립시킴. 1938년부터 1939년 독일대사로서 일독이 3국동맹 체결을 주장. 1941년부터 1944년까지 다시 독일대사로서 친독일정책을 추진.
- 23) 1941년부터 1943년까지 토오죠오 육군대신 아래에서 육군차관.
- 24) 1941년부터 1942년까지 육군성 군무국 군사과장.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육군성 군무국장으로서 태평양전쟁에 관여.
- 25) 육군혁신파의 일원. 1941년 총력전연구소 참여. 1941년부터 1943년까지 기획원 총재.
- 26) 1931년 봉천특무기관장. 만주국 공작에 관여.
- 27) 3월사건, 10월사건을 기도하여 군파시즘 운동을 추진. 1936년 2·26사건 후 예비역이 된 후 민간 파시즘단체인 대일본청년당을 결성하여 통령을 지냄. 중일전쟁 당시에는 연대장으로 출정.
- 28) 1939년부터 1940년까지 육군대신. 1940년 육군대신을 단독으로 사직, 요나미 미즈마사[米内光政] 내각을 붕괴시켜 코노에 내각 성립의 단초를 만들.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지나파견군 총사령관.

[武藤章³¹⁾, 해군군인이 3명(오카 타카즈미[岡敬純]³²⁾, 시마다 시게타로오[嶋田繁太郎]³³⁾, 나가노 오사미[永野修身]³⁴⁾, 외교관이 4명(시게미즈 마모루[重光葵]³⁵⁾, 시라토리 토시오[白鳥敏夫]³⁶⁾, 토오고오 시게노리[東郷茂徳]³⁷⁾, 마쓰오카 요오스케[松岡洋右]³⁸⁾, 경제관료가 2명(가야 오키노리[賀屋興宣]³⁹⁾, 호시노 나오키[星野直樹]⁴⁰⁾, 민간우익이 1명(오오카와 슈우메이[大川周明]⁴¹⁾)이었다.

피고인의 구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육군군인이 많고, 태평양전쟁 개전시의 각료와 군당국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진주만공격의 책임을 중시한 맥아더 등 미국 측의 의향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
- 29) 대아시아주의자인 군인. 1937년부터 1938년까지 남경대학살 당시의 책임자에 해당하는 상해파견군 사령관 겸 중지나방면군 사령관.
 - 30) 1931년 육군대신으로서 만주사변을 추진. 1934년부터 1936년까지 관동군 사령관.
 - 31) 1937년 참모본부 작전과장으로서 대중국 침략 주장.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육군성 군무국장으로서 태평양전쟁 개전에 관여.
 - 32) 1940년부터 1944년까지 해군성 군무국장으로서 태평양전쟁 개전과 수행에 관여.
 - 33) 1941년부터 1944년까지 해군대신. 1944년 해군대신 겸 해군군령부 총장으로서 태평양전쟁 개전과 수행에 관여.
 - 34) 1935년 일본의 런던 해군군축회 탈퇴 당시의 수석대표. 1936년부터 1937년까지 해군대신. 1941년부터 1944년까지 해군군령부 총장으로서 태평양전쟁을 지도.
 - 35)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주소련 대사.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주영대사.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외무대신.
 - 36) 1938년 주이탈리아 대사가 되어 일독이 3국동맹의 체결을 주장.
 - 37) 1938년 주소련 대사. 1941년부터 1942년 태평양전쟁 개전 당시의 외무대신. 1945년 패전 당시의 외무대신.
 - 38) 1933년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당시의 수석전권대사. 1940년부터 1941년 외무대신으로서 일독이 3국동맹, 일소중립조약을 체결.
 - 39) 1937년부터 1938년까지 대장대신. 1939년부터 1941년까지 복지개발회사 총재. 1941년부터 1944년까지 토요요오 내각의 대장대신으로서 전시 재정정책과 중국에 대한 경제침략에 관여.
 - 40) 1936년 만주국 총무장관. 1940년 총력전연구소장. 1940년부터 1941년까지 기획원 총재. 1941년부터 1944년까지 토요요오 내각 서기관장.
 - 41) 대아시아주의를 주장한 민간파시스트 이데올로그. 3월사건, 5·15사건에 관여.

5_ 재판의 진행

1946년 5월 3일 ‘재판소’가 개정되었으며, 이날 오후에 기소장이 낭독되었다. 그런데 기소장이 낭독되는 가운데, 오오카와 피고인이 앞 좌석의 토오쥬오 피고인의 머리를 찰싹 때리는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당일 오전에도 파자마 차림으로 출정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거듭하였던 오오카와는 정신감정 결과 정신 이상이 인정되어 면소되었다.

기소장은 전문과 訴因 및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55개 항목에 이르는 소인은, 평화에 대한 죄(소인 1~36), 살인(소인 37~52), 통상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소인 53~55)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심은 평화에 대한 죄였으며, 이로써 1928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의 공동모의에 참가하고 위법한 전쟁을 준비·개시한 행위가 소추된 것이었다.

1946년 5월 6일 피고인의 죄상인부가 시작되려고 할 때, 키요세 이찌로오 변호인이 일어나, 웹 재판장에 대한 기피동의를 제출했다. 웹 재판장이 과거 뉴기니아에서의 일본군 전쟁범죄를 조사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보고한 적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검사의 역할을 한 적이 있다는 것 등이 기피의 이유였다. 5월 13일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동의도 제출되었다. ‘재판소’는 ‘포츠담선언’에 기초하여 설립되었지만, ‘포츠담선언’에서 말하는 전쟁범죄인이란 통상의 전쟁범죄인만을 가리킬 뿐이며, 당시까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았던 평화에 대한 죄나 인도에 대한 죄로 심판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사후법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 등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 동의는 모두 각하되었다.

이후 1947년 1월 31일까지 9개월에 이르는 검찰 측 입증이 진행되었다.⁴²⁾ 일본인 교육학자, 경제학자, 형법학자, 연극인, 기자, 기록영화감독, 군인 등이 증언하였으며, 전 만주국 황제인 푸이[溥儀]도 증언대에 섰다. 한편 검찰 측의

42) 1947년 12월 26일자로 제출된, 대표적인 A급전범 토오쥬오 히데키의 선서공술서는, 渡部昇一, 2006, 『東條英機 歴史の証言』, 祥傳社 참조.

입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중 2명이 사망하여 피고인은 25명으로 줄었다.

2월 24일부터는 변호인 측의 반증이 개시되었다. 그 반증은 전해의 6월 1일에 일본인 변호단 총회에서 결정된 방침(① 천황에게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 ② 국가를 변호할 것, ③ 전 2항의 범위 내에서 극력 개인을 변호할 것)에 따른 것이었다. 변호인 측의 반증 및 변호는 1948년 1월 12일까지 이어졌다.

1948년 1월 12일부터 검찰 측의 반박 입증, 1월 30일부터 변호인 측의 재반증,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검찰측의 최종 논고,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변호인 측 최종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검찰 측의 최종의견 진술을 거쳐 4월 16일에 심리가 종료되었다.

6. 판결

1948년 11월 4일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부터 1주일간에 걸쳐 판결문이 낭독되었으며, 11월 12일에 이르러 형이 선고되었다.

판결에서는, 우선 '재판소'는 「헌장」에 형식적으로 구속되며, '평화에 대한 죄' 등을 정한 「헌장」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명기되었다. 다음으로, 55개의 소인 중 10개의 소인만이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각하되었다. 그 10개의 소인 중 8개는 '평화에 대한 죄'에 속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2개는 '통상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속하는 것이었다. 당초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기소된 살인에 속하는 소인은 모두 각하되거나 무시되었다.

판결은, 검찰 측의 입증을 기본적으로 인정한 다음, 25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선고의 결과는 교수형이 7명(토오쥬오, 히로타, 이타가키, 마쯔이, 도이, 키무라, 무토오), 종신금고가 16명, 금고 20년이 1명(토오고오), 금고 7년이 1명(시게미쯔)이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5개의 소수의견이 제시되었다. 인도의 팔 판사,⁴³⁾ 프랑스의 베르나르 판사, 네덜란드의 뮐링 판사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

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웹 재판장과 필리핀의 야라닐라 판사는 판결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보충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밝혔다. 이들 소수의견은, 변호인 측의 낭독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서 낭독되지 않았으며, 속기록에도 게재되지 않았다.

소수의견의 주요 논점으로, 첫째, '재판소'가 「헌장」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베르나르 판사와 팔 판사는 심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천황의 책임에 관해서는, 베르나르 판사가 태평양전쟁 개전의 주요 책임자는 천황 히로히토[裕仁]인데, 다른 공범자가 대신 처벌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웹 재판장은 천황의 면책이 “모든 연합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되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보다 큰 책임이 있는 천황이 면책되었다는 점은 다른 피고인들의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원폭투하에 관해, 팔 판사는 연합국이 저지른 전쟁범죄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피고인 전원이 무죄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같은 아시아로부터 파견된 야라닐라 판사는 원폭의 사용은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아가 판결의 양형이 너무 관대하다고 주장하였다.

7. 판결 이후

판결이 선고된 후 변호인 측은 연합국최고사령관 맥아더에게 재심사를 신청하였다. 맥아더는 1948년 11월 22일 재판당사국인 11개국 대표를 모아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 자리에서 캐나다, 인도, 네덜란드 대표는 피고인들의 감형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8개국의 대표들은 원판결을 지지하였다. 이를 토대로 11월

43) 팔 판사의 판결은 특히 일본인들에 의해 주목되어 왔다. 이에 관해서는 東京裁判研究會, 1984, 『パール判決書；共同研究』上・下, 講談社；中島岳志, 2007, 『パール判事』, 白水社；太平洋戦争研究會, 2006, 『東京裁判「パール判決書」の眞實：なぜ日本無罪を主張したのか』, PHP研究所 참조. 또한 Elizabeth Kopelman, 1991, “Ideology and International Law ; The Dissent of the Indian Justice at the Tokyo War Crimes Trial,”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tics* 23도 참조.

24일 맥아더는 재심 신청을 각하하였으며, 1주일 이내에 형을 집행하도록 명령하였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11월 29일 미국 연방최고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여 형집행이 연기되었다. 미국 연방최고재판소는 12월 20일 연합국의 기관으로서 설치된 군사법정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원을 각하하였다.

교수형이 선고된 7명에 대한 형집행은 12월 23일 오전 0시 1분부터 33분까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처형 장소에는 미국·중국·영연방·소련의 대표가 입회하였다. 처형된 7명의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되지 않고 엄중한 감시 아래 화장된 후 바다에 뿌려졌다. 다만 그 일부가 몰래 유출되어, 1949년 5월 아타미[熱海] 교외에 있는 이즈[伊豆]산의 '興亞觀音'에 묻혔다가, 1960년 8월 쩌타[知多]반도의 산가네[三根]산정의 '殉國七土墓'에 묻혔다고 한다.⁴⁴⁾

III. '문명의 심판'론

연합국은, 독일에 대한 뉘른베르크재판(Nuremberg Trial)과 일본에 대한 토요요재판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정의 대 추축국의 부정의라고 하는 도식으로 정식화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 재판들을 '문명의 심판'으로 자리매김하고, 주도적인 전쟁지도자들을 심판하였다.

주도적인 전쟁지도자의 책임을 심판하는 것 자체에 대한 선례로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인 1919년의 베르사이유조약(The Versailles Treaty) 제 227조⁴⁵⁾가 있었다. 이 조항은 전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전쟁책임을 심판하

44) <http://ja.wikipedia.org/wiki/A%E7%B4%9A%E6%88%A6%E7%8A%AF#.E5.87.A6.E5.88.91.E5.BE.8C.E3.81.AB.E3.81.A4.E3.81.84.E3.81.A6> 참조.

는 특별법정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조약을 통해 연합국이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자국에 망명한 빌헬름 2세의 인도를 거부하여, 결국 특별법정은 설치되지 못하였다.⁴⁵⁾ 따라서 주도적인 전쟁지도자에 대한 재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은 새롭게 고안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의 패전 직전인 1945년 6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대표가 참가하여 개최된 런던회의는, 당시의 미국 대표인 잭슨(Robert H. Jacks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약도 선례도 관행도 존재하지 않았”던 재판을 위한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자리였다. 런던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각국이 제출한 준비서류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찌스 독일 등 파시즘 국가들이 저지른 잔학행위가 세계 각지에 걸쳐 자행되었으며, 게다가 유례 없이 대규모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그 잔학행위는, 전시의 이상심리에 수반되는 우발적인 사건이기보다는, 계획적·조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되었다. 그래서 잔학행위를 한 하급실행자뿐만 아니라, 그 잔학행위를 계획하고 지시한 주도적 지도자도 처벌되어 마땅하다는 것이 각국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문제는 법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재판하고 처벌하는가라는 것이었다. 프랑스 등 직접 침략당하고 점령당하여, 나찌스의 잔학행위의 피해를 입은 국가의 대표들은, 나찌스가 범죄자 집단이라는 것만 증명되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은 채 참전한 미국의 대표는, 침략전쟁의

45) http://avalon.law.yale.edu/subject_menus/versailles_menu.asp. 연합국은 국제도의 및 제 조약의 승고한 의무에 대해 고도의 침해를 범한 전 독일 황제 호엔촐레른가의 빌헬름 2세를 공식적으로 소추한다. / 그 피고인을 재판하기 위한 특별법정이 설치된다. 피고인에게는 변명이 보증된다. 법정에는 아래의 국가들에 의해 지명되는 5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 판결에 있어서는, 법정은 국제공법의 승고한 동기에 따라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되며, 국제도의와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가 참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심결에 부합하는 처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연합국은 네덜란드 정부에 대해 재판에 회부될 수 있도록 전 황제를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

46) 日暮吉延, 2002, 『東京裁判の國際關係；國際政治における權力と規範』, 木鐸社, 31쪽 이하 참조.

계획·실행이 원래 국제법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주장이 관철되었고, 그래서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가 등장하게 되었다.⁴⁷⁾ 그때까지 국제사회에서는 침략전쟁이 위법이라는 생각은 널리 퍼져 있었지만, 그것이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고 있지 않았다. 침략전쟁의 계획·준비·개시·수행에 가담하였거나, 그것을 위해 공동모의한 행위를 '평화에 대한 죄'로서 정립함으로써, 위법한 침략전쟁을 한 국제법상의 형사책임은 침략당사국의 지도자 개인에게 지운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뉘른베르크재판에서는 물론이고, 토오쿄오재판에서도 관철되었다. 1946년 6월 4일에 이루어진 키넨 수석검사의 모두진술은 그 가장 두드러진 예이다. 키넨 수석검사는 그 모두진술에서, '현재와 미래의 전쟁은 과학의 발달에 따라 전 세계와 그 문명의 파멸을 초래하는 전면전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재판은 문명을 지키기 위해 장래의 전쟁을 예방 혹은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개인이 국가의 수뇌로서 공적인 자격으로 실행한 행위를 그 개인의 책임으로 심판한 선례는 없었다. 하지만, 침략전쟁을 일으켜 문명을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은 개인을 처형하는 것은, 전쟁의 예방과 문명의 존속을 위해서 아무래도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침략전쟁의 공동모의에 참가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차례로 조약들을 어기고 침략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행된 포로학대, 일반시민의 학살 등의 잔학행위도,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명령에 기초하는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문명의 심판'론을 설파하였다.⁴⁸⁾

토오쿄오재판의 판결은 결국 이 '문명의 심판'론의 법적 선언문서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된 '문명의 심판'론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⁴⁹⁾ 제11조에 의해 일본국이

47) 日暮吉延, 2002, 위의 책, 84쪽 이하 참조.

48) 赤澤史朗, 1989, 앞의 책, 28쪽.

49)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docs/19510908.T1E.html>.

‘재판소’의 재판을 수락함으로써, 일본에 의해 인정되었다. 그리고 1968년 11월 제23회 유엔총회에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⁵⁰⁾이 가결되고, 1970년 11월에 발효되어 평화에 대한 죄, 통상의 전쟁범죄, 그리고 인도에 대한 죄에 관해서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고, 영구히 그 범죄를 추급할 것이 선언됨으로써 국제사회에 의해 재확인되기에 이르렀다.

IV. ‘승자의 심판’론

반면, 토오쿄오재판이 ‘승자의 심판’으로서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비판은 재판이 이루어지던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먼저 법적인 비판⁵¹⁾으로서, ‘평화에 대한 죄’는 재판 이전의 국제법에서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서, 그 죄를 물어 심판하는 것은 사후입법에 의한 단죄가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947년 2월 24일 키요세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국가기관의 행동에 관해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부정한 것⁵²⁾은, 그러한 논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또한 재판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된 공모이론도 비판되었다. 원래 중세의 공동무고죄에서 출발하여 영미법의 특유한 법이론으로 자리잡은 공

50) <http://www1.umn.edu/humanrts/instree/1968b.htm>.

51) 이에 관해서는, 우선 高柳賢三, 2002, 『極東裁判と國際法』, 有斐閣(1948년 초판); Yoram Dinstein, & Mala Tabory, eds., 1996, *War Crimes in International Law*, The Hague, Bost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George Ginsburg, & V. N. Kudriavtsev eds., 1990, *The Nuremberg Trial and International Law*, Dordrecht : Nijhoff 참조.

52) 赤澤史朗, 1989, 앞의 책, 42쪽.

모를 인정하는 조건이 매우 느슨한 것이었다. 공모이론에 따르면, 그 성립을 위해서 상호간의 의사의 연락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연락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었으며, 공모자가 동시에 동일한 에서 회합할 필요도 없었고, 위법행위가 공동목적이면 그 수단에 관한 합의의 필요도 없었다. 게다가 그 합의의 존재의 증명은 간접적인 상황증거로부터 추인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다. 그래서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 사이에도 공동모의죄는 성립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모이론은 침략전쟁에 관여한 주도적 지도자들을 남김 없이 소추하는 데에는 매우 편리한 이론이었다. 또한 일본의 지배층 전체에게 일본의 이권이나 팽창에 관한 넓은 의미에서의 공통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지배층은 침략전쟁의 각각의 단계에서 전쟁수행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그룹으로 나뉘어 대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모이론에 의해 그들을 하나의 범죄 아래 심판하는 것은 패전 전의 일본의 복잡한 정책결정의 구조와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파악하는 것으로서 비판될 소지가 있었다. 키요세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만주사변', '지나사변', '대동아전쟁'은 발생원인이 다르고, 일관된 계획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나아가 형평의 관점에서도 재판은 비판되었다. 재판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미국의 원폭투하였다. 변호인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투하는, 군사시설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비전투원의 대량살육을 노린 것으로서, 「헤이그육전조약(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⁵³⁾에서 정한 통상의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그러한 원폭투하 이후의 시기에는 일본은 연합국에 대해 보복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토오쿄오재판의 '승자의 심판'론을 보다 강력한 주장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상의 문제점⁵⁴⁾이었다. 토오쿄오재판은 우선

53) <http://www1.umn.edu/humanrts/instree/hague-convention-1907.html>.

54) 이에 관해서는, 우선 Richard H. Minear, 1971, *Victors' Justice : The Tokyo*

연합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판사와 검사는 미·영·중·소 등 11개국의 연합국으로부터 임명되었다. 일본은 물론이고, 중립국으로부터도 판사와 검사는 선임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일본군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아시아국가들이야말로 구미계 국가들의 수습 배에 달하는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판사와 검사 각각 11명 중 아시아인은 각각 겨우 3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아가 토오쿄오재판은 연합국 중에서도 특히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재판소’는 미국의 주도 아래, 구체적으로는 연합국최고사령관 맥아더의 주도적인 지휘 아래 설치되었다. 이것은 뉘른베르크재판과도 대비되는 것이다. 뉘른베르크재판에서는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이 평등한 권한을 가지고 참가한 데 대해, 토오쿄오재판에서는 미국 한 나라의 힘이 우월하였다. 뉘른베르크재판에서는 위의 4개국이 피고소추의 결정권을 가지는 수석검사를 한 사람씩 파견하였지만, 토오쿄오재판의 수석검사는 맥아더가 임명하는 한 사람뿐이었으며, 다른 연합국들은 참여검사를 파견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주도는 미국의 점령정책에 따른 토오쿄오재판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왜곡은 천황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을 면책한 것이었다. 천황 히로히토는 대일본제국의 주권자였다. 법적으로는 천황의 의지 없이는 일본은 전쟁을 시작할 수 없었으며, 종전의 결정에도 천황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천황은 1931년부터 1945년까지에 이르는 15년 전쟁에서 일관되게 정책결정에 관여한 유일한 존재였다.⁵⁵⁾ 따라서 천황을 기소하거나 적어도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세우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점령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일본을 아시아의 안정적인 우호세력으로

War Crimes Tri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リチャード・H. マイニア, 安藤仁介 譯, 1998, 『東京裁判：勝者の裁き』, 福村出版); 日暮吉延, 2002, 앞의 책 참조.

55)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에 관해서는 千本秀樹, 1990, 『天皇制の侵略責任と戦後責任』, 青木書店; 井上清, 1991, 『天皇の戦争責任』, 岩波書店; 山田朗, 1994, 『大元帥 昭和天皇』, 新日本出版社; Peter, Li, 2003, “Hirohito’s War Crimes Responsibility: The Unrepentant Emperor,” *Human Rights Review* 4-2 참조.

확보하기 위해, 천황제는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맥아더는 1946년 1월 25일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전문에서, “과거 10년간 일본제국의 정치결과와 천황을 다소라도 연결지우는 명확한 활동에 관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증거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히로히토의 전범기소에 반대하면서, 그 논거로서 “만일 천황을 재판하게 된다면 …… 틀림없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격렬한 동요가 일어날 것이며, 그 반향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백만의 군대가 필요하게 될 것이며, 그 군대를 무기한 주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아마도 수십만에 이르는 행정사무관을 모집하여 파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⁵⁶⁾ 그리고 토오쿄오재판의 수석검사 키넨은, 천황을 소추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환문하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점령정책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재판이 노골적으로 왜곡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토오쿄오재판은 분명 정치재판이었다.

게다가 미국에 의한 토오쿄오재판의 왜곡은 재판 이후에도 이어졌다. 7명의 A급전범이 처형된 다음 날인 1948년 12월 24일, 맥아더는 키시 노부스케 [岸信介], 코다마 요시오 [児玉譽士夫] 등 A급전범 용의자 17명을 스가모 [巢鴨] 감옥으로부터 석방하고, 12월 25일에는 오오카와 슈우메이 외 1명을 석방하여 A급전범 용의자 모두를 석방하였다. 미소 간의 냉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A급전범재판을 종결시켜버린 것이다. 이후 이른바 ‘역코스’의 과정에서 키시 등은 미국에 의지하여 재부상하였다. 그리하여 재판 종결로부터 12년 뒤인 1960년 「미일안보조약」의 개정 당시의 수상은 키시였으며,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채결을 한 중의원 의장은 토오쿄오재판 변호단의 부단장이었던 키요세였다.

이러한 문제상황은, 토오쿄오재판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일본에서 ‘승자의 심판’론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패전의 충격에

56) 로버트 E. 워드, 1987, 「戰時中の對日占領計劃」, 坂本義和他 編, 『日本占領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65~66쪽.

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토오쿄오재판 직후의 일본인들에게, 토오쿄오재판은 “연합국의 위선을 더할 나위 없이 잘 드러내는 쇼”로서 받아들여졌고, ‘이기면 장군’이라는 식의 냉소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악당’ 토오쿄오에게 전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심리적인 제단”으로서도 받아들여졌다.⁵⁷⁾ 그들은 한편으로 토오쿄오재판의 위선에 편승하여 토오쿄오 등에게 책임을 전속시키고 동시에 그 위선을 비난함으로써, 전쟁의 양당사자 모두를 객체화시켜 규탄할 수 있는 무책임의 공간 속에서 안락함을 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일본의 전쟁책임은, 연합국에 대한 보다 정확하게는 미국에 대한 책임으로 축소되어, ‘승자의 심판’인 토오쿄오재판 속에 봉인됨으로써 사라졌다. 그리고 전쟁 이전의 식민지화와 침략에 대한 책임은 애당초 책임의 대상으로서 인식되지도 않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가져다준 특수경기에서부터 시작된 경제성장 속에서 ‘저팬 이즈 넘버원’이라는 갈채에 흥이 오른 일본인들은 더 이상 책임 전가의 대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의 공간을 비집고, 토오쿄오재판의 결과 교수형을 당한 7명의 A급전범은 다른 7명의 A급전범 옥사자들과 함께 1978년 10월에 ‘쇼오와[昭和]시대의 殉難者’로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되었다.⁵⁸⁾

일본 정부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재판소’의 재판을 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의 재확인을 의미하는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이 가결된 유엔총회에서는 끝내 기권하였으며, 결국 위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협약에 가입한 서독에서는 뉘른베르크의 원칙이 살아 있음에도, 일본에서는 토오쿄오재판의 원칙이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 ‘전후정치 총결산’을 내걸고 수상이 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가 1985년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⁵⁹⁾를 감행한 것은, 일

57) 大沼保昭, 2007, 『東京裁判, 戦争責任, 戦後責任』, 東信堂, 7쪽.

58)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板垣征四郎, 梅津美治郎, 木村兵太郎, 小磯國昭, 白鳥敏夫, 土肥原賢二, 東郷茂徳, 東條英機, 永野修身, 平沼騏一郎, 廣田弘毅, 松井石根, 松岡洋右, 武藤章.

본에서의 그와 같은 토오쿄오재판 부정의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기도 하였다.

토오쿄오재판의 부정은 1990년대로 2000년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1997년에 설립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납은 것'의 대명사로서 규탄한 것은 "舊敵國의 프로파간다를 그대로 사실로서 기술"하는 것이었다.⁶⁰⁾ 그 모임이 주장한 것은, 키요세가 토오쿄오재판 변호인 모두진술에서 외친 것처럼, '八紘一宇'는 유니버설 브러더후드이며 '皇道'는 인간존중의 사상이라는 것이었다. 이제 토오쿄오재판은 '왜곡'⁶¹⁾이고 '날조'⁶²⁾이며 '망령'⁶³⁾이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집권하였던 코이즈미 준이찌로오[小泉純一郎]가 매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것이었다.

V. 아시아를 통해 '보편'으로

토오쿄오재판은 '문명의 심판'이라고 주장되었지만, 그 '문명'은 '연합국의 문명', 보다 정확하게는 '미국의 문명'이었다. 토오쿄오재판은 '승자의 심판'이라고 비난되었지만, 그것은 태평양전쟁 패자의 논리일 뿐이었다. 양자 모두가

59) 『靖國神社公式参拝：緊急特集：政教分離のゆくえは』(ジュリスト；臨時増刊)，有斐閣，1985 참조.

60)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 趣意書」(http://www.tsukurukai.com/02_about_us/01_opinion.html).

61) 小堀桂一郎，2001，『さらば東京裁判史観；何が日本人の歴史観を歪めたのか』，PHP研究所 참조.

62) 北岡俊明・ディベート大學，2006，『東京裁判はでっちあげだった—ディベートからみた東京裁判』，總合法令出版 참조.

63) 原子昭三，2007，『東京裁判の亡霊を撃て；二十一世紀から見た大東亞戦争』，展轉社 참조.

‘보편’을 내걸었지만, 양자 모두가 ‘특수’의 굴레에 갇혀 있었으며, 양자 모두 조금은 그것을 알아채고 있었다. 토오쿄오재판의 법사학적 의미는 바로 그 ‘특수’끼리의 다툼 속에서 결락된 ‘보편’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대일본제국이 붕괴된 시점에서 일본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였던 중요한 이유는, 대만과 한반도의 식민지화에서 출발하여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까지 이어진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다. 15년전쟁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이 살상한 사람의 수에서도 초래한 물적 피해의 면에서도, 일본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은 아시아인들이었다.⁶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오쿄오재판은 사실상 미국의 점령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고, 전쟁 그 자체도 태평양전쟁, 다시 말해 ‘미일전쟁’으로서 받아들여졌다. 아시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아시아로부터의 판사·검사의 파견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식민지 종주국이기도 하였던 연합국 주도의 심판에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책임의 추궁은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토오쿄오재판 이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나찌스 독일에 의해 피해를 당한 주변국들이 끊임없이 책임추궁의 시선을 보내는 가운데, 전쟁책임 문제에 대한 엄한 태도의 관철을 통해 그들과의 우호관계를 구축함으로써만 부흥이 가능하였던 서독과 달리, 일본은 아시아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오히려 아시아와의 적대관계 속에서 부흥을 이루어냈다.⁶⁵⁾ 냉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과 빈곤에 시달린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⁶⁶⁾은 일본의 책임을 추궁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일본과 함께 미국의 진영에 속하였던 탓에 책임 추궁에 적극 나설 수도 없었다. 그래서 ‘문명의 심판’ 대 ‘승자의

64) 이 점에 대해서는 内海愛子, 2002, 『戦後補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ア』, 山川出版社 참조.

65) 전쟁책임에 관한 독일과 일본의 비교에 관해서는, 廣渡清吾, 1990, 『二つの戦後社会と法の間 日本と西ドイツ』, 大蔵省印刷局; 粟屋憲太郎 외, 1994, 『戦争責任・戦後責任 日本とドイツはどう違うか』, 朝日新聞社 참조.

66)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패전 후에도, 중국내전(~1949), 인도차이나전쟁(1946~1954), 한국전쟁(1950~1953), 베트남전쟁(1960~1975)으로 이어지면서, 30년간이나 전쟁이 계속되었다.

심판'이라고 하는, 토오쿄오재판을 둘러싼 '특수'끼리의 다툼은 그래도 이어질 수 있었다.

냉전의 종식은 바로 그 '특수'끼리의 다툼을 '보편'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규탄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 전면에 드러나게 된 아시아 지역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⁶⁷⁾은, 일본의 미국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일본의 '가해 일반'에 대한 책임으로, 토오쿄오재판으로부터 진정한 '문명의 심판'으로, 논의의 차원을 끌어올렸다.

이러한 아시아인들의 목소리는 일본인들에 의해서도 화답되었다. 자신들의 사고 속에서 결락되어 있던 아시아인들의 규탄에 충격을 받은 일본인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책임 추궁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그들이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아시아의 시각을 반영한 토오쿄오재판의 재미미에도 나섰다. 그 결과, 1995년 8월 15일 '중전 50주년'을 맞아 무라야마 토미이찌(村山富市) 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이래, 일본의 역대 총리들은 매년 8월 15일이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한다는 담화⁶⁸⁾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토오쿄오재판 '승자의 심판'론은 냉전 이후 아시아의 목소리가 응답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냉전 종식의 결과, 미국진영의 일부로 묶여 있던 일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시아의 목소리에 대한 일본의 반발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일본의 '승자의 심판'론이, 그 '승

67) 이에 관해서는, 우선 김창록, 2007,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35 ; 中國人戰爭被害賠償請求事件辯護團編, 2005, 『砂上の障壁－中國人戰後補償裁判10年の軌跡』, 日本評論社 참조.

68) 「戦後50周年の終戦記念日にあたって」(http://www.mofa.go.jp/mofaj/press/danwa/07/dmu_0815.html).

자'인 미국을 겨냥하기보다는, 새롭게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부각시키고 있는 아시아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9·11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파'의 일본은 패전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과시한 반면, 교과서문제와 영토문제 등과 관련해서 아시아에 대해서는 패전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⁶⁹⁾

이 지점에서 토오쿄오재판의 의미를 아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토오쿄오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국제질서가 아직도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토오쿄오재판은,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진행된 탓에, 법적으로도 국제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1945년 이전의 일본의 가해에 대한 책임문제가, '문명의 심판'과 '승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극히 특수화된 다툼 속에 유폐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 결과 '심판'되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해인,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가해의 문제는, 토오쿄오재판으로부터 결락되어 버렸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아시아에 대한 가해의 책임을 추궁하는 아시아의 목소리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주요 논거 중 하나가 토오쿄오재판 '승자의 심판'론이다. "일본에 대한 심판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잘못이 없었다"라는, 이 역시 아시아가 결락된 논리가, 아시아가 결락되어 있었던 토오쿄오재판을 매개로 아시아에 대해 디밀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와 일본의 이 뒤틀린 갈등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토오쿄오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일본에 의한 토오쿄오재판의 전면 부정은 아시아에 의해서도 비난되어야 한다. A급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이 참배하는 것은, 그 A급전범들이 자행한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초점이 토오쿄오재판의 A급전범에게 맞추어질 경우, 일본의 책임은 짧게는 태평

69) 9·11 이후의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加藤周一 外, 2002, 『暴力の連鎖を超えて』, 岩波書店 참조.

양전쟁 길게 잡아야 15년전쟁에 국한되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 특히 그 이전 19세기 말까지 거슬러올라가는 한반도에 대한 책임은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토오쿄오재판 '승자의 심판' 론이 끼어들게 될 빌미가 마련되게 된다. 그 결과 아시아와 일본이 '미국의 재판'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뒤틀린 장면이 연출되게 된다. 그 점에서 아시아로부터는 야스쿠니와 A급전범을 넘어선 문제의 제기가 필요하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이끈 천황과 천황제의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⁷⁰⁾ 살아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한반도인들의 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⁷¹⁾야말로 보다 중요한 것이다.

토오쿄오재판의 역사적 의의를 끌어안으면서도, 당시와 현재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궁하고 해결함으로써, '문명의 심판' 대 '승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토오쿄오재판을 둘러싼 '특수'끼리의 다툼을 진정 '보편적인 문명의 심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아시아 그리고 일본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70) 이에 관해서는 김창록, 2000, 「일본의 근현대 천황제에 관한 법사학적 고찰」, 『法史學研究』(韓國法史學會) 22 참조.

71) 무단합사 피해 한국인들이 일본국 및 야스쿠니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관해서는 <http://www.gun-gun.jp/index.htm> 참조.

참고문헌

- 김창록, 2000, 「일본의 근현대 천황제에 관한 법사학적 고찰」, 『法史學研究』(韓國法史學會) 22.
- 김창록, 2007,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35.
- 박원순, 1996,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 일본의 전쟁범죄 연구』, 한겨레신문사.
- 加藤周一 外, 2002, 『暴力の連鎖を超えて』, 岩波書店.
- 高柳賢三, 2002, 『極東裁判と國際法』, 有斐閣(1948년 초판).
- 廣渡清吾, 1990, 『二つの戦後社會と法の間 日本と西ドイツ』, 大藏省印刷局.
- 内海愛子, 2002, 『戦後補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ア』, 山川出版社.
- 大沼保昭, 2007, 『東京裁判, 戦争責任, 戦後責任』, 東信堂.
- 渡部昇一, 2006, 『東條英機, 歴史の証言』, 祥傳社.
- 東京裁判研究會, 1984, 『パール判決書 ; 共同研究』上・下, 講談社.
- 東京裁判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會, 1989, 『東京裁判ハンドブック』, 青木書店.
- ロバート E. ウォード, 1987, 「戦時中の對日占領計劃」, 坂本義和他 編, 『日本占領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 北岡俊明/ディベート大學, 2006, 『東京裁判はでっちあげだったーディベートからみた東京裁判』, 總合法令出版.
- 山田朗, 1994, 『大元帥 昭和天皇』, 新日本出版社.
- 小堀桂一郎, 2001, 『さらば東京裁判史觀 ; 何が日本人の歴史觀を歪めたのか』, PHP 研究所.
- 粟屋憲太郎 外, 2001, 『戦争責任・戦後責任 日本とドイツはどう違うか』, 朝日新聞社.
- 粟屋憲太郎, 2006, 『東京裁判への道』上・下, 講談社.
- 原子昭三, 2007, 『東京裁判の亡靈を撃て ; 二十一世紀から見た大東亞戦争』, 展轉社.
- 日暮吉延, 2002, 『東京裁判の國際關係 ; 國際政治における權力和規範』, 木鐸社.
- 日暮吉延, 2008, 『東京裁判』, 講談社.
- 赤澤史朗, 1989, 『東京裁判』, 岩波書店.
- 井上清, 1991, 『天皇の戦争責任』, 岩波書店.
- 朝日新聞社, 1995, 『東京裁判』上・下, 朝日新聞社.

中國人戰爭被害賠償請求事件辯護團 編, 2005, 『砂上の障壁－中國人戦後補償裁判10年の軌跡』, 日本評論社.

中島岳志, 2007, 『パール判事；東京裁判批判と絶対平和主義』, 白水社.

中村政則, 1992, 『戦後史と象徴天皇』, 岩波書店.

千本秀樹, 1990, 『天皇制の侵略責任と戦後責任』, 青木書店.

太平洋戦争研究会, 2006, 『東京裁判「パール判決書」の眞實；なぜ日本無罪を主張したのか』, PHP研究所.

『靖國神社公式参拝：緊急特集：政教分離のゆくえは』(ジュリスト；臨時増刊), 有斐閣, 1985.

Brackman, A. C., 1987, *The Other Nuremberg: The Untold Story of the Tokyo War Crimes Trials*,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

Dinstein, Yoram & Tabory, Mala eds., 1996, *War Crimes in International Law*, The Hague;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Ginsburg, George & Kudriavtsev, V. N. eds., 1990, *The Nuremberg Trial and International Law*, Dordrecht: Nijhoff.

Johnson, Galen Irvin, 1998, *Defending the Japanese Warlords: American Attorneys at the Tokyo War Crimes Trial 1946-1948*, Ann Arbor: University of Microfilms International.

Kopelman, Elizabeth, 1991, "Ideology and International Law; The Dissent of the Indian Justice at the Tokyo War Crimes Trial,"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tics* 23.

Li, Peter, 2003, "Hirohito's War Crimes Responsibility: The Unrepentant Emperor," *Human Rights Review* 4-2.

Minear, Richard H., 1971, *Victors' Justice: The Tokyo War Crimes Trial*, Princeton University Press(リチャード・H. マイニア・安藤仁介, 1998, 『東京裁判；勝者の裁き』, 福村出版).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 趣意書」(http://www.tsukurukai.com/02_about_us/01_opinion.html).

「戦後50周年の終戦記念日にあたって」(<http://www.mofa.go.jp/mofaj/press/>)

danwa/07/dmu_0815.html).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http://www.ibiblio.org/hyperwar/PTO/IMTFE/IMTFE-A5.html>).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http://avalon.law.yale.edu/imt/imtconst.asp>).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http://www1.umn.edu/humanrts/instree/1968b.htm>).

「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Hague IV)」(<http://www1.umn.edu/humanrts/instree/hague-convention-1907.html>).

「Instrument of Surrender」(<http://www.ndl.go.jp/constitution/e/etc/c05.html>).

「Potsdam Declaration」(<http://www.ndl.go.jp/constitution/e/etc/c06.html>).

「The Versailles Treaty」(http://avalon.law.yale.edu/subject_menus/versailles_menu.asp).

「Treaty of Peace with Japan」(<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docs/19510908.TIE.html>).

在韓國軍人軍屬裁判を支援する會(<http://www.gun-gun.jp/index.htm>).

[ABSTRACT]

A Legal Historical Study on the Tokyo Trial :
 “Justice of Victors” vs. “Justice of Civilization,” and Asia

Kim, Changrok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ombination between law and history and the perspective of Asia, this paper reveals the meaning of the Tokyo Trial, which remains as a blind spot of the righting wrongs of the past regarding Japanese imperialism, through positioning the Tokyo Trial in the context of “universality” including Asia.

This paper describes the entire picture of the Tokyo Trial by examining the acceptance of the Potsdam Declaration, Douglas MacArthur’s special declaration and the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judges, prosecutors and attorneys, the selection of the accused, the process, the verdict and the situation after the verdict.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two contradicting evaluations of the Tokyo Trial, i.e. the “Victor’s Justice” and the “Civilization’s Justice,” and points out that both of them are the struggles between “specialities.”

In conclusion, this paper made it clear that the first order of Asia and Japan is to change the “Victor’s Justice” and the “Civilization’s Justice” as the struggles between “specialities” into the “Universal Civilization’s Justice,” through questioning and settling the matter of Japan’s responsibility to Asia.

keywords

Tokyo Trial,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Civilization's Justice, Victor's Justice



대일전후보상소송과 국제인도법

박배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이전에 일본이 인근 국가들을 지배하고 또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개인들에게 입힌 여러 손해, 그 밖에 법적으로 청산하여야 할 문제를 대상으로 일본과 한국, 미국 등의 법정에서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다양한 종류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시간적 범위를 더 넓혀서 보면 전후에 일본이 취한 조치로서 국적 조항을 이유로 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시정을 구하거나 독가스탄의 유기와 방치 등의 문제에 관한 소송 등도 제기된 바 있다. 이른바 '대일전후보상소송'으로 불리는 소송들이다.

이들 소송은 당사자나 청구의 내용과 법적 쟁점이라는 점에서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논자에 따라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고 있다. 예컨대 원고인 피해자가 일본인인지 외국인인지, 피고가 일본국인지 민간기업인지, 국가로부터의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인지 단순한 행정소송인지, 국가

※ 투고일 2009년 6월 30일, 심사일 2009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4일.

의 배상 또는 보상의 근거가 국제법에 있는지 국내법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¹⁾ 크게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식민지 지배나 전쟁동원에 기인하는 소송과, 점령지 주민에 대한 일본군의 국제인도법 위반과 비인도적 행위에 기인하는 소송으로 나누면서, 구체적으로는 ① 한국인의 원호법 적용 청구소송, ② 강제노동에 동원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소송, ④ 일본군 점령지의 구연합국 포로와 민간억류자 손해배상소송, ⑤ 중국 주민의 강제연행, 남경학살, 731부대의 세균전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유형화하는 경우도 있다.²⁾ 한국인을 원고로 하는 소송에 한정하더라도 차별시정형의 원호관련 소송 및 피폭관련 소송과, 피해구제형의 징용소송, 군인·군속 소송, 근로정신대 소송, 일본군 ‘위안부’ 소송, BC급 전범 소송, 학살관련 소송, 우키시마마루 폭침관련 소송, 억류 소송, 야스쿠니 무단합사 소송, 독립지사·이산가족 소송 등의 분류가 있다.³⁾

‘전후보상소송’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각 소송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도 다양하다. 국내법적으로는, 민법상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행정법상의 국가무담책 등이 피해 구제를 가로막는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국제법을 이유로 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이 커다란 쟁점이 되어 왔다. 소송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일본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으며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국가무담책이라고 하는 국내법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국제법위반 여부와 더불어 국제법을 근거로 한 개인의 청구적격이 쟁점이 된 것이다. 그 밖에도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이라든지, 국제법이 일본 국내에서 직접적용성이나 자동집행성을 가지는지의 여부 등이 국제법적 쟁점으로 다투어졌다.⁴⁾

1) 西莖章, 2000, 「戦後補償訴訟の現在」, 『法學教室』第235號, 42쪽.

2) 高木喜孝, 2005, 「戦後補償裁判のいま」, 『法學セミナー』第608號, 42쪽.

3) 김창록, 2007,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35호, 349~350쪽.

일반적으로 “전후보상소송에서 국제법의 쟁점은 국제인도법에 기초한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의 성립여부에 집중된다”고 일컬어지고 있다.⁴⁾ 그리고 실제의 소송에서도 이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그러나 “국제인도법에 기초한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으며 오해를 초래하기 쉽다. 실제로 이 글에서 고찰의 대상이 되는 국제인도법 관련 ‘전후보상소송’의 판결을 보면 이른바 ‘개인청구권’으로 표현되는 법적 쟁점에 관하여 원고 측 주장과 피고 측 주장 및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해와 혼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국제인도법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상의 개인의 권리가 문제된 ‘전후보상소송’에서 ‘개인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룬 법적 쟁점에 관하여 어떤 오해와 혼란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검토를 통하여 국제인도법이 문제된 ‘전후보상소송’의 진정한 법적 쟁점을 명확한 형태로 제시하고 기존의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대일전후보상소송’ 또는 ‘전후보상소송’이라는 용어에 관한 약간의 해명을 첨언해 두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일전후보상소송’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거론되는 소송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의 손실을 填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일전후보상소송’으로 일컬어지는 일부의 소송은 확실히 ‘보상소송’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대일전후보상소송’으로 다루어지는 소송 중에는 ‘손해의 배상’이나 채권의 청구 등 통상적으로는 ‘보상소송’으로 부를 수 없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일전후보상소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즉, ‘대일전후보상소송’은 소송의 성질이 ‘보상’의 청구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4) 이 점에 관한 분석과 설명으로, 五十嵐正博, 2006, 「日本の「戦後補償訴訟」と国際法」, 『国際法外交雑誌』第105卷1號, 1~28쪽.

5) 高木喜孝, 2005, 「國際人道法とオランダ人捕虜・民間抑留者訴訟及びイギリス等舊連合國捕虜・民間抑留者訴訟—ハーグ條約の精神は冷戦後の現代に甦る」, 申惠丰·高木喜孝·永野貫太郎 編, 『戦後補償と國際人道法—個人の請求權をめぐる』, 東京: 明石書店, 31쪽.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일본 정부, 군대, 민간기업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입고 차별을 당한 사람들 또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국내법원에서 제기하는 청구를 총칭하는 용어이다.⁶⁾

“일본국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일본제국(일제)의 한반도 지배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받기 위한 소송”으로 ‘대일과거청산소송’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⁷⁾ 적절한 용어법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의 ‘대일과거청산소송’은 예컨대 연합국 포로나 중국인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대일전후보상소송’보다는 범위가 좁다.

II. 문제 사례

대일전후보상소송에서 국제인도법 위반을 이유로 한 개인청구권이 쟁점으로 제기된 사례는 매우 많아서⁸⁾ 이 글에서 모두 소개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이들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또 전문가의견서 등을 통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된 대표적인 사례만을 소개하고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6) 藤田는 ‘전후보상재판’을 “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정부와 군당국 또는 일본 기업이 행한 국내법·국제법 위반에 근거하여 자국민 그리고/또는 외국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전후에 그 보상을 구하여 일본의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고 적절한 정의로 생각되지만, 이 정의는 ‘전후보상소송’을 ‘제2차 세계대전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일제의 한반도 강점 피해의 구제를 청구하는 재판은 제외되게 된다. 藤田의 정의는 藤田久一, 2005, 『戰後補償の理論問題』, 『國際人權』 第5號, 2쪽(五十嵐, 2006, 앞의 글(주 4), 1쪽에서 인용).

7) 김창록, 2007, 앞의 글, 330쪽.

8)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1907년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 위반이 거론된 판례(하급심·상급심 판결 포함)가 40여 개, 1929년 또는 1949년 등의 ‘제네바협약’ 위반이 거론된 판례(하급심·상급심 판결 포함)가 20여 개 정도이다.

먼저 시베리아에 억류된 일본군의 강제노동 보상청구사건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하는 국제법적 근거에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개인청구권을 주장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글의 주제와도 관련하여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소개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영국 등 연합국 포로 및 민간억류자 배상청구사건과 네덜란드 포로 및 민간억류자 배상청구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판결이 내려진 사건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통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고 많은 주목을 받았다는 점에서 반드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원고가 된 사건으로, 국제인도법 위반에 근거한 개인의 청구권이 주장된 대표적인 사례도 소개하고자 한다.

1_ 시베리아 억류자 강제노동 보상청구사건

이 사건은 시베리아에서 소련의 포로로 억류되어 강제노동에 종사한 일본군 포로 출신자들이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⁹⁾(이하 ‘1949년 제네바 포로대우협약’이라 함) 제66조와 자국민 포로보상에 관한 관습국제법을 근거로 일본 정부에 대하여 포로로서의 대변잔고와 노동재해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1심 판결은 1989년 4월 18일 東京地方裁判所,¹⁰⁾ 2심판결은 1993년 3월 5일 東京高等裁判所¹¹⁾에서 있었으며, 상고심은 1997년 3월 13일 最高裁判所 제1小

9)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작성, 1950년 10월 21일 발효. 1966년 8월 16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217호). 1953년 10월 21일 일본 가입(조약 제25호). 대한민국에 관한 조약 정보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조약정보(<http://www.mofat.go.kr/state/treatylaw/treatyinformation/index.jsp>)를 이용하였으며(2007. 8. 9 방문), 일본에 관한 조약 정보는 大沼保昭 대표편집, 2007, 『國際條約集』, 東京: 有斐閣, 672쪽을 참조하였다.

10) 昭和56年(ワ)第4024號, 昭和56年(ワ)第3983號, 昭和57年(ワ)第731號, 昭和60年(ワ)第12166號, 損害賠償請求事件.

11) 平成元年(ネ)第1556號.

法廷의 결정으로 판단되었다.

이 사건 원고는 간바야시 기미야[神林共弥] 외 61인으로 대규모이다.

원고 중 이토 사다오[伊藤定雄]의 자인 이토 기쿠[伊藤キク]를 제외한 모든 사람 그리고 이미 사망한 이토 사다오 등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소련군에 의하여 포로로 구속당하여 소련 각지의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원고 중 우에노 하사시[上野久]는 군인 군속의 신분이 아니었으며 개척단원으로서 철수하던 중에 체포되어 1등병의 군인으로 취급됨으로써 포로 대우를 받았으며, 하야카와 테스야[早川鐵也] 역시 민간인이었지만 소련군에 체포된 이후에는 포로로서 취급되었다.

이들 원고들은 일본 귀국시까지 아라카와 코[荒川春香]와 니카이도 쓰나오[二階堂綱男]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련군의 감시하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였다. 원고 중 아라카와 코는 1945년 8월에 소련군이 중국 정부에 인도하여 귀국시까지 전범 용의로 수감되어 있었으며, 니카이도 쓰나오는 1948년 8월 이후에는 간첩용의로 조사를 받고 1949년에 교정노동 25년형을 선고받아 교정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판결에서는 원고 개개인의 피해 사실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소련 억류 일본인 포로의 대우 사실은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뒤 소련에 의하여 무장 해제된 일본군은 도보 행군으로 주요 도시에 집결한 뒤 약 2,000여 곳의 수용소에 분산 수용되어 강제노동에 종사하였다.

일본군 포로는 1,000명 단위의 작업 대대를 편성하여 수용소, 주택, 병영, 공장, 댐, 발전소, 운하 등의 건설이나 철도부설공사, 삼림 채벌, 벽돌과 석재의 생산과 운반 등의 작업을 하였다. 이들은 작업장 왕복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노동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작업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이 연장되고 급식의 양을 삭감당하였다.

급식은 기준량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되는 양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포로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하였다. 목

육을 할 기회는 없었으며 의복도 충분히 지급되지 않은 채 나무 침대 위에서 옷을 입은 채로 취침하였기 때문에 빈대·벼룩·이 등이 창궐하였으며 발진티푸스에 이환되어 사망한 사람도 많았다. 포로들은 영양부족에 따른 체력저하, 중노동으로 인한 피로, 빈대 등에 의한 수면부족, 동상이나 기타 상해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다가 다수가 사고로 죽기도 하였다. 그 결과 시베리아에 이송된 일본국 포로 약 70만 명 중에 6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생존자도 절, 수족 절단, 타박상, 동상, 발진티푸스, 황달, 각종 피부병과 만성 설사, 결핵 등으로 심신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았다. 소련이 아닌 연합군의 포로가 된 병사들은 거의 1946년에 일본으로 귀환하였지만 소련에 억류된 사람들의 귀환이 종료된 것은 1958년경이다.¹²⁾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청구 중 이 글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49년 제네바 포로대우협약 제66조¹³⁾와 제68조¹⁴⁾를 근거로,

12) 『判例タイムズ』第703號(1989. 9. 25), 72~73쪽.

13) “포로의 신분이 석방 또는 송환에 의하여 종료된 때에는 억류국은 포로의 신분이 종료한 때에 있어서의 포로의 대변잔고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포로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억류국의 권한 있는 장교가 서명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또한 포로가 소속된 국가에게 이익 보호국을 통하여 송환, 석방, 도주,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포로의 신분이 종료한 모든 포로에 관하여 적절한 모든 상세와 그들 포로의 대변잔고를 표시하는 일람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그 일람표는 1매마다 억류국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인증하여야 한다.

본조의 위의 어느 규정도 그 충돌 당사국 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는 포로의 신분이 종료한 때에 억류국으로부터 포로에게 지불할 대변잔고를 당해 포로에 대하여 지불할 책임을 진다.”

14) “제68조 노동에 의한 부상 또는 기타의 신체장해에 대한 포로의 보상청구는 이익 보호국을 통하여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억류국은 제54조에 따라 여하한 경우에도 부상 또는 신체장해에 대하여 그의 성질, 그것이 발생한 사정 및 이에 대하여 행한 의료상 또는 병원에서의 치료에 관한 명세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당해 포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는 억류국의 책임 있는 장교가 서명하고 또한 의료명세는 군의관이 증명한다.

제18조에 의하여 억류국이 압수한 개인용품, 금전 및 유가물로서 송환 시에 반환되지 않았던 것과 포로가 입은 손해로서 억류국 또는 그 기관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한 포로의 보상청구도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단, 전기의 개인용품으로서 포로가 포로의 신분에 있는 동안 그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억류국부담으로 현물보상을 하여야 한다.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강제노동에 근거한 대변잔고의 지불 및 노동으로 인한 부상과 신체 상해의 보상, 소련이 몰수한 개인용품과 금전 및 그 밖의 유가물로서 송환시에 반환되지 않은 것, 포로가 입은 손해 중 소련이나 그 기관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것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였다. 또 이른바 ‘자국민포로 보상의 원칙’이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억류 중의 노동에 대한 임금, 억류중의 사망이나 상병, 노동재해에 대한 보상과 강제노동에 의한 물질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¹⁵⁾

2_ 시스카 한인 학살사건

1심 판결은 1995년 7월 27일 東京地方裁判所,¹⁶⁾ 항소심판결은 1996년 8월 7일 東京高等裁判所¹⁷⁾에서 있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¹⁸⁾

1945년 8월 17일 오전 9시경 사할린의 敷香郡¹⁹⁾ 敷香町 上敷香[가미시스카]에 있던 金慶白의 집에 일본군 헌병 한 명과 헌병이 인솔하는 경찰 여러 명이 찾아왔다. 헌병은 “스파이 대장 나와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쳤으며 헌관으로 나온 金慶白에게 “너는 스파이다. 너와 네 아들에게 좀 물어볼 일이 있으니 헌병대로 와라”고 하면서 金慶白을 체포하고 이어서 집안으로 들어가 그의 아들 金貞大도 체포하여 두 사람을 헌병 分隊에 연행하였다. 그 뒤 두 사람을

억류국은 여하한 경우에도 전기의 개인용품, 금전 또는 유가물이 포로에게 반환되지 않았던 이유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또 책임 있는 장교가 서명한 증명서를 포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의 사본 1통은 제123조에 정하는 중앙포로기구를 통하여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15) 『判例タイムズ』 第703號(1989. 9. 25), 73·75쪽.

16) 平成 7年(ワ) 第11465號, 上敷香韓人虐殺事件に基づく陳謝等請求事件.

17) 平成 7年(ネ) 第3568號.

18) 『判例タイムズ』 第894號(1996. 2. 15), 198쪽.

19) ‘敷香’는 일본명 樺太[가라후토]로 불렸던 지금의 사할린 내의 지명으로 ‘시스카’, ‘식카’, ‘시쿠카’ 등으로 발음된다. 1908년 일본 內務省의 고시에 의하여 공식 지명은 ‘시쿠카’로 정해졌지만 최근까지 ‘시스카’로 불리는 일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판 위키피디아(ja.wikipedia.org) 참조. 2008년 7월 10일 검색. 이 글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발음으로 보이는 ‘시스카’로 표기한다.

上敷齋 警察官 派出所 내로 이감하였다. 이후 오후 두 시와 다음 날 아침 사이의 시간에 두 사람을 유치장으로부터 별실로 데려가 권총으로 사살하고, 두 사람의 시체를 내부에 남겨 둔 채로 18일 오전에 경찰관이 파출소에 방화하였다. 이에 金慶白의 유족 자녀 세 사람이 위자료 3,000만 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국제법상의 손해배상책임도 청구의 법적 근거로 삼았다.

원고는 일본 헌병 등이 金慶白과 金貞大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고 혐의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학살한 것은 '陸戰의 法 및 慣習에 관한 협약'²⁰⁾(이하, '헤이그 육전협약'이라 함)에 부속된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²¹⁾(이하, '헤이그 육전규칙'이라 함) 제30조²¹⁾와 제46조²²⁾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위 規則²³⁾의 조항을 위반하는 교전당사자는, 배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교전당사자는 그 군

20) '陸戰의 法 및 慣習에 관한 협약'은 1899년 7월 29일에 헤이그 제2협약으로서 '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라는 이름으로 체결되었으며 1907년 헤이그 제4협약인 '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로 대체되었다(동 제4조). 두 협약에는 모두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Regulations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이 부속서로 포함되어 있다. 1899년 협약은 1900년 9월 4일에 발효하였으며 한국은 1903년 3월 17일에 가입서를 기탁한 바 있다. 본문 사건에서 문제가 된 협약은 1907년 협약으로서 동 협약은 1910년 1월 26일에 발효하였다. 일본은 1912년 11월 6일에 동 협약을 비준하고 같은 해 12월 13일에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같은 날 조약 제4호로서 국내에 공포하였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조약정보(<http://www.mofat.go.kr/state/treatylaw/treatyinformation/index.jsp>, 2008년 8월 24일 검색) 및 奧協直也 대표편집, 2008, 『國際條約集』, 東京: 有斐閣, 650쪽 참조.

21) "행위 중 체포된 간첩은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서는 처벌될 수 없다(A spy taken in the act shall not be punished without previous trial)."

22) "가문의 명예 및 권리, 개인의 생명 및 사유재산과 종교적 신념 및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은 몰수될 수 없다(Family honour and rights, the lives of persons, and private property, as well as religious convictions and practice, must be respected. Private property cannot be confiscated)."

23) '헤이그 육전규칙'을 말함.

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람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²⁴⁾는 규정이 헤이그 육전규칙 위반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국가가 국제인권법이나 인도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고 하는 관습국제법이 확립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3_ 영국 등 포로와 민간인 억류사건

이 사건은 일본과 교전한 연합국의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하여 1995년 2월에 원고 1인당 2만 2,000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동경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1심판결은 1998년 11월 26일 東京地方裁判所,²⁵⁾ 2심판결은 2002년 3월 27일 東京高等裁判所²⁶⁾에서 있었으며, 상고심은 2004년 3월 30일 最高裁判所 제3小法廷의 결정으로 판단되었다.

원고는 모두 7명으로서 일본군의 점령하에서 포로 또는 피억류 민간인의 신분으로 학대를 받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각각 ‘영국 포로수용소 생존자협회(Japanese Labor Camps Survivors Association, JLCSA)’, ‘영국 극동지역 민간억류자협회(Association of British Civilian Internees-Far East Region, ABCIFER)’, ‘미국 민간억류자 권리 센터(U.S. Center for Civilian Detainee Rights Inc., CFCIR)’, ‘일본의 전쟁배상을 요구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행동그룹(Australian Civilian Japanese War Reparation Action Group, JAPRAG)’, ‘일본에 의한 전쟁희생자 뉴질랜드 행동위원회(New

24) “A belligerent party which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e said Regulations shall, if the case demands, be liable to pay compensation. It shall be responsible for all acts committed by persons forming part of its armed forces.”

25) 사건번호 平成 7年(7)第1882號, 損害賠償請求事件.

26) 사건번호 平成 11年(ネ)第456號.

Zealand Action Committee of Ex-Japanese War Victims, EJOS' 등의 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²⁷⁾ 원고 각자의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 티서링턴(Arthur Titherington)²⁸⁾은 영국 병사로, 1942년 2월 2일에 싱가포르에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으며 광산 등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1945년 9월에 이르기까지 가혹한 조건에서 갠도 내 작업을 강요당하고 간수로부터 폭행당했으며 수용기간 중 식료품과 의약품의 부족으로 고통당하였다.

원고 타벤더(Sidney Tavender)는 '영국 포로수용소 생존자 협회' 회원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 영국 항공정보국 소속 군인으로서 1942년 1월경에 말레이시아에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다. 포로의 기간 동안 태국~버마 철도공사에서 강제노동을 하였으며 설사와 열대성 궤양,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소송 당시까지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원고 제임슨(Joan Jameson)은 영국인 여성으로, '영국 극동지역 민간억류자협회' 회원으로서 소송에 참가하였다. 1942년 7월에 14세의 나이로 팔렘방(Palembang) 여성 수용소에 연행되었으며 무더위 속에서 고무나무 벌채의 중노동에 종사하였고 말라리아·각기병·설사 등의 질환에 시달렸다. 일본군에 의한 강간의 공포로도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며 소송 현재까지도 그러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다.

원고 보딘(Roy Bodine)은 1942년 3월, 31세의 나이로 미국 육군의 치과의로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다. 카바나투안(Cabanatuan) 수용소에 수용된 이래 강제노동에 종사하였으며 구타 등의 폭행과 학대의 피해를 입었다.

원고 헤어(Gilbert Hair)는 미국 억류자 단체인 '미국 민간억류자 권리센터'의 대표로, 1942년 1월 생후 10개월의 상태에서 어머니와 함께 세인트 토마스 캠프(Saint Thomas Camp)에 억류되었다. 억류 당시의 비위생적인 생활

27) 高木喜孝, 2005, 앞의 글, 32~33, 49~50쪽.

28) 원고의 로마자 표기 성명은 藤田久一·鈴木五十三·永野貫太郎 編, 1999, 『戦争と個人の権利—戦後補償を求める舊くて新しい道』, 東京: 日本評論社, 104(193)쪽을 참조하였다.

과 영양실조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원고 리년버그(Herman Rynenberg)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민간인 억류단체의 대표로, 1942년 5월에 아버지와 함께 억류되었다.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강제노동에 종사하였다. 후유증으로 폐쇄공포증과 악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다.

원고 치만(Hendrik Zeeman)은 뉴질랜드 억류자단체의 대표로 1942년 7월, 13세의 나이로 억류되었다.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였으며 가혹한 처우로 죽음 직전에 이르는 경험을 하였다.²⁹⁾

이들 원고들은 위 피해사실들이 1929년 제네바 포로대우협약³⁰⁾ 제3조,³¹⁾ 10조 내지 15조,³²⁾ 27조³³⁾의 위반이며 헤이그 육전규칙 제4조 2항,³⁴⁾ 6조,³⁵⁾

29) 판결에 표시된 피해사실들이다. 내용은 ティザリントン戦後補償請求事件, 1999. 6. 1, 『判例タイムズ』 第998號, 95~98쪽.

30)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1929년 7월 27일, 제네바에서 체결되었으며 1931년 6월 19일에 발효하였다.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고 일본은 체결일에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았다.

31) "포로는 그들의 신체와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자는 여성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모든 고려로서 대우되어야 한다(Prisoners of war are entitled to respect for their persons and honour. Women shall be treated with all consideration due to their sex)." 1949년 제네바 포로대우협약 제14조를 참고하여 필자가 번역.

32) 제10조~제1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위생적이고 안전한 건물 또는 막사에 포로 수용. 난방과 조명의 제공 및 화재 예방조치 실시. 억류국의 포로수용부대와 동일한 조건의 침실 제공.

제11조 포로수용부대와 동등한 급식 제공, 포로 소시 음식의 조리 수단 제공, 충분한 음료수의 공급, 흡연의 허가, 음식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징벌의 금지.

제12조 억류국에 의한 의복 및 신발의 공급과 정기적인 교환 및 수선. 노동 장비의 지급. 포로를 위한 매점의 운용.

제13조 수용소의 청결과 건강의 보장, 전염병 예방 위생조치. 위생용품의 사용권. 목욕의 제공과 청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공급. 운동기구와 야외에 있을 수 있는 시설의 제공.

제14조 진료소 설치. 전염성 질환을 앓는 포로를 위한 격리병동의 설치. 치료비의 억류국 부담. 포로가 원하는 경우 질병의 종류와 기간 및 치료를 기재한 증명서의 발급. 억류국의 비용 부담으로 중증 환자와 수술 환자에 대한 균용 및 민간 의료기관 제공.

제15조 매달 정기적인 의료 검진.

- 33) “교전당사국은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지위의 사람을 제외하고, 그들의 계급과 능력에 따라 신체적으로 적합한 포로들을 노동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지위의 사람이 적절한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러한 노동을 찾아 주어야 한다. / 포로인 하사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연령, 성별, 계급 및 신체적 적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으로 적합한 포로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다. / 포로인 하사관들에게는 그들이 보수가 주어지는 일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감독의 일만을 시킬 수 있다. / 억류의 전 기간에 걸쳐 교전당사국은 노동 중 사고를 당한 포로에 대하여 억류국의 법령상 동일한 종류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수혜를 허용하도록 요청된다. 억류국의 법령상 이러한 법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포로에 관해서는, 억류국은 입법기관에 대하여 희생자인 포로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보상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다(Art. 27. Belligerents may employ as workmen prisoners of war who are physically fit, other than officers and persons of equivalent status, according to their rank and their ability. / Nevertheless, if officers or persons of equivalent status ask for suitable work, this shall be found for them as far as possible. / Non-commissioned officers who are prisoners of war may be compelled to undertake only supervisory work, unless they expressly request remunerative occupation. / During the whole period of captivity, belligerents are required to admit prisoners of war who are victims of accidents at work to the benefit of provisions applicable to workmen of the same category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detaining Power. As regards prisoners of war to whom these legal provisions could not be applied by reason of the legislation of that Power, the latter undertakes to recommend to its legislative body all proper measures for the equitable compensation of the victims).” 1949년 제네바 포로대우협약 49조 등을 참조하여 필자가 번역.
- 34) “포로는 인도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포로의 모든 개인적 휴대품은 무기, 말과 군용 서류를 제외하고는 그의 소유에 속한다(They must be humanely treated. / All their personal belongings, except arms, horses, and military papers, remain their property).” 1899년 규칙과 동일.
- 35) “장교를 제외하고, 국가는 포로를 그 계급과 직능에 따라 노무자로서 사역시킬 수 있다. 그 노무는 과도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군사작전과 관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포로는 공무, 사인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노역하는 것이 허가될 수 있다. / 국가를 위한 노역에 관하여는 동종의 노역에 종사하는 자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비율에 따라, 그런 군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행된 노무에 다른 비율로, 노임이 지급되어야 한다. / 공무 또는 사인을 위한 노역에 대하여는 군당국과 협의하여 조건이 정하여져야 한다. / 포로의 노임은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잔액은 석방시의 급양의 비용을 공제하고 포로에게 지급되어야 한다(The State may utilize the labour of prisoners of war according to their rank and aptitude, officers excepted. The tasks shall not be excessive and shall have no connection

7조³⁶⁾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네덜란드인 포로와 민간인 억류사건에 서와 마찬가지로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와 1929년 제네바협약에 근거하여 개인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4. 네덜란드 포로와 민간인 억류사건

1심판결은 1998년 11월 30일 東京地方裁判所,³⁷⁾ 2심판결은 2001년 10월 17일 東京高等裁判所³⁸⁾에서 있었으며, 상고심은 2004년 3월 30일 最高裁判所 제3小法廷의 결정으로 판단되었다.

원고는 익명 1명을 포함하여 라프레(Sjoerd Lapré) 등 8명이다.³⁹⁾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네덜란드 국적의 포로 4만 명, 민간인 10만

with the operations of the war. / Prisoners may be authorized to work for the public service, for private persons, or on their own account. / Work done for the State is paid for at the rates in force for work of a similar kind done by soldiers of the national army, or, if there are none in force, at a rate according to the work executed. / When the work is for other branches of the public service or for private persons the conditions are settled in agreement with the military authorities. / The wages of the prisoners shall go towards improving their position, and the balance shall be paid them on their release, after deducting the cost of their maintenance).” 1899년 규칙을 참조하여 필자가 번역.

36) “정부는 그 권력 내에 있는 포로를 급양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교전자 간의 특별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포로는 식량, 숙소와 피복에 관하여 포로를 사로잡은 정부의 군대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The Government into whose hands prisoners of war have fallen is charged with their maintenance. / In the absence of a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belligerents, prisoners of war shall be treated as regards board, lodging, and clothing on the same footing as the troops of the Government who captured them).”

37) 平成 6年(7)第1218號, 損害賠償請求事件.

38) 平成 11年(ネ)第247號.

39) 원고의 로마자 표기 성명은 藤田久一·鈴木五十三·永野貫太郎, 1999, 앞의 책, 118(179)쪽을 참조하였다.

명을 억류하였으며 민간인 억류자 중 1만 2,542명이 억류생활 중에 사망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들 억류자 중의 생존자와 그 유족 7만 6,000명을 회원으로 하여 1990년 4월에 설립된 것이 '대일도의배상청구재단(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⁴⁰⁾이며 원고는 모두 이 재단의 회원들이다. 이 재단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일본군에 의하여 포로 또는 민간인 억류자로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과 그 가족의 이익을 옹호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금전 배상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유엔사무총장이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일본의 책임을 호소하는 한편 1994년 1월 25일에 학대, 급양 및 의료불량, '위안부' 등의 피해 유형을 대표하는 8인의 원고를 선정하여 일본 국내법원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⁴¹⁾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1942년 1월 11일에 네덜란드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하고 네덜란드령인 보르네오(Borneo), 타르칸(Tarkan)섬, 발릭파판(Balikpapan), 수마트라(Sumatra), 티모르(Timor), 바타비아(Batavia) 등을 점령하였다. 이에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3월 9일에 항복하였다. 8월에 자바(Java)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어 8만 명의 포로가 수용되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태국~버마 간 철도 건설공사와 군용비행장 건설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또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네덜란드 주민 11만 명도 군억류소에 수용된 바 있다.⁴²⁾

수용 중에 네덜란드 포로와 민간인이 입은 주요 피해 사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되었다.

● 우선 포로의 사살, 참수와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살해가 있었다. 이른바 '죽음의 행진'이라고 하여 포로에게 장거리의 행군을 강제한 뒤 낙오자를 살해하는 일도 행하여졌다. 열대의 더위 속에서 가혹한 조건으로 강제노동을 시키면서도 식량과 의복의 지급이 극히 열악하여 수천 명이 병사하였다. 또 포로로부

40)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추궁하는 재단'이라는 의미의 명칭을 지닌 재단이나 일본에서의 통상적인 번역에 따라 이 글에서는 '대일도의배상청구재단'으로 표기하였다.

41) 高木喜孝, 2005, 앞의 글, 32쪽.

42) 藤田久一·鈴木五十三·永野貫太, 1999, 앞의 책, 26쪽.

터 정보를 캐고 자백을 얻기 위하여 구타를 비롯한 각종 고문이 자행되었으며 포로 중 도망자는 재판 없이 처형당했다. 이들 잔학행위와 전쟁범죄는 이미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판결 속에서 적시된 바와 같다.⁴³⁾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일본국을 상대로 원고 1인당 2만 2,000달러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1907년의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를 청구의 법적 근거로 삼았으며 재판에서의 쟁점도 동 조항의 해석 문제에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 위반이 주장된 국제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29년 제네바 포로대우협약 제3조, 10조 내지 15조 및 27조, 헤이그 육전규칙 제4조 2항, 6조 및 7조의 위반으로서 수용소에서의 대우불량 및 학대. 헤이그 육전규칙 제46조 1항 위반으로서, 억류 당시 15세에 지나지 않았던 원고를 가족으로부터 격리시켜 억류한 사실 및 억류시의 대우불량, 학대, 강제노동, 원고를 태국~버마 철도공사에 동원하기 위해 억류시키고 강제노동시킨 것, 비인도적 대우와 고문, 위안부로서 사역시킨 사실. 헤이그 육전규칙 제46조 1항 위반으로, 억류자가 소지한 돈을 징수한 사실 등이다.

Ⅲ. 재판상의 쟁점과 판결

1. 쟁점

국제인도법이 문제된 대일전후보상소송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이다.

43) 『判例タイムズ』第991號(1999. 3. 15), 264~268쪽.

1)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상의 의무의 상대방

먼저 언급하여야 할 쟁점은 국제인도법이라고 하는 국제법을 근거로 하여 개인이 직접 국가, 즉 일본을 상대로 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⁴⁴⁾ 위에서 소개한 판례에서 원고는 모두 자신들의 청구의 근거로 국제인도법상의 규정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규칙과 주장의 내용은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 글에서 소개한 사례에 한정해서 보면 우선 시스카 한인 학살사건(이하 '시스카사건'이라 함), '영국 등 포로 및 민간인 억류사건'(이하 '연합국민사건'이라 함), '네덜란드 포로 및 민간인 억류사건'(이하 '네덜란드인사건'이라 함)은 '일본'의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배상'이 청구된 사례이다.

시스카사건에서는 일본이 헤이그 육전규칙 제30조와 제4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되었다. 연합국민사건에서는 일본이 1929년 제네바 포로대우협약 제3조, 10조 내지 15조, 27조와 헤이그 육전규칙 제4조 2항, 6조, 7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되었다. 네덜란드인사건에서는 일본이 위반하였다고 주장된 국제인도법의 여러 조항들은 헤이그 육전규칙 제46조 1항이 추가된 것을 빼고는 연합국민사건에서와 동일하다. 그리고 이들 국제인도법의 여러 조항 위반에 관하여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규정 때문에 일본이 원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주장되었다.

그에 비하여 '시베리아 억류자 강제노동 보상청구사건'(이하, '시베리아 억류자사건'이라 함)은 '소련'의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일본의 '배상'이 청구됨과 동시에 소련이나 일본의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인도법상 포로에게 주어진 권리에 근거하여 일본의 '보상'이 청구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49년 제네바 포로대우협약 제66조와 제68조 등을 근거로 일본

44) 재판에서 문제가 된 국제인도법은 조약 또는 관습국제법으로 주장되었기 때문에 관습국제법의 성립 여부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졌지만, 이 문제는 이 글의 주제는 아니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정부의 협약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과 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은 국제인도법 위반의 주체, 배상청구인지 보상청구인지의 여부, 위반 주체와 배상 또는 보상 책임의 부담자 사이의 일치 여부 등의 점에서 위에서 말한 세 사건과는 다르다. 그러나 원고가 일본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규정에 두었다는 점에서는 위 세 사건과 동일하다.

원고의 청구 이유를 보면 재판의 쟁점은 일본 또는 소련의 국제인도법 위반이 있었는지의 여부라고 하는 사실 문제⁴⁵⁾와, 그것이 인정될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이 직접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하는 헤이그 육전규칙 제3조의 해석문제에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⁴⁶⁾ 실제 재판에서는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라고 하는 사실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나 판단은 없었다.⁴⁷⁾ 그 이유는 다른 쟁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원고의 패소가 결정된다면 그 밖의 쟁점에 관한 판단이 없이도 사건에 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재판의 특성 때문이다.

헤이그 육전규칙 제3조의 해석문제는 결국 동 조항이 규정한 의무의 상대방을 국가로 볼 것인지 개인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동 조항이 오로지 교전당사국이 다른 국가에 대하여 지는 책임만을 규정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국가책임법의 법리에 따라 국가는 개인에 대해서는 직접 국제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따라서 개인은 동 조항을 근거로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가 일본 국내

45) 물론, 시베리아어류자사건에서는 소련의 국제법위반을 이유로 하지 않는 '보상'의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

46)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헤이그 육전규칙 제3조의 규정을 포함한 국제인도법을 구성하는 여러 조약 규정들이 관습국제법으로도 성립되어 있었던지의 여부, 자국민포로 보상원칙의 관습법화 여부도 법적 쟁점이 되었지만 이 문제는 이 글의 직접적인 고찰과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47) 피해사실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보면 네덜란드인사건이 원고의 피해사실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申惠丰, 2005, 「國際人道法違反の被害者救済における法と正義—理論動向と展望—はしがきにかえて」, 申惠丰·高木喜孝·永野貫太郎 編, 『戦後補償と國際人道法—個人の請求權をめぐって』, 東京: 明石書店, 8쪽.

에서의 재판을 통하여 청구를 제기하는 원고들의 청구적격에 관하여 타당한지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이런 관점에서 주장을 전개하였다.

2)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재판규범성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쟁점은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가 일본의 국내법원에서 재판규범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원고는 개인으로서, 국제법이 정하는 국제적 절차에 따라 국제적인 법정에 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내 법원에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 법원이 원고의 청구의 근거가 되어 있는 국제법, 즉 국제인도법상의 여러 조항과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를 재판에서 직접 적용하여 재판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었다. 일본은 헌법 제9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편입 또는 일반적 수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특히 조약에 관해서는 헌법관행상 철저하게 일반적수용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⁴⁸⁾ 그러므로 일본 국내법으로 수용된 국제법, 즉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이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재판규범으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한 여러 조건에 관한 판단도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2_ 당사자의 주장

이 글에서 소개한 네 개의 사례를 포함하여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 간 주장이나 제시된 논리는 개개 사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사건 중에서 전문가 의견을 동원하여 가장 정치한 법적 논리의 대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연합국민사건을 중심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48) 山本草二, 1994, 『(新版)國際法』, 東京: 有斐閣, 104쪽.

1)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상의 의무의 상대방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상의 의무의 상대방이 국가인지 아니면 개인인지에 관하여 연합국민사건의 원고는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를 다음과 같은 성질의 규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동 조항은 헤이그 육전규칙이나 1929년 제네바 포로대우협약 위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한 자의 본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조항이라는 것이다.⁴⁹⁾ 원고가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성질을 이렇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개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조항인지의 여부는 동 조항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본건 해석에 적용될 국제법규칙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 조약법협약'이라 함)상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비엔나 조약법협약 제31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해석의 기본은 문리해석이다.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를 문리해석하면, 이는 헤이그 육전규칙을 위반한 교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 조항으로 국가 간의 배상을 의미하는 'reparation'이 아니라 주로 개인 간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금전배상을 의미하는 'compensa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동 조항을 패전국이 승전국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전시배상의 법리'의 틀 속에서 해석하면 패전국 국민은 사실상 승전국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어 조약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의미는 문리해석에 의한 해석만으로는 명확하지 않고 배상의 상대가 국가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므로 비엔나 조약법협약 제32조상의 해석의 보충적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조약의 준비작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는 제2차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서 1899년의 육전협약과 육전규칙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삽입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독일의 제안에 기초하여 채택된 조항이다. 독일이 제안한 조항은 우선 제1조에서 육전

49) 『判例タイムズ』第998號(1999. 6. 1), 98쪽.

규칙을 위반하여 중립인 사람을 침해한 교전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며 “교전당사자는 그 군대를 구성하는 인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제2조에서는 육전규칙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교전 상대방인 경우에는 배상 문제는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에 해결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과정에서 독일은 자신이 제안한 규정은 손해를 입은 개인이 장교나 병사에 귀속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독일의 제안은 중립국 국민과 적국 국민 사이에 배상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현재와 같은 표현으로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독일의 제안 취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이 전일 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므로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기초과정에 비추어 보면 동 조항은 헤이그 육전규칙 또는 1929년 제네바 포로대우협약의 위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은 당해 위반행위를 행한 개인의 본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⁵⁰⁾

피고인 일본 정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는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해석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제로서 국제법에 관한 일반론부터 전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제법은 1차적으로는 국가 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므로 개인의 생활관계나 권리의무관계를 국제법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권리 의무는 국가 간의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당해 국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 한정된다. 국가의 국제법위반에 의한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가해국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본국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 개인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을 통하여 구제되는 데 불과하다.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국제적인 절차에 따라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를 보면, 조약의 문언상으로는 헤이그

50) 『判例タイムズ』第998號(1999. 6. 1), 98~99쪽.

육전규칙을 위반한 교전당사국이 책임을 질 상대방이나 책임의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 국가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 조항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가 1949년의 네 개 제네바협약에 관하여 간행한 주석서에서 1949년 제네바 포로대우협약 제51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석을 붙이고 있다. 즉 “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이러한 물질적 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반행위를 행한 자의 본국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어도 현재의 법률제도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한 청구는 국가만이 타국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주석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에 관해서도 국가 간의 책임을 규정한 조항으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를 근거로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실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기초과정을 보더라도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구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화하고 실현할 것인지에 관한 심의는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⁵¹⁾

2)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재판규범성

일본 국내법원에서 국제인도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대립되었다. 이른바 조약의 직접적용을 위한 요건의 문제이다.

연합국민사건에서 원고는 일본의 국내법원에서 조약이 직접적용될 수 있는 요건으로 조약체결당사국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 전제에 입각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선,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는 국내에서의 직접적용가능성에 관하여 명

51) 『判例タイムズ』第998號(1999. 6. 1), 101~102쪽.

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약의 문언이나 기초과정에서 조약의 국내적 직접 적용가능성이 명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는 국내적인 직접적용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기초과정을 보면 동 조항을 기초한 사람은 헤이그 육전규칙 또는 1929년 제네바 포로대우협약 위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이 국내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가 국내적인 훈령이라고 하는 별개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헤이그 육전규칙 속에 규정되지 않고 헤이그 육전협약 속에 규정되었다는 사실 역시 국내적인 입법 활동 없이 국가가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1952년 4월 9일자 독일 뮌스터 행정항소법원 판결이나 1921년 3월 3일자 벨기에 破毀院(파훼원) 판결, 1921년 2월 15일자 폴란드 대법원판결, 1922년 3월 17일자 헝가리 대법원 판결 등의 국내 판결도 헤이그 육전규칙이 국내에서 직접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⁵²⁾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일본 정부는 우선 조약이 국내에서 직접적용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나누었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조약에 관하여 사인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국내법원에서 직접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당사국의 의사를 들었다. 객관적 요건으로는 조약의 규정상 사인의 권리 의무가 명백하고 확정적이며 완전하고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령의 제정이 없더라도 국내적으로 직접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직접적용 가능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헤이그 육전협약이 체결된 이래 제3조에 기초하여 국가가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실행한 예가 없으므로 당사국이 동 조항을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조약의 직접적용이 가능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 다음으로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에는 헤이그 육전규칙을 위반한 교전당사국이 책임을 지는 상대방이나 당해 책임의 이행방법에

52) 『判例タイムズ』第998號(1999. 6. 1), 100쪽.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사인의 권리 의무가 명백하고 확정적이며 완전하고도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도 결여되어 있다.⁵³⁾

3. 판결

연합국민사건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거의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은 국제법의 법적 성격과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및 국가책임의 법리에 관한 일반론을 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그 논리는 피고의 주장과 동일하다. 국제법은 국가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며 국제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만이 가지고 국가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본국만이 가해국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구제는 국제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통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책임의 법리가 헤이그 육전협약이 체결될 당시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다.⁵⁴⁾

나아가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에 근거하여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認容한 실례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근거지우기 위하여 판결은 원고가 원용한 판결을 비롯하여 다수의 판결을 검토하면서 이들 판례는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가 국가의 절대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동 조항에 근거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⁵⁵⁾

판결은 또한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기초과정을 자세하게 고찰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채택된 조문에 독일의 제안과는 달리 헤이그 육전규칙을 위반한 교전당사국이 책임을 질 상대방에 관한 기술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지적

53) 『判例タイムズ』第998號(1999. 6. 1), 102쪽.

54) 『判例タイムズ』第998號(1999. 6. 1), 103쪽.

55) 『判例タイムズ』第998號(1999. 6. 1), 103~104쪽.

하고, 개인이 입은 손해의 구제에 관하여 구체화 및 실현방법에 관한 심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판례는 또한 피고가 원용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주석서의 내용을 판결 속에서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1977년의 제네바협약 제1 추가의정서 제91조의 규정과 그에 대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주석을 소개하면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통상적으로는 분쟁당사국 또는 그 국민”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⁵⁶⁾

판례는 이러한 이상의 고찰을 근거로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는 문리해석 뿐만 아니라 사후 실행이나 기초과정을 고려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헤이그 육전규칙 또는 1929년 제네바 포로대우협약을 위반한 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의 위 위반행위를 한 자가 소속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헤이그 육전규칙을 위반한 자가 소속된 국가가 위 위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이 소속된 국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⁵⁷⁾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연합국민사건에서의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은 네덜란드인사건 판결에 거의 그대로 되풀이되었다. 그리고 시스카사건과 시베리아억류자사건 판결 역시 위 연합국민사건 판결과 그 취지나 결론이 다르지 않았다.

시스카사건에서 東京地方裁判所는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는 “교전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한 것이지만 이것도 교정당사국 간의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고, 국가가 교전당사국의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⁵⁸⁾ 위 연합국민사건에 비하여 고찰과 분석의 심도는 매우 낮지만 결론은 완전히 동일하다.

시베리아억류자사건에서도 東京地方裁判所가 이 글의 고찰 쟁점에 관하여 판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6) 『判例タイムズ』第998號(1999. 6. 1), 105쪽.

57) 『判例タイムズ』第998號(1999. 6. 1), 107쪽.

58) 『判例タイムズ』第894號(1996. 2. 15), 201쪽.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국제법상의 법주체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국제법이 개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개인이 속한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개인이 그가 속한 국가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을 구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직접 실현하기 위한 제도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을 개인은 가지지 않는다.

포로의 인도적 취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포로법규는 직접적으로는 포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는 포로 소속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포로의 포획국 또는 억류국에 대하여 포로의 취급에 관하여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그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보호국의 중개·관여, 중립국에 설치된 포로정보중앙국 또는 중앙포로정보국의 정보수집·전달…… 등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국제법상 포로인 개인이 포획국 또는 억류국에 대하여 포로법규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개인이 국제법상 향수하는 권리 내지 이익은 그 소속국의 외교보호권 행사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실현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권리 내지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임의의 이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개인의 소속국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국내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⁵⁹⁾

연합국민사건 판결 결론과 동일한 판결로서,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에게 직접 구제의 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해의 구제는 본국을 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제인도법 위반이 문제된 대일전후보상소송에서는 이른바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의 논리와, 개인은 국제법의 평면에서는 국가에 매몰되

59) 『判例タイムズ』第703號(1989. 9. 25), 87쪽.

어 보이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국가책임법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조약의 국내적인 직접적용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IV. 쟁점과 판결의 검토

1_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이 글에서 고찰한 국제인도법 위반 관련 대일전후보상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정부는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문제 삼았다. 개인에게는 국제법 주체성이 없으므로 본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경유하지 않고 국제법에 근거하여 개인이 직접 타국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로 사용되었다. 피고의 그러한 주장을 이론적으로 잘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 네덜란드인사건 및 연합국민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고테라 아키라[小寺彰] 교수의 의견서이다.

동 의견서에서 고테라 교수는 ‘국제법상의 개인의 지위’라는 제하에 국제법이 무엇보다도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편익을 받게 되는 경우와 국제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구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예로 우호통상항해조약상의 개인의 지위를 들고 있다. 즉, 우호통상항해조약에 의하여 개인이 국제법상의 보호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국제법상의 편익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을 국제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⁶⁰⁾ 나아가 조약에 의하여 개인이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조약이 개인에게 권리를

60) 小寺彰, 「意見書」, 藤田久一·鈴木五十三·永野貫太郎 編, 1999, 『戦争と個人の權利—戦後補償を求める舊くて新しい道』, 東京: 日本評論社, 83~84쪽.

부여할 뿐만 아니라 권리의 실현에 관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면서, 그런 조약의 예는 극히 드물다고 하고 있다.⁶¹⁾

고테라 교수는 국제법상의 개인의 권리 문제를 개인의 국제법주체성과 연결시켜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인이 국제법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을 개인이 국제법주체성을 가진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에게 국제법상의 구제절차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국제법상의 주체성이 있다고 흔히 일컬어진다.”⁶²⁾ 고테라 교수의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은 ‘권리’를 가질 수 없고,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되면 개인에게 국제법에 의하여 권리가 부여될 뿐 아니라 권리의 실현에 관한 국제법상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은 국제법이 규정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관점에서 보면 고테라 교수의 설명은 이상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한 국제법의 학설 상황은 대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넓은 범위에서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인정하는 학설은 “국제법이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인정한다(스기하라[杉原] 교수는 ‘실체법기준설’로 부른다).⁶³⁾ 그러나 이는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은 아니고 오히려 소수설에 속한다. 좁은 범위에서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인정하는 학설은 국제법이 개인의 권리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국제적 절차가 보장된 경우에만 개인은 국제법주체성을 가진다고 보며(스기하라 교수는 ‘국제적 절차설’로 부른다) 이러한 학설이 통설로 인정되고 있다.⁶⁴⁾ 고테라 교수 역시 이러한 통설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1) 小寺彰, 1999, 위의 글, 84~85쪽.

62) 小寺彰, 1999, 앞의 글, 85쪽.

63) 杉原高嶺, 2008, 『國際法學講義』, 東京: 有斐閣, 40쪽.

64) 杉原高嶺, 2008, 위의 책, 42쪽.

그러나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에 관한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는 별개로, 국제인도법 위반이 문제된 대일전후보상소송에서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논거로 하여 원고의 청구적격을 부정한 것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국가가, 고테라 교수의 표현을 빌면 개인의 ‘편익’을 조약에 규정하면서, 반드시 국제적인 절차를 통하여 그 ‘편익’을 실현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그러한 ‘편익’의 실현을 국내적 절차에 맡길 자유를 지닌다.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에 관한 국제판례로서 연합국민사건 등의 소송에서도 원용된⁶⁵⁾ ‘단치히 법원 관할권 사건’의 권고적 의견에서도, 일반적으로 국제협정은 개인의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지 못하지만 당사국의 의사로 “국내 법원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는(enforceable)”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⁶⁶⁾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실현 방법에 관한 조약 당사국의 의사를 살피지 않고 국제적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헤이그 육전규칙 및 1929년 제네바 포로대우협약이 제공 하는 개인에 대한 ‘편익’은 ‘권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일본의 국내 법원에서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 글의 이와 같은 결론을 지지하는 학설도 소수설이기는 하지만 존재한다. 스키하라 교수는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에 관한 실체법기준설과 국제적 절차설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제법이 규정하는 실체적 권리의 의무가 국내법을 매개하는 일 없이 직접적으로 국내법원에서 적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권리 의무의 직접적 귀속성을 인정하여 법주체성을 긍정”하여야 한다

65) 『判例タイムズ』第998號(1999. 6. 1), 98쪽.

66)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Danzig case, PCIJ, Series B, No. 15 (1928), 17-18: “It may be readily admitted that, according to a well established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e Beamtenabkommen, being an international agreement, cannot, as such, create direct rights and obligations for private individuals. But it cannot be disputed that the very object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be the adoption by the Parties of some definite rules creating individu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enforceable by the national courts.”

고 주장하고 자신의 학설을 ‘절차기준설’로 부르고 있다.⁶⁷⁾

아무튼,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는 별개로, 국제인도법상의 규정이 문제된 대일전후보상소송을 개인이 국제적인 법정에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내 법원에 제기한 이상, 문제는 국제인도법상 개인에게 제공된 ‘편익’이 국내법원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는 ‘권리’인지의 여부이다. 이 문제는 국제법상의 일반이론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 이 문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며, 구체적으로는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의 국내 법원에서의 직접적용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조약을 국내법원에서 직접적용하는 것에 관한 일본의 헌법 규정이나 사법 관행을 고찰함이 없이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에 관한 일반적 논의로 이 글에서 문제된 사건 원고들의 청구적격을 부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모두 문제가 있다. 국제인도법에 근거하여 개인이 일본을 상대로 일본 국내법원에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의 문제로 논의되기보다는 일본 국내법원에서의 조약(및 관습국제법)의 직접적용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731부대·남경학살 손해배상청구사건⁶⁸⁾과 관련하여 제출된 아베 고키[阿部浩己] 교수의 의견서이다.⁶⁹⁾

2.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해석

국제인도법 관련 대일전후보상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조약의 직접적용성 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전제로서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규정이 개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국가에 대한 책임만을 규정한 것

67) 杉原高嶺, 2008, 앞의 책, 43~44쪽.

68) 平成 7年(ワ)第15636號; 『判例タイムズ』第1028號(2000. 7. 1), 92~137쪽.

69) 阿部浩己, 2005, 「日本の國內裁判所におけるハーグ條約3條の適用—七三一・南京虐殺損害賠償請求事件」, 申惠丰·高木喜孝·永野貫太郎 編, 『戦後補償と國際人道法—個人の請求權をめぐって』, 東京: 明石書店, 173~209쪽.

인지에 관한 판결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소개한 판결 내용은 피고인 일본 정부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한 판단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은 동 협약의 적용 대상을 동 협약 발효 후 국가가 체결한 조약에 한정하고 있다.⁷⁰⁾ 그러나 동 협약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협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조약이 복종해야 하는 이 협약상의 규칙”, 다시 말해서 동 협약과 내용이 동일한 관습국제법상의 규칙은 동 협약 발효 이전의 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⁷¹⁾ 그리고 동 협약이 ‘조약법의 법전화’를 성취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⁷²⁾ 그러므로 동 협약 제31조와 제32조의 조약 해석 규칙은 그것이 관습국제법의 법전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 발효 이전의 조약인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와 헤이그 육전규칙이나 1929년 제네바 포로대우협약상의 규정 해석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관습국제법은 조약 해석에 관하여 엄밀한 규칙을 확립시키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지만⁷³⁾ 적어도 조약 해석에 관한 다양한 주장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조문으로서⁷⁴⁾ 조약 해석에 관한 비엔나 조약법협약 제31조와 제32조의 규정은 이 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나 그 밖의 국제인도법상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적용되어도 좋을 것이다.

비엔나 조약법협약의 규정에 따르면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며(제31조) 그러한 해석이 의미의 모호성이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조약 체결을 위한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를 사용할 수 없다(제32조). 그러나 실제로는 조약의 해석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통상적인 조약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명백히

7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조.

7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조.

7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전문.

73) T. O. Elias, 1974, *The Modern Law of Treaties*, Leiden : A.W. Sijthoff, p. 71.

74) T. O. Elias, 1974, 위의 책, pp. 71~78.

밝혀지기 어려울 정도로 조약 문언이 모호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준비문서를 해석에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실행되는 관행이다.⁷⁵⁾ 더 나아가 조약 문언의 통상적 의미가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준비문서를 통하여 확인된 당사자의 의사가 그러한 통상적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성실해석의 원칙’에 따라 당해 통상적 의미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까지도 있다.⁷⁶⁾ 그런 의미에서 조약 해석에 준비문서를 참조하는 것은 해석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필수적인 해석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조약 해석의 실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연히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해석에서도, 동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상대방이 국가인지 개인인지를 밝히는 데에는 동 조항의 기초과정에 관한 고찰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기초과정은 연합국민사건과 네덜란드인사건에서 전문가의견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는 칼스호벤(Frits Kalshoven) 교수가 처음으로 자세한 고찰을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⁷⁷⁾ 칼스호벤 교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는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1899년 헤이그 육전협약의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독일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출발점으로 하여 기초되었다. 1899년 헤이그 육전협약에는 협약의 이행에 관한 일반 조항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내용은 당사국이 자신의 육군에 대하여 헤이그 육전규칙을 준수하도록 지시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제1조).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의 독일 대표였던 폰 귄델(Von Gundell) 소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인이 실제의 전쟁 수행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항만으로는 모

75) Ian Sinclair, 1984,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2nd ed., Oxford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 142.

76) S. Schwebel, 1996, “May Preparatory Work be Used to Correct Rather than Confirm the “Clear” Meaning of a Treaty Provision?,” Jerzy Makarczyk ed., *Theory of International Law at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 Essays in honour of Krzysztof Skubiszewski*, The Hague : kluwer Law International, pp. 541~547.

77) 阿部浩己, 2005, 앞의 글, 191쪽.

든 경우에 육전규칙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국가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책임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육전규칙 위반행위의 희생자가 동 규칙을 위반한 병사나 장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해 희생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므로 교전당사자가 그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람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예외 없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안이다.

독일의 이러한 제안은 두 개 조항으로 나뉘어 중립국 국민이 입은 손해는 즉각적인 배상을 하도록 하고, 적국 국민이 입은 손해는 평화조약의 체결 시에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중립국 국민과 적국 국민을 구별하는 독일의 제안은 비판에 직면하여 결국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현행의 조항으로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제안에 대한 비판은 어디까지나 피해의 배상에서 중립국 국민과 적국 국민을 차별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안의 기초가 되어 있는 원칙은 회의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일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러한 원칙, 즉 정부가 군대 구성원의 행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것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⁷⁸⁾

결국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가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기초된 과정에 관한 기록들은 그것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지는 국제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이 국가의 군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알 수 있다.⁷⁹⁾

재판의 과정에서 원고들은 칼스호벤 교수의 분석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에 관한 준비문서를 보면 그것이 개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주석서의 내용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78) 이상, Fritis Kalshoven, 1991, "State Responsibility for Warlike Acts of the Armed Forces—From article 3 of Hageu Convention IV of 1907 to Article 91 of Additional Protocol I of 1977 and Beyond,"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40, pp. 831~832.

79) Fritis Kalshoven, 1991, 위의 글, p. 830.

해석을 채택한 국가 관행의 결여 등을 이유로 원고의 해석을 물리쳤다.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를 개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가 드물다는 것은 칼스호벤 교수도 인정하고 있다.⁸⁰⁾ 그러나 칼스호벤 교수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국가 실행이 드물다고 해서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준비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는 다른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동 조문이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⁸¹⁾ 나아가 재판에서는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와 헤이그 육전규칙상의 조문을 근거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판례들이 다수 인용되었다.⁸²⁾ 이들 판례들에 관해서도 법원은 해석을 달리하여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와 육전규칙을 근거로 개인의 청구권이 인정된 사례로 보지 않았다.

일본 법원의 판결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1949년의 네 개 제네바협약에 관하여 간행한 주석서의 내용을 근거로 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주석서의 내용을 피고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이 점 역시 아베 교수의 의견서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주석서는 1949년 제네바 포로대우협약 제51조에 관하여 “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이러한 물질적 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반행위를 행한 자의 본국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어도 현재의 법률제도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한 청구는 국가만이 타국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피고는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가 국가 간의 책임을 규정한 조항으로 보는 견해라고 이해하고 주장하였으며 그러한 이해와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주석서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현재의 법률제도상 국가를 상대로 하여 개인이 ‘국제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내법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80) Fritis Kalshoven, 1991, 앞의 글, pp. 835~837.

81) Fritis Kalshoven, 1991, 앞의 글, p. 837.

82) 이들 판례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 것으로, 申惠丰·高木喜孝·永野貫太郎 編, 2005, 앞의 책, 306~329쪽 참조.

있는 것은 아니다.⁸³⁾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주석서는 조약이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어떤 국가가 그러한 조약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여 조약이 규정한 권리에 대한 침해를 국내적으로 구제하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인도법의 문제된 대일전후보상소송은 바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이 규정한 권리의 침해를 일본 국내법원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사건이다.

3_ 조약의 직접적용성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이 문제된 대일전후보상소송의 진정한 쟁점은 조약⁸⁴⁾이 일본 국내 법원에서 재판규범으로 직접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하여 재판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방은 있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없었다.

피고인 일본 정부는 조약이 일본 국내 법원에서 직접적용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 당사국의 의사와, 조약상의 사인의 권리 의무가 명백하고 확정적이며 완전하고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을 들었다. 그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는 국가가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실행한 예가 없다는 점에서 조약당사국들 사이에 동 조항의 국내적인 직접적용의 의사가 결여되어 있고, 교전당사국의 책임의 상대방 및 책임의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명백하고 확정적이며 완전하고도 상세한 규정이라는 요건도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일본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약의 직접적용에 관한 일본의 현실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면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국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

83) 阿部浩己, 2005, 앞의 글, 193쪽.

84) 물론 조약상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관습국제법상의 권리에 관해서도 이 글의 논의는 타당하지만, 관습국제법은 성립의 증명이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논의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관습국제법에 관한 언급은 가능한 한 생략하였다.

부분이다. 국제법은 이 문제에 관하여 국가에 특정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국제법의 국내적 실시는 국내문제이며 어떤 방법으로 조약을 국내적으로 실시할 것인지는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각국은 일원론적 또는 이원론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원론적 국가에 속하며 헌법 제98조 2항의 해석에 의하여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국제법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법에 따르면⁸⁵⁾ 일원론적 국가에서 조약은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국내적 효력을 가진다.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다. 그런 경우를 “조약이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조약이 국내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국가기관, 예컨대 의회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약의 국내 적용에 관한 일원론적 국가에서 조약이 이렇게 직접적용성을 가지는 것을 표현하는 외국의 용어들로는 self-executing(미국), directly applicable(EU), unmittelbar anwendbar(독일), directement applicable(프랑스) 등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구별되는 것으로 “조약이 직접효력(direct effect)을 가진다”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즉, 국제법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고 있다거나, 국제법을 원용하여 개인이 국내 법원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거나, 국제법에 근거하여 개인이 국내 법원에서 당사자적격(standing)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할 경우 직접적용성이 있는 국제법 중의 일부가 직접효력을 가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용어법은 한국 국제법학계의 일반적인 용어법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도법이 문제된 대일전후보상소송에서 위 조약의 직접효력의 문제는 조약의 자동집행성 또는 직접적용가능성의 문제로 논의되었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한국에서 말하는 조약의 직접효력, 일본에서 말

85) 이 점에 관해서는 김대순, 2008, 『국제법론』, 제13판, 삼영사, 195~196쪽 참조.

하는 조약의 자동집행성 또는 직접적용가능성의 문제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 일본 정부는 조약이 일본 국내 법원에서 직접적용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 조약체결 당사국의 의도를 들고 있다. 이는 이 글에서 이미 인용한 바 있는 '단치히 법원 관할권 사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당사국의 의도에 따라(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조약이 국내 법원에서 시행될 수 있는 사인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⁸⁶⁾에 영향을 받은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조약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고 그것이 국내 법원에서 시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의 의사를 해석하여 결정할 문제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약은 실제로는 그 국내적 효력이나 직접적용성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므로 조약의 직접적용성(한국에서의 용어법에 따르면 '직접효력', 이하 같음)에 관한 적극적인 의사를 조약 속에 명시하는 일도 드물며 체결과정에서 그러한 의사가 표명되는 일도 드물다.⁸⁷⁾ 조약의 직접적용성을 부정하는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⁸⁸⁾가 아니라면 일원론적 국가에서는 직접적용성에 대한 유리한 추정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조약의 직접적용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당사국의 의도가 될 수 없다면 조약의 성질이나 내용의 명확성에 따라 직접적용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조약 내용의 명확성은 그런 의미에서 조약의 국내적 직접적용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 기준으로 거론되는 일이 많지만, 법조문은 본질적으로 개방된 텍스트로서의 불명확성을 지니며 조문의 해석이 요구되

86) 주 66 참조.

87) 岩澤雄司, 1985, 『條約の國內適用可能性—いわゆる“SELF-EXECUTING”な條約に関する一考察』, 東京: 有斐閣, 299쪽.

88) 예컨대 유럽사회헌장 제3부 A조: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B below, each of the Parties undertakes: a to consider Part I of this Charter as a declaration of the aims which it will pursue by all appropriate means, as stated in the introductory paragraph of that part; b to consider itself bound by at least six of the following nine articles of Part II of this Charter: Articles 1, 5, 6, 7, 12, 13, 16, 19, and 20.

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내용의 명확성이라는 것도 정도의 문제이며 조약의 직접적용을 위한 절대적인 명확성의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피고 일본 정부가 주장한 것처럼 사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명백하고 확정적이며 완전하고도 상세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조약이 국내적으로 직접적용될 수 있다는 말은 타당하지 못하다.

일본의 국내 법원에서 조약이 적용된 재판 실무상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약의 직접적용성에 관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상세한 분석을 할 여유가 없지만, 아베 교수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본 사법부는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좁게 인정하여 국제법상 개인의 법주체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국제법에 근거한 소송을 수리하여 국제법을 적용하여 왔으며⁸⁹⁾ 일본 국내에서의 조약의 직접적용 요건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주관적 요건은 물론이고 개인의 권리에 관한 “명백하고 확정적이며 완전하고도 상세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본 사법부가 재판에서 조약을 직접적용한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⁹⁰⁾

V. 맺음말

이상에서 대일전후보상소송에서 국제인도법이 청구의 근거로 원용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재판에서 원용된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 글에서의 비판이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국제인도법을 근거로 제기된 대일전후보상소송에서 피해자가 법적인 구제를 받는 데는 또 하나의 커다란 국제법적 장애가 있다. 대일평화조약이나 양국 간

89) 阿部浩己, 2005, 앞의 글, 174쪽.

90) 阿部浩己, 2005, 앞의 글, 176~180쪽.

조약에 의하여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의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일본 정부는 최근 중요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글에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 고찰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재판에서는 국제인도법이라고 하는 국제법을 근거로 청구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먼저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이 다투어졌다. 다음으로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과도 관련된 문제로,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상의 의무의 상대방이 국가인지 개인인지의 문제가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및 개인을 국가로 매몰시키는 국가책임법의 법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방의 대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법을 일본 국내 법원에서 직접적용하는 문제를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지만 일본 사법부는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의 과정에서 전개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는 많은 오해와 혼란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의 판단 역시 이론적으로도 실제상으로도 타당성을 결여한다는 것이 고찰의 결론이다.

국제인도법을 청구의 근거로 삼은 대일전후보상소송은 일본의 국내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이므로 국제법상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에 관한 일반 이론적인 논의나 주장을 펼칠 이유가 없었다. 소송은 국제법을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일본의 국내 법원에 제기된 것이므로, 재판에서 원용된 조약(또는 관습국제법) 규정이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일본 국내 법원에서 재판의 기준으로 직접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며 이러한 쟁점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따질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판결은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의 해석을 통하여 국가책임의 법리와 연결된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부인의 논리로 원고의 청구 적격을 부정하고, 문제가 된 조약의 국내적용가능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의 청구가 국제법을 근거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국내 법원에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지니는 법적 의미를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상의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

된 동 조항에 대한 피고와 판결의 해석 역시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동 조항의 기초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조약의 직접적용성이라는 점에 관해서 보면 일본 법원은 개인의 국제법주체성과 국가책임의 법리에 의존함이 없이 헌법 규정과 재판상의 실무 관행에 따라 헤이그 육전협약 제3조나 헤이그 육전규칙 및 기타 국제인도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부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옳았다.

이상의 고찰에서 받게 되는 인상은, 결국 일본 정부의 편에 선 일본 사법부는 현대의 국제법의 발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편협하고 낡은 국제법의 법리를 동원하여 일본군의 국제인도법 위반에 따른 피해의 구제나 국제인도법이 개인에게 부여한 권리의 실현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대일전후보상소송에서의 법리의 공방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일본 정부 또는 사법부가 전후처리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없이는 국가의 논리에 매몰당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과 보상이 주어지는 전후처리의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대순, 2008, 『국제법론』, 제13판, 삼영사.
- 藤田久一·鈴木五十三·永野貫太郎 編, 1999, 『戦争と個人の権利—戦後補償を求める 舊くて新しい道』, 東京: 日本評論社.
- 杉原高嶺, 2008, 『國際法學講義』, 東京: 有斐閣.
- 山本草二, 1994, 新版 『國際法』, 東京: 有斐閣.
- 申惠丰·高木喜孝·永野貫太郎 編, 2005, 『戦後補償と國際人道法—個人の請求權をめぐる』, 東京: 明石書店.
- 岩澤雄司, 1985, 『條約の國內適用可能性—いわゆる“SELF-EXECUTING”な條約に關する一考察』, 東京: 有斐閣.
- Elias, T. O., 1974, *The Modern Law of Treaties*, Leiden: A.W. Sijthoff.
- Makarczyk, Jerzy ed., 1996, *Theory of International Law at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 Essays in honour of Krzysztof Skubiszewski*,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Sinclair, Ian, 1984,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2nd ed., Oxfor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논문〉

- 김창록, 2007,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35호.
- 高木喜孝, 2005, 「國際人道法とオランダ人捕虜・民間抑留者訴訟及びイギリス等舊連合國捕虜・民間抑留者訴—ハーグ條約の精神は冷戦後の現代に甦る」, 申惠丰·高木喜孝·永野貫太郎 編, 『戦後補償と國際人道法—個人の請求權をめぐる』, 東京: 明石書店.
- 高木喜孝, 2005, 「戦後補償裁判のいま」, 『法學セミナー』第608號.
- 藤田久一, 2005, 「戦後補償の理論問題」, 『國際人權』第5號.
- 西莖章, 2000, 「戦後補償訴訟の現在」, 『法學教室』第235號.
- 申惠丰, 2005, 「國際人道法違反の被害者救済における法と正義—理論動向と展望—はしがきにかえて」, 申惠丰·高木喜孝·永野貫太郎 編, 『戦後補償と國際人道法—一個

人の請求權をめぐって』, 東京: 明石書店.

- 五十嵐正博, 2006, 「日本の「戦後補償訴訟」と國際法」, 『國際法外交雜誌』 第105卷 1號.
- Kalshoven, Frits, 1991, “State Responsibility for Warlike Acts of the Armed Forces—From Article 3 of Hageu Convention IV of 1907 to Aritcle 91 of Additional Protocol I of 1977 and Beyond,”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40, pp. 827.
- Schwebel, S., 1996, “May Preparatoory Work be Used to Correct Rather than Confirm the “Clear” Meaning of a Treaty Provision?,” Makarczyk, Jerzy ed., *Theory of International Law at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 Essays in honour of Krzysztof Skubiszewski*, The Hague : kluwer Law International.

〈일본 조약집〉

- 大沼保昭 대표편집, 2007, 『國際條約集』, 東京: 有斐閣.
- 奥脇直也 대표편집, 2008, 『國際條約集』, 東京: 有斐閣.

〈전문가 의견서〉

- 小寺彰, 「意見書」, 藤田久一·鈴木五十三·永野貫太郎 編, 1999, 『戦争と個人の權利—戦後補償を求める舊くて新しい道』, 東京: 日本評論社.
- 阿部浩己, 「日本の國內裁判所におけるハーグ條約3條の適用—七三一·南京虐殺損害賠償請求事件」, 申惠丰·高木喜孝·永野貫太郎 編, 『戦後補償と國際人道法—個人の請求權をめぐって』, 東京: 明石書店.

〈판례집〉

- 『判例タイムズ』 第703號(1989. 9. 25).
- 『判例タイムズ』 第894號(1996. 2. 15).
- 『判例タイムズ』 第991號(1999. 3. 15).
- 『判例タイムズ』 第998號(1999. 6. 1).
- 『判例タイムズ』 第1028號(2000. 7. 1).

〈웹사이트〉

<http://www.mofat.go.kr/state/treatylaw/treatyinformation/index.jsp>

ja.wikipedia.org.



[ABSTRACT]

After War Compensation Suits against Japan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ark, Paekeun

Various claims and legal issues have been raised and addressed in the so-called “After War Compensation” suits against Japan which were brought to the Japanese domestic courts. Among them, whether victims’ individual claims right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hould be recognized or not has been one of the most salient issue of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is to review how this issue of international law, namely the problem of “individual claims rights” based on international law, has been treated by the plaintiffs, the defendants and the courts in the concrete suits. Through the critical review and examination of the problem, it also tries to clarify some conceptual misunderstandings of and confusion with the concept.

In the After War Compensation suits, submissions to the Japanese domestic courts were partly based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composes a part of international law. So the problem of individual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became an object of keen debate. Whether State’s obligation provided in the Article 3 of the Hagu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Convention was owed towards other State Parties or individuals was another hot point of confrontation during the course of the suits. Whether relevant international law might be applied in the Japanese domestic courts to

resolve the disputes also was a subject of controversy.

As After War Compensation suits on the grounds of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Japanese government were raised before Japanese domestic courts, it was unnecessary for the parties to the suits to elaborate theoretical arguments concerning individual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The suits were instituted before Japanese domestic courts and Japan has been generally incorporating international law as its domestic law. Therefore, what should be really contended were the problem whether individual's right was stipulated in the treaties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voked in the suits and, if it could be answered in the affirmative, whether those stipulations might be directly applicable as a criterion of judgment.

The judgments of the suits negated plaintiffs' standing before the court on the ground that they could not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They deduced this conclusion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 of the Hagu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Convention. At the same time, they did not make any judgment with regard to the problem of the domestic applicability of the relevant treaties. This conclusion and attitude of the judgments seem to be the result of grave mis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plaintiffs' claims were submitted to the Japanese domestic courts, though their grounds were violation of rights vested to individuals by international law.

The defendants and judgments of the suits were in concordance in that they both denied individual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 of the Hagu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Convention. However, this kind of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lacks persuasiveness and is unacceptable when

we take the travaux préparatoires of the Convention.

When we see the problem under the perspective of the direct effect of treaty, it might be said that the Japanese courts would have been better to judge whether they should give remedy to the victims of Japanese government'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solely in accordance with the courts practical usage and relevant article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It was not necessary for them to review and let their judgments be based on the discourse of individual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jurisprudence of State responsibility.

Japanese courts' denial of allowing remedy to the victims of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ir refusal to implement individual's right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ay be said to be the result of their narrow and archaic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In the judgments of the suits pursuing the compensation for injuries done by Japanese government, Japanese courts ignored the developments and changes which can be seen in the contemporary legal thoughts of international law. It implies that "After War Liquidation" of Japanese responsibility through juridical organs of Japan which enables just and adequate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would not be realized unless Japanese government or judiciary changes its attitude toward the problem itself.

keywords

after war compensation, after war compensation suits against Japa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dividual,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direct applicability, direct effect,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도쿄국제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 연구

이장희 |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본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도쿄국제군사재판(이하 도쿄재판)과 뉘른베르크(Nuremberg) 국제 군사전범재판(이하 뉘른베르크재판)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비교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배경은 한일 간 식민통치지배에 대한 과거청산이 독일과 유럽 국가 간의 것에 비교하여, 현재까지 지연되는 이유를 양 재판소의 사법청산 과정을 통한 국제법적 분석에서 찾아보려는 데서 연유한다.

1. 연구의 실질적 문제의식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과거청산 갈등의 근본원인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데 연유한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비밀조약으로, 한국의 식민지화를 자초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¹⁾이라는 불평등한 조약을 탄생시켰다. 또

※ 투고일 2009년 6월 30일, 심사일 2009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4일.

1946~1948년 도쿄재판에서 아시아 전범처벌을 엄격하게 처리하지 못한 결과로 일본의 전범들이 전후 현재까지 일본 역사의 주체세력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이들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그 이후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깊이 관여하였고, 그 결과로 한일관련 전후처리 미청산의 후유증을 남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은 뉘른베르크재판에서 국제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전범처리와 이에 따른 전후처리를 철저히 국내외입법을 통해 이행하였다. 이러한 전후처리가 당시에는 독일에 가혹하였지만, 독일이 분단체제 극복에 주변국의 협력과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나아가 유럽통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덕적·긍정적 신뢰기반을 닦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뉘른베르크재판과 도쿄재판을 국제법적으로 비교·연구함으로써 전후 한일관계 과거청산문제의 해결에 국제법적 해결의 시사점을 얻으려고 한다.

한 예로 도쿄군사재판에서 미국이 국제법적·객관적 원칙과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자국의 정책적 목표(아시아 패권적 이익)를 의식하여 전후청산에서 매우 소극적 입장(인도에 반하는 범죄 불처벌 : 일본 천황 면책, 일본군 731부대 세균전 책임자 불기소, A급전범 19명 석방 등)을 취한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전후 책임문제는 전쟁책임의 파생이며, 전쟁책임의 일부이다. 양자를 전도하면 안 되며, 전후책임은 역사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실문제이며,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발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다.²⁾

이러한 맥락에서 도쿄재판과 뉘른베르크재판을 통해서 일본과 독일 두 국

1) 과연 1910년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가의 의문에서 ‘ ’ 표시를 함. 이장희, 2009. 8. 22.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법적 유효성」,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주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평가, 한일 NGOs국제학술세미나 논문집』, 기조연설문, 15~18쪽 참조.

2) Wang Xiliang, October 9, 2008, “Japanese war responsibility,” Opening Symposium/Keynote Address—Panel 1, *The 2nd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istory and Peace*, Seoul, p. 16.

가 중에 누가 철저히 식민지잔재의 전후처리문제에서 ‘과거사 극복’에 진정성을 보였는지를 실질적으로 비교, 재검토하는 일은 역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2. 연구의 국제법적 문제의식

일반 국제법은 불법적으로 전쟁에 호소한 데 대하여, 개인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 국가행위(acts of state)로서 범해진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개인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³⁾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법상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국제사회의 필요성에서 몇 가지 처벌 규정을 단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인 해적(piracy)행위의 처벌이었다. 다만 재판과 처벌 등 이행문제는 국내법에 맡겨져 있었다. 아마도 이것이 전범처벌에서 국제법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어가면서 크게 달라졌다. 침략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함으로써 인류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그 주동자들(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고된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 주권자면책(State Immunity)⁴⁾ 및 국가행위면책의 관념이 부인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주요 전쟁범죄인을 국제적으로 처벌하기로 한 것은 1919년 ‘베르사유조약’에서 빌헬름(Wilhelm) 2세의 소추 조항⁵⁾을 둔 제1차 세계대전 이

3) 개인은 특정국가를 위하여(혹은 대리하여) 행한 전쟁행위와 관련하여 타국에서 제소당하거나 소추될 수 없다. 이 경우 전쟁행위장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군대구성원뿐만 아니라 일정상황하에서는 민간인도 이 국제법규 보호대상이 된다. 이를 국가행위이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특히 전쟁범죄와 기타 전쟁관련 범죄, 예컨대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혹은 제노사이드를 저지른 자는 국가행위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Rebecca M. M. Wallace, 1997, *International Law*, 3rd ed., Sweet & Swell, pp. 56~576, 74~75.

4) Sovereign Immunity 라고도 하며, 이에 대해서는 Rebecca M. M. Wallace, 1997, 위의 책, pp. 123~124.

5) 베르사유조약 제27조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소추를 규정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 공문서가 한 국가로 하여금 현존하는 국가 질서의 힘에 대

후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국가와 별도로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의 국제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단지 국제사회의 필요성에서 海賊行爲 처벌과 같은 단편적인 것에 그쳤고, 더구나 그 재판과 처벌도 국내법에 맡겨져 있었다. 물론 빌헬름 2세도 소추되기는 했지만, 독일에 혁명이 발발하여 네덜란드로 망명하게 되었다. 이에 연합국은 1920년 1월 15일 베르사유조약에 의거 네덜란드 정부에 황제의引渡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가 빌헬름 2세의 인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처벌은 실현하지 못했다.⁶⁾

그래서 국제법상 개인의 전쟁범죄책임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도쿄재판과 뉘른베르크재판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궁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국제법상 개인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에 대해 수동적 주체성을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도쿄재판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은 당시에 침략전쟁을 개시하였던 일본의 권력 담당자들이 상기 세 개의 관할범죄를 자행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개인의 형사책임이라는 것이다. 또 그 개인의 형사책임은 세 개의 관할범죄를 자행하도록 지시·명령 또는 묵인·방조하에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상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한 도전을 감행시킨 자(개인)에 대하여 그 국가와 분리하여 지도자로서 책임을 물으려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James F. Willis, 1982, *Prolouge to Nuremberg*, Westport, Connecticut : Greenwood Press, p. 98.

II. 극동국제군사재판소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의 설치배경과 국제법적 설치근거

연합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적국 지도자들을 처리하는 세 가지 선택 방안을 갖고 고민하였다. 첫째는 재판 없이 연합국최고사령부의 명령으로 외딴곳에 정치적 유배(즉결처벌 혹은 정치적 수감 포함. 나폴레옹의 엘바섬 유배)를 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는 것, 셋째는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하는 선택이었다. 미국 측의 주장으로 재판에 따라 처벌하기로 하였다.⁷⁾

1.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설치배경과 국제법적 설치근거

극동국제군사재판소(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s of the Far East, 이하 도쿄재판소)⁸⁾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이하 뉘른베르크재판소)의 극동판이었다. 그러나 극동국제재판소 헌장(Charter of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s of the Far East, 이하 도쿄재판소 헌장)은 1945년 8월의 일명 런던협정과 그 부속헌장(Agreements for the Procecuta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inals of the European Axis Powers⁹⁾ and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¹⁰⁾ 일명 런던협정)에 근거한 것과 같은

7) Elizabeth S. Borgwardt, 1991, "Ideology and International Law : The Dissent of The Indian Justice at the Tokyo War Criminals Trial,"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23, pp. 379~340.

8) 도쿄재판소는 도쿄 지요다구 이치가야 언덕에 설립, 일본 전 육군성 및 동 참모본부(대본영) 소재지임.

9) "London Agreement of 8 August 1945"의 English Official Text에 대해서, *Trial of The Major War Before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Nuremberg*, 14 November 1945-1 October 1946, published at Nuremberg, Germany 1947, pp. 8~9. 런던협정의 초기 서명국은 4개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이었으나, 추후 19개국이 가입하였다.

10) 뉘른베르크재판소 헌장의 English Text는, 위의 글, pp. 10~16.

유럽형 재판소에 관한 문서에 그 재판권을 기초하지 않았다. 태평양 지역 연합국최고사령관인 맥아더(Douglas MacArther) 원수는 1946년 1월 19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특별선언」¹¹⁾을 발표, ‘연합국최고사령관 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 SCAP) 일반명령 제1호로 「극동국제재판소 헌장(Charter of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s of the Far East)」을 공포하였다. 그 후 4월 9일 재판소 헌장은 개정되었다. 「특별선언」에서 맥아더는 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은 전쟁범죄인을 재판에 회부한다고 선언해 왔다. ② 일본은 전쟁범죄인 처벌을 항복조항의 하나로 하는 포츠담선언(1945. 7. 26)의 수락을 항복문서를 통해 확인했다. ③ 천황과 일본 정부의 통치권은, 항복조항 실시를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은 SCAP에게 종속되어 있다. ④ 연합국은 SCAP가 항복조항 이행을 위해 일체의 명령을 발한다고 협정을 맺었다. 따라서 SCAP가 국제군사재판소를 설치했다고 ‘재판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밝혔다.¹²⁾ 이 선언은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에 기초한 것으로서 맥아더 특별선언에 부속된 도쿄재판소 헌장은 뉘른베르크재판소 헌장과 유사하다.¹³⁾ 법적 근거 측면에서 보면, 뉘른베르크재판소는 국제조약에 따라서 설치된 반면에, 도쿄재판소는 항복선언을 한 이후에 연합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설치되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 11) 맥아더의 선언내용 : “주일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19일 극동국제군사법정을 설립한다. 최고사령관 맥아더. 1946년 1월 19일 주일 연합국최고사령부는 극동국제군사법정에서 일본 전범재판조례를 선포하여 즉각 시행한다.”
- 12)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설립대회의 단상 맨 앞줄에는 맥아더, 연합국 최고사령부 참모총장 서덜랜드(Richard K. Sutherland), 극동위원회 대표, 인도의 외무차관, 연합국 전쟁범죄조사위원회 대표, 폴란드 군사부 차관이, 둘째 줄~넷째 줄에는 11개국 대표단 단장과 참모장들, 다섯째 줄에는 키넨(Keenan) 국제검찰국장, 국제법정소장 웹(Webb), 국제민정국장 휘트니(Country Whitney), 국제정보국장 테일러, 국제법무국장 케리먼, 국제경제과학국장 리스터, 미국 대일본 사무이사회 의장 시볼드가 앉았다. 일본 수상은 구석자리에 앉았다.
- 13) 도쿄재판소 헌장은 당시 뉘른베르크 군사법원 헌장을 모델로 연구하여 만들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배경은 황희이 지음, 백은영 옮김, 1999, 『도쿄 대재판』, 예담, 99~102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아더의 이러한 조치는 관계국들의 승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미국 측의 일방적인 성격이 강했다. 당시 연합국전쟁범죄조사위원회(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UNWCC)¹⁴⁾가 도쿄재판소 현장 초안의 문제점에 대해 심사를 하여 미국의 일방적 주장들에 제동을 걸곤 했다고 한다. 또 이 재판소 현장 초안은 11명의 대표단 단장 외에 재판소 현장 초안을 작성한 법률전문가 20여 명 정도가 참여한 검토토론회에서 많은 격론과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재판의 국제적 성격 때문에 최초의 미국 지령(United States Directive)은 연합국 지령(Allied Directive)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1946년 4월 3일 “극동에 있어서 전범의 체포, 재판 및 처벌(Apprehension, Trial and Punishment of War Criminals in the Far East)”이라고 칭하는 극동자문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¹⁵⁾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정책결정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령이 1946년 4월 23일 맥아더에게 발해졌다.¹⁶⁾ 당시 맥아더는 최고사령부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듯한 극동자문위원회 설치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 이로 인해 최초의 미국 주도의 성격의 재판소 현장이 검토의 과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이 「도쿄재판소 현장」에서는, 먼저 “극동에서의 중대 전쟁범죄인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및 처벌을 위해” 도쿄에 재판소가 설치된다는 것이 선언되었다(제1조).

14) UNWCC는 1943년 10월 구성,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었는데, 독일과 일본의 전범 재판의 조사·지도를 책임지고 있었다. 17개국 연합국 대표들이 참여한 이 조직은 전범문제를 논의한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발족 직후에 나름대로 활동을 벌였지만, 스스로 조사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 한계를 가졌다. 이 기구의 활동이 국제전범재판에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미국과 영국 두 나라 정부가 사실상 논의를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Richard L. Merritt, 1995, *Democracy Imposed: U.S. Occupation Policy and the German Public 1945-1949*, Yale University 참조.

15) 극동자문위원회는 맥아더 사령관의 일방적 재판운영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였다.

16)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No. 27-161-2, *International Law*, Vol. II(1962), p. 234.

2_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의 설치배경과 국제법적 설치근거

1943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연합국 대표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 주요 전쟁범죄자들을 처벌하기로 결정하는 「독일의 잔학행위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미국·소련은 히틀러의 군대가 침략한 …… 많은 나라에서 그들이 현실로 행하고 있는 잔학행위, 학살, 대량처형의 증거를 각지에서 수집하고 있다. 세 연합국은 33개 연합국을 위해 이하의 선언과 경고를 발한다. 독일에 수립될 정부에 휴전을 허용하는 경우, 전기의 잔학행위, 학살, 처형에 대하여 책임 있는 또는 이에 임의로 참가한 독일의 장병, 나치당원은 해방된 諸國의 법에 따라서 재판되고 처벌되기 위해 그들의 저주받을 행위가 행하여진 제국에 송환된다. …… 3연합국은 반드시 죄 있는 연고지까지 추급하여 訴追者에게 인도할 것이다. 상술의 선언은 그 범죄가 특정의 지리적 제한을 갖지 않으며, 또한 연합국 정부의 공동결정에 따라 처벌되는 주요 범죄인에 관하여 별단의 고려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¹⁷⁾

이 내용은 1945년 8월 8일 런던에서의 「유럽 樞軸國 주요전쟁범죄자 기소 및 처벌에 관한 협정 및 국제군사법원 헌장(Agreements for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inals of the European Axis Powers and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일명 런던협정)」의 기초가 되었다.¹⁸⁾ 미국·영국·소련 3개국 모스크바 外相회담(1943. 10. 19~30)이 있는 1개월 뒤에는 루스벨트·처칠·스탈린 3巨頭의 테헤란 회담(1943. 11. 28~12. 1)과 루스벨트·처칠·장제스(蔣介石)의 카이로회담(1943. 11. 27)이 개최되었다. 테헤란에서 이른바 지도자책임관 및 전쟁위법관을 태동

17) 大沼保昭, 1975, 『戰爭責任論 序說』,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38~39쪽.

18) Oppenheim-Lauterpacht, 1952, *International Law*, Vol. II, 7th ed., London: Longmans Co., p. 581.

시키는 것은 곤란하였고, 오히려 3국 수뇌들의 발언은 전통적인 국민책임관적 발상을 나타내고 있었다.¹⁹⁾

1944년 10월부터 1945년 6월에 이르는 8개월은 런던회담의 준비단계라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추축국 지도자의 처우방법으로 즉결처형이 아니라 군사 재판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연합국 내부에서 합의되었다.²⁰⁾ 즉결처형을 주장하는 영국에 대한 소련의 반대와 미국의 재판 방식 지지론자의 적극적인 주장이 국제군사재판 방식의 채택을 가져온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위의 문제와 병행하여 지도자의 처벌근거에 관한 연합국의 방침도 이때 명확해졌다. 1945년 1월의 루스벨트각서와 알타(Yalta)각서에서 비로소 명확한 결함을 취한 이른바 지도자책임관과 전쟁위법관은 서서히 법개념으로의 체제를 갖추고, 1945년 5월 샌프란시스코안으로서 구체화되었다.²¹⁾ 이어 ‘포츠담 선언(1945. 7. 26)’이 발표되었고, 동 선언의 제5항²²⁾에 전범처벌이 합의되었다.

그리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3개월 후인 8월 3일에 런던협정이 체결되었는데, 동 협정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 후 19개국이어이 가입하였다. 동 협정에 의하여 전쟁범죄인을 재판하기 위한 국제군사재판소(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가 설치되었다. 또 이 런던협정에 부속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이 정립되었다.²³⁾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도쿄재판소와 뉘른베르크재판소에서 각각 독일과 일본의 전쟁책임자를 재판하고 처벌하였다. 이 재판에 대해서는

19) 大沼保昭, 1975, 앞의 책, 202쪽.

20) 침략전쟁에 대한 개인책임을 묻는 주도적 역할은 1943년 11월 6일 스탈린의 연설에서 나타났다. 이 연설 후 런던 국제회담은 동 견해를 받아들여 ‘전쟁범죄’를 삽입하게 되었다. Quincy Wright, 1945, “War Criminals,” *A. J. I. L.*, 39, p. 260.

21) 大沼保昭, 1975, 앞의 책, 251쪽.

22) 미·영·소 3국 수뇌 사이에 합의한 포츠담선언(1945. 7. 26)은 전문과 13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5항은 “연합국의 포로를 확대한 자를 포함한 일체의 전쟁범죄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23) Oppenheim-Lauterpacht, 1952, 앞의 책, p. 581.

법률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1946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뉘른베르크재판소 헌장과 동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승인된 국제법 제원칙’을 확인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는 침략전쟁을 범죄화하고자 하는 다수 국가의 법적 확신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또 이는 주권자 면책을 부정하는 것에 의해 근대 국제법에 잔존하던 군주주권적 성격을 불식함과 동시에 국민적 통일체로서 주권국가체계를 논리적으로 해체하는 가능성을 품은 지도자 책임론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뉘른베르크 원칙²⁴⁾의 법전화 작업은 1954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가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유엔총회에서는 침략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심의가 연기되었으나, 1993년 이후 유엔총회에서는 1993년 이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논의를 위한 주요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Ⅲ. 양 재판소의 비교 고찰

1_ 재판소의 구성 문제

양 재판소의 구성에 대해 ‘승자의 재판’이라고 비판을 할 정도로 전승국의 법관·검찰관으로 재판부가 주로 구성되었다.

24) 뉘른베르크 원칙의 국제법적 규범성에 대해, 任德圭, 1987. 10, 「Nuremberg 원칙과 그 규범성」, 『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32권 제1호, 195~199쪽.

1) 도쿄재판소 판사와 검사의 구성 문제

도쿄재판소 현장에 따르면, 도쿄재판소는 공정·신속하게 재판을 행하고, 어디까지나 연합국최고사령관을 최고권위자로 하여 행해지는 ‘군사재판’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먼저 도쿄재판소 현장에서는 판사에 관해서는, ‘재판소’는 항복문서의 9개 서명국²⁵⁾ 및 인도와 필리핀 총 11²⁶⁾개국에서 각각 1명씩 통고 받은 인사를 맥아더가 임명한 1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제2조), 연합국최고사령관은 판사 1명을 재판장으로 임명한다(제3조)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A급전범은 일본 변호사 1인과 외국변호사 1인²⁷⁾의 선임을 받아 조력을 받는다. 여기서 재판소의 재판장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으로 재판소현장초안 작성에 참여했고 국제법 전공인 웹(William Webb, 법학박사)이 선임되었다.

재판의 의사정족수는 6명이며, 배석판사 6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개정되지 않는다. 의결정족수는 출석재판관 투표의 과반수이다. 찬부가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포츠담선언과 항복문서의 授權에 의거하여 최고사령관이 권한을 행사하며, 사령관의 명령과 授權에 의하며 재판관이 그 심리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재판이 판사단의 평의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적으로 행하여진다는 것이 최대의 특징이다.

또 도쿄재판소 현장은 검사에 대해서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임명하는 수석검사와 각 연합국이 수석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참여검사 1명을 둔다(제8조)고 규정하였다. 그래서 판사, 수석검사, 참여검사를 파견하는 나라

25) 최초의 재판소 현장에 따라 맥아더는 1946년 2월 5일 항복문서 서명국인 9개국에서 통고받은 9명을 임명, 그 후 극동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1946년 4월 26일 현장을 개정하여 필리핀과 인도로부터 판사를 파견토록 하여, 총 11명의 판사를 임명하였다.

26) 총 11개국 원고국은 미국·중국·영국·소련·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프랑스·네덜란드·뉴질랜드·인도·필리핀이다.

27) 원래 맥아더의 초안은 일본 변호사 1명과 미국 변호사 1명이었는데, 소련 측의 문제 제기로 심의 중 후자 미국 변호사는 외국인의 변호사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황희이 지음, 백은영 옮김, 1999, 앞의 책, 114~115쪽.

는 총 11개국이었다.

그런데 이들 11개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중립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판사·검사의 중심부분은 미국과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서구의 식민지종주국이 차지하는 형태가 되었다.

1945년 12월 6일 키넨(Joseph Berry Keenan)이 이끄는 미국 측 검사단 일행 38명이 일본에 도착하였으며, 12월 8일에는 맥아더는 키넨을 국장으로 하는 국제검찰국을 발족시켰다.

검사단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도 구성되었다. 변호단의 일본인 변호인은 구육해군성과 외무성 등이 피고들을 위해 알선한 사람들이었다. 또 외무성은, 재판이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영미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인 변호인도 알선했다. 변호인들에게는 종전처리비에서 사무경비가 지출되었다. 일본인 변호인단은 1946년 5월 4일 결성되었으며, 단장은 패전 전에 세이유우카이[政友會] 소속의 代議士를 지냈고, 당시 메이지[明治] 대학 총장으로 있던 우자와 후사아키[鵜澤總明, 1872~1955]가 맡았다.

그리고 국제검찰국 내에서 도쿄재판에 일본인 판사와 검사를 채용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1946년 2월 6일 미국 검찰진의 브레브너와 스미스, 일본에 막 도착한 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검찰진 사이에 기소장 초안을 둘러싼 회담에서 일본인 판사·검사 채용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회담은 미국의 기소장 초안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초안 첫머리에 이름이 나와 있었는데, 왜 일본 정부는 이 기소장에 서명하지 않으며, 왜 일본인 판사나 검사를 임명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재판이 단순히 패자에 대한 승자의 복수가 아니라, 일본인 스스로 그들의 진로를 잘못 이끈 인물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일본인 판사·검사의 등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브레브너와 스미스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인을 검찰진에 가담시키는 것에 찬성하지만, 미국의 여론은 이를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결국 이 문제는 각국 정부의 견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영국의 카(Arthur Comyns Carr) 검사는 재판에서 일본인 요

인의 암살 등 일본인 자신들에게 자행한 범죄를 고발하는 데 긍정적인 찬성을 표했다.

이 문제는 이후로도 검찰국 내부에서 계속 논의가 되었지만, 결국 2월 26일 히긴스(John P. Higgins) 미국 법무관의 반대의견이 제기되면서 종결이 되었다.

히긴스는 우선 판사에 대해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2조에는 “항복 문서 서명국이 제출한 명부 중에서 연합군최고사령관에 의해 임명된 5~9명 이하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고, 일본도 항복문서에 조인한 일월임에는 틀림없지만 여기에 일본인 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말했다. 히긴스는 검사에 대해,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8조에 따르면, 참여 검찰관은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었던 연합국”에서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각 참여국에서 수석검사·수석법관·수석판사 각 1인과 보조검사·보조법관·보조판사 각 5명씩 파견하여 국제재판소 대표단을 구성한다. 재판소 헌장 규정에 따라 수석 구성원은 참여국의 보고를 받아 최고사령부에서 임명을 결정한다. 결국 각국은 서로 경쟁하듯 보조법관수를 늘려 결국 500명이 넘게 참여하는 방대한 재판소를 형성했다.

11개국의 대부분 국가들은 도쿄재판을 미국이 주도해서는 안 되며, 연합국 전쟁범죄조사위원회와 연합국 각국 정부의 공동책임하에 중앙검찰기관을 설립해 전범의 죄행을 낱낱이 조사하고 범죄증거를 수집하여 전범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는 데 일치하는 것 같았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가 9개국 정부 명의로 워싱턴 소재 극동위원회에 제출되어 백악관이 발각 뒤집혔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가까스로 영국 애틀리(Clement Attle) 수상²⁸⁾을 통해 9개국을 설득, 미국 주도의 법정 구성과 재판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래서 혹

28) 트루먼 대통령은 애틀리에게 미국과 영국이 아시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국이 도쿄재판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련에게 아시아에서의 세력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도쿄재판은 반드시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황허이 지음, 백은영 옮김, 1999, 앞의 책, 114~116쪽.

자는 이 도쿄재판은 승자의 재판 나아가 국제재판이 아닌 미국의 재판이라고 혹평했다.

2) 뉘른베르크재판소의 판사·검사의 구성

런던협정(1945. 8)에 부속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이 정립되었고, 동 헌장 제2조에 따라서 국제군사재판소는 4명의 재판관과 4명의 대리판사로 구성되었다.²⁹⁾ 재판장은 영국인 판사 로렌스(Lawrence), 4명의 재판관은 4대 강대국에서 각 1명씩 추천되었다.

또 재판소 헌장 제14조에 따라, 각 서명국은 주요 전쟁범죄 조사와 수사를 위해 1명씩 수석검사를 임명하고, 이들 4명 수석검사들이 검찰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위원회에서 임명된다. 검찰위원장은 미국 출신 잭슨(Robert H. Jackson)이 선출되었다.

또 독일 측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왜 국제기구 또는 중립국이 재판부를 맡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재판부가 4개국 승전국에서 파견된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재판은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비판이었다.

2. 재판대상 범죄와 기소내용

1) 도쿄재판소의 기소범죄와 기소내용

도쿄재판소 헌장에서 재판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침략전쟁의 계획·준비개시·수행에 임했거나, 그 공동모의에 참가한 죄인 ‘평화에 대한 죄’, 포로의 살해나 학대 등 전시 국제법을 위반한 죄인 ‘통상의 전쟁범죄’ 그리고 인종적 이유 등에 의한 대량학살이나 학사 등의 ‘인도에 대한 죄’가 명기되었으며(제5조),

29) Hans Kelsen, 1952,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New York : Rinehart and Co, Inc., p. 134.

이들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공무상의 지위, 혹은 피고인이 자기의 정부 또는 상사의 명령에 따라 행위했다는 사실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다만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되었다(제6조). 그리고 재판의 진행에 관해서는 재판이 영어와 일어로 진행된다는 것(제9조)과 광범위한 증거채용이 인정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제13조) 등이 규정되었다. 또 제16조에서는 사형이나 그 밖의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A. 판결은 공개법정에서 이유를 달아서 행해져야 한다. B. 재판기록은 심사를 받기 위해 최고사령부에 송부해야 한다. C. 형의 집행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사령관은 재판소에서 선고한 형벌에 대해 언제나 이를 경감할 수 있으며, 또한 형을 가중시키지 않는 한 ‘그 밖의 변경’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조례’의 요지는 공정, 더구나 신속하게 이 재판을 행사하고, 어디까지나 연합국최고사령관을 최고 권위자로 하여 행하여지는 ‘군사재판’이라는 점에 있다.

1946년 4월 25일에 동 재판소에 기소장이 제출되었다. 뉘른베르크재판소 기소내용처럼³⁰⁾ 그 기소 내용은 크게 ① 평화에 대한 죄,³¹⁾ ② 살인 및 살인 공동모의의 죄, ③ 통상의 전쟁범죄³²⁾ 및 人道에 대한 죄³³⁾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소장은 前文과 訴因 및 附屬文書로 구성되었으며, 55개 항목에 이르는

30) 뉘른베르크재판소 헌장 제6조 (a) Crimes against Peace , (b) War Crimes, (c) Crimes against Humanity 참조.

31) ‘평화에 대한 죄(Crimes Against Peace)’는 “국제조약, 협약 또는 화약에 위반하면서 침략전쟁 혹은 전쟁을 계획, 예비, 개시 또는 수행한 행위 그 자체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계획 또는 음모에 참여한 행위”를 말한다.

32) ‘통상의 전쟁범죄(Conventional War Crimes)’는 전쟁법률이나 전쟁관습에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이 위반행위에는 점령지역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학대, 강제노동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추방한 행위, 전쟁포로를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행위, 인질살해, 공적·사적 재산 약탈행위, 고의적인 도시·시장·마을 파괴행위, 또는 군사적인 필요성이 없는 황폐화 행위가 포함된다.

33) ‘인도에 대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는 기본적으로 전쟁 이전에 혹은 전쟁 중에 민간인에 대해 자행된 살해, 말살, 노예화, 추방 또는 다른 반인간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전쟁수행 중에 정치적·인종적·종교적인 근거에서 행해진 형사소추 또는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는 범죄와 결부된 소추를 포함한다.

소인은, 평화에 대한 죄(소인 1~36), 살인(소인 37~52), 통상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소인 53~55)로 구성되어 있다.³⁴⁾ 그 중심은 ‘평화에 대한 죄’였으며, 이로써 1931~1945년까지의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의 공동모의에 참가하고 위법한 전쟁을 준비 개시한 행위가 핵심적 범죄로서 소추가 된 것이었다.

1946년 4월 8일 참여검사회의가 개최되어 이 자리에서 26명의 피고인이 결정되었다. 이 회의의 벽두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맨스필드(Alan James Mansfield, 1902~1980) 검사가 天皇의 訴追를 정식으로 제의했으나 부결되었다. 천황의 소추에 관해서는 일본의 패전 전후에 걸쳐 미국 정부 내에서 다소간의 논란을 거친 후에 불소추의 방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뒤집을 수가 없었다. 1946년 4월 13일, 미국 주도의 재판에 반발하여, 대표의 파견을 미루고 있던 소련으로부터 마침내 검사단이 도착하였으며, 소련 검사단에서 새로 5명의 피고인의 추가를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재차 참여검사회의가 개최되어 그 중 2명이 피고인으로 추가되었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총 28명이 되었다.

위 28명의 피고인 구성은 首相經歷者 4명(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궁중 그룹이 1명, 육군군인 13명, 해군군인 3명, 외교관 4명, 경제관료 2명, 민간우익 1명이었다. 피고인의 구성과 관련하여 육군군인이 제일 많고 태평양전쟁 개전시 각료와 군당국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진주만 공격의 책임을 증시한 맥아더 등 미국 측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48년 28명의 기소자 중에서 A급전범 25명에 관하여 55개 기소이유 가운데 하나 혹은 10여 개 이상의 이유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25명 중 도조 히데키 등 A급전범 6명은 사형판결을 받아 12월 23일에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연합국사령부는 냉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의식하여, 다음 날인 12월 24일에는 A급전범 19명 전원을 석방하고, 재판종결을 선언하였다. 그 석

34) 1~5까지의 상세한 기소이유에 대해, 朝日新聞記者團 編, 노병식 譯, 1983, 『東京裁判』(상), 태종출판사, 70~74쪽.

방된 19명 가운데는 다음에 수상이 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후 우익의 실력자로 영향력을 행사한 고다마 요시오, 사사가와 료이치[笹川良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도쿄재판의 기소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천황 전범처벌면책, 반인도적 범죄 기소보류, 일본 731세균부대 죄상 은폐, A급전범 19명 석방은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천황 처벌면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전략³⁵⁾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가 공히 교감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시켜 온 작전이다. 맥아더는 이를 위해서 도쿠다가 일본 대중당 수석과 일본노조총연맹 수석고문인 미즈타니 조자부로와 강력한 히로히토 천황의 처벌과 천황제 폐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교묘하게 이들을 회유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³⁶⁾ 천황 면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맥아더는 히로히토 천황에게 인간선언을 중용하여 관철시켰다.

일본군 731부대가 자행한 세균과 독가스 제조 범죄³⁷⁾ 전범자 이시이 기소보류 및 석방은 소련과 중국의 강력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도면밀한 재판진행과 기소 대세로 관철되었다. 아니 국제전범 법정의 미국의 자국 법률가 모로우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맥아더와 트루먼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전범자 이시이를 1946년 3월 22일 석방했다.³⁸⁾ 미국 출신 검찰 키넌(Keenan)은 “지식의 보호는 인류의 책임, 나아가 세균과 독가스에 관한 연구실적 보존”을 명분으로 면죄 석방했다. 바로 이 무렵 이시이가 보물처럼 아끼던 연구업적 필름은 미국 세균화학무기 연구기지인 터틀릭연구소로 옮겨졌다.

35) 미국이 천황을 이용해 일본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를 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36) 황허이 지음, 백은영 옮김, 1999, 앞의 책, 133~136쪽.

37) 이시이의 자백에 따르면, 마루타(실험대상인간)가 총 3,850명이다. 독가스 실험대상은 2,450명이었고, 그중 562명은 러시아인, 254명은 한국인, 나머지는 중국인인데, 중국인의 90%는 전쟁에서 잡힌 포로들이라고 한다. 황허이 지음, 백은영 옮김, 1999, 앞의 책, 179~180쪽.

38) 황허이 지음, 백은영 옮김, 1999, 앞의 책, 208~209쪽.

그러나 이시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자신이 서명한 1899년 7월 독가스 사용금지 헤이그선언, 1925년 6월 화학무기와 세균무기 사용금지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국제법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남겼다.

그리고 일본군의 人肉食에 대한 면책도 최근에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이것은 멜버른 대학의 다나카 도시유키[田中利幸]가 밝힌 것이다.³⁹⁾ 이처럼 도쿄재판에서 특히 '반인도적 범죄'는 겨우 한 건 정도 기소가 된 것은 도쿄재판의 가장 큰 실책이었다.

2) 뉘른베르크재판소의 기소범죄와 기소내용

뉘른베르크재판소에 기소된 주요 전쟁범죄인은 22명이었다. 원래는 24명이었으나 한 명은 재판 전에 자살했고, 한 명은 병으로 심리가 정지됨으로써 2명이 탈락되었다. 22명 가운데 3명은 無罪, 19명은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선고에는 소련 측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소련 측은 3명의 무죄를 반대하고, 또 헤스(Hess)는 사형에 해당되며(선고는 종신형), 독일참모부와 국방사령부는 똑같이 전쟁범죄조직으로 선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⁴⁰⁾ 1945년 10월 18일 기소장에 표명된 22명에 대한 기소이유는 뉘른베르크재판소 규정 제6조에 따라 크게 네 가지이다.⁴¹⁾ 즉 첫째,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를 행하기 위하여 공동의 계획 혹은 모의, 둘째, 평화에 대한 죄, 셋째, 전쟁범죄, 넷째, 인도에 대한 죄가 그것이다.

39) 다나카 도시유키[田中利幸], 1993, 『알려지지 않은 전쟁범죄-일본군은 오스트레일리아 인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大月書店; 다나카 히로시 외 저, 이규수 역, 2000, 『기억과 망각』, 삼인, 112~113쪽.

40) H. W. Verzijl, 1978, *International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Part IX-A: The Law of War, Sijthoff & Noordhoff, p. 398.

41) H. W. Verzijl, 1978, 위의 책, p. 396.

3_ 재판관할권의 비교

1) 도쿄재판 관할권

변호인단은 1946년 5월 13일 제3회 공판에서는 법정의 관할권의 근본을 따지는 동의서를 제출했다. 실제로 법정의 합법성을 따지는 몇 가지 신청이 더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의 하나가 다카야나기[高柳] 박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이 재판의 근거가 되는 국제법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 세계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에게 감정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신청한 것이었다.⁴²⁾ 다시 말해 당 법정은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 재판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지배층은 자주 재판을 들고 나왔다. 그들은 포츠담선언 10항의 전범 처리규정은 '일반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독일의 경우처럼 전쟁지도자의 고도의 정치책임이 전범재판이라는 형태로 추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일본 지배층 사이에는 연합국의 국제재판보다 선수를 쳐서 자주적인 재판을 열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대표적으로는 포츠담선언(1945. 7. 26) 수락에 임해 군수뇌부에서 보인 '4조건'과의 움직임을 들 수 있다. 1945년 8월 9일, 최고전쟁지도자회의에서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 참모총장은 전쟁범죄인 처벌과 관련해 일본 측에서 재판을 하든지, 아니면 상대측만으로 구성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대조건을 붙이라고 주장하였다.

1945년 9월 11일, 연합군최고사령관 맥아더는 태평양전쟁 발발 당시 수상이었던 도조 히데키 등에 대해 전범체포 제1차 지령을 내렸다. 히가시 쿠니노 나루히코 내각은 이에 충격을 받아 서둘러 대책을 강구하였다. 다음 날 9월 12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연합국 측의 이러한 태도를 무시한 채 일본 측에서 전쟁범죄를 시급히 조사하여 자주적인 재판을 실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

42) 朝日新聞記者團 編, 노병식 譯, 1983, 앞의 책, 61~67쪽.

다. 보고를 받은 천황은 자기 이름으로 전범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 재고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열린 각의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와, 천황은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 자주재판 구상은 “천황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다시 천황의 이름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이 당시의 기구로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내무대신으로 있던 기도 고이치가 회상하는 것처럼 자가당착적인 것이었다. 이 자주재판 구상은 13일, 시게마쓰 마모루 외상이 GHQ의 서덜랜드 참모장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일본 측의 자주재판 구상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실제로 육군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45년 9월부터 다음 해 3월에 걸쳐서 대만·사이공·셀레베즈 지구에서의 살해사건 등에 관계한 8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처벌하였다. 형량은 10개월부터 종신형까지였는데, 살인 등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비교적 가벼운 것이었다. 이 처벌의 진의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방패삼아 연합국 재판에 선수를 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처벌받은 군인들은 이후 연합국 각국의 B·C급 군사법정에서 다시 심의를 받았고, 이미 일본 측으로부터도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특히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이국땅에서 B·C급 전범이란 혐의로 처형되거나 형무소에서 장기수감생활을 하고 숨진 한국인 희생자문제가 최근 밝혀지고 있다.⁴³⁾

한편 GHQ는 1946년 2월 “형사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각서”를 명령으로 하달했다. 연합군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일본 재판소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명령에 대해 외무성 카펜터 GHQ 법무국장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그는 “일본 재판소가 일본인 전쟁범죄인을 재판할 수 없는 것은 포츠담선언에 기초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더욱이 GHQ는 3월 일본 측의 전쟁범죄 조사나 심판을 전면 금지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본 측의 자주재판 구상은 중지부를 찍었다.

43) 『한겨레신문』, 2008. 12. 8.

그런데 1946년 5월 13일 '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동의서가 제출되었다. 재판소는 포츠담선언에 기초하여 설립되었지만, 포츠담선언에서 말하는 전쟁 범죄인이란 통상의 전쟁범죄인만을 가리킬 뿐이며, 당시까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던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로 심판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사후 입법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 등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 동의는 모두 각하되었다.

2) 뉘른베르크재판 관할권

독일에서는 자국민에 의한 전범재판이 실현되지 못하고 연합국에 의한 밖으로부터의 전범재판만이 실시되었다. 독일에서는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의거하여 1945년 11월부터 약 1년간 국제군사재판이 시작되어 다음 해 9월 30일과 다음 달 양일간에 걸쳐 판결문의 낭독으로 그 막을 내렸다. 뉘른베르크재판 종료 이후에도 관계 각국에서는 나치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실시되었다.

중요한 것은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이 점령지역 그리고 1949년 동·서독 분단 후 이 지역의 국내 형법에 나치 전범처벌규정을 두어 독일인의 손으로 非나치화를 위한 재판이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뉘른베르크재판은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도쿄재판처럼 '승자의 재판'이라는 비판이 독일에서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가장 큰 법률적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라는 기본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법률의 형식적 관점에서 보면 뉘른베르크재판은 소급처벌을 야기했다는 것인데, 특히 '승자'가 사후에 '패자'를 재판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에 법률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뉘른베르크재판을 감행했다는 비판이었다. 게다가 뉘른베르크법정에서는 재판부와 검사석, '형집행'까지 모두 동일한 쪽의 인물, 곧 승자인 연합군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 이미 뉘른베르크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에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뉘른베르크재판은 법률적 논란의 '불씨'를 안은 채 시작되었다. 특히 변호인의 '승자' 재판 주장이 과연 평범한 독일인의 나치 청산에 어떠한 영향

을 주었을까 하는 점이다. 즉 보통 독일인은 이 재판을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승자의 ‘보복’으로 보려는 인식이 더 문제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인 변호인이 내세운 변론 중 하나는 왜 ‘승자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가하는 것이다. 물론 ‘런던협정’에 따르면, 이 협정은 연합국이 저지른 범죄를 다루는 곳은 아니며, 또 독일인은 무조건 항복을 통해 런던협정을 수용한 것이어서 법적으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독일 변호인들은 이를 통해 나치의 전범을 상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 연합군이 독일 드레스덴을 무차별 폭격하여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한 것이나, 미국이 원자폭탄을 무고한 히로시마 민간인에 투하한 행위, 소련이 발틱해 연안국가들과 폴란드 일부를 점령한 것도 역시 전쟁범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비판자들이 문제삼은 것은 뉘른베르크 초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하여 벌인 ‘침략전쟁’이었다. 이 변호인단에 따르면, 독일의 ‘침략전쟁’은 뉘른베르크 현장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일어난 일로서 소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소련이 일본을 침략한 것은 소련이 뉘른베르크 현장에 서명하고 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명백한 전쟁범죄라는 것이다.

유명한 철학자 야스퍼스(Jaspers)는 뉘른베르크재판으로 인해서 승전국의 재판은 우리 스스로 이 범죄체제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결국 연합국들에 의하여 해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⁴⁴⁾

요약하면, 위의 비판은 이 재판이 독일인의 자기성찰의 과정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승자의 재판’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나치 전범자들이 독일 법정에서 독일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문제는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는 점이다.⁴⁵⁾

44) Karl Jaspers, 1965, *Hoffnung und Sorge, Schriften zur deutschen Politik 1945-1965*, p. 65.

45) Golo Mann, 1966, *Geschichte des 19. und 20. Jahrhunderts*, p. 972.

4. 재판 진행과정

1) 도쿄재판 진행과정

도쿄재판은 실질적으로 법관과 검사의 구성,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등 미국 주도로 진행되었다. 1946년 5월 3일 개정되어 이날 오후 기소장이 낭독되었고, 개정 이후 1948년 4월 16일 검찰 측의 최종심리 의견진술을 거쳐 심리가 종료되었다. 개정 이후 1947년 1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검찰 측 입증이 진행되었다. 일본인 교육학자, 경제학자, 형법학자, 연극인, 기자, 기록영화감독, 군인 등이 증언하였으며, 전 만주국 황제 푸이[溥儀]도 증언대에 섰다. 검찰 측의 증언 입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2명이 사망하여 피고인은 25명으로 줄어들었다. 동년 2월 24일부터 변호인 측의 반증이 개시되었다. 그 반증은 전체의 6월 1일에 일본인 변호인단 총회에서 결정된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즉 첫째, 천황에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국가를 변호할 것, 셋째 전두항의 범위 내에서 개인을 변호할 것으로 되어 있다. 변호인의 반증과 변호는 1948년 1월 12일까지 이어졌다. 1948년 1월 12일부터 검찰 측의 반박·입증, 1월 30일부터 변호인 측의 재반증,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검찰 측의 최종 논고,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검찰 측의 최종의견진술을 거쳐 4월 16일에 심리가 종결되었다.

2) 뉘른베르크재판 진행과정

뉘른베르크재판도 재판부 구성과 재판진행과정이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개 연합국, 승자만으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은 동일하지만, 최소한도 4개국 내에는 전반적 재판진행에 대해서 비교적 공평하게 권한이 배부되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쿄재판처럼 미국 중심으로 무리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재판진행과정의 핵심을 독일 나치의 유대인 인종학살이나 아니면 독일의 침략전쟁을 전체적으로 문제삼는냐에 의견이 갈라졌다. 뉘른베르크재

판의 검사 측은 각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범죄행위를 조사하기보다는 침략적 행위의 전체적인 음모를 밝히는 데 치중했다. 곧 이들은 나치가 어떻게 침략전쟁을 획책하는 음모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⁴⁶⁾ 이 재판에서 유대인 학살의 초점이 주로 나치의 침략전쟁을 규명하는 데 놓여짐으로써 유대인의 참상과 전쟁의 역할보다는 나치와 히틀러의 '광적' 유대인 정책이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홀로코스트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문제점을 남겼다.⁴⁷⁾ 이 때문에 미국 국방부는 1944년 10월 유대인 학살을 '전범'이라는 용어가 갖는 일상적·법률적 정의 내에서 통상적 처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 '연합국전범위원회'의 법적 관할권이 먼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⁸⁾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반인도적' 기소사유는 그만큼 통상적인 법해석을 뛰어넘고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5. 판결결과

1) 도쿄재판소의 판결

1948년 11월 4일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부터 1주일 간에 걸쳐 판결문이 낭독되었으며, 11월 12일에 이르러 형이 선고되었다.

판결에서, 우선 재판소는 재판소 현장에 형식적으로 구속되며, '평화에 대한 죄' 등을 정한 '헌장'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명기되었다. 다음으로, 55개의 訴因 중 10개의 소인만이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각하되었다. 그 10개의 소인 중 8개는 '평화에 대한 죄'에 속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2개는 '통상의 전쟁

46) Richard J. Overy, 2001, *Interrogations : the Nazi elite in allied hands 1945*, London, p. 56.

47) 송충기, 2005. 3, 「뉘른베르크 재판과 나치청산」,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 제 93집, 342~344쪽.

48) NARA II, RG 107, McCloy papers, Box 3, Stimson to Stettinius, on Okt 27, 1944.

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속하는 것이었다. 당초 현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기소되었던 살인에 속하는 소인은 모두 각하되거나 무시되었다.

그리고 도쿄재판의 다수 판결의 근거는, 침략전쟁은 불법이라는 적극적 책임 근거로 국가정책수단으로서 모든 전쟁을 포기한다는 1928부전조약(Kellogg-Briand Pact of 1928)에 두었다.⁴⁹⁾

판결은 검찰 측의 입증을 기본적으로 인정한 다음, 25명의 피고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선고의 결과는 교수형이 7명(도조, 히로타, 이타가키, 마쓰이, 도이, 기무라, 무토), 종신금고가 16명, 금고 20년이 1명(도고), 금고 7년이 1명(시게마쓰)이었다.

이 판결에 대하여 5개의 소수의견(Dissenting Opinion)이 제시되었다. 인도의 팔(R. Pal) 판사,⁵⁰⁾ 프랑스의 베르나르드(Bernard) 판사, 네덜란드의 롤링(Roeling) 판사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웹(Webb) 판사와 필리핀의 자라닐라(Jaranilla) 판사는 판결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보충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밝혔다. 이들 소수의견은 변호인 측의 낭독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서 낭독되지 않았으며, 속기록에도 게재되지 않았다.

소수의견의 논점은 첫째, 재판소가 현장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 베르나르 판사와 팔 판사는 심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일본 천황의 책임에 관해, 베르나르 판사가 태평양전쟁 개전의 주요한 책임자는 천황 히로히토인데, 다른 공범자가 대신해 처벌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으며, 웹 재판장은, 천황의 면책이 “모든 연합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면서, 보다 큰 책임이 있는 천황이 면책되었다는 것은 다른 피고인의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원폭 투하에 관해 팔 판사는 연합국(미국)이 저지른 전쟁범죄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피고인 전원이 무죄

49) Elizabeth S. Borgwardt, 1991, 앞의 글, pp. 393~400.

50) 인도 R. Pal 대법관의 소수의견에 대해서, Elizabeth S. Borgwardt, 1991, 앞의 글, pp. 409~441.

라고 주장한 데 대해,⁵¹⁾ 같은 아시아로부터 파견된 자라닐라 판사는 원폭의 사용은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아가 판결의 양형이 너무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선고된 후 변호인 측은 연합국최고사령관 맥아더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맥아더는 1948년 11월 22일 재판 당사국인 11개국 대표를 모아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 자리에서 캐나다·인도·네덜란드 대표는 피고인들의 감형을 요구했으나, 다른 8개국의 대표들은 원판결을 지지했다. 이를 토대로 11월 24일에 맥아더는 재심 신청을 각하했으며, 1주일 이내에 형을 집행하도록 명령하였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11월 29일에 미국 연방최고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여, 형집행이 연기되었다. 12월 20일 미국 연방최고재판소는 연합국의 기관으로 설치된 군사법정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소원을 각하하였다.⁵²⁾ 교수형이 선고된 7명에 대한 형집행은 12월 23일 오전 0시 1분~33분까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처형장소에는 미국·중국·영국·소련의 대표가 입회하였다. 처형된 시체는 유족에게 인도되지 않고 엄중한 감시 아래 화장된 후 바다에 뿌려졌다.

2) 뉘른베르크재판소의 판결

총 218일의 재판과정에서 모두 360명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총 24명이었다. 그 중 레이(Robert Ley)는 구금 중 자살, 기업가인 크루프(Krupp)는 병으로 판결이 연기(후에 사망), 판결은 22명에게만 내려졌다. 피고인 22명 가운데 3명은 무죄, 19명은 유죄가 선고되었다. 즉, 교수형 12명, 총신형 3명, 10년 징역 1명, 15년 징역 1명, 20년징역 2명, 무죄 3명이다. 또 기소된 나치집단 여섯

51) Elizabeth S. Borgwardt, 1991, 앞의 글.

52) H. W. Verzijl, 1978, 앞의 책, pp. 397~398.

가운데 세 집단(나치당, SS, 게스타포 및 안전기획부⁵³⁾)이 범죄조직으로 인정되었다. 형이 확정된 후인 10월 15일에 나치의 2인자였던 괴링(Goering)이 자살하였고, 나머지 사형수들은 다음 날 교수형에 처해졌다. 연합군들은 나치 추종자들이 이들의 묘비를 세우거나 나중에 추모집회를 가질 것을 우려하여,⁵⁴⁾ 이들의 시체는 비밀리에 화장되어 강에 뿌려졌다.

이 재판은 무엇보다도 역사상 처음으로 ‘반인도적인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규정하고 전쟁범죄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물음으로써 국제법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이 재판에서 나치의 거물급 책임자 24명이 기소되어, 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선례로 남음으로써 이는 이후 후속재판과 독일인이 진행한 나치 전범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나치가 저지른 범죄, 곧 침략전쟁, 포로학대, 민간인 살해, 유대인 학살을 기소하고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치집단의 정체와 행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의 재발을 막는 좋은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뉘른베르크재판은 소위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치 청산노력과 구별되고, 이로써 나치 청산을 위한 첫걸음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숙청이나 재교육 그리고 피해자 보상 등 과거 청산의 기본내용은 보통 ‘청산되어야 할 내용’의 사법적 인증과 그 처벌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독재행위와 같이 일종의 ‘국가 통치행위’가 사법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53) 안전기획부(SD)는 원래 SS의 소속이었지만 검사 측에서 이 두 조직이 서로 협력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들을 한꺼번에 기소하였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판결도 그렇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 *Der Nuerttemberg Prozess gegen die Hauptkriegsverbrecher vom 14. November 1945-1, Oktober 1946, XXII, p. 576.*

54) 이들 주모자급 재판뿐만 아니라, 강제수용소 관리 등 대량학살을 집행한 일선책임자를 상대로 한 재판도 여러 곳에서 열렸다. 미군정 지역, 영국군 점령지역, 프랑스 점령지역, 소련군 점령지역에서 사법적 청산이 이루어졌다. 또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도 사법청산이 있었다. Adalbert Rueckerl, 1984, *NS Verbrechen vor Gericht, Heidelberg, pp. 95~98.*

서 뉘른베르크재판은 독일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나라의 과거청산에 중요한 전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후 과거청산을 추진하는 많은 국가가 독재정권과 그 지도자를 뉘른베르크의 선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한 것도 모두 다 이 때문이다.

6_ 판결의 실질적 비교검토, 분석

- 1) 도쿄국제군사재판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 ① 인도에 대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를 경시한 측면
 - ② 쇼와 천황의 면책문제
 - ③ 일본 731부대의 화학전·생물학전의 책임자에 대한 면책문제
 - ④ A급전범 용의자 19명의 석방문제
 - ⑤ 일본군의 인육식에 대한 면책
 - ⑥ 재판주최 측의 전쟁책임 문제 제기. 예를 들면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의 무고한 민간인에게 원자폭탄 투하를 지시한 트루먼 대통령의 전범 기소 요구문제
- 2) 뉘른베르크재판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침략전쟁이 개인적인 범죄라는 점을 명백히 한 점
 - ② 국제법상 배타적 책임 개념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주체·객체 2분법 종료
 - ③ 개별 국가(주관성)와 보편적 인도주의(객관성) 간의 적대적 관념의 통합 과정을 시도한 점
 - ④ 국제인권과 전쟁법 간의 점진적인 수렴
 - ⑤ 죄형법정주의(nulla poena sine lege) 위반이라는 독일 변호인단의 비판
 - ⑥ 패자의 범죄만을 다룬 승자의 재판이라는 비판

양 재판의 위의 실질적 분석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정리해 본다.

우선, 공통점은 양 재판에 적용된 법원칙은 동일하다는 점이다. 즉 ① 개인의 형사책임의 원칙이다. ② 국내법상의 규정에 관계없이 국제법상의 범죄는 국제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③ 형사책임에서 공적 지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원칙이다. ④ 상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⑤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는 원칙이다. ⑥ 관할범죄로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인정하였다. 더구나 이 법원칙은 추후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양 재판의 차이점은 동 국제법 원칙이 양 재판 진행과정에서 특수한 상황에 따라 얼마나 제대로 집행되었느냐에 있다고 본다. 첫째, 도쿄재판은 재판기간 면에서 3년이라는 장기간이었고, 뉘른베르크재판은 1년이라는 단기간이었다. 둘째, 관할대상범죄에서 뉘른베르크재판은 피고인에게 대부분 '인도에 대한 범죄'를 적용하였고, 반면 도쿄재판은 피고인에게 '평화에 대한 죄'를 적용하여, '인도에 대한 죄' 적용을 소홀히 하였다. 그래서 이 점은 식민지 과거청산에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 판결의 집행성 확보에서 뉘른베르크재판이 도쿄재판보다는 더 엄격하게 집행하였다. 도쿄재판은 천황 면책과 A급전범 19명 석방을 포함하여 집행성에서 매우 미흡하다. 넷째, 도쿄재판에서의 걸림돌은 미국이 아시아 전략을 의식한 자국정책 목표 관철이 문제였다. 그래서 미국 주도의 재판 진행이 많은 갈등을 가져왔다. 반면, 뉘른베르크재판의 어려움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처벌을 두고 '세계유대인협회'와 '영국과 미국의 반유대주의 정서'와의 갈등이었다. 다시 말해 전범재판에서 유대인 인종학살문제를 '인도에 대한 죄'로 독자적인 기소사유로 다룰 수 있는냐의 문제였다. 다섯째, 재판 후 재판정신을 살리기 위한 일본과 독일의 후속 조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기에 상론한다. 일본은 도쿄재판 후 재판정신에 상응한 국내 특별법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독일은 뉘른베르크재판 후 재판정신을 관찰하기 위한 후속 국내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로 도쿄재판은 A급전범 19명 석방을 비롯하여 많은 전범이 전후 다시 일본 사회에 복귀하여, 재판 후 일본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반면, 뉘른베르크재판은 그 후에도 독일과 유럽 주변국이 꾸준히 공직 취임 금지

법 등 국내 입법조치를 통해 전범들이 과거청산 차원에서 정리되고, 더 이상 독일 사회에 주체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독일에서는 뉘른베르크의 계속재판이라는 형태로 연합국이 본 재판에 이어 ‘장관 재판’, ‘친위대재판’, ‘재계지도자재판’, ‘빌헬름가(외무성)재판’, ‘의사재판’, ‘사법살인재판’을 실시하고, 국가범죄로 수많은 ‘인도에 대한 죄’를 재판에 회부되어 사법청산이 이루어졌다. 반면, 일본은 연합국과 일본국가 자신에 의해 이러한 종류의 계속재판이 실시되지 못했다.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냉전시대를 대비하여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 차원에서 연유한 것이다. 더구나 독일의 경우에는 ‘인도에 대한 죄’가 국내 형법규정으로서 계승되고, 그 다음에도 ‘나치 재판’으로 자국민의 손에 전범자들이 계속 재판에 회부되어 국내에서도 이루어졌다. 독일은 점령종료 이후에도 ‘나치 재판’으로 자국민의 손에 의하여 ‘인도에 대한 죄’를 계속 추궁하였지만, 일본은 도쿄재판의 과정에서 이 ‘인도에 대한 죄’가 독립된 기소요인으로 취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의 결정적 차이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나치가 자행한 것 같은 잔학행위는 없었다는 판단이 전후에 일본에 널리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전후 일본인 사이에 왜 ‘인도에 대한 죄’라는 관점에서 과거의 전쟁범죄를 스스로 단죄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은 국내의 일본인 전쟁피해자에게는 상당액을 보상하면서, 일본군의 일원으로 동원되었던 과거 식민지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은 ‘국적조항’에 따라 완전히 무시하는 일을 자행하곤 했다.

7. 재판 판결결과에 대한 일반여론

1) 일본 여론

미국무성 정보조사국 극동조사과의 「A급전범 재판에 대한 일본인의 반응」(1948년 8월 OSS 문서 마이크필름)에 따르면, 재판에 대한 상당수 일본인의 태도는 이 재판을 패전에 따른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피고에

대해서는 그들의 전쟁책임보다도 국가를 패전으로 이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과 불행을 가져온 책임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어 있다. 즉, 개전책임보다도 패전책임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에 대해 보인 일본인의 냉정함은 그것이 본심이라고 한다면, 천황을 처벌하지 못했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천황 퇴위에 대해 뿌리 깊은 반대를 보인 일본인도 적어도 도의적인 면에서 천황이 전쟁책임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일본인이 ‘개전책임론=가해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패전책임론=피해자의식’을 지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GHQ는 좌익이건 우익이건 기본적으로 도쿄재판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GHQ는 모든 출판물을 검열하였다. 위의 모든 여론은 검열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판에 대한 일본인의 편지에 대해 점령군의 극비리 통신검열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여론 조사도 34% 긍정, 39% 비판적, 나머지 27%는 분명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1948년 11월 5일자 『아사히신문』 논설 「단죄와 국민」에서, 일종의 국민 책임론의 전개와 평화국가로서의 진전을 주장하였다.

또 도쿄재판 판결 후 두 가지 일이 있었다. 하나는 점령군 총사령관에 대한 재판소 현장의 규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미국 변호인의 미국 연방최고재판소에 대한 人身保護의 신청이다. 전자에 대해, 맥안더의 재심사권의 발동을 촉구한 신청을 접수한 연합국총사령부는 1948년 12월 24일의 특별발표에 따라 모든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제8군사령관에게 판결대례형의 집행을 명령했다는 것을 밝혔다. 후자 인신보호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최고재판소는 미국의 법정은 이들 소청인에게 과해진 판결을 심사하거나 확인 또는 취소할 권한이 없고, 이 이유에 따라 인신보호령에 관한 소청의 접수를 탄원하는 신청을 부결한다고 판정했다.⁵⁵⁾

55) 朝日新聞記者團 編, 노병식 譯, 1983, 앞의 책, 188~193쪽.

2) 독일 여론

독일인들이 법률적 측면에서 뉘른베르크재판의 결과에 승복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주는 교훈적 효과는 없었을까? 이를 위해서 우선 이 재판의 추진자들이 소위 ‘교훈적’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본다. 연합국은 나치의 전범처리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전쟁이 종결될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즉결처형이 아닌 재판을 통해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정부가 처칠(Churchill)을 비롯한 영국 정부의 인사들이 끝까지 고집하던 즉결처형을 거부하고, 재판을 통해 전범을 처리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연합군 전쟁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 내에서 재판 형식을 강조한 국방부 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독일이 무조건항복한 이후 연합국은 히틀러나 히틀러 같은 가장 극악한 나치 전범자들을 재판이나 심문하지 않고도 처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것은 확실하고 빠른 처리방식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연합국 모두가 합의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이것의 위험성은 또한 그럴 경우 독일인이 이 범죄자들을 순교자로 숭배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⁵⁶⁾

이것은 지난 12년간 ‘법치’를 파괴한 전범들을 법정에서 단죄하여 독일인이 빼앗긴 ‘법치’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음을 확인시키자는 것이다. 나아가 연합국, 특히 미국은 처음부터 나치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을 통해서 독일인과 세계에 교훈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연합국이 뉘른베르크재판소를 이렇게 하나의 교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데는 당시 일반 독일인에 대한 연합국 측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독일에 진주한 연합국 측은 비록 독일인들의 집단책임을 공개적으로 주장

56) NARA II, RG 107, McCloy papers, Box 3, Henry Stimson to Stettinius on 27 Oct. 1944.

하지는 않았지만, 미 재무장관 모르젠소를 중심으로 전후질서에 대해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 독일인들도 나치 범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미군 초기 점령정책의 토대가 되었던 미군 참모총장 명령서 제1067호(Directive of the United States Joint Chiefs of Staff)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 있다. 이 문서는 당시 독일 주둔 미군의 임무가 나치당과 그 산하 조직들을 근절시키고 나치조직의 재등장을 단호하게 대처하는 데 있음을 밝혀 주었다.

따라서 미군정은 일반 독일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것이 뉘른베르크재판이었다.

그렇다면 일반 독일인들은 이 재판을 통해 나치정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1945년 11월 20일 뉘른베르크재판이 시작되어 1946년 10월 피고인에게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독일인들은 대체로 그 재판에 우호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렇듯 초기에⁵⁷⁾ 독일인들이 뉘른베르크재판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나치의 주요 책임자가 처벌받음으로써 모든 독일인은 그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들은 뉘른베르크재판을 통해서 소위 집단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죄의 문제를 논하면서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죄’와 ‘강요되고 어쩔 수 없는 죄’ 두 가지를 구분했다. 전자에 속하는 것은 정치적 죄와 형사적 죄를 말하고, 후자에 속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형이상학적 죄였다. 그에 따르면 ‘집단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비록 국가 구성원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도덕적이고 형이상학적이라는 점에서 그렇지 않으며, 또 형사상 책임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했다. 여기서 그는 후세대를 포함한 독일인들은 나치 범죄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도덕적이거나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군정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초기의 긍정적 관심이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1946년 2월부터 뉘른베르크재판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

57) 1950년 들어 뉘른베르크재판에 대한 독일 여론에 비판적 경향이 있기는 했다.

게 줄어들었다.⁵⁸⁾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무렵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에 무관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뉘른베르크 후속재판에서 더욱 심해져, 신문의 보도조차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⁵⁹⁾

연합국이 전범재판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이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 뉘른베르크재판이 초기의 긍정적 시각보다는 독일인에게 ‘승자의 재판’으로 인식되어 그 사법적 처리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뉘른베르크재판 초기에는 응답자의 78%가 재판이 공정하다고 보았으며, 단지 4~6%만이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약 4년 후, 뉘른베르크재판이 끝난 후인 1950년 가을에 조사한 내용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이제는 응답자의 30%가 이 재판을 부당하다고 보았고, 38%만이 공정하다고 보았다.⁶⁰⁾

8_ 재판결과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문제제기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두 재판소의 판결결과에 대해 독일과 일본의 법률가와 종교계에서 많은 비판과 공통된 문제제기를 하였다.

문제제기는 크게 네 가지로 재판의 공정성, 평화에 대한 죄의 이데올로기 성과 구속성, 人道에 대한 죄, 국제군사재판소 현장의 소급성이다.

이 글의 취지상 매우 중요하기에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본다.

58) Martin Broszat, 1981, "Siegjustiz oder strafrechtliche Selbstreinigung. Aspekte der Vergangenheitsbewaeltigung der deutschen Justiz waerend der Besatzungszeit 1945-49," *Vierteljahreshefte fuer Zeitgeschichte* 29, p. 477.

59) Anna J. Merritt and Richard L. Merritt ed., 1970, *Public Opinion in Occupied Germany, The OMGUS-Surveys 1945-1949*, Urbana, pp. 33~36.

60) Anna J. Merritt and Richard L. Merritt ed., 1970, 위의 책.

1) 재판의 공정성

도쿄재판소와 뉘른베르크재판소의 헌장이 전승국에서 제정되었고 재판관과 검찰관의 전부가 전승국 출신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연합국 측이 저지른 침략 죄(예,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무고한 민간인 살상) 불처벌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하여 일단 의심을 갖게 하였다.⁶¹⁾

입법자가 동시에 검찰관과 법관이 되고, 또 범죄를 묵인하고 원조한 자가 범죄자에 대한 입법자와 법관이 된다는 것은 현대 형사재판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는 재판소 구성에 적어도 중립국 출신이나 더 나아가 패전국 출신의 재판관이 참가했더라면 관할권과 재판의 결과에 대한 신뢰가 더 컸을 것이라고 보아 전승국의 일방적인 재판에 비판을 가하였다. 전범 도조(東條)는 이 재판이 정치적 재판이며, 승자의 정의(Victor's Justice)라고 주장하였다.⁶²⁾ 수석검찰관 키넨도 도쿄재판을 어느 정도 앵글로색슨적正義 관념의 건전한 예로 생각하였다.⁶³⁾

이러한 문제는 국제공동체의 현실을 무시하고 논해서는 안 된다. 국제공동체는 주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해 국내사회에 비교하여 국제공동체는 아직도 분권화된 사회이다. 이 같은 불완전한 국제공동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승국의 재판관으로만 구성된 재판소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다. 전승국은 그동안의 패전국에 대한 적개심을 특정 범죄인의 논죄를 통하여 발산시킴으로써 그들의 국민여론을 만족케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일부논자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분권적 국제사회에서 침략전쟁을 수행했던 국가 지도자들의 형사소추는 단지 패전국에게 주어진 범죄 일 뿐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전쟁노력에 대한 공정성을 좌우하는 목적의 파악

61) H. A. Smith, 1947, *The Crisis in the Law of Nations*, London : Stevens & Sons Limied, p. 47.

62) Richard H. Minear, 1971, *The Tokyo War Crime Trial*,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3.

63) Richard H. Minear, 1971, 위의 책.

이 어렵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켜서는 안 되며, 더구나 그러한 계산된 잔학성을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⁶⁴⁾ 폰 글란(von Glahn)도 일부처럼 “재판소에 중립국 재판관의 부재가 문제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중립국 재판관의 포함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기소된 범죄가 너무 가공스럽고, 인간의 존엄성도 결여되었으며, 기독교 문명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면에서도 최소한의 수준도 결여되었기 때문에 증거를 듣는 중립국 재판관일지라도 중립적으로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⁶⁵⁾

그러므로 문제는 구성된 재판소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올바른 판결을 선고했느냐에 있다고 본다. 재판소 구성은 바로 정당한 판결의 선고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판소 구성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충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며, 재판기록을 볼 때, 그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많이 있다.⁶⁶⁾ 따라서 뉘른베르크가 승자의 명령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념은 잘못이다. 분권적인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사법상의 정의를 공정하게 실현한다는 것은 하나의 理想일 뿐이다. 국제적 성격의 사법기관이 없다면 국제범죄의 진압문제에서 국제적 정의를 달성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만일 이러한 국제사법기관이 없다면 뉘른베르크재판 원칙을 위시한 각종 국제형 사법 규정들은 正義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보복수단으로 왜곡될 것이며, 그것들은 패전국에 대하여 전승국이 원용하는 수단이 되기 쉬울 것이다.⁶⁷⁾ 이

64) Paul C. Warnke, 1975,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Warfare,” D. Trooboff ed., *Laws and Responsibility in Warfare*, Chapel Hill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p. 187.

65) Gerhard von Glahn, 1981, *Law Among Nations*, 4th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p. 768.

66) Richard I. Lael, 1982, *The Yamashita Precedent : War Crimes and Command Responsibility*, Wilmington, Delaware : Scholarly Resources Inc., p. 137.

67) Vespasian V. Pelia, “Towards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J. I. L.* 44, p. 44.

후 이에 대한 발전된 대안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창설로 실현되었다.

2) 평화에 대한 죄의 이데올로기성과 구속성

평화에 대한 죄(Crime against Peace)는 도쿄재판과 뉘른베르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뉘른베르크재판소 헌장 제6조 a항은 “침략전쟁 또는 국제조약, 협정 또는 서약에 위반한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개시하고 실행한 것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계획이나 공동모의에의 참가”를 ‘평화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개인책임을 묻고 있다.

동 범죄에서 중심 개념은 침략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침략은 유엔헌장 제39조의 문맥, 즉 국가 간의 정의(justice among nations)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그와는 다른 개인의 형사책임이라는 체계 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즉, 동 원칙에서의 침략개념은 개인에 의한 범죄의 방지와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패지를 실효적으로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에 대한 죄의 책임은 오직 전쟁지도자에게만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획, 준비, 개시, 수행 …… 공동모의”라는 용어들은 통상 전쟁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확대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⁶⁸⁾

이와 같이 ‘평화에 대한 죄’의 형성과정을 분석해 볼 때 두 가지 개념을 추출할 있다. 첫째, 전쟁위법관이 전제되며, 둘째, 이 전제에 따라 ‘전쟁지도자의 책임’이 상정된다. 바로 이러한 개념들이 ‘평화에 대한 죄’에서 논의의 핵심이다.

우선, ‘평화에 대한 죄’의 성립의 전제로, 전쟁위법관이란 무차별 전쟁관에 대립하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국제법에 의한 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말

68) Yehuda Melzer, 1975, *Concepts of Just War*, Leyden : A. W. Sijthoff, p. 83.

한다.

다음으로 ‘평화에 대한 죄’ 형성과정에는 전쟁지도자 책임관이 분명히 구속적 기능을 가졌다. 즉,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정립된 不戰條約(1928)의 구속성, 미국 정부로 하여금 지도자 책임관에 반하는 정책채용을 단념시킨 사실, 미국 국무장관 잭슨(Jackson)이 1939년 미국의 중립시대 이래 일관해서 주장해온 침략전쟁의 국제범죄성의 내용이 영국·소련·프랑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소 현장에 삽입한 사실을 들 수 있다.⁶⁹⁾ 역사적으로 지도자 책임관의 맹아는 서구의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전개된 계몽사상에서 비롯된다. 계몽사상가 루소(Rousseau)는 『사회계약론』에서 “전쟁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이때의 개인은 인간으로서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군인으로서만 우연히 서로 적이 되고 있다. 조국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조국의 방위자로 개인은 서로 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각 국가는 다른 국가를 적으로 가질 수 있을 뿐이지, 인간을 적으로 가질 수는 없다”⁷⁰⁾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19세기에 여론과 정치 및 법이론에 널리 수용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결론적으로 ‘평화에 대한 죄’는 나치 지도자와 일본의 전쟁주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당시 미국이 지도자 책임관이라는 이데올로기성과 구속성을 관철하려는 면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3) 人道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란 여하한 민간주민에 대한 살해, 절멸, 노예적 혹사, 추방, 기타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인종적 또는 종

69) Robert K. Woetzel, 1960, *The Nuremberg Trials in International Law*, New York : Praeger, pp. 31~34.

70) J. J. Rousseau, 이태일 역, 1994, 『사회계약론』, 汎友株, 23쪽.

교적 이유에 근거한 박해행위로, 이들 행위나 박해행위가 평화에 대한 죄 또는 여하한 전쟁범죄의 실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성립될 경우를 말한다. 동 범죄는 도쿄재판소와 뉘른베르크재판소 헌장에 나타난 새로운 개념이다. 이 범죄의 개념은 주로 독일 거주 유대인에 대한 독일의 잔학행위의 관점에서 형성되었다.⁷¹⁾ 점령지역에서 종교적 혹은 인종적 이유로 인한 다수의 주민에 대한 살육 및 전쟁포로의 살해와 학대는 전통적인 전쟁범죄의 개념에 포함되어 왔다.⁷²⁾ 이러한 이유로 연합국 간에는 인도에 대한 죄의 정확한 정식화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즉 그들이 전통적으로 관계되었던 보통의 전쟁범죄와 중복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 결과 뉘른베르크재판소 헌장도 정확한 용어로 그들을 구별하는 데는 실패하였다.⁷³⁾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인도에 대한 죄’의 기소는 특수정책을 이유로 하여 대규모적으로 자행된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독일 거주 유대인에 대한 독일의 잔학행위는 연합국으로 하여금 특수내부정책상 기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가의 지위, 그 국가 안에서의 개인의 지위 그리고 국가품위의 최소한의 표준을 위한 보호자로서 인도적 역할의 지위에 새로운 개념이 되었다.⁷⁴⁾

그런데 도쿄 군사재판소의 인도에 대한 죄의 취급은 뉘른베르크의 경우와 상이한 바 있다. 이 ‘인도에 대한 죄’의 새로운 개념은 태평양지역에서는 유럽 보다는 그 중요성이 극히 감소되었다. 1946년 4월 29일 기소장에 제출된 55가지 기소이유를 분석해 보면, 제1류인 ‘평화에 대한 죄’가 1부터 36까지로, 침략전쟁의 공동모의, 계획, 준비, 개시, 수행 순으로 나뉘어 있고, 제2류인

71)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0,” Gerhard O. W. Mueller and Edward M. Weis, ed., 1965, *International Law*, London : Sweet & Maxwell Limited, pp. 287~288.

72) B. V. A. Roeling, 1973, “The Nuremberg and the Tokyo Trials in Retrospect,” Bassiouni and Nanda, *Treaties on International Criminal Law*, Springfield : Charles C. Thomas, p. 591.

73) Friel Weiss, 1983, “Time Limits for the Prosecution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 Law,” *the Britisc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1982, Oxford : Clarendon Press, p. 177.

74) B. V. A. Roeling, 1973, 앞의 글, p. 592.

‘살인’은 37부터 52까지, 제3류인 ‘통상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는 53부터 55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뉘른베르크재판과는 달리 ‘인도에 대한 죄’의 위치가 아주 낮고 독립적인 기소이유로 설정되지도 않았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본의 중국 침략시 중국인과 한국인 등 포로들에게 실시한 세균인체실험을 행한 구일본군 731부대는 전후 극동군사재판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채 부대장을 비롯한 부대원 전원이 면책되었다.⁷⁵⁾ 일본군의 잔인무도한 비인도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도쿄재판소 재판은 ‘평화에 대한 죄’는 단죄되었으나, 인도에 대한 죄만은 거의 무시되고 마는 과오를 범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정의보다는 국익을 우선한 강대국(미국)의 비인도적 처사로 인하여 ‘인도에 대한 죄’에 관한 한 정략적 재판이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도쿄재판의 이와 같은 불완전성은 오늘날 일본 내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⁷⁶⁾

4) 국제군사재판소 현장의 소급성

‘法律 없으면 犯罪도 없고 刑法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and nulla poena sine lege)’는 원칙이 형법과 처벌에 대한 합법성(legality)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18세기 理性主義의 산물인 동 원칙은 압제자의 이름에 의한 자의적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로서 프랑스혁명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동 원칙에서 본래적으로 상대적 특징은 공동체 내의 개인에 관한 특수한 사회적 가치의 한 표현으로서 때로 나타났고, 한 국가의 중대한 혁명적 변혁기에는 이러한 원칙이 정지되었다. 예컨대 1935년 6월 28일 독일 국가사회주의 법은 ‘합법성의 원칙(principle of legality)’을 ‘유추의 원칙(principle of analogy)’으로 교체하기도 하였다.

75) 다나카 히로시 외, 2005, 앞의 책, 105~108쪽; 任德圭, 1989, 6, 「Nuremberg 및 도쿄 국제군사재판의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201~202쪽.

76) 任德圭, 1989, 6, 위의 글, 202쪽.

국제군사재판소 현장의 소급효 문제는 국제법상 두 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의 규정이 종래의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급적 규정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소급성을 긍정할 때 국내법에서와 같이 국제법에서도 금지되는 원칙인가의 문제이다. 첫째의 문제는 다수의 학자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기소된 피고인들도 뉘른베르크재판소 현장이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및 수행한 개인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문명국가의 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어떠한 주권국가도 당시에는 침략전쟁을 범죄로 보지 않았으며, 침략전쟁을 정의한 법규도 없었고,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도 정해지지 않았다. 더구나 그런 범죄자를 재판하고 처벌하도록 재판소도 창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뉘른베르크재판소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법율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법도 없다”의 원칙은 主權의 제한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正義의 원칙이며, 조약과 서약을 무시하면서 경고 없이 이웃 국가를 공격했던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공격자는 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고, 그를 처벌하는 것이 불공정하기는커녕, 만일 그의 잘못이 처벌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공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들이 독일 정부에서 근무했던 지위를 볼 때 적어도 그들 중 일부는 독일이 비준한 조약, 곧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쟁의 불법화에 대한 조약화를 알았어야 했고, 또 그들이 침략계획을 했을 때 국제법을 무시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⁷⁷⁾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술한 “법율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법도 없다”는 원칙은 동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소는 1928년 不戰條約의 국제적 구속성을 근거로 들었다.⁷⁸⁾ 그리하여

77) “Nuremberg Judgement, 1946(experts),” Richard A. Falk, Gabriel Kolko & Robert J. Lifton eds., *Crimes of War*, New York : Random House, p. 97.

78) 부전조약은 1939년 전쟁발발시에 독일·이탈리아·일본을 포함하여 63개국이 체결하고 있었고, 동 조약은 법적 효력이 있음을 재판소는 지적하고 있다. Richard A. Falk, Gabriel Kolko & Robert J. Lifton eds., 위의 책, pp. 97~98.

재판소는 뉘른베르크재판소 현장이 전승국의恣意的인 권력행사가 아니며 재판소 창설 당시에 존재하는 국제법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⁷⁹⁾ 이에 동조하는 학자도 많이 있다.⁸⁰⁾

뉘른베르크재판소 판결에서, 소급처벌금지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은 단순한 형식논리가 아니라, 법적(justice) 정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1928년 不戰條約으로 인하여 침략전쟁이 국제법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독일 지도자들도 이미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소급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IV. 맺음말

양 재판이 승자만의 재판이라는 공통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도쿄재판은 확실하게 뉘른베르크재판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수렴하는 데 매우 미흡했다. 특히 미국이 도쿄재판에서는 ‘인도에 대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를 전혀 기소단계에서 소홀히 하였고, 따라서 제대로 형사처벌하지 못하고, 석방해 주었다. 그 결과 전후 일본에서는 수많은 전범들이 일본 사회에 재복귀하여 전후 그리고 현재 그 후예들이 일본의 정치·외교·경제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한일 과거사 청산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A급전범 6명의 혼백이 안치되어 있고, 일본 역대 수상이 이것을 참배하고 있다. 반면 뉘른베르크재판

79) Richard A. Falk, Gabriel Kolko & Robert J. Lifton eds., 앞의 책, p. 96.

80) Michael Akehurst, 1984,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5th ed., London : George Aiien & Unwin, p. 238.

은 '인도에 대한 죄'를 공식으로 기소하여 다루었고, 그 재판 결과를 철저하게 집행하였다. 또 그 후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국내입법조치를 취하였다.

둘째, 오히려 도쿄재판 과정은 당시 미국 주도로 강대국의 전후처리 점령 정책적 입장(국가이익)을 더욱 많이 반영한 재판으로 보인다. 반면 뉘른베르크 재판은 4대국이 공평하게 재판부구성과 진행절차에서 권한을 행사하여, 상대적으로 사법청산을 공평하게 하였다.

셋째, 한일 과거청산 정책을 세우는 데 도쿄재판에서 미국의 전후 일본 책임론에 대한 편파성 부분을 중점 분석, 문제제기하여 미국의 현 안이한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과 논거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미 군정이 천황을 재판대상에서 제외시킨 점, 일본 731부대의 세균전 및 생체실험을 한 전범행위자를 석방한 점, A급전범 19명을 석방시킨 점, 전쟁책임은 전부 군부로 돌린 점,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일방적으로 강화하여 후환을 남긴 점,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후 일본에서의 군국주의 복구의 방지⁸¹⁾ 등은 역사적 사실로만 밝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로서 그 이유와 과오를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도쿄재판에 대한 한국 국내학자들의 연구가 외국학계의 연구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도쿄재판 연구를 미국이나 일본에 맡겨 놓아서는 결코 안 되며, 한국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국제적인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도쿄재판과 뉘른베르크재판에 대한 일본과 독일의 법학자들이 제기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평화에 대한 죄의 이데올로기성의 구속성 문제, 인도에 대한 죄의 문제점, 국제군사재판소 현장의 법률 소급성 문제 등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 상기 도쿄재판과 뉘른베르크재판에서 승인된 법원칙이 1946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동 원칙들이 1949년 제노사이드(Genocide)조약 및 1951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유럽사회협약 같은 다자조약에서 표현되어졌다는 데서 입증되었다.

81) Wang Xiliang, 2008, 앞의 글, pp. 16~17.

여섯째, 외교부가 대일 협상논리를 세우는 데 뉘른베르크재판과 독일의 과거사 사법청산사례가 일본과 국제사회(특히 미국)를 설득하는 데 유익한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일본이 아직도 전후청산에 소극적인 것은 국제법적으로 타당치 않고 객관성이 없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논거를 개발,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일 전후 보상소송에 국제법적 논거를 제공하거나, 일본의 역사왜곡과 위안부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수립을 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당시 미국의 미흡한, 편파적 재판 책임부분도 동시에 부각시켜, 미국을 통해 일본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양 재판을 계기로 침략범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의 법적 개념이 새로이 정립·확인되어, 20세기 후반 국제형사법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게 되었다. 그리고 설사 개인이 국가의 중요한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양 재판은 국제법적으로 국가로부터 분리하여 개인의 국제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지우게 한 최초의 국제선례를 남겼다.

종합적으로 양 재판에서 확인된 뉘른베르크 국제법원칙은 전쟁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도 물을 수 있다는 국제법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상론하면, 상급자의 명령수행은 하급자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기계적 정당화 사유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핵심은 해당 하급자가 실질적 의미에서 범행참여 여부에 관하여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또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처벌은 1907년 헤이그 육전 법규 규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발전된 국제관습법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뉘른베르크재판의 결과는 모든 국가가 전범을 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뉘른베르크재판과 도쿄재판은 역사상 지울 수 없는 사실이요, 선례를 형성했다. 그것은 평화에 대한 죄, 人道에 대한 죄를 실정국제법으로 정립시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뉘른베르크재판의 핵심성과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는 카테고리를 인정받는 데 있다. 나아가 재판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뉘른베르크재판의 가장 큰 성과는 침략전쟁의 범죄

화(‘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국제질서 속으로 포함시킨 업적이다.⁸²⁾ 뉘른베르크 법원칙 정신은 1998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창설과 국제형사사법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82) David Luban, 2004, “The Legacies of Nuremberg,” social research, 54, Gerry Simpson ed., *War Crimes Law*, Vol. II, Ashgate Dartmouth, pp. 6~7.

참고문헌

〈저서〉

- 구승희, 1993, 『논쟁 나치즘의 역사화? 독일현대사 논쟁의 중간결산과 비판』, 청주 : 온누리.
- 루스 베네딕트, 2002,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
- 미즈노 히로코, 2002, 「‘성전’의 기억 : ‘기억의 장’으로서의 야스쿠니 신사」, 『당대비평』 특별호.
- 박원순, 1996,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일본의 전쟁범죄연구』, 한겨레신문사.
- 성황용, 1991, 『근대동양외교사』, 명지사.
- 細谷千博·安藤仁介·大沼保昭 編, 1984, 『東京裁判を問う』, 講談社.
- 若槻泰雄, 김광식 譯, 1996, 『일본 군국주의를 벗긴다』(원제 『日本の戰爭責任』, 화산문화).
- 遠山茂樹·藤原彰·今井清一, 박영주 譯, 1988, 『일본현대사』, 한울.
- 粟屋憲太郎, 1989, 『東京裁判論』, 東京 : 大月書店.
- 이안 부르마, 2002,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 독일인과 일본인의 전쟁기억』, 한겨레신문사.
- 朝日新聞記者團 編, 노병식 譯, 1983, 『東京裁判』(상·하), 태종출판사.
- 타나카 히로시, 이규수 역, 2000, 「토쿄 재판으로 본 전후처리」, 『기억과 망각』, 삼인.
- 황허이 지음, 백은영 옮김, 1999, 『도쿄대재판』, 예담.
- Alexander and Mitscherlich, Margarete, 1967, *Die Unfaehigkeit zutrauern*, Muenchen.
- Anold, Lehmann-Richter, 2002, *Die Gerichtliche Burteilung rueckwirkender Gesetzesaeenderungen im Wiedergutmachtungsrecht*, forum historiae iuris, *Erste europaeische Internetzeitschrift fuer Rechtsgeschichte*, 12.
- Assman, Aleida·Frevort, Ute, *Geschichtsvergessenheit*, 1999, *Vom Umgang mit deutschen Vergangenheit nach 1945*, Stuttgart.
- Bassiouni, M. C., 1992, *Crimes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Law*.
- Behr, Edward, 유경찬 譯, 2002, 『히로히토』(원제 : HIROHITO : Behind the Myth), 을유문화사.
- Best, Geoffrey, 1984, *Nuremberg and after : the continuing history of war*

-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Washington(DC).
- Bloxham, Donald, 2001, *Genocide on trial : war crimes trials and the formation of Holocaust history and memor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Brackman, Arnold C., 1991, 日暮吉延 譯, 『東京裁判』(부제: もう一つのニュルンベルク), 東京:時事通信社.
- Buruma, Ian, 1994, *The Wages of Guilt, Memories of War in Germany and Japan*, Farrar Straus Giroux, New York.
- Copper, Belinda ed., 1999, *War crimes : the legacy of Nuremberg*, New York.
- Douglas, Lawrence, 1996, *The Memory of Judgment : The Law the Holocaust and Denial, History and Memory*, 7.
- Douglas, Lawrence, 2001, *The Memory of Judgment : making law and history in the trials of the Holocaust*,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Frei, Norbert, 1996, *Vergangenheitspolitik, Die Anfaenge der Bundesrepublik und die NS-Vergangenheit*, Muenchen, 1996.
- Gilbert, Gustave M., 1987, *Nuernberger Tagebuch : Gesprache der Angeklagten mit den Gerichtspsychologen*, Frankfurt am Main.
- Ginsburgs, George and V. N. Kudriavtsev ed., 1990, *The Nuremberg Trial and International Law*, Dordrecht, Boston, London.
- Ginsburgs, George, 1996, *Moscow's road to Nuremberg : the Soviet background to the trial*, The Hague.
- Ha, Ki-Seok, 1997, *The Tokyo War Crimes Trial*, Yonsei University,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in Japanese Studies.
- Her, Jeffrey, 1997, *Divided Memory, The Nazi Past in the Two Germanys*, Cambridge.
- Hummrich, Martin, 2001, *Der voelkerrechtliche Straftatbestand der Aggression : historische Entwicklung, Geltung und Definition im Hinblick auf das Statut des Internationalen Strafgerichtshofes*, Baden-Baden.
- Kittel, Manfred, 1993, *Die Legende von der Zweiten Schuld'. Vergangenheitsbewaeltigung in der Aera Adenauer*, Berlin.
- Kochavi, Arieh J., 1998, *Prelude to Nuremberg : allied war crimes policy and the question of punishment*, Chapel Hill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Press.
- LaCapra, D., 1994, *Representing the Holocaust. History, Theory, Trauma*,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 London.
- Martin, Walser, 1979, *Auschwitz und kein Ende*.
- Martin, Roy A., 2000, *Inside Nurnberg : military justice for nazi war criminals*, Shippensburg, Pa. : White Mane Books.
- Merritt, Anna J. and Merritt, Richard L. eds., 1970, *Public Opinion in Occupied Germany, The OMGUS-Surveys 1945~1949*, Urbana.
- Merritt, Richard L., 1995, *Democracy Imposed : U.S. Occupation Policy and the German Public 1945~1949*, Yale University.
- Miner, Richard H., 1971, *Victor's Justice : The Tokyo War Crimes Tri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iethammer, 1972, *Lutz, Entnazifizierung in Bayern*, Frankfurt.
- Omaser, Werner, 1977, *Nurnberg : Tribunal der Sieger*, Dusseldorf.
- Oppenheim, L., 1952, *II International Law*, 7th ed., H. Lauterpacht.
- Overy, Richard J., 2001, *Interrogations : the Nazi elite in allied hands 1945*, London.
- Persico, Joseph E., 1994, *Nuremberg : in famy on trial*, NewYork : Viking.
- Reichel, Peter, 1999, *Politik mit der Erinnerung. Gedaechtnisorte im Streit um die nationalsozialistische Vergangenheit*, Frankfurt.
- Reichel, Peter, 2001, *Vergangenheitsbewaeltigung in Deutschland. Die Auseinandersetzung mit der NS-Diktatur von 1945 bis Heute*, Muenchen.
- Robert Aron, 1959, *Histoire de la liberation de la France*, Paris, Fayard.
- Rueckerl, Adalbert, 1984, *NS-Verbrechen vor Gericht*, Heidelberg.
- Secretarial of Interantional military Tribunal, 1947, *Trial of The Major War Before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Vol. 1, Offical Text in the English Language, Nuremberg 14 November 1945-1 October 1946, published at Nuremberg, Germany.
- Simson, Gerry ed., 1994, *War Crimes Law*, Vol. I, Second Series, Ashgate Dartmouth.
- Simson, Gerry ed., 1994, *War Crimes Law*, Vol. II, Second Series, Ashgate

Dartmouth.

- Smith, Bradley F., 1979, *Reaching judgment at Nuremberg*, New York.
- Taylor, Telford, 1993, *The anatomy of the Nuremberg Trials*, London.
- Ueberschar, Gerd R., 1999, *Der Nationalsozialismus vor Gericht : die alliierten Prozesse gegen Kriegsverbrecher und Soldaten 1943-1952*, Frankfurt am Main : Fischer.
- Van Boven, T., 1993, *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U.N. Doc. E/ CN.4/Sub.2/1993/8.
- Wallace, Rebecca M. M., 1997, *International Law*, 3rd ed., Sweet & Swell.
- Wieviorka, Annette, 1996, *Les proces de Nurembergetde Tokyo (=actes d' uncolloqueinternational, 26-28 Octobre 1995)*, Bruxelles.

〈논문〉

- 구승희, 1993, 「나치역사 평가를 둘러싼 독일 학계의논쟁」, 『역사비평』(봄호).
- 문규석, 2009, 「도쿄재판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에 관한 연구」, 『한일간의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 송충기, 2005, 「뉘른베르크 재판과 나치청산」, 『역사교육』 제93집, 역사교육연구회.
- 안병직, 2003, 「과거청산과 역사서술」, 『역사학보』 제177호.
- 안종철, 2002, 「남아공의 과거청산과 광주해법」,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유르켄 코가, 2004, 「불편한 과거사의 처리 : 1945년 및 1990년 이후 독일의 집단기억과 정치」, 『독일연구』 제7호.
- 이진모, 1998,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과 '평범한' 독일인의 역할」, 『역사비평』 42(봄호).
- 任徳圭, 1989, 「Nuremberg 및 東京國際軍事裁判의 再照明」, 『國際法學會論叢』 第65輯.
- 任徳圭, 1997, 「Nuremberg 원칙과 그 규범성」, 『국제법학회 논총』 제32집 1호.
- 한운석, 2004, 「동독의 독제에 대한 사법적 청산」, 『전남사학』 제22집.
- Adorno, Theodor, 1997, "Was bedeutet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Kulturkritik und Gesellschaft II : Eingriffe, Stichworte, Anhang*(1960),

- Frankfurt a. M.
- Borgwardt, Elizabeth S. & Kopelman, N., 1991, "Ideology and Intentional Law : the Dissent of the Indian Justice at the Tokyo War Crimes Trial,"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23.
- Borgwardt, Elizabeth S., 2005, "Reexamining Nuremberg as a New Deal Institution : Politics, Culture and Limits of Laws in Generating Human Rights Norms," *Berk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3.
- Cohen, Laurie A., 1997, "Application of the Realist and Liberal Perspective to the Implementation of War Crimes Trials : Case Studies of Nuremberg and Bosnia," *UCL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Foreign Affairs*, Vol. 2.
- Frei, Norbert, 2002, "Der Nurnberger Prozess und die Deutschen," Tanner, Jakob ed., *Gedächtnis, Geld und Gesetz*, Züich.
- Hermann, Luebbe, 1983, "Der Nationalsozialismus im deutschen Nachkriegsbewusstsein," *Historische Zeitschrift*, No. 236.
- Igarashi, Masahiro, 2000, "Post-War Compensation Cases, Japanese Courts and International Law," *The Japanese Annual of International Law*, No. 43.
- King, Henry T., 1997, "The Judgements and Legality of Nuremberg,"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3.
- Lippman, Matthew, 1991, "Nuremberg : Forty Five Years Late," *Connell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
- Luban, David, 1987, "The Legacies of Nuremberg," *Social Research*, 54.
- Pritchard, R. John, 1995,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and its Contemporary Resonances," *Military Law Review*, Vol. 149.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Nuremberg War Crimes Trial & the Tokyo War Crimes Trial from International Law Point of View

Lee, Janghie

This article tries to review a Comparative Study on Nuremberg War Crimes Trials & Tokyo War Crimes Trials from International Law Point of View.

The Tokyo trial was modeled after Nuremberg, as though the Japanese wars in Asia had been more or less the same as Hitler's war, but even judges recognized that the Japanese defendants were not simply Oriental Nazis.

Two trials were sharply criticized from German & Japanese people in terms of "enforced" Victor's Justice in 1940's, But they have many differences such as constitutions of tribunal judges & prosecutors, trial process, indictment crimes, trial jurisdiction, decisions and its enforcements.

Tokyo War Crimes Trial & its procedure was controlled mainly by the USA from point of view of Asian strategical policy for coming cold war times. But Nuremberg Military Trial & its procedure was preceded equally by four occupation powers. Especially "Crimes against Humanity" was neglected by Tokyo Military Trials compared to Nuremberg Military Trials. For instance, a responsibility Immunity from war crimes for Emperor Hirohito was the most vital mistake in

the Tokyo Military Trials. Besides, nineteen “class A” war criminals were released from prison. Bacteriological warfare Experiment by 731 Japanese troops was not punished as war crimes. The Tokyo Trials neglected accepting positions of war victims.

It is well known that the Nuremberg Trials led the Germans to confront with the Nazi-dictatorship and greatly contributed to liquidation of the Nazi-past in post-war Germany. Its central achievement lies in recognizing the category of crimes against humanity. For the trial’s framers, its decisive legal character lay in recognizing the category of crimes against peace. But it was “the conspiracy of the aggressive war” rather than the holocaust that was centered on in judging in atrocities of the Nazis, although “crimes against humanity” being define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n the Nuremberg Trial. However,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Nuremberg trial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as a stepping stone to liquidation of the Japanese colony-past for Korean people.

keywords

Nuremberg War Crimes Trial, Tokyo War Crimes Trials, Victor’s Justice, liquidation of the Nazi-past, Crimes against Humanity, Crimes against Peace, Emperor Hirohito, Holocaust, Bacteriological warfare Experiment, Tribunal Judges & Prosecutors

논문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교와 유교적 신화 도상 분석

김일권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I. 머리말

이 글은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 묘사된 도교적 신화 도상의 일차적 의미를 규명하는 일환으로, 문헌학적 근거와 도상학적 비교 분석이라는 양 방향의 연구를 통하여 고구려 벽화 문화의 시대적 보편성과 자문화적 특수성 문제를 제고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고구려가 어떤 동시대적 문화성을 흡수하였으며 어떤 세계를 지향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토대 연구에 속한다.

그동안 고구려 벽화의 도교 관련 논문이 두어 편 나왔지만 도상 분석의 어려움 때문에 규명된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다. 현재까지 발견된 116기¹⁾의 고구

※ 투고일 2009년 3월 30일, 심사일 2009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4일.

- 1) 최근 출간된 孫仁杰·遲勇 공저, 2007, 『集安高句麗墓葬』, 香港亞洲出版社; 耿鐵華, 2008, 『高句麗古墓壁畫研究』,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등을 참조하여 재검토하면 집안 36기, 환인 1기, 무순 1기를 합하여 압록강 이북에 38기이고, 대동강 일대에서는 평양 28기, 남포 23기, 평남 13기, 안악 14기를 합한 78기가 헤아려지므로, 총 116기가 된다.

려 벽화고분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도교적 제재와 관련이 되어 있을 정도로 벽화의 도교 양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는 고구려 벽화 주제 중에서 불교적 측면의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도교적 측면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²⁾ 불교적 제재가 변별력이 강한 탓도 있지만 국내 학계에서 불교학 기반이 강한 것과는 관련이 있다. 그러나 도교 연구자는 그 자료의 모호성과 방대함으로 인해 많은 학적 토대를 생성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고대사에서 도교적 관점을 수립하여 한중의 문화비교를 도모하는 일은 매우 지난한 일이 되어 있다. 또한 고구려 벽화 도상이 대부분 도교적 기반에서 임혀지나 더러 유교적 신화 관점에서 조망되는 것들도 있다. 이 글이 고구려 벽화의 신화 분석 관점을 모색하는 일환이기도 하므로, 도교와 유교적 신화 도상을 함께 고찰하려 한다.

그렇지만 이 글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역시 전면적인 접근을 도모하고 있으나 완전한 분석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이전 연구보다는 좀 더 다면적이고 진일보한 접근을 통하여 고구려 벽화의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하고 벽화 문화의 성격을 수립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

II. 고구려 벽화의 도교적 신화 도상 분류 시론

고구려 벽화에는 매우 다양한 갈래의 신화 도상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들을 일

2) 南秀雄, 1995, 「高句麗古墳壁畫の圖像構成」, 『朝鮮文化研究』 제2호, 동경대학 문학부 조선문화연구실 紀要; 정재서, 1996, 「고구려 고분벽화의 신화·도교적 제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백산학보』 46호, 백산학회; 深津行徳, 1997,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서 본 종교와 사상의 연구」, 『고구려연구』 4집; 전호태, 2000,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인의 신선신앙」, 『신라문화』 17·18합집; 정재서, 2003,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도교 도상의 의미」, 『고구려연구』 16집; 김일권, 2004, 「고구려 초기벽화 시대의 신화와 昇仙적 도교사상」, 『역사민속학』 18호, 한국역사민속학회.

일이 유명하여 다루기에는 논문의 분량상 불가능한 점이 있지만, 개략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방편으로 우선 고구려 벽화의 신화 도상들을 분류하기 위한 범주적 설정작업을 시도하였다. 여기에는 다시 형태적 분류와 기능적·주제적 분류로 나누어 접근한다.

1_ 도교적 신화 도상의 형태적 분류

첫째, 형태상으로 볼 때 半人半獸 내지 半人半禽과 같이 사람과 결합된 신인형 신화 도상 부류가 있다. 人身龍尾를 취한 복희, 여와도는 이런 부류의 대표적 인 예들이다(집안오회분 4호묘, 5호묘, 통구사신총). 人面獸身을 취한 猩猩像(덕흥리고분, 안악1호분), 人面鳥身 형태를 취한 천추상과 만세상(덕흥리고분, 천왕지신총, 안악1호분, 춤무덤, 삼실총, 통구사신총)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천추와 만세상이 이렇게 많은 고분에 그려진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약항아리를 등에 진 醫藥神으로서의 賀鳥像도 인면조신 형태이다.

둘째, 실제 동물에서 변형되거나 상상적인 신화 동물로 가공된 신이형 신화 도상들이 있다. 여느 말과 같은 형태이나 날개가 달린 天馬像, 일견 천마와 같은 모습이나 머리 頂部에 외뿔이 하나 돌아 의미가 특화된 一角獸의 麒麟像, 닭이나 새에서 변형되어 五彩가 찬란한 봉황상, 까마귀에서 변형되어 다리와 꼬리가 하나씩 더 달린 三足鳥, 귀가 넷 달린 博位像, 뿔이 일곱 돋은 零陽像 등 다수가 묘사되어 있다. 천마나 기린 등은 지상의 동물에 날개를 단 有翼獸 부류로, 인간의 비상을 향한 원망을 투사한 신화물로서 의의가 엿보인다.

4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³⁾ 사신도는 고구려 벽화를 특징짓는 주요 신화 도상이 되었는데, 백호를 제외한 나머지 셋은 전형적인 상상의 존재들이다. 특히 현무는 뱀과 거북의 결합이라는 불가사의한 형태를 지녀 그 신비로움

3) 평남 순천시 요동성총(4세기 말)이 가장 이른 사신도 벽화로 보고 있다. 東潮, 1999, 「北朝隋唐と高句麗壁畫」,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연구보고』 제80집, 千葉: 국립역사민속박물관, 277쪽.

을 배가시킨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날개를 달아 하늘로 올라간 飛魚는 고구려 신화가 지향하는 공간적 층위가 높은 천공의 세계임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셋째, 실제하는 동물과 다르지는 않지만 그 의미가 전변되어 신화적 존재로 재생된 상서형 신화 동물 부류가 있다. 달 속에 산다는 두꺼비는 불사약을 지키는 신화적 존재로 전환되었고, 견우와 직녀 신화에 관계된 누렁소와 검둥개도 지상의 가축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로 거듭난 동물들이다. 천왕지신총, 삼실총 등에 묘사된 흰 사슴은 상서로움을 가져다주는 白鹿 혹은 天鹿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소속되는 도상들은 그 형태적 특성이 보통과 다르지 않아 신화적 느낌이 없지만 주변의 여러 신화 존재들과 어울려 조망될 때 자신의 신화적 의의를 충분히 증대시킨다.

넷째, 지상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비화의 과정을 거쳐 전문화된 의미나 능력을 가진 선인형 신화 인물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이 부류는 숫자도 많고 의미도 중요하므로 절을 달리하여 아래에서 고찰한다.

2_ 도교적 신화 도상의 주제 또는 기능적 분류

형태상의 특이성보다 각 신화 도상이 지시하거나 의미하는 특성으로 볼 때 어떤 신화적 기능을 내보이는 존재들이 있다. 이를 완전히 정합적인 체계로 분류하진 않더라도 개략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갈라서 살펴본다.

첫째, 문명의 발달과 관련된 기능신들이 고구려 벽화에 다수 묘사되어 있다. 불을 피우는 燧神, 구리나 철을 단련하는 冶鐵神, 수레바퀴를 만드는 製輪神, 벼이삭을 들어 농경을 상징하는 소머리의 神農神, 글씨를 쓰는 書寫神 등은 모두 인류가 처음 문명생활을 개척할 때 필요로 하는 문명신들의 갈래라 할 수 있다.

집안오회분 5호묘 천장의 평행8각 고임부를 보면, 북쪽 고임부면에 해와 달을 받든 해신(복희)과 달신(여와)을 그렸고, 동쪽 고임부에는 불의 신인 燧神

과 벼이삭을 들고 소머리를 한 농사의 신인 農神을 그렸으며, 남쪽 고임부에는 수레바퀴를 제작하는 製輪神과 나무 등치에서 무언가를 마름질하는 磨石神을 그렸으며, 서쪽에는 용을 타고 면류관을 쓴 天王과 역시 용을 타고 긴 깃대를 들고 따르는 선인 그림을 그렸다. 이 8인의 신화 구성을 보면, 천왕과 선인이 인간세계를 교화하는 중심 신격으로 생각되고, 나머지 각종 문명신들이 인간의 문명생활을 선도하는 기능을 맡은 형국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하늘을 떠받치거나 무덤의 기둥, 들보를 지탱하는 존재로 묘사된 力士像들은 물리적인 이 세계를 떠받치는 力士神의 기능을 지녔다. 통구사신총에 그려진 괴수 형상의 역사신은 무덤칸 벽면 모서리에 위치하여 천장의 들보를 지탱하고 있다. 집안오회분 4호묘나 5호묘의 천장고임부에서 등을 구부려 무덤 천장을 지탱하는 소위 力龍들도 역사신의 역할을 보인다.

삼실총 제2널방에는 고구려의 역사상이 얼마나 강인한 모습인가를 여러 가지 자세와 표정으로 하나의 공간 속에 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2널방과 제3널방의 사방 벽면 전체에 위치하여 천장을 떠받치는 역사상들은 모두 두 다리를 절반 구부려 온 힘을 다 쏟는 자세를 취하였는데, 두 다리에 뺨을 휘감고 있거나 떠받친 양손과 양팔 및 땅을 디딘 두 발과 두 무릎에 툭툭 붙어져 튀어나온 기세 돌기가 표현되어 있어 천장과 세계를 지탱하는 역사상 본연의 이미지를 잘 구현하고 있다.⁴⁾ 힘센 역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얼굴 표정은 모두 한결같이 온화하게 밝고 원만한 불교적인 색채의 仁王의 모습을 취하여 動과 靜, 勢와 平, 剛과 柔, 勇과 和라는 양단의 동시성을 유려한 화법으로 구현하여 인상적이다.

셋째, 이들 역사상이 묘문 입구를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守門神 기능을 보인 것이다. 수문신 중에는 문신이나 무신 형상의 門衛像도 포함된다. 안악3호분 앞칸 서벽에서 서쪽 곁칸으로 들어가는 입구 좌우에 묘사된 문위상은 단아하게 공수를 한 문신 형상을 하였다.

삼실총 제2널방 서쪽 입구 벽면에 그려진 수문신은 양쪽에 뿔달린 투구에

4) 조선일보사, 1993, 『집안 고구려 고분벽화』; 한국방송공사, 1994, 『고구려 고분벽화』.

다 전신에 갑주를 갖추어 입고 환두대도를 찼으며, 이빨을 깨문 입과 긴 콧수염에 불거진 광대뼈의 얼굴은 두 눈을 크게 부라린 모습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쳐들어 금방이라도 사된 마구니를 물리칠 듯한 용맹스런 무사상을 하였다. 제3널방 동쪽 벽면 입구에 묘사된 수문신은 오른팔에 길다란 뱀을 X자로 휘감고 한손으로 기둥을 잡고 한손으로 천장을 받치고 있으며 역시 매서운 눈매와 앙다문 이빨이 드러난 얼굴로 전면을 지키고 있다.⁵⁾

넷째, 한편 안악3호분 手搏圖의 경우 앞칸 동벽의 우측 상단부에 그려져 있는데, 동쪽 곁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여 마치 생과 사의 두 경계를 넘나들 때 거치는 통과외례를 지키는 수호신 기능이 임하기도 한다. 씨름무덤의 동쪽 벽면에 그려진 씨름장면 역시 일상적인 기예 놀이로 보는 것 외에 생사의 경계를 지키는 수호신 측면에서 엿볼 여지가 있다.⁶⁾

다섯째, 덕흥리 앞칸 북벽 천장부 중에는 天雀像 아래에 辟毒之象이란 목서가 적힌 신화동물이 그려져 있다. 목서명의 뜻이 사된 독을 물리친다는 辟毒이므로 벽사신 기능을 하는 신화 도상일 것이다. 현재 박락이 심하여 몸체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그 전반적인 형태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서진 시기 돈황의 佛爺廟灣 화상전묘(M133) 중에 “辟邪”라 이름된 신화동물이 주목된다. 사나운 호랑이 얼굴에다 꼬리가 길게 뻗었고 두 앞발 어깨에는 뿔모양 날개가 길게 돋친 동물 형상을 하였다.⁷⁾

이 벽사는 흉과 액을 제어하는 神獸名의 하나이다. 『후한서』 「여복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진서』 「여복지」, 『신당서』 「거복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서 동물의 일종으로 벽사가 등장하고 있다.

『후한서』 「靈帝紀」 제8에 당나라 李賢(645~684)이 붙인 주석은 다음과 같다.

지금 등주 남양현 북쪽에 宗資碑가 있는데, 그 양 옆에 石獸가 하나씩

5) 조선일보사, 1993, 앞의 책 ; 한국방송공사, 1994, 앞의 책 참조.

6)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52쪽.

7) 감숙성문물고고연구소, 1998, 『敦煌佛爺廟灣西晉畫像磚墓』, 문물출판사, 67쪽 도 50 및 채도판 24-3.

이고, 각각 天祿과 辟邪라 이름을 새겼다. 이에 따르면 곧 천록과 벽사는 모두 짐승의 이름이다. 한나라 때 天祿閣이 있었다 하는데, 역시 짐승으로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⁸⁾

이것은 벽사가 천록과 병립되는 도상임을 시사한다. 당시에 인식된 벽사의 모습은 『한서』 「서역열전」 제66상(烏弋山離國)에서 桃拔이라는 짐승에 대해서 魏나라 孟康이 “도발은 일명 부발이라 이름하는데, 사슴과 비슷하다. 꼬리가 긴데 뿔이 하나인 것은 천록이라 하고 뿔이 둘 인 것은 벽사라 한다.”⁹⁾고 설명한 말을 참고하면, 천록과 벽사가 둘 다 사슴의 형상이되 뿔의 개수가 다른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서진시기 불야묘만묘에 묘사된 벽사상과 천록상은 둘 다 운순한 사슴 이미지보다는 웅맹한 맹수 모습으로 변하여 있다.¹⁰⁾

이런 문헌과 유물 자료를 참고하자면, 덕흥리고분 북벽에 벽독지상이라 적힌 도상도 이름이 비슷한 한위시대 벽사상처럼 사슴이나 맹수의 몸체에다 뿔이 둘 정도 돋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겠다.¹¹⁾

여섯째, 덕흥리 앞간 북벽 천장에는 약항아리를 등에 진 人面鳥身 형상의 賀鳥像이 묘사되어 있다. 작게 뻗은 두 날개로 약항아리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으며, 꼬리깃이 세 가닥으로 갈려 있다. 두부만 사람 얼굴이고 머리에는 상투를 쓰고 있다. 이 신화동물을 설명하는 묵서명으로 “賀鳥之象學道不成背負藥”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賀鳥란 뜻이 경사스러운 새를 의미한다. 전체

8) 案：今鄧州南陽縣北有宗資碑，旁有兩石獸，鑄其膊一曰天祿，一曰辟邪。據此，即天祿·辟邪竝獸名也。漢有天祿閣，亦因獸以立名(『後漢書·靈帝紀』第8, 353쪽). 이 글의 각주에서는 번잡함을 피하고 가독율을 제고하고 서명에 이어 편명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중국 전적류의 인용에서 서명과 편명을 중점으로 연결하고 겹낫쇠로 묶는 간략 표기법을 가급적 쓰기로 한다. 25사는 모두 중화서국표점교감본. 이하 동일.

9) 孟康曰：「桃拔一名符拔，似鹿，長尾，一角者或爲天祿，兩角者或爲辟邪。」(『한서·서역열전』 제66상, 3889쪽).

10) 불야묘만묘의 천록은 이마에 길게 돋은 뿔을 앞으로 쪽 뻗어 외뿔소 같은 모습을 하였다. 감숙성문물고고연구소, 1998, 채도판 25.

11) 덕흥리벽화의 전체 신화 도상 제시와 해석은 김일권, 2008a,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사계절에서 어느 정도 시도되었고, 이 글은 이에 대한 유물학과 문헌학적 해석을 더 밀고간 것이다.

적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醫藥神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일곱째, 덕흥리고분 앞칸 남벽 천장에 吉利之象이라는 묵서명이 붙은 신화 동물이 묘사되어 있다. 형태상 머리는 짐승이고 몸체는 양날개를 활짝 펴고 꼬리깃이 서너가닥으로 갈라졌고 머리에 뿔이 둘 솟아 있는 獸頭鳥身 형상을 하였다. 묵서의 뜻이 길하고 이롭다는 것이므로 이 신화상이 고구려인들에게 상서로운 상징이었음에는 틀림없다.

이 길리상과 관련하여 『신당서』 「의위지」 지제13상에는 開元禮에 준하여 元日이나 동짓날 朝會 혹은 번국왕 연회 등에서 御仗 행렬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남쪽에 배치되는 左右驍衛赤旗仗의 대오 구성을 다음처럼 말하였다.

제1대는 鳳旗를 세워 대장군 각 1인이 주장을 하고, 제2대는 飛黃旗를 세워 장군 각 1인이 주장을 하고, 제3대는 吉利旗를 세워 郎將 각 1인이 주장을 한다. 제4 兕旗隊와 제5 太平旗隊는 果毅都尉 각 1인이 검교를 한다.¹²⁾

이를 보면 봉황기와 비행기 다음으로 길리기가 내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어, 길리기가 당시에 사용된 중요한 깃발 문장의 하나였음을 알게 된다. 그 당나라의 길리깃발이 고구려 덕흥리의 것과 같은 동물 형태였는지는 아직 잘 알 수 없으나, 이름이 같은 것으로 보아 서로 연관성을 지닐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 赤旗仗은 남쪽에 배치된 隊伍여서 역시 남방의 주작과 상관성이 큰 봉황이나 길리상이 표상으로 세워진 점도 주목된다. 곧 덕흥리 벽화의 길리상이 남방 주작의 대응으로 상징화되었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길리상을 노부 의장기로 사용한 것은 당나라 의장대에서부터 등장하고 있고, 송나라와 금나라의 노부 의장대에서도 “花鳳旗, 飛黃旗, 吉利旗”의 순서

12) 第一隊鳳旗, 大將軍各一人主之. 第二隊飛黃旗, 將軍各一人主之. 第三隊吉利旗, 郎將一人主之. 第四兕旗隊, 第五太平旗隊, 果毅都尉各一人檢校(『新唐書·儀衛志』 지제13상 衛部, 485쪽).

로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¹³⁾ 이런 점에서 고구려의 길리상이 가지는 신화 도상적 역사 의의를 짐작해 보게 된다.

후대 도교신학에서 길리는 “勾婁吉利之神”이라 이름하여 織女四歌之神 등과 더불어 북극의 신이 관장하는 雷府 36雷神 중의 하나로 설립되어 있지만,¹⁴⁾ 이것은 덕흥리 벽화에서 길리상이 남두육성 및 남극노인성 별자리와의 밀접한 상관물로 제시된 것과는 다른 갈래라 생각된다. 노인성은 壽星의 대명사이며, 남두는 延壽와 司祿을 주관하는 대표적인 별자리인 까닭에 인간이 현세에서 희구하는 수명과 재복의 두 가지를 두루 담당한다.¹⁵⁾ 이런 맥락에서 조망되는 신화동물이 바로 길리지상이므로, 달리 말하면 길리상은 고구려인들에게 수명과 재복을 주는 상서로운 신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진시기 돈황의 불야묘만묘(M133) 중에서 ‘受福’이라는 傍題를 붙인 화상전이 참고할 만하다. 여기서 수복 도상은 머리에 외뿔이 돋은 도개비 모습의 獸面에 사람의 몸체를 하고 긴 꼬리에 어긋죽지 뒤로 뾰족한 두 날개가 쪽 뻗었으며,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둥근 쟁반 위의 복을 내미는 형상을 하였다.¹⁶⁾ 아마도 고구려와 서로 형상화한 모습이 같지는 않지만 서진시기 돈황인들에게는 이러한 수복상으로서 자신들의 재복을 기원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마찬가지로 고구려인들에게는 길리상이 자신들의 재복신이자 수명신으로서 기능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덟째, 덕흥리 앞칸 동벽의 靑陽之鳥는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인 雙首鳥身 형상을 하였다. 목서로 “靑陽之鳥一身兩頭”라 하여 그림과 일치한다. 『산

13) 『宋史·儀衛志』 지제99 政和大駕鹵簿條에서 “화봉기, 비황기, 길리기가 각각 둘씩 나누어 세 隊를 만든다(花鳳, 飛黃, 吉利旗各二, 分爲三隊)”(3434쪽)고 하였고, 지제111 鹵簿儀服條에서 “화봉기, 비황기, 길리기를 든 자는 은갈색의 수의를 입는다(執花鳳, 飛黃, 吉利旗者, 服銀褐繡衣)”(3472쪽)고 하였다.

14) 『正統道藏』 제7책 『修真十書上清集』 권47 『雷府奏事議勳丹章』.

15) 더 자세한 논의는 김일권, 2008b,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고즈윈)에서 개진하였다.

16) 감숙성문물고고연구소, 1998, 앞의 책, 채도판 28 ; 돈황시박물관 편, 2002, 『敦煌文物』, 감숙인민미술출판사, 59쪽.

해경』에서 쌍수 일신 형태를 한 도상을 찾아보면, 「서산경」 중 翠山에 사는 鸚鳥가 주목된다. 류조는 “생김새가 까치 같고 검붉은 털빛에 두 개의 머리와 네 개의 다리를 하였으며, 가히 화재를 막을 수 있다”¹⁷⁾는 신비한 새이다. 「복산경」 중에 帶山에 사는 鵠鷄 새는 “생김새가 까마귀 같은데 오색 바탕에 붉은 무늬가 있고 암수가 한 몸이며, 이것을 먹으면 등창이 나지 않는다”¹⁸⁾고 한다. 기여새는 「서산경」에도 등장하는데, “생김새가 까마귀 같고 세 개의 머리와 여섯 개의 꼬리를 가지며 잘 웃는다. 이것을 먹으면 사람을 가위 놀리지 않게 하고 또 흉한 일을 막는다”¹⁹⁾고 한다.

이를 참고하면 덕흥리의 청양조가 兩頭 형상을 한 것이 암수 한 몸인 자용 동체를 상징하고, 화재나 흉사를 방제하는 기능을 가진 신화 동물은 아닐까 한다. 또 靑陽은 동쪽의 태양 또는 동방 봄철의 기운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²⁰⁾ 덕흥리의 청양조가 동벽 천장에 그려진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는 청양과 뜻이 통하는 常陽과 관련하여, 「대황서경」에서 “대황의 한가운데에 常陽이라는 산이 있는데 해와 달이 들어가는 곳이다”²¹⁾라는 내용을 참조할 때, 청양지조의 머리가 둘이라는 의미가 동쪽 하늘에서 해와 달이 떠오르는 것을 상징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아홉째, 덕흥리고분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안악1호분, 천왕지신총, 춤무덤, 삼실총(제2널방)을 거쳐 통구사신총에 이르기까지 표현된 인면조신 형상의 千秋像과 萬歲像에는 글자 뜻 그대로 불로장생하기를 희구하는永生에의 기능신적 역할을 부여하였다.²²⁾

17) 정재서 역주, 1985, 『산해경』, 민음사, 79쪽 및 그림 참조.

18) 『산해경』(1985), 110쪽.

19) 『산해경』(1985), 99쪽.

20) 『爾雅』에서 “春爲靑陽”이라 하였고(『藝文類聚』 제3권 歲時部); 한나라에서 정월 上辛日 甘泉 太一祠에서 저녁에서 새벽까지 제사를 지낼 때, 流星이 제단 위를 지나 치면 동남 동녀 70명으로 하여금 봄에는 靑陽을, 여름에는 朱明을, 가을에는 西嶽을, 겨울에는 玄冥을 부르게 한다고 하였다(『사기·악서』 권24, 1178쪽). 이처럼 고대에서 청양은 봄이나 동쪽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있다.

21) 『산해경』(1985), 313쪽.

22) 김일권, 2004, 「고구려 초기벽화시대의 신화와 昇仙적 도교사상」, 『역사민속학』 18

이들은 한당시대 묘장문화에서 자주 등장하던 소재인데, 하남성 등현의 남북조시기 화상전을 보면 천추상은 인면조신형이고 만세상은 獸頭조신상을 취하였다. 여기에는 천추·만세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분명한 증거 역할을 한다.²³⁾ 반면에 덕흥리 벽화의 앞방 서벽에 묘사된 천추와 만세상은 둘 다 인면조신형이다. 천추와 만세에 대한 도교문헌 증거는 갈홍(283~363)이 쓴 『포박자』 「내편」 對俗편에 나오는데, “천추라는 새와 만세라는 짐승은 모두 사람 얼굴에 새의 몸을 하였고, 수명이 그 이름과 같다(千秋之鳥, 萬歲之禽, 皆人面鳥身, 壽如其名)”고 묘사하였다. 이 설명에 따르면 둘 다 인면조신형이므로 덕흥리의 도상이 여기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안악1호분 서쪽 천장에 그려진 천추와 만세상은 둘 다 수두조신상이어서, 남조 등현 학장촌 화상전과도 다르고 포박자 설명과도 다르다.²⁴⁾ 천왕지신총의 동쪽 日像 아래에 수두조신형 그림이 있고 ‘千秋’라는 묵서를 달았으며, 서쪽 月像 아래에도 역시 수두조신형의 그림이 있고 ‘萬歲’라는 묵서를 병기하였다.²⁵⁾ 안악1호분 양식과 동일하게 묘사되었다.

그런데 통구사신총에는 널방 천장고임부 제3단부 북쪽면에 북두칠성 별자리와 더불어 날개를 활짝 펼친 인면조신상과 수두조신상의 두 신화동물을 그렸는데, 학장촌의 자료에 의거하면 북두칠성 두괴 쪽의 우측 인면조신상이 천추상에 해당하고, 북두칠성 자루 아래에 묘사된 좌측 수두조신상이 만세상에 해당한다.²⁶⁾ 또한 삼실총 제2널방 최상단 북쪽 평행고임부에서 좌편의 일각수형상의 기린상과 더불어 우편에 묘사된 인도조신상과 남벽 고임부의 동쪽 수두조신상은 위의 흐름에 따르면 각각 천추상과 만세상에 비견된다.

그리고 춤무덤의 서쪽 월상 오른편에 묘사된 인면조신의 신화상은 천추상

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3) 하남성 鄧縣 學莊村 남조묘 출토 천추만세화상전(중국역사박물관소장) : 羅宗眞 주 편, 2000, 『위진남북조문화』, 상해 : 학림출판사, 97쪽.

24) 南秀雄, 1995, 앞의 글에서 천추와 만세 도상 계보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25) 東潮, 1999, 앞의 글, 276쪽.

26) 東潮, 1999, 앞의 글, 269쪽.

으로 볼 수가 있고, 천추와 만세가 병행하여 묘사되는 흐름에 따르자면 대칭되는 위치로 보아 동쪽 천장부 일상의 바로 왼편에 묘사된 도상이 만세상에 해당할 것으로 여겨지나, 수두조신상이 아니라 鷄冠을 가진 봉황 형상이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천왕지신총에서 동쪽 일상 쪽에는 천추상을, 서쪽 월상 쪽에는 만세상을 배치한 것과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또 봉황은 주작과 동일한 모티프를 공유하는 상서로운 새인데, 춤무덤의 남벽 천장에 이미 수탉 모습의 쌍주작이 묘사되어 있으므로 동쪽에 다시 봉황을 그린다는 것이 중복의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비록 조두조신상이나 이를 만세상으로 볼 여지를 남겨 놓고자 한다. 후일의 진일보한 논의를 기대한다.

이처럼 고구려 벽화에 묘사된 천추상과 만세상은 형태상 둘 다 인면조신상을 한 경우(덕흥리)와 둘 다 수두조신상을 한 경우(안악1호분, 천왕지신총) 및 천추는 인면조신으로 만세는 수두조신으로 한 경우(삼실총, 통구사신총, 춤무덤)의 세 양식이 병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양식은 다르나 그 의미하는 바는 『포박자』의 표현대로 이름처럼 천년토록 만년토록 영생하기를 희구하는 불로장생의 기능신 역할을 여기에 부여한 것에는 다르지 않다.

얼째, 덕흥리고분 앞방 남벽 천장부에 그려진 人面獸身의 신화동물이 猩猩之象이라는 묵서명과 함께 묘사되어 있다. 얼굴은 눈과 눈썹이 하나만 그려진 것처럼 보이며, 머리를 뿔아 길게 뒤로 흘러 내렸다. 성성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 널리 회자된 신화동물로 생각되는데, 『산해경』에서 이미 사람 얼굴을 지닌 짐승으로 등장하고 있다(「해내경」). 「해내남경」에 묘사된 성성은 사람의 이름을 아는 동물로 돼지 같으나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며, 순임금의 무덤 서쪽에 산다고 하였다.²⁷⁾ 북위시기(386~534) 인물인 酈道元의 水經注에서 “성성은 형체가 개와 같고 인면에 머리와 얼굴이 단정하고, 사람과 함께 말을 잘 하며, 그 소리는 부인이 말하듯 묘하게 아름다움이 있어 이를 들으면 신 것도 산뜻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였다.²⁸⁾ 또한 고대의 물명사전류인 『爾雅』의 釋獸편에

27) 『산해경』(1985), 260·331쪽.

28) “猩猩形若狗而人面，頭顱端正，善與人言，音聲妙麗，如婦人對語，聞之無不酸楚”

서는 크기는 작고 잘 울부짖는데 아이 울음소리 비슷하고, 형상은 누렁개[黃狗] 같은데 사람 얼굴을 하고 말을 할 줄 아는 짐승[人面能言]이라 설명하였다. 덕흥리고분 남벽에 그려진 성성이는 『이아』의 것과 부합한다. 결국 성성상은 황구의 몸체에 사람 얼굴을 하고서 말할 줄 아는 신비한 능력의 소유자인 것이다.

열한째, 고구려의 천장부 벽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천상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기악선인 도상이 매우 발달하였다. 집안오회분 4호묘, 5호묘, 강서대묘 등 후기 벽화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들은 천공을 배경으로 삼아 昇仙과 飛仙을 희구하는 천상풍류인의 면모를 담은 것이라 이해된다.

비선의 신화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동물이 안악1호분 널방 남쪽과 덕흥리고분 앞방 동벽에 묘사된 飛魚이다. 덕흥리의 비어는 날개를 편 채 수평으로 천공을 헤쳐 날아가는 자세를 취하였고, “飛魚之象”이라는 묵서명이 병기되어 있다. 안악1호분의 비어는 두 날개를 뒤로 뻗어 젖혔고 지느러미가 두 발로 변하여 바닥에 디디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마치 육지이든 바다가든 천공이든 어디든 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듯한 형체를 하였다.

비어의 존재 역시 『산해경』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는데, 「중산경」에서 “생김새가 돼지 같으나 붉은 무늬가 있고 이것을 먹으면 천둥 우뢰를 무서워하지 않고 가히 병란을 막을 수 있다”²⁹⁾고 하였다. 또는 「서산경」에서 물고기 몸에 새의 날개를 가진 鳥翼魚身 형태의 文鱸魚와도 흡사하다. 문요어는 서해 바다와 동해 바다를 오가며 노닐다가 밤이면 날아오르는데, 소리가 鸞雞와 같고 이것을 먹으면 광병을 낫게 하고 이것이 나타나면 천하에 대풍이 든다는 서수이다.³⁰⁾ 「동산경」에 보이는 鰭魚도 鳥翼魚身을 취한 비어의 일종이다. 생김새는 물고기이나 새의 날개가 있으며 물속을 드나들 때 빛을 발하며 그 소리는 원앙

(『후한서』 권86, 열전76 「南蠻西南夷列傳」西南夷, 2850쪽의 주석)

29) 『산해경』(1985), 167쪽.

30) 『산해경』(1985), 89쪽; 南秀雄, 1995, 앞의 글.

새 같고, 이것이 나타나면 천하에 가뭄이 든다고 하였다.³¹⁾ 이처럼 『산해경』 신화에 빈번히 등장하는 비어가 고구려 벽화에도 수용되어, 비선을 향한 강한 지향성을 다변화시키고 있다.

열두째, 천장부에는 비선류 도상뿐만 아니라 천공을 장엄하는 각종 장식 기능의 신화 도상도 발달하였는데, 구름으로 바람의 기운을 표현하는 雲氣紋, 流雲紋 등과 넝쿨무늬, 인동초무늬, 당초문 등 각종 식물문양, 불꽃모양을 이루는 화염무늬와 산자형 무늬 등 다양한 문양이 수놓여 있다. 봉오리 모양의 연화문, 옆모습으로 그려진 側蓮花 등 연꽃문양도 장식무늬로 많이 활용되어 있다. 특히 천장석의 중심부에 차지하는 연화문의 경우는 전후좌후 대칭의 8엽, 12엽 보상화문 형태를 띠고 있어, 그 장엄의 기능이 극대화에 이른다. 이 때문에 천장석에 올려진 연화문의 경우는 天帝를 상징하는 도상이라는 해석까지 제출되었다.³²⁾ 4~6세기 전반의 고분인 안악3호분, 쌍영총, 덕화리1호분 및 6세기 후반~7세기 고분인 진파리1호분, 강서중묘 등 고구려 벽화 초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열셋째, 씨름무덤의 동쪽 벽면부 중심에 그려진 扶桑樹는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가지가 뻗어오르는데, 가지 끝은 뭉글게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풍성한 모양을 이루었고, 까치가 나뭇가지에 군데군데 앉아 있다. 이 나무 오른편에 유명한 씨름하는 장면이 있다. 장천1호분의 앞방 오른쪽 벽면에 백희기악도 속에 그려진 자색나무 역시 부상수의 일종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고구려 벽화에 여럿 등장하는 부상수는 산동과 서주의 한대 화상석에서 정형화된 부상수형 나무에서 가져왔을 개연성이 크다고 하는 만큼,³³⁾ 고구려에서만 그려진 것은 아니며 중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우주수 또는 세계수의 기능을 가진 나무이다.³⁴⁾

『산해경』, 『회남자』 등 진한시대 문헌에는 부상수라는 이름 외에 建木, 若

31) 『산해경』(1985), 156쪽.

32) 東潮, 1999, 앞의 글, 279쪽.

33) 전호태, 2000, 앞의 글, 42쪽.

34) 尹國有, 2003, 『高句麗壁畫研究』, 長春: 길림대학출판부, 47쪽.

木, 不死樹 등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부상과 약목은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곳에 자라는 나무이어서, 이 세계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다. 『산해경』의 「해내경」에 수록된 건목은 “키가 100길에 위가 아홉 갈래로 꼬불꼬불 구부러지고 아래는 아홉 차례 뒤엎혀 서려 있으며, 그 열매는 삼씨와 같고 그 잎은 망목의 나무와 같다”고 하였으며, 이 나무는 “태호가 하늘을 오르내리고 황제가 가꾸고 지켰던 나무”라고 하여,³⁵⁾ 하늘을 오르내리는 성스러운 우주수 성격임을 밝히고 있다. 그 씨름무덤의 부상수 밑둥지 아래에 서로 등을 대고 앉은 곰과 호랑이 그림은 이 나무를 하늘에서 나라를 처음 열었다는 환웅의 태백산 神檀樹 나무로 충분히 조망하게 한다.³⁶⁾

다음 씨름무덤 앞방의 오른칸 우측 벽화 및 널방의 서벽과 남벽 우측 벽화에는 곡선형의 가지들이 모두 서로 얽혀 있는 형상을 하였는데, 이른바 전설상의 連理樹 나무 모티프와 관련성이 깊다.³⁷⁾ 널방 서벽에 우마차 사이로 크게 그려진 두 그루의 연리수 나무는 벽면의 전체를 뒤덮고 있어 중심 제재로 그려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오른편 모퉁이에도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묘사되어 있다. 연리수 곧 連理木은 밑둥이 다른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맞붙어 자라는 현상을 이르는데, 씨름무덤의 것은 밑둥이 각각이어서 엄밀하게는 연리수라 할 수 없지만, 하나의 밑둥에서 뻗은 가지들이 서로 모두 얽혀 격자형을 이룬다는 점에서 산동지역 한대 화상석의 연리수 묘사 수법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앞서의 부상목이 위로 갈수록 넓어지면서 가지가 하늘로 가득 뻗어가는 수법과는 같지가 않다. 이렇게 고구려 벽화의 나무 형태가 산동 화상석의 것과 유사한 것은 삼국 이후 산동 유민들의 북중국 유입과 한위진대 요양지역 문화와의 교섭 및 상서로서의 연리수 관념의 수용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현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³⁸⁾

연리수가 상서의 상징이 된 것에 대해, 『白虎通』 「封禪條」를 보면, “주초가

35) 『산해경』(1985), 330쪽.

36) 전호태, 2000, 앞의 글, 47쪽.

37) 전호태, 2000, 앞의 글, 54쪽.

38) 전호태, 2000, 앞의 글, 48쪽.

생하고 나무가 연리되면, 군주의 덕이 새와 짐승에게까지 이른다(朱草生, 木連理, 德至鳥獸)고 하여, 목연리를 상서로운 瑞徵으로 간주하는 데서 엿볼 수 있다. 『송서』 「符瑞志」에서도 “나무가 연리되는 것은 군왕의 덕택이 널리 퍼지고 적서저 팔방 세계가 하나로 합치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木連理, 王者德澤純洽, 八方合爲一則生)”(지제19)라 하여, 군주의 덕치가 국가와 백성 전체에 미치는 서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³⁹⁾

열넷째, 고구려 벽화의 천장부에는 연꽃 속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연화화생 도상이 여럿 그려져 있다. 장천1호분, 별무덤, 삼실총 등에서 보이는데, 상당히 불교적인 사상이 투영된 제재이다. 무덤의 천공이 죽어서 가는 來世 공간임을 분명히 인식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돈황벽화, 낙양 용문석굴, 신강 코탄 출토 소조상, 대동 운강석굴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화화생도가 발전하였는데, 그 불교 문화가 고구려에까지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⁰⁾ 다만 장천1호분은 벽화 전반에서 불교적 색채가 강하여 불교적 내세관을 표출한 장면이라 할 수 있으나, 삼실총의 경우는 벽화의 주류가 신화적이고 비선적이어서 仙佛이 결합된 바탕 위에 연화화생도가 도입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천공의 세계가 내세의 정토이자 신화의 이상향이요 비선의 선계임을 다양한 제재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곧 主仙補佛의 관점에서 이해할 만하다 하겠다. 장천1호분의 경우도 천장석에 안치된 복두칠성 그림에 위진도교적인 점성 색채가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장천1호분을 더욱이 선불교섭 배경에서 조망하게 된다.

열다섯째, 고구려 벽화에서 유난히 발달한 별자리 그림들은 벽화 공간을 소우주의 축소판으로 간주하려는 범아일여적인 사유를 잘 보여준다. 그 중에서 씨름무덤, 춤무덤, 덕화리1호분, 덕화리2호분 등 많은 무덤에 그려진 복두칠성과 남두육성 별자리는 각기 북과 남을 대표하는 방위별자리로 묘사된 것

39) 이희덕, 2000, 「고려사 오행지 역주」, 『고려시대 천문사상과 오행설 연구』, 일조각; 김일권, 2006, 「高麗史 五行志 譯註(4)」, 『고려시대연구』 X, 한국학중앙연구원.

40) 전호태, 2000, 앞의 글, 213쪽.

인데, 위진도교의 천문사상에서 북두는 사후 세계를 주관하고 남두는 삶의 세계를 주관한다⁴¹⁾는 역할 분리가 이루어져 있어, 생과 사의 두 세계 모두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누리고자 하였던 생사일여적 飛仙觀을 엿보게 된다.

남두육성은 다시 의미가 더욱 분화되어 동진 말기 상청파의 도사 楊羲(331~386)가 편찬한 『上清經』을 보면, “南斗六司主延壽, 計六宮稱爲: 第一天府 司命星君, 第二天相 司祿星君, 第三天梁 延壽星君, 第四天同 益算星君, 第五天樞 度厄星君, 第六天機 上生星君, 是爲南斗六司星君也”라 하여,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대표적인 天府가 남두육성 별자리임을 말하고 있다. 이에 남두육성 각각은 여섯 개의 궁전으로 분리되어 각기 6궁의 성관이 司命과 司祿, 延壽, 益算, 度厄, 上生을 주관하는 것이라 하여 그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인간의 가장 원원한 기원인 수명복록의 최고 관부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⁴²⁾

41) 쯤나라 干寶가 찬한 『搜神記』 권3에서 “南斗注生, 北斗注死”라 하여, 생과 사의 주관자로 남두와 북두의 기능을 분리하여 인식하였다.

42) 도교 문헌이 아닌 중국 고대의 천문사료들에서 다시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기』 「천관서」에서 단순히 하늘의 사당(廟)으로 보았던 것이, 당나라 초기에 편집된 『진서』 「천문지」에 이르면 남두육성을 天廟라 하면서도, 賢良 進士를 추천 포상하거나 爵祿을 내려주는 丞相·大宰의 지위로 재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쪽의 두괴 2성은 天梁이며, 중앙 2성은 天相, 북쪽 2성은 天府의 朝廷이라 하였고, 이들은 수명의 기한을 주관하는 별자리인데 이 斗星이 크게 빛나면 王道가 평화롭고 작록이 베풀어진다고 하였다(『진서』 「천문지」 二十八舍條. 『수서』 「천문지」도 동일). 전한의 『사기』와 당나라의 『진서』 「수서」 사이에 커다란 내용 변화가 생겨나 있다. 이것은 이미 한당 사이에 남두육성이 수명 작록을 관장하는 상서로운 별자리라는 관점이 구축되었음을 시사한다.

한선제 神爵 원년(기원전 61) 즈음에 장안성 옆에 歲星, 辰星, 太白星, 熒惑星과 함께 南斗祠堂을 건립한 기록(『한서』 「교사지」 제5하)이 있다. 이로 보아 한대에서부터 이미 남두육성을 상서로운 별자리로 보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周書』 「宣帝帝紀」 卷7에서도, 금성이 南斗에 들어가고, 목성이 軒轅星을 범하고, 형혹성이 房星을 범하고 또 토성과 회합한 천문 현상을 두고, 남두는 爵祿을 주관하며(南斗主於爵祿) 현원성은 後宮이고 房星은 明堂 布政所를 말하므로 어찌 官人에 질서가 없어지고 우환이 이를 수 있겠는가 반문하였다(『北史』 「周本紀」 下第10 宣帝宇文贇條에도 동일). 남두는 祥瑞의 별이므로 天犯에도 무관하다는 말이다.

『송사』 「천문지」(28舍條)에서는 남두의 그러한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천자의 壽命 益算과 宰相의 爵祿을 주관하는 구체적인 ‘하늘의 賞祿府’로 규정한 것이다. 이같이 爵祿과 益算, 褒賞을 주관한다는 天之賞祿府로서의 占辭 흐름이 남두육

한편 고구려 벽화는 이상의 남두와 북두에 동쪽의 방위별자리인 東入六星 곧 心房六星 별자리(전갈자리)와 서쪽의 방위별자리인 西入六星 곧 參伐六星 별자리(오리온자리)가 합쳐져 동서남북의 四宿圖 천문 체계를 구축하였고, 여기에 천문 관측의 중심인 北極三星까지 가세하여 五宿圖 천문을 이루었는데, 이는 고구려인들에게서 벽화의 공간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천공의 천문세계를 그대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음을 보여준다.

Ⅲ. 고구려 벽화 도상의 유교 신화적 상관성

고구려 벽화에는 많은 신화적 도상들이 그려져 있다. 그 종류가 너무 많고 갈래 또한 매우 다양하여 고구려의 신화 만신전을 수용하는 신화 전시관을 별도로 꾸려야 할 형편이다. 신화는 인간의 유한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의 각축장이자, 새로운 삶의 경험을 이끌어내는 세계관의 원천이기도 하다.

신화의 마당이 단지 호사가적인 관심으로 촉발되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의 세계를 가시적인 영상으로 투영시켜내려는 지난한 문화 창조의 현장이다. 대중매체가 아직 발달하지 못한 고대사회에서 상호간의 생각을 소통하는 문화교류의 마당이었으며, 역사적인 사실의 신비적 강화를 위하여 신화 기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신화가 전승되어 가는 과정에서 더욱 그럴듯하게 각색되거나 변형되면서 한 시대를, 혹은 한 사회를 풍미하는 신화의 다양성이 생성된다. 그래서 한 시대에 유통되는 신화를 통하여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단면을 우리는 조망하여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신화가 시대성을 담아낸다는 것은 신화학의 장르

성에 매겨진 기본적인 관점이라 정리된다. 도장에 보이는 남두육성의 이해와 물론 같은 연장선에서 접근된다.

를 역사학의 관점으로 되돌리는 작업이기도 하다.

또한 각 신화소가 아무렇게나 그저 그런 의미 없는 존재로 나열되는 것은 아니며, 각 신화소의 이면에 무언가의 의미소를 함께 붙여둔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신화학은 의미소의 상징연합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상학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 고구려 벽화의 신화 도상을 통하여 고구려인들의 사유세계를 짚어 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런 맥락 때문이다.

다만 아직 우리 학계가 고구려 벽화의 도상들을 신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깊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면모를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다. 필자의 역량도 일천하여 여기에서는 관련되는 몇 가지 단상을 천착하는 것으로 그치려 한다. 연구가 축적되면 별도의 글로 다뤄볼 만한 것이다. 고구려 벽화의 신화 도상들은 거의 대부분 도교적인 仙化의 세계를 지향하는 내용들이지만, 기린과 황룡의 두 도상의 경우는 유교신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문제부터 살펴본다.

1_ 麒麟과 德治 신화

무용총의 북벽 천장을 보면, 천공의 北極三星 별자리 앞쪽으로 힘차고 시원스럽게 내딛는 麒麟像이 묘사되어 있다. 몸체의 앞이 아래로 쏠려 있어 하강하는 듯한 자세이다. 네 발바닥이 말발굽 형상이며, 길게 뻗은 꼬리가 소꼬리처럼 치켜 들린 가운데, 어깨에 작은 날개가 달려 있어 有翼獸의 일종으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다소 박락되어 희미하지만 머리 위로 길다란 뿔이 하나 솟아 있다. 얼른 보면 날개 달린 天馬와 잘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이나, 머리 위로 솟은 一角으로 인하여 이 도상을 천마가 아닌 기린으로 판정한다. 그래서 문헌에 기린의 다른 이름을 一角獸라 일컫는다. 이것은 서양의 신화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유니콘(Unicorn)의 이미지와 흡사하여, 고대 동서문화 교류의 흔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같이 기린은 사슴 또는 노루 같은 몸에 뿔이 하나 있는 동물을 지칭한다. 동아시아 고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던 기린의 형태적 묘사는 당나라

초기 최고의 주석가인 顏師古(581~645)의 설명에 따르면, “사슴의 몸에, 소의 꼬리에, 말의 발에, 황색 털에, 둥근 발굽과 뿔 하나(麋身, 牛尾, 馬足, 黃色, 圓蹄, 一角)⁴³⁾로 요약된다. 남북조시대의 상서 문제를 다룬 『송서』 「부서지」에서, “기린은 仁獸이다. 수컷을 麒, 암컷을 麟이라 부른다. 노루 몸에 소의 꼬리를 지녔고, 이리의 목에 뿔이 하나 있다. 털빛은 황색이며 말의 발을 가졌다(麋身而牛尾, 狼項而一角, 黃色而馬足)”고 하였다. 여기서 몸체를 노루라 하였으나, 北魏 초 고문자학에 밝았던 박사 張揖이 “사슴의 몸에 소의 꼬리를 지녔다”고 하였던 것처럼, 대개 기린의 몸체는 사슴[麋]으로 묘사된다.⁴⁴⁾ 麒麟이라는 글자가 사슴 鹿을 부수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무용총의 기린상 역시 황색 빛깔의 사슴형 몸체에 말발굽과 소꼬리에 외뿔을 가졌다.

그런데 장읍과 안사고 및 『송서』 「부서지」의 설명에는 모두 날개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고전적에서 기린을 묘사한 구절들을 살펴보면, 교외 들판에 사냥을 갔다가 잡았다든가, “봉황이 높은 벽오동나무에 서식하고, 기린이 서쪽 정원에 머문다”는 상투어처럼 기린이 지상 교외의 동산에 머물며 노닌다는 표현을 자주 만난다.⁴⁵⁾

이것은 고대에 인식되었던 기린이 날개를 타고 허공 중을 날을 수 있는 천

43) 師古曰:「麟, 麋身, 牛尾, 馬足, 黃色, 圓蹄, 一角, 角端有肉」(『한서』 「무제기」 권6, 174쪽의 주석).

44) “수컷을 麒, 암컷을 麟이라 한다. 그 형상이 사슴의 몸에 소의 꼬리를 지녔고, 이리의 발굽에, 뿔 하나를 가졌다”(張揖曰:「雄曰麒, 雌曰麟. 其狀麋身, 牛尾, 狼蹄, 一角」), 『사기』 「사마상여열전」 권117, 3026쪽 색은주석).

45) 노나라 哀公 14년 봄에 들판에 사냥을 갔다가 叔孫氏의 수레꾼 자조상이 짐승을 잡았는데, 공자가 이를 보고 기린이라 말하였다. 또 서쪽으로 사냥을 갔다가 기린을 보았는데, 공자가 말하기를, 나의 도가 다하였다면서 탄식을 하였다(魯哀公十四年春, 狩大野. 叔孫氏車子鉏商獲獸, 以爲不祥. 仲尼視之, 曰:「麟也」. 取之. 曰:「河不出圖, 雒不出書, 吾已矣夫!」 顏淵死, 孔子曰:「天喪予!」及西狩見麟, 曰:「吾道窮矣!」 喟然歎曰:「莫知我夫!」 子貢曰:「何爲莫知子?」 子曰:「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 (『사기』 「공자세가」 권47, 1942쪽); 후한 중기의 경학가 馬融(79~166)의 말에 “봉황이 높은 벽오동나무에 서식하고, 기린이 서쪽 정원에 머문다(遂棲鳳皇於高梧, 宿麒麟於西園, 納焦僂之珍羽, 受王母之白環).” (『후한서』 「마융열전」 권60상, 1969쪽)라고 하였다.

마의 이미지를 가지지 않았던 것임을 보여준다. 『맹자』 「공손축장」에서 “기린은 (땅 위를) 달리는 동물이며, 봉황은 (허공을) 날으는 새(麒麟之於走獸, 鳳凰之於飛鳥)”라 언급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고대의 동물 분류법을 담고 있는 『대대례기』 「역본명편」과 『예기』 「월령편」 등에서 지상에 털 달린 짐승 360종류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기린이라 하면서, 서방 가을에 해당되는 기린을 길짐승인 포유류에 해당하는 毛蟲의 대표자로 삼았던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용총의 기린도상에는 작지만 분명한 날개를 지녔다. 안악1호분의 서쪽 천장 고임부에도 그려진 一角의 기린도에는 무용총의 것보다 훨씬 큰 날개가 몸체 전체를 감싸도록 묘사되었다. 이렇게 고구려 벽화 중의 기린도는 麤身, 一角에 牛尾와 馬足の 특징을 지닌 것 외에 有翼이라는 새로운 도상적 특성이 부여되어 있다. 말하자면, 고구려의 기린은 일각이라는 유니콘적인 모티프와 동시에 날개를 펼치고 날으는 천마 곧 페가수스(Pegasus)적인 모티프도 함께 공유되어 있다. 중국의 한당대 문헌에 널리 보이던 형태 인식과는 다소 다른 것이다. 고구려 벽화의 기린이 지상 위에 노니는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천공 중에 날으는 飛翔의 이미지로 처리된 것이 그러한 천마류적인 날개의 특성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기린이 지니는 사상적 의미는 태평시대의 瑞獸라는 점과 仁獸라 일컫는 두 관점이 주목된다. 기린이 나타나면 성인이 출현하거나 태평의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믿어졌다. 그래서 기린은 “태평의 서수요 성인의 무리(麟者, 太平之獸, 聖人之類也)”⁴⁶⁾라 일컬어졌다. 이것은 공자라는 성인이 나타났을 때 기린이 출몰하였다는 고사와 연결되어 있다. 노나라 애공 14년 봄에 서쪽으로 사냥을 갔다가 기린을 잡은 것(西狩獲麟)을 보고서, 공자가 이제 나의 도가 다하였다(吾道窮矣!)는 장탄식을 하면서 나를 알아줄 이는 하늘뿐이다(知我者其天乎!)라 외친 이래로, 역대 유학자와 사가들이 기린의 등장을 성인과

46) 集解何休曰：「麟者, 太平之獸, 聖人之類也. 時得而死, 此天亦告夫子將歿之證, 故云爾。」(『史記』「孔子世家」卷47, 1942쪽).

연관짓게 되었다.⁴⁷⁾ 이후로 점점 기린이 지닌 상서적인 의미가 더해져, 한무제의 경우 하늘에 제사를 올린 뒤 흰 기린[白麟]을 잡은 것을 두고 하늘의 상제가 주는 報應으로 해석하여 연호를 元狩 원년(기원전 122)으로 改元하기도 하였다.

한나라 초기 대유학자인 董仲舒(기원전 170~기원전 120?)가 고금의 태평성세를 논하면서 “덕이 초목을 적시고, 은택이 사해에 입히며, 봉황이 모여들고, 기린이 와서 노닌다.”⁴⁸⁾하였고, 한무제의 측근이었던 東方朔(기원전 154~기원전 93)도 “봉황이 모여들고, 기린이 들판에 있으며, 감로가 내려 맺히고 붉은 풀이 싹을 틔운다”⁴⁹⁾하였으며, 전한 말의 대문호였던 揚雄(기원전 53~18)도 “국가가 부유하고, 상하가 만족하니, 감로가 그 뜰에 고요히 맺히고, 좋은 샘물이 그 제방에 흐르며, 봉황이 그 나무에 깃들고, 황룡이 그 늪에 헤엄 치며, 기린이 그 동산에 이르고, 신작이 그 수풀에 서식한다”⁵⁰⁾고 묘사하였다. 모두가 기린과 봉황의 내응을 태평성세의 瑞徵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음으로 기린을 仁獸로 여긴 것은 『송서』 「부서지」에 잘 표현되어 있다. 기린이 “살아 있는 벌레를 밟지 아니하고, 살아 있는 풀을 꺾지 아니하는 것”은 仁을 머금은 뜻이며, “의롭지 못한 것을 먹지 않으며, 웅덩이나 연못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義의 표상이며, “구덩이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며, 그물에 걸리지도 않는 것”은 智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까닭에 “기린은 仁을 머금고 義를 머리에 이었으며, 소리는 쇠북의 음울[種呂]을 내고, 걸음걸이가 規矩에 합치된다”고 보았다. 머리에 뿔이 하나 난 一角의 기상을 불의와 타협하

47) 孔子曰：「丘聞之也，刳胎殺夭則麒麟不至郊，竭澤涸漁則蛟龍不合陰陽，覆巢毀卵則鳳皇不翔，何則？君子諱傷其類也。夫鳥獸之於不義也尚知辟之，而況乎丘哉！」(『史記』 「孔子世家」 권47, 1926쪽)；魯哀公十四年春，狩大野，叔孫氏車子鉏商獲獸，以爲不祥，仲尼視之，曰：「麟也。」取之，曰：「河不出圖，雒不出書，吾已矣夫！」顏淵死，孔子曰：「天喪予！」及西狩見麟，曰：「吾道窮矣！」喟然歎曰：「莫知我夫！」子貢曰：「何爲莫知子？」子曰：「不怨天，不尤人，下學而上達，知我者其天乎！」(『사기』 「공자세가」 권47, 1942쪽).

48) 德潤草木，澤被四海，鳳皇來集，麒麟來游(『한서』 「동중서열전」 권56, 2520쪽).

49) 鳳凰來集，麒麟在郊，甘露既降，朱草萌芽(『한서』 「동방삭열전」 권65, 2872쪽).

50) 國家殷富，上下交足，故甘露零其庭，醴泉流其唐，鳳皇巢其樹，黃龍游其沼，麒麟臻其園，神爵棲其林(『한서』 「양웅전」 권87상, 2540쪽).

지 않는 의로움의 상징으로 해석한 것이다.⁵¹⁾

그래서 후한시대의 상금서수에 관해 자세하게 천착한 王充(27~97?)의 『論衡』을 보면, “봉황은 새의 성자이며, 기린은 짐승의 聖者”인데, “큰 새에 오색으로 文章된 것이 봉황이고, 노루 같은 몸에 머리에 뿔이 있는 것이 기린임을 알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⁵²⁾ 그 기린의 성스러운 면모 때문인지 믿음이 두터운 靈獸로 인식한 대목도 눈에 띈다. 四神圖가 출현하기 이전에 사방위를 수호하는 방위 동물로 제시되었던 四靈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를 논하면서, “기린은 信厚에 바탕을 두었으며, 봉황은 治亂을 알며, 거북은 吉凶을 예지하고, 용은 變化에 능한 것”⁵³⁾으로 풀이하였다.

이상의 해석들을 정리하자면 결국 기린은 덕치의 상서로운 부응이자 태평 성세를 예고하는 하늘의 의지가 전달된 결과로 인식되었던 것이라 이를 수 있다. 시기상으로 볼 때 이상과 같은 인식이 고구려 벽화의 기린상에 다분히 반영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4세기 미천왕 시절부터 활발하게 펼쳐졌던 고구려의 대외적 팽창이 내적으로 자신감의 충만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그 확장된 정치와 경제력의 활력은 이 땅을 태평의 성군이 다스리는 성세로 찬미하게 만

51) “기린은 仁獸이다. 수컷을 麒, 암컷을 麟이라 부른다. 태와 알을 가르지 않고 태어난다. 노루 몸에 소의 꼬리를 지니며, 이리의 목을 가졌고 뿔이 하나 있다. 털빛은 황색이며 말의 발[馬足]을 가졌다. 仁을 머금고 義를 머리에 이었으며, 소리는 쇠북의 음울[種呂]을 내며, 걸음걸이가 規矩에 합치된다. 살아 있는 벌레를 밟지 아니하며, 살아 있는 풀을 꺾지 아니하며, 의롭지 못한 것을 먹지 않으며, 웅덩이나 연못의 물을 마시지 않으며, 구덩이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며, 그물에 걸리지도 않는다. 밝은 임금[明王]이 儀節에 맞는 動靜을 하면 나타난다. 수컷이 울면 성인이 逝去하며, 암컷이 울면 歸和한다. 봄에 우는 것을 扶幼, 여름에 우는 것을 養綏라 이른다(麒麟者, 仁獸也. 牡曰麒, 牝曰麟. 不刳胎剖卵則至. 麋身而牛尾, 狼項而一角, 黃色而馬足. 含仁而戴義, 音中鍾呂, 步中規矩, 不踐生蟲, 不折生草, 不食不義, 不飲汚池, 不入坑穿, 不行羅網. 明王動靜有儀則見. 牡鳴曰遊聖, 牝鳴曰歸和, 春鳴曰扶幼, 夏鳴曰養綏) (『宋書·符瑞志』 지제18 麒麟條, 791쪽).

52) 如有大鳥, 文章五色; 獸狀如麋, 首戴一角, 考以圖象, 驗之古今, 則鳳麟可得審也. …… 夫鳳凰, 鳥之聖者也, 麒麟, 獸之聖者也(『論衡』 「講瑞篇」 第50; 黃暉 撰, 1990, 『論衡校釋』, 北京, 中華書局 校点本).

53) 方氏曰, 麟稱信厚, 鳳知治亂, 龜兆吉凶, 龍能變化, 故謂之四靈(清 孫希旦 撰, 1989, 『禮記集解·禮運篇』 주석, 中華書局 點校本, 614쪽).

들었을 것이다. 4세기 안악1호분과 5세기 무용총에서 중국 문헌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던 유익수로서의 기린상이 새로운 변형으로 그려짐에 따라 비상하는 고구려 자신들의 이상이 강조되어 있다.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린은 하늘과 땅의 두 세계를 오르내리는 仙獸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天孫 관점에서 재해석한 고려 말 李承休(1224~1300)의 『제왕운기』(1287)에 이런 관점이 투영된 것도 우연은 아닐 듯하다. 『제왕운기』 「高句麗紀」를 보면,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이 하늘과 땅의 두 세계를 오가며 다스리다가 朝天石 위에서 기린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구절이 나온다.⁵⁴⁾ 『광개토대왕비』(414)에서 시조 추모왕이 黃龍의 머리를 딛고 승천하였다는 기록과 대비된다. 황룡의 신화가 어느 사이에 기린의 신화로 개변되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조선 전기에는 기린의 신화가 구체적인 흔적을 가진 麒麟窟 신화로 확대 재생산된다. 『동국여지승람』(1481) 「평양부조」에는 동명성왕이 하늘 조정을 왕래할 때 기린을 타고 다녔으며, 왕이 그 기린말(麒麟馬)을 직접 기르던 곳이 다름 아닌 평양성 동편 구계궁(九梯宮, 동명왕의 궁궐)의 안쪽 錦繡山 浮碧樓의 아래 대동강변에 있는 기린굴이라 하였다. 이 기린굴의 남쪽에 조천석이라는 바위가 있으며, 왕이 이곳에서 하늘을 오르내렸고, 지금도 왕이 승천하면서 만들어진 기린의 발굽 자국이 남아 있다고 한다. 金克己(?~?, 명 중대), 李穡(1328~1396), 李詹(1345~1405), 權近(1352~1409) 등 이를 기리는 고려 후기 문신들의 시구를 여러 편 수록하였다.⁵⁵⁾

54) “천상을 왕래하며 다스리다 하늘 조정에 이르시니, 조천석 바위 위에 기린의 발굽이 가뻐도다. 재위 19년 9월에 구름수레 타고 升天하시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다(往來天上詣天政, 朝天石上麟蹄輕. 在位十九年九月升天, 不復迴雲輶)”(『帝王韻紀』 卷下 「高句麗紀」; 朴斗抱 역주, 1974, 『동명왕편·제왕운기』, 을유문화사).

55)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51 「평양부조」 33~34쪽(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참조); 이 보다 앞선 『세종실록』 「지리지」(1454) 154권 「평양부조」에서, 錦繡山 꼭대기의 평탄한 곳에 乙密臺가 있고, 그 누대 아래 절벽 위에 浮碧樓가 있으며, 옆에는 永明寺가 있는데, 곧 동명왕의 九梯宮이고, 그 안에 기린을 기르던 기린굴이 있으며, 굴의 남쪽 白銀灘 여울쪽에는 조수에 따라 출몰하는 朝天石 바위가 있는데, 민간에서 동명왕이 기린을 타고 굴 속에서 나와 조천석에서 천상으로 오르던

玉宇가 공중에 치솟아, 겹겹한 궁궐이 몇 해를 지내왔고,
 鳳輿가 지금 와서 풍속을 살피는데, 기린을 타시고 옛날에 신선되어 올라가셨네.
 고개마루는 채찍을 묻은 언덕이요, 바위 가에는 차를 달이던 샘물이 있네.
 굴이 깊어 땅 밑을 뚫었고, 사다리가 멀리 하늘가에 대어 있네. (고려 명종대 김극기)⁵⁶⁾

산 앞의 굴이 가장 깊고 그윽한데, 말 들으니 眞인이 옛날 여기에 머물렀다고.
 기린이 절로 길들어 하늘 위에 갔고, 귀신이 길잡이 되어 땅속에 놀았다네.
 가물가물 길이 있어 仙府에 통하였고, 아득히 자취 없이 세속을 초월했구나.
 괴이를 말함이 聖道는 아니나, 시를 써 애오라지 전설을 적어 두네. (여말 권근)⁵⁷⁾

이처럼 기린의 신화는 여말선초를 지나면서 새롭게 고구려의 동명성왕과 연관되어 투영되었고, 이때 기린이 하늘을 오르내리는 존재로서 이해되어 있다는 점은 역시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였던 유익수로서의 비선적인 모습이 그대로 계승되었던 것은 아닐까 짐작된다. 동명왕의 유적인 구제궁과 기린굴, 조천석 등을 신선의 조정인 仙府와 연관짓는 시들이 앞서 언급된 여말시기 문인

곳이라 한다 하였다. 그러면서 이승휴의 『제왕운기』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 이런 기린 신화가 『제왕운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이승휴가 麟蹄라 하였던 부분을 麒麟이라 改書함으로써 더욱 직접적으로 기린에 대한 신화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乙密臺, 卽錦繡山頂, 平坦敞豁, 臺下層岸之上, 有樓曰浮碧, 觀覽之狀, 不可勝記. 旁有永明寺, 卽東明王九梯宮, 內有養麒麟堀, 後人立石誌之. 堀南白銀灘有岩, 出沒潮水, 名曰朝天石. 謠傳東明乘麒麟, 從堀中登朝天石, 奏事天上. 李承休所謂往來天上詣天政, 朝天石上麒麟經, 卽謂此也).

56) 玉宇掌空起 重宮開幾年 / 鳳輿今問俗 麟取昔升仙 / 嶺杪藏鞭輿 岩阿試茗泉 / 窟深穿地底 梯迴倚天邊(金克己).

57) 山前窟穴最深幽 問道真人昔此留 / 騏驎自馴天上至 鬼神爲導地中遊 / 冥冥有路通仙府 渺渺無蹤絕俗流 / 語怪縱然非聖道 題詩聊紀所傳由(권근).

들 사이에 많이 쏟아져 나온 것도 그런 사상적 맥락과 상통하는 듯하다.

2. 黃龍과 聖王 신화

기린이 고구려 천하의 태평성대를 상서로운 符應으로서 내보인 표징이라면, 고구려가 이 세계의 중심이며 사방 제국의 통치자라는 고구려적 천하관이 황룡도를 통하여 잘 드러나 있다. 고구려 벽화 중에서 황룡도가 그려진 고분으로 강서대묘와 집안오회분 4호묘 및 통구사신총이 주목된다. 황룡은 유교와 도교에서 공히 활용하는 신수이지만 한무제시기에 제왕의 성스러운 색채로 黃色이 역사에 전면 부각되었고, 또 동중서의 천인상관사상에서 보이듯이 방위의 중심 상징으로 황룡을 강조하여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유교적인 신화도상으로 분류하였다.⁵⁸⁾ 고구려의 건국 신화 구조에서도 황룡이 시조 추모왕의 성스러움을 장식하는 요소로 활용되어 있어, 고구려의 유교적 제왕론 내지 왕도정치 상징으로 연결지를 여지가 있다.⁵⁹⁾

강서대묘는 사신도 미술의 최고봉을 구현한 현무도로 인하여 고구려 미학을 대표하는 그림으로 유명하지만, 실상 강서대묘가 사신도 무덤이 아닌 五神圖 무덤임을 주목하는 경우는 적다. 이 무덤은 고구려 후반기에 새롭게 개발된 粗壁地 기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벽화무덤으로 최근에 재평가되고 있다. 조벽지는 회반죽을 입히지 않고 거친 화강암 표면에 직접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동양적 油畵의 시험작이라 이를 수 있는 신기술이다.⁶⁰⁾ 이 묘실의 네 화강암 벽면에 다른 요소가 없이 유려한 청룡·백호·주작·현무의 사신도만 깔끔하게 처리한 가운데, 천장 중심부를 올려다보면 큰 원을 그리면서 휘돌아 내려다

58) 김일권, 2007, 『동양천문사상 인간의 역사』, 예문서원.

59) 김일권, 2002, 「고구려의 황룡사상과 그 우주론적 세계관」, 서영대·송화섭 편, 『용, 그 신화와 문화(한국편)』, 민속원.

60) 한경순, 2005, 「고구려 고분벽화 제작기술에 관한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제4차 국내학술회의, “고구려 고분벽화의 보존과 복원 문제” 발표문; 진영선 외, 2005, 『고구려 벽화의 이미지 복원』, 고구려연구재단 참조.

보는 누런 빛깔의 황룡도가 묘실 전체를 응시하는 구도를 보인다. 기존의 사신도에다 황룡이 가미됨으로써 오신도 벽화가 되는 것인데, 고구려 문화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6세기 무렵에 이르러서 새롭게 추구된 벽화 양식이다. 현재 학계에서 강서대묘의 묘주인공으로 강건한 고구려를 건설하였던 제25대 평원왕(559~590)의 왕룡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는데,⁶¹⁾ 이를 참고하자면 강서대묘의 황룡은 바로 제왕의 절대성을 상징하는 신수로서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었다고도 이를 수 있다.

장수왕의 천도 이후 고구려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던 평양지역의 강서대묘를 비롯하여, 기존의 문화 중심지였던 국내성 지역의 벽화무덤에서도 오신도 벽화가 6세기 즈음에 다수 제작되었다. 집안오회분 4호묘 역시 화려한 사신도가 일품인 벽화무덤인데, 그 사방 벽면의 사신도를 아우르는 형국으로 묘실 천장의 중심부에 오색이 찬연한 황룡도가 압축된 기운을 온몸으로 발산하듯 사방 천하를 주재하는 모습으로 자리하여 있다. 공교롭게도 이 황룡도 옆에는 천문의 중심 별자리인 북극3성 별자리가 함께 그려져 있다. 이 때문에 황룡이 더욱 우주의 중심적 상징성을 확보하게 된다. 통구사신총의 천장석에도 4호묘와 동일한 구도의 황룡도와 북극3성좌가 함께 그려져 있다.

이처럼 6세기의 사신벽화무덤 속에는 황룡을 제5의 신수로 삼아 천하를 주재하는 신화 구도를 표명하고 있다. 이전 시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당대 벽화고분에도 전혀 보이지 않던 방식이다. 집안오회분 5호묘의 천장석에 북극3성좌와 함께 용호상박하듯 龍虎圖가 서로 얽힌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는바, 비록 용호도이지만 황룡이 지니는 도상적 의도와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황룡이 아닌 집안오회분 4호묘 등에서 제왕의 상징으로 보이는 황룡이 그려지는 정치문화사적 배경이 앞으로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 본인은 일단 6세기라는 동일한 시대적 인식 지평의 공유와 확장 측면에서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황룡을 오방위론의 중심 신수로 제시한 이야기는 전한 초 『회남자』(기원전

61) 東潮, 1999, 앞의 글, 279쪽.

139)의 「천문훈」에서 처음 나타난다. 동방蒼龍과 남방朱鳥와 서방백호와 북방현무의 사신도를 거론하면서, “중앙은 토이다. 그 중앙토의 임금인 黃帝이며, 그 중앙토의 보좌는 后土神이다. 모든 법도를 가늠하는 먹줄을 잡아 사방을 제어한다. 그 중앙토의 신은 鎮星(토성의 다른 이름)이며, 그 중앙토를 맡은 짐승은 황룡이다. 그 음은 宮聲이며, 그 일진은 戊己이다”⁶²⁾라고 하였다. 이 『회남자』는 전국을 통일한 진한제국이 모든 사상 문화의 통합을 추구하던 대일통적 정치사상이 농후하게 투영된 역저인데, 여기에는 黃色을 만유의 근본으로 삼으려던 黃老적 우주론과 제왕의 권위를 土德에서 찾으려던 오행적 천하사상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다. 이런 노력 뒤에 동양적 제왕의 상징이 되어 버린 황색의 곤룡포 이미지가 정착되기에 이른다.

후한대의 유명한 천문학자 張衡(78~139)은 오신도의 배치 구도와 형상을 천상의 사방위 별자리와 연관짓는 도상적 이미지로 묘사하였다. “자미궁은 皇極의 거소이며, …… 창룡이 왼쪽에서 허리를 구부러 늘어 있고, 백호는 오른쪽에서 사납게 웅거하였으며, 주작은 앞에서 날개를 펼치고, 靈龜는 뒤에서 머리를 내밀며, 黃神 현원이 중심에 자리하였다.”⁶³⁾ 이런 구도에 따르면 중앙부에 자리잡은 황신 황룡이 천상 권부의 거소인 자미궁에 대응되는데, 그 자미궁의 주인이 바로 북극성 별자리로 표상되는 황극의 皇天上帝이다.

이러한 황룡을 포함한 오신도의 천문사상적 구도가 벽화 도상으로 그대로 구현된 것이 바로 고구려의 벽화고분에서임을 알 수가 있다. 집안오회분 4호

62) “何謂五星? 東方 木也, 其帝太皞 其佐句芒 執規而治春. 其神爲歲星 其獸蒼龍 其音角 其日甲乙. 南方 火也, 其帝炎帝 其佐朱明 執衡而治夏. 其神爲熒惑 其獸朱鳥 其音徵 其日丙丁. 中央 土也, 其帝黃帝 其佐后土 執繩而制四方. 其神爲鎮星 其獸黃龍 其音宮 其日戊己. 西方 金也, 其帝少昊 其佐蓐收 執矩而治秋. 其神爲太白 其獸白虎 其音商 其日庚辛. 北方 水也, 其帝顓頊 其佐玄冥 執權而治冬. 其神爲辰星 其獸玄武 其音羽 其日壬癸”(『淮南子·天文訓』).

63) 臣昭以張衡天文之妙, 冠絕一代. 所著『靈憲』·『渾儀』, 略具辰耀之本, 今寫載以備其理焉. 『靈憲』曰: “星也者, 體生於地, 精成於天, 列居錯峙, 各有迥屬. 紫宮爲皇極之居, 太微爲五帝之廷. 明堂之房, 大角有席, 天市有坐. 蒼龍連蜷於左, 白虎猛據於右, 朱雀奮翼於前, 靈龜圈首於後, 黃神軒轅於中”(『後漢書·天文志』, 梁 劉昭의 주석, 3216쪽).

묘와 5호묘 및 통구사신총의 천장석에 묘사된 황룡도와 북극3성 별자리의 존재가 바로 그것인 것이다. 한당대의 벽화고분에서 이런 구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고구려의 벽화에는 한대적 사상 문화 향취가 짙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것은 아마도 고구려가 5, 6세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의 최강자로 부상하는 자긍심을 한대적 천문우주론에 상당히 기대었다는 문화접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후한의 문화를 계승하는 위치에 선 중원의 경우 남북조로 어지럽게 갈려 쟁투하는 까닭에 자신들이 천하의 모든 중심이라는 생각 곧 황룡 중심의 천하관을 엮어내기에는 그러할 여력과 타당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 황룡에 대한 사상은 5세기를 전후로 하여 매우 강화되고 있었다. 고구려 자신의 건국신화를 서술한 「광개토대왕비」(414)에 보면, “시조 추모왕이 왕위를 즐겨하지 않자, 이로 인하여 하늘에서 黃龍을 아래로 내려보내 왕을 영접케 하였다. 왕이 홀본의 동쪽 언덕에서 황룡의 머리를 딛고 昇天하였다”⁶⁴⁾고 하였다.

황룡을 하늘에서 내려보낸 사자로 묘사한 것이다. 그 황룡을 밟고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하였으니, 황룡이야말로 고구려의 천하를 담당하는 靈獸로 믿어 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동명성왕이 40세의 나이로 즉위 19년 9월에 승하하자, 龍山에 장사를 지냈다고 기록하였다.⁶⁵⁾ 이것은 시조 추모왕의 능묘가 자리한 곳의 이름을 용산 곧 황룡의 성산으로 인식한 대목이라 해석된다. 말하자면 고구려에서 용산은 시조의 영기가 서린 성산으로 인식되었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졸본지역에 있던 용산이 후일 평양지역에도 추설되었음을 또한 알 수 있는

64)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不樂世位，因遣黃龍來下迎王。王於忽本東罷，履龍昇天”（『廣開土太王碑文』 제1면 서두).

65) 十九年，夏四月，王子類利自扶餘與其母逃歸。王喜之，立爲太子。秋九月，王升遐，時年四十歲。葬龍山，號東明聖王（『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명성왕조).

데, 제21대 문자명왕 15년(506) 8월에 왕이 용산의 남쪽에 사냥하러 갔다가 5일간 머물다 돌아왔다⁶⁶⁾고 하였다. 용산의 신화가 지속되는 어떤 흔적이라 여겨지는데, 현재 장수왕릉으로 지목되는 집안 태왕향 들판의 장군총이 그를 에워싸는 뒷산을 현지에서 용산이라 부르는 것도 역시 황룡의 신화가 깃든 흔적이 아닐까 짐작된다.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로 가서 생을 마쳤던 高慈(665~697)의 묘지명을 보면, “선업을 쌓았으나 천록은 없고, 덕으로 도왔으나 어그러짐만 생겼구나. 짚으로 만든 개가 한 번 이르자 아름다움과 추함이 동시에 의지하였고, 흰 이리의 원조가 끊어지자 황룡을 지키는 이 드물구나. 이릉은 오래 머물렀으나 온서는 돌아갈 것을 생각하였네. 진실로 바라건대, 해와 달에 다시 용서를 구하여, 옥으로 만든 완염을 황천의 사립문에 부치노라”⁶⁷⁾고 하였다. 지켜야 할 대상으로 황룡을 언급한 대목이 문맥상 지키지 못한 고구려 자체를 지칭한 것이라 해석하면, 여기에서도 황룡의 신화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고구려에서 황룡 신화는 시조의 성스러움을 강화하는 중요한 신화 기제로 그리고 왕권의 절대성 또는 왕권신수설의 매개자라는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제재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IV. 맺음말 : 도교적 비선과 천공 신화적 독법과 관련하여

고구려 벽화에 투영된 신화적 공간의 주된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天空이라는 관점으로 잡고 싶다. 인간세계의 배후로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막연하

66) 十五年, 秋八月, 王獵於龍山之陽, 五日而還(『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문자명왕조).

67) 「高慈墓誌銘」: 積善無祿, 輔德有違, 芻狗一致, 美惡同依, 白狼援絕, 黃龍戍稀, 李陵長往, 溫序思歸, 諒日月之更謝, 寄琬琰於泉扇. 其四(『역주한국고대금석문』 1권, 1992).

고 추상적인 하늘이라기보다는, 일월성수가 펼쳐진 구체적이고 공간적인 하늘을 주 무대로 삼아 온갖 仙禽異獸들이 노닐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이지만 무한한 그런 천공의 신화 공간을 연출한다. 지상에 닿아 있는 정도의 허공보다는 더욱 높고, 궁극의 하늘끝 천상보다는 훨씬 낮아 보이는 그런 공간에서 고구려의 신화 영상들이 수놓여져 있다.

인간세계와 분리 정도가 강한 천상계라든가 죽어서 단절되는 사후의 내세 같은 공간 이미지는 아니다. 신화적 시점이 상당히 현재적이기 때문이다. 무용총 벽화에서 해와 달을 옆에다 두고 사현금을 켜는 선인들의 자태는 현재를 살아가는 고구려인들의 삶과 쉽게 분리되지를 않는다. 흔히 현실의 삶을 긍정한다는 측면에서 현세적이라 할 수도 있으나, 현세란 말은 종교적인 내세를 전제하고서 다소 부정적인 어감으로 속된 현실을 지향한다는 뜻이어서 적합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현재의 삶과 그다지 분리되지 않는 시점을 견지하면서 이상향적인 사후의 신화 공간을 추구하는 것은 후대 도교의 원형을 제공하기도 하였던 초기 方仙家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쇼으로도 쓰이는 仙이란 글자는 山과 사람[人]의 합성어로서, 산속에 사는 사람이란 뜻을 지닌다. 세간을 떠나서 入山 수행하는 탈속의 경계를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仙이란 글자가 쓰이기 이전에는 僊이라는 고형이 사용되었다.

僊은 처음에 춤소매가 펼렁인다는 뜻이었다가 위로 가벼이 올라가는 양태 [去而上僊]를 지칭하게 되면서,⁶⁸⁾ 세속을 초탈하여 하늘가에 노니는 사람을 僊人이라 일컫게 되었다.⁶⁹⁾

“천년을 살다가 세상에 염증을 내어, 위로 올라가 선인이 되니, 저 흰 구름

68) 黃暉 찬, 1990, 『論衡校釋』(중화서국) 제14권 「讒告」 제42에서, “상께서 이에 춤을 추니, 구름을 능가하는 기운이 있다(上乃僊僊有凌雲之氣)”라는 司馬相如(기원전 179~기원전 117)의 大人賦가 인용되었는데, 이 중 僊僊에 대해서 “선선은 춤추는 모습이다. 선선은 곧 표현히 가볍게 들려지는 뜻이다(僊僊, 舞貌. 僊僊則飄然輕舉之意)”라고 주석하였다.

69) “三百八十年, 黃帝僊登于天”(『사기』 「봉선서」), “太一·黃帝, 皆能僊登天. 張樂崑崙度山之上”(『한서』 「왕망열전」)과 같은 표현은 登天하여 僊인이 되었음을 뜻한다.

을 타고서 하늘 위 상제의 고향에 이르리(千歲厭世, 去而上僊, 乘彼白雲, 至於帝鄉)라는 『장자』 「천지편」의 글귀가 참고된다. 白雲을 타고 飛上하는 승선의 이미지를 僊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후일 백운 대신에 봉황과 같은 仙禽류라든가 날개를 지닌 天馬 혹은 날개 없이도 비상할 수 있는 蛟龍류 등을 승선의 보조물로 등장시키게 된다.

이런 상상력이 확장되어 백운과 같은 보조물이 없이 스스로 上僊하는 것을 일러서는 羽化登仙이라 하였다. 새의 깃 이미지가 강조된 羽人이란 관점은 이런 흐름에서 생겨났다. 『산해경』에서 “우인의 나라에 불사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有羽人之國, 不死之民)”라는 대목도 우인에 대한 신화적 상상력을 담고 있다. 飛仙이라는 말도 선인이 자유로이 날아오르는 이미지를 주된 관점으로 삼은 말이다.

몸에 털이 나고 직접 날개가 달린 선인의 형상도 드디어 생겨났다. 후한 초에 쓰여진 王充(27~97?)의 『논형』 「무형편」을 살펴보면 당시에 인식되었던 선인의 모습이 다음처럼 소개되었다.

선인을 그린 형상을 보니, 몸에 털이 나고, 팔이 변하여 날개가 되었으며, 구름 위를 날면 수명이 더하여져, 천년토록 죽지 않았다⁷⁰⁾

결국 僊人과 羽人은 모두 비상하는 초월의 세계를 추구하는 고대의 이상이 반영된 인간형을 이르는데, 仙人은 그런 목적을 위해 출세간하여 입산 수행하는 무리 혹은 그것을 실현시킨 神異한 존재를 일컫게 된 것이다.

이렇게 仙은 세간을 벗어나 초월의 자유를 실현시키려는 것을 사상적 동기로 삼는데, 선인이 지향하던 그 비상의 이미지가 고구려 벽화에서는 천공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으면서 매우 자유자재한 飛仙의 신화상을 구축해내고 있다. 말하자면 비선과 천공의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흔히 飛天이란 말로 고구려의 벽화상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불교적 내원의

70) 圖仙人之形, 體生毛, 臂變爲翼, 行於雲, 則年增矣, 千歲不死(『論衡校釋』 제7 無形, 66쪽).

비천보다는 도교적 내원의 비선이란 관점이 훨씬 정합적이다. 고구려 벽화가 시작되던 4~5세기는 위진대의 신선도교가 널리 팽창하는 시기이면서, 불교의 사상이 부단히 도교적으로 格義되던 중이어서 일차적으로 도교적인 안목이 크게 작용되던 사상 지형을 보인다. 부처를 大仙이나 金仙이라 일컫는 등 불보살들이 신이한 선인의 모습으로 해석되었다.⁷¹⁾

반면에 도교가 불교를 모방하여 끊임없이 불교의 신화사상을 흡수하던 시기이기도 하여, 도불의 습합 관점 없이 도교적인 측면만을 말하기는 역시 곤란하다. 불보살의 특징이던 광배가 선인의 도상에도 적용되었고, 허공 중에서 散花 공양하고 奏樂하는 모티프는 다분히 인도의 고대 신화에서 음악신의 속성을 지니던 건달바(Gandharva)나 긴나라(Kimnara)와 같은 비천상의 이미지가 수용된 결과이다. 힌두 도상에서 半人半馬로 묘사되는 긴나라는 천상의 歌樂神으로, 半人半鳥의 건달바는 음악을 연주하는 천상의 樂士로, 또 건달바의 배우자인 아프사라스(Apsaras)는 하늘의 舞姬로서 각기 도리천의 주인인 제석천(Indra)을 가까이 모시면서 기악 연주를 행하는 존재들이었다.⁷²⁾

이러한 불교적 의미의 비천이란 용어가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북위시대에 편찬된 『洛陽伽藍記』에서 찾아지는데, 경흥니사라는 사찰에서 만든, 높이가 3척이고 寶蓋와 칠보 구슬을 단 황금 수레에 기악하는 비천(飛天伎樂)을 장식하였다고 표현하였다.⁷³⁾ 『원사』 「예악지」에서 정월 원단 행사에 참여하는 악대의 구성을 설명하면서, “남자 다섯 사람이 飛天和 夜叉의 상을 취하고서 춤추며 나아간다”⁷⁴⁾는 구절도 참고된다.

한편 飛仙이란 말이 진한시기에는 쓰이지 않은 듯하며, 위진시대 신선도교의 성립과 더불어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시기 대표 저술인 서진

71) 林温, 1993, 「飛天と神仙」, 『日本の美術』 330號, 東京: 至文堂.

72) 秋山光文, 1993, 「古代における飛天の圖像」, 『日本の美術』 330號, 東京: 至文堂.

73) 石橋南道有景興尼寺, 亦闍官等所共立也. 有金像輦, 去地三尺, 施寶蓋, 四面垂金鈴七寶珠, 飛天伎樂, 望之雲表. 作工甚精, 難可揚推[『洛陽伽藍記校注』(範祥雍, 2006, 上海古籍) 권2 城東 石橋南景興尼寺; 林温, 1993, 앞의 글, 18쪽].

74) 次六隊, 男子五人, 爲飛天夜叉之像, 舞蹈以進[『元史』 「禮樂志」 권71 지제22 樂隊, 1773쪽].

葛洪(283~343)의 『포박자』 「금단편」에서 天仙과 地仙을 설명하면서, “만약 다시 昇天하려는 자는 재계한 뒤 금단 두 알을 복용하면 곧 비선이 되어 날아 오를 것이다(便飛仙矣)”⁷⁵⁾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한위 도교의 초기 경전인 『太平經』에서 真人이 受道修身함으로써 심중의 사된 邪心을 몰아내어 長生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내가 응당 사람 스스로의 주인이 되면, 뒷날 비선하여 하늘로 올라가리라(飛仙上天)”⁷⁶⁾고 하였다. 둘 다 승천하는 선인의 양태를 비선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것은 아마도 기존에 비상의 뜻을 지니던 僊이란 글자가 후한대에 이르러 입산 수행을 뜻하는 仙이란 자형으로 대체되면서 숨겨져버린 승천의 의미를 덧붙일 필요성이 생겨났던 때문은 아닐까 짐작된다.

『산해경』 「해외남경」의 주석에서, “구름 속을 비행하여 가벼이 올라 신이 되는 것을 天仙이라 하며, 또한 비선이라 일컫는다(亦雲飛仙)”⁷⁷⁾라 하여, 최고의 신선인 천선을 가벼이 날아 오른다는 의미의 비선과 동일하게 이해한 것도 그런 의도로 읽힌다.

위진시대 도교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搜神記』(4세기 동진의 간보 찬집 권 1)에서, 魏나라 濟北郡 從事 掾弦超의 꿈속에서 한 神女가 내려와 이끄기를, 자칭 천상의 玉女라 하면서 天帝의 명으로 그대에게 시집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나흘 뒤 아침 시녀를 대동하고 수레를 타고 능라 비단옷을 입은 그 신녀가 나타났는데, 고운 자태와 용모가 마치 날아다니는 비선과 같았다(狀若飛仙)⁷⁸⁾고 묘사하였다.

『위서』 「석노지」에서는 비선과 비천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위로 玉京에 처하여 神王의 종이 되었고, 아래로 紫微垣에 처하여 비선의 주인

75) 若復欲昇天者，乃可齋戒，更服一兩，便飛仙矣(『抱朴子內篇校釋』金丹 卷4, 73쪽).

76) 吾欲當爲人主，後當飛仙上天(『太平經合校』 권71, 戊部 3, 287쪽).

77) “飛行雲中，神化輕舉，以爲天仙，亦云飛仙”(『山海經校注』海經 卷1 海外南經·不死民篇, 196쪽).

78) 夢有神女來從之，自稱「天上玉女，東郡人，姓成公，字知瓊，早失父母，天帝哀其孤苦，遣令下嫁從夫」…… 一旦，顯然來遊，駕輶辮車，從八婢，服綾羅綺繡之衣，姿顏容體，狀若飛仙，自言年七十，視之如十五六女(『新校搜神記』卷1, 10쪽).

(飛仙之主)이 되었다. …… 기묘한 방술의 종류가 천만가지인데, 상급은 羽化 飛天하고, 그 다음은 消災滅禍하는 것을 칭한다”⁷⁹⁾ 하였다.

이상에서처럼 위진남북조시기를 즈음하여 비상하는 선인의 이미지인 비선상에 대한 표현과 관념이 생겨나 퍼져가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비선상들 또한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조망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고구려 벽화에 묘사된 선인상의 형태적 특징은 첫째, 옷깃의 소매 끝자락이 靈氣가 뿜어져 나오듯 날카롭게 갈라진 모습을 지녔다.

둘째, 정수리 위쪽으로 깃대 모양의 길다란 관식 곧 旗冠이 표현되는데, 仙冠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셋째, 얼굴이 가름하게 좁고, 양쪽 귀가 보통보다 길쭉하게 묘사된다는 점이다. 이른바 細形과 長耳라고 하는 형태는 이미 전한시기 장안의 長樂宮 유지에서 출토된 선인상에서부터 확인되고 있다.⁸⁰⁾ 위진남북조시대의 선인상도 이런 형태를 취하였다. 신선도교를 개척한 葛洪의 『神仙傳』에서, “노자의 신장이 8척 8촌이고, 황색의 눈썹을 가졌고, 귀가 길고, 눈이 크며, 넓은 이마에 성긴 이빨을 가졌고, 각진 입과 두터운 입술을 가졌다”⁸¹⁾고 묘사하였다. 후대 문헌들이 이 대목을 자주 답습하면서, 노자상의 長耳와 大目 등을 신선의 전형적인 풍격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양나라 상청파의 양생 도교를 연 도사 陶弘景이 신장이 7척 4촌에 얼굴이 가늘고 귀가 길었다⁸²⁾고 하여, 細形이란 특징도 신선의 풍모로 이해하는 면을 볼 수 있다.⁸³⁾

79) 道家之原，出於老子。其自言也，先天地生，以資萬類。上處玉京，爲神王之宗；下在紫微，爲飛仙之主。……至於化金銷玉，行符勅水，奇方妙術，萬等千條，上云羽化飛天，次稱消災滅禍。故好異者往往而尊事之(『위서』 「석노지」 권114 지제20, 3048쪽).

80) 林溫, 1993, 앞의 글, 35쪽.

81) 正義朱韜玉札及神仙傳云：「老子，……身長八尺八寸，黃色美眉，長耳大目，廣額疏齒，方口厚脣」(『사기』 「한비자열전·노자」 권63의 정의 주석, 2139쪽).

82) 身長七尺四寸，神儀明秀，朗目疏眉，細形長耳(『양서』 「도홍경열전」 권51, 742쪽).

83) 『납사』 「도홍경열전」에서는 「細形·長額·聳耳」라 표현하여, 가는 얼굴에 긴 이마와 높고 솟은 귀를 가졌다고 하였다. 聳耳는 長耳의 다른 표현인데, 귀가 머리보다 더 크게 솟은 모습을 말한다. 도홍경은 갈홍의 신선전을 구해 주야로 탐독하면서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비선들의 기능적 역할과 성격을 살펴보면, 덕흥리 벽화에서 천공을 유영하거나 달리는 선인 옥녀가 깃발(幢, 幡)을 잡고 있으며, 천왕지신총에서도 신조를 탄 天王이 깃발을 잡고 있다. 이런 선인의 지물로 묘사된 깃발(節)을 천제의 使者를 뜻하는 징표로 보는 해석이 있다.⁸⁴⁾ 이를 참고하자면, 고구려 벽화 속에서 持節한 인물들이 持節仙人 내지 持節使者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

깃발의 일종인 幢과 幡은 넓게 보아 節의 범주에 포함되어, 幢節 혹은 幡節이라 칭하기도 한다. 또는 절과 당과 변을 각기 구별하기도 한다. 『주례』 「지관」 掌節篇에 따르면, 신표로서의 절이 용도와 재료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절반을 갈라 합하여 확인하는 증표는 符節이 되고, 깃대에 털 장식을 붙인 것은 旌節, 깃발을 늘어뜨린 형태의 幢節과 나무끼는 방식의 幡節 등이 있다. 재료상 玉節, 竹節, 角節, 金節이 있고, 새긴 내용에 따라 虎節, 龍節이 된다.⁸⁵⁾ 그 형태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시기별로 변천이 심하기도 한다.⁸⁶⁾ 특히 대장군의 깃발로 麾幢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左靑龍幢, 右白獸幢이라 이름붙이기도 하였다.⁸⁷⁾

『한서』 「왕망열전」에서 사방의 나라들을 담당하는 五威將 편제를 위하여, 오방위에 따라 군사 배치를 하고서 각 군대의 의복거마 형식을 달리하였는데, “절을 잡은 장군을 태일의 사자(稱太一之使)라 칭하였고, 당을 잡은 장수는 오제의 사자(五帝之使)라 불렀다.⁸⁸⁾ 절과 당을 각기 구별하고서, 태일과 오제라

양생의 법에 뜻을 두었다 한다.

84) 林溫, 1993, 앞의 글.

85) 掌節掌守邦節而辨其用, 以輔王命. 守邦國者用玉節, 守都鄙者用角節. 凡邦國之使節, 山國用虎節, 土國用人節, 澤國用龍節, 皆金也. 以英蕩輔之. 門關用符節, 貨賄用璽節, 道路用旌節, 皆有期以反節. 凡通達於天下者, 必有節以傳輔之. 無節者, 有幾則不達(『周禮』 「地官」 卷9 徒徒 · 掌節篇).

86) 公석구, 2001, 「안악3호분 주인공의 節에 대하여」, 『고구려연구』 11집.

87) 『후한서』 「반초열전」 주석 및 『수서』 「예의지」 제7.

88) 凡五帥. 衣冠車服駕馬, 各如其方面色數. 將持節, 稱太一之使; 帥持幢, 稱五帝之使. 莽策命曰: 「善天之下, 迄于四表, 靡所不至.」 其東出者, 至玄菟 · 樂浪 · 高句驪 · 夫餘(『漢書』 「王莽列傳」 卷99中, 4115쪽).

는 당시 최고의 천신 이름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는 곧 持節하고 持幢한 장수들이 다름 아닌 하늘에서 내려보낸 위엄스러운 천제의 사자들임을 표방한 것이라 이를 수 있다.

의장 군사 측면만이 아니라 신선을 찾는 신하에게 절을 지녀 사신의 신표로 삼게 하였는데, 持節方士의 징표로 사용된 경우이다. 『사기』 「봉선서」에서 한무제가 동해로 순행하면서 僊人이 거주한다는 海中의 삼신산을 찾을 때, 제나라의 방사 출신인 “公孫卿이 節을 휴대하고서 항상 앞장서 명산을 점후하였다”⁸⁹⁾는 기록이 보인다. 이것은 선인과 통신할 수 있는 신표로서 지절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논형』 「도허편」의 주석 중에서, 한무제가 꿈속에서 방술에 능한 李少君과 함께 崇山을 오르는 도중에, “용을 타고 절을 지닌(乘龍持節) 어떤 使者가 구름 속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상제께서 소군을 부른다” 하였다. 그 며칠 뒤 이소군이 병사하였다고 한다.⁹⁰⁾ 여기에서 절을 갖고 용을 탄 사자의 모습은 고구려 벽화에서 흔히 보이는 승룡 비선상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천왕지신총에서 신조를 탄 천왕이 깃발을 든 모습과도 상통한다. 이 경우는 乘鳥 비선상이 된다. 하늘 상제와 소통되는 신령스런 존재임을 지절로써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깃발을 든 비선의 형상은 매우 도교적인 측면에서 도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덕흥리 벽화가 깃발을 든 인물 옆에다 “玉女持幡, 仙人持幢”이라 분명하게 목서를 남긴 것이나, 꽃쟁반을 들고 유영하는 인물을 두고서 불교적인 비천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여자 선인의 존칭인 玉女를 붙여 玉女持盤이라 이름지은 것 등은 모두 고구려 벽화에서 비천은 어디까지나 飛仙의 관점에서 묘사되었던 것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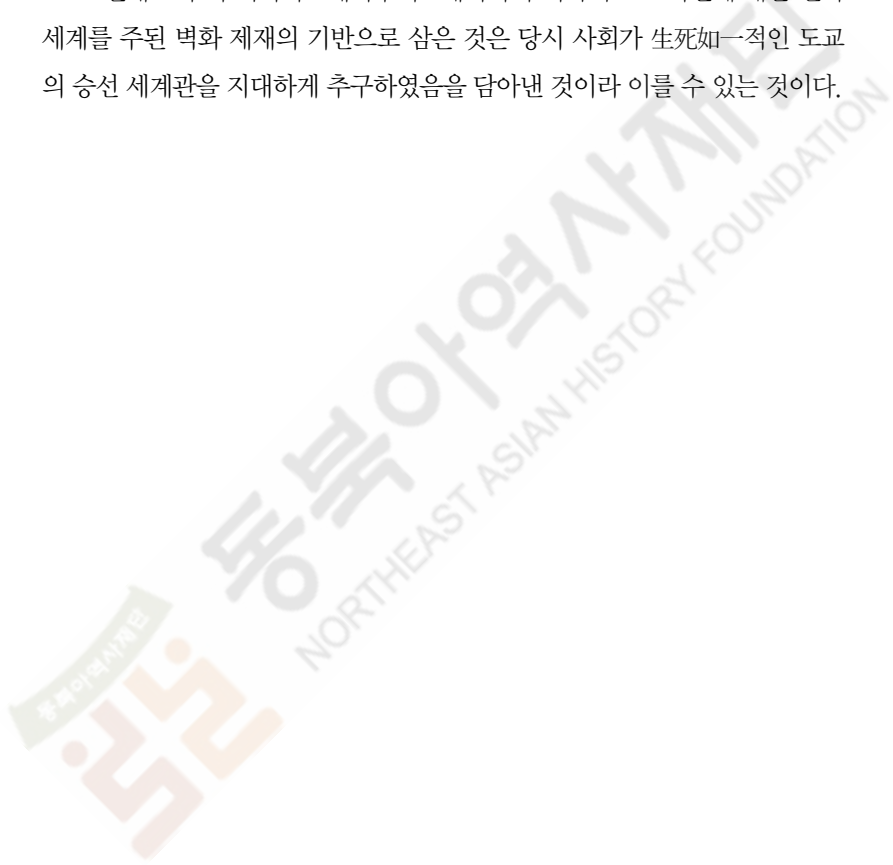
또한 집안오회분 4호, 5호묘 등에서 乘龍하거나 乘鶴 혹은 乘鳳하는 선인이 일월성수의 천공을 노니는 모습에서도 비선의 매개물로 선금서수류인 용과

89) 令言海中神山者數千人求蓬萊神人。公孫卿持節常先行候名山，至東萊，言夜見大人，長數丈，就之則不見，見其跡甚大，類禽獸云(『사기』 「봉선서」 제6, 1397쪽).

90) 漢禁中起居注：「……有使者乘龍持節，從雲中下，云上帝請少君」(『論衡校釋』 제24 道虛篇, 330쪽).

봉황과 학 등을 내세운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승천의 보조물은 불교의 비천상에서 보이지 않던 요소이다. 그리고 비천이 불보살을 찬양하는 일종의 보조적인 장식성이 짙은 제재라면, 비선은 보조적인 장치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며 대상이 되는 승선의 귀결점이라는 측면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요컨대 고구려 벽화가 4세기부터 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비선에 대한 신화 세계를 주된 벽화 제재의 기반으로 삼은 것은 당시 사회가 生死如一적인 도교의 승선 세계관을 지대하게 추구하였음을 담아낸 것이라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권, 2007, 『동양천문사상 인간의 역사』, 예문서원.
- 김일권, 2008,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사계절.
- 김일권, 2008,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윈.
- 박두포 역주, 1974, 『동명왕편 · 제왕운기』, 을유문화사.
-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 정재서 역주, 1985, 『산해경』, 민음사.
- 조선일보사, 1993, 『집안 고구려 고분벽화』.
- 진영선 외, 2005, 『고구려 벽화의 이미지 복원』, 고구려연구재단.
- 한국방송공사, 1994, 『고구려 고분벽화』.
- 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1998, 『敦煌佛爺廟西晉畫像磚墓』, 文物出版社.
- 耿鐵華, 2008, 『高句麗古墓壁畫研究』,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 羅宗真 주편, 2000, 『魏晉南北朝文化』, 上海: 學林出版社.
- 敦煌市博物館篇, 2002, 『敦煌文物』, 甘肅人民美術出版社.
- 範祥雍, 2006, 『洛陽加藍記校注』, 上海古籍.
- 孫仁杰 · 遲勇 共著, 2007, 『集安高句麗墓葬』, 香港亞洲出版社.
- 尹國有, 2003, 『高句麗壁畫研究』,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 孫希旦 撰, 1989, 『禮記集解』, 中華書局 校点本.
- 黃暉 撰, 1990, 『論衡校釋』, 北京: 中華書局 校点本.
- 공석구, 2001, 「안악3호분 주인공의 節에 대하여」, 『고구려연구』 제11집, 고구려연구회.
- 김일권, 2002, 「고구려의 황룡사상과 그 우주론적 세계관」, 서영대 · 송화섭 편, 민속원, 『용, 그 신화와 문화(한국편)』.
- 김일권, 2004, 「고구려 초기벽화시대의 신화와 昇仙적 도교사상」, 『역사민속학』 제18호, 한국역사민속학회.
- 김일권, 2006, 「高麗史 五行志 譯註(4)」, 『고려시대연구』 X,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희덕, 2000, 「고려사 오행지 역주」, 『고려시대 천문사상과 오행설 연구』, 일조각.
- 전호태, 2000,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인의 신선신앙」, 『신라문화』 제17 · 18합집.
- 정재서, 1996, 「고구려 고분벽화의 신화 · 도교적 제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백산학

보』 제46호, 백산학회.

정재서, 2003,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도교 도상의 의미」, 『고구려연구』 제16집.

南秀雄, 1995, 「高句麗古墳壁畫の圖像構成」, 『朝鮮文化研究』 第2號, 東京大學文學部
朝鮮文化研究室 紀要.

東潮, 1999, 「北朝隋唐と高句麗壁畫」,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80輯, 千葉:
國立歷史民俗博物館.

深津行徳, 1997,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서본 종교와 사상의 연구」, 『고구려연구』 제4집,
고구려연구회.

林温, 1993, 「飛天と神仙」, 『日本の美術』 第330號, 東京: 至文堂.

秋山光文, 1993, 「古代における飛天の圖像」, 『日本の美術』 330號, 東京: 至文堂.

[ABSTRACT]Analysis of Taoist and Confucian Mythic Images in
Koguryo Mural Paintings

Kim, Ilgwon

Although Koguryo mural paintings have lots of Taoist matter except for several Buddhist mural tombs, the studies in view of Taoism are rare in recent Korean studies. At this article, I have an effort to show the meaning and data about Taoist and mythic subjects from mural pain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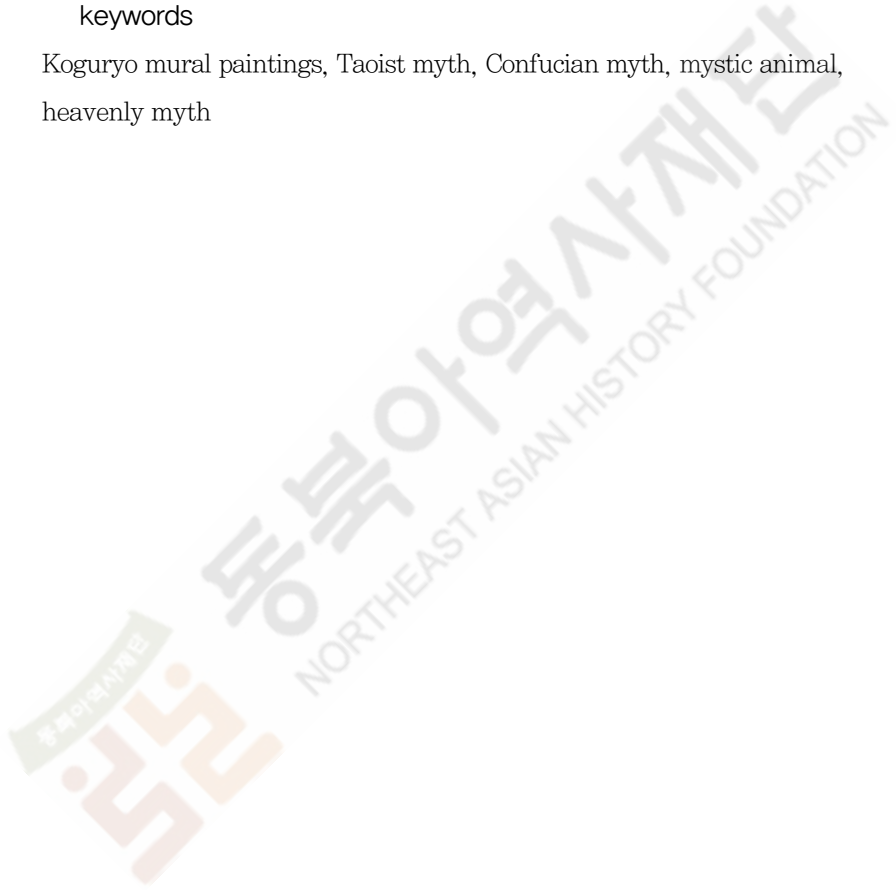
Koguryian people considered the ceiling space as a mythic sky, they represented the heavenly host stars, many mythic birds, odd animals and mystical plants, so on. I would like to say the tendency like this was placed in Taoist Bi-sun, namely flying sunnism, which is a Taoist ideal character not dying, flying on the sky.

I divide mural images into several morphological classes as follows : the god-human binding type like demigod, anomalous type transformed from actual animal, meaning mythifying type and specialized mythic characters. When I classify the mythic painting images in the view of subject or function, there are civilization deity, mythic strong man, gate guardian deity, safe-guard deity, repulsing wicked deity, medicine deity, long life deity, property and fortune deity, recital deity and mystic decoration pattern, constellation myth of four direction, and so on. Moreover, there are other Confucian mythic animals like the unicorn with virtue politics and golden drag-

on with sacred king myth. The studies above are expected to deepen the Taoist aspects about Koguryo mural paintings.

keywords

Koguryo mural paintings, Taoist myth, Confucian myth, mystic animal, heavenly myth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의 수집·보존체계

김경록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I. 머리말

조선시대 대중국관계는 사행절차, 공물의 수량, 사행로의 확정, 전달하는 외교 문서의 형식 등 각종 외교제도(조공제도)의 정비가 元代에 비하여 좀 더 법제화되면서 전형적인 朝貢關係를 형성하였다.¹⁾ 외교제도가 정밀하게 정비된다는 것은 조중관계에 일정한 규범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하며, 양국은 외교사건에 따라 국가이익을 위해 설정된 외교목적을 달성하고자 치열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국의 외교사건 분류방식, 외교인식, 외교정책의 형성과정, 외교목적의 설정, 구체적인 외교활동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조중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조선시대 대중국관계에서 발생하는 외교사건

※ 투고일 2009년 3월 30일, 심사일 2009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4일.

1) 전해중, 1970,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106쪽; H. D. Walker, 1971, "The Yi-Ming rapprochement: sino-korean foreign relations, 1392-1592,"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Ph.D., pp. 151~152.

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외교목적을 설정하고, 외교방식을 선정하며,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외교정보의 수집과 활용일 것이다. 조중관계에서 외교제도의 규범이 전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중관계는 역동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역동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선에서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것이 정확하고 많은 외교정보였다.

조선시대 대외관계에 관련한 연구성과는 상당한 결과를 쌓았다. 분야별로 사행관련 연구는 조선의 외교적인 활동의 긍정적인 노력으로 파악되어 현재까지 학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²⁾ 조중관계에 대한 학계의 광범위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외교정책 형성과 외교목적 설정에 필수적인 외교정보에 대한 개념규정과 수집, 활용에 대한 관심과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외교정보의 개념, 범주, 분류, 수집방식, 분석과 활용 등을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조선시대 조중관계의 형식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외교문서의 종류, 형식, 작성과정, 전달체계, 보존체계 등 일련의 외교문서 분석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외교문서가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³⁾ 외교문서는 조선

2) 柳承宙, 1991, 「朝鮮後期 朝·淸 貿易小考」, 『국사관논총』 301; 金九鎭, 1990, 「朝鮮前期 韓·中關係史의 試論: 朝鮮과 明의 使行과 그 性格에 대하여」, 『홍익사학』 43; 李賢淑, 1996, 「16~17世紀 朝鮮의 對中國 輸出政策에 관한 연구」, 『弘益史學』 6; 閔德基, 1996, 「寧波의 亂과 朝鮮·日本·明의 관계」, 『重山齋閔德基博士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金松姬, 1998, 「조선초기 對明外交에 대한 一研究-對明使臣과 明使臣 迎接官의 성격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55·56合集; 金順子, 1999, 「麗末鮮初 對元·對明關係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全海宗, 1996, 「韓中 朝貢關係考-韓中關係史의 鳥瞰을 위한 導論」, 『동양사학연구』 1; 李相玉, 1969, 「對明 學的交流에 대한 一考察」, 『중국학보』 10; 박원호, 1990, 「永樂年間 明과 조선간의 女眞問題」, 『아세아연구』 33; 박원호, 1992, 「宣德年間(1425~1435) 明과 조선간의 建州女眞」, 『아세아연구』 35; 洪性德, 1995, 「丁酉倭亂 以後 明日停戰協商과 朝明關係」, 『전북사학』 18; 韓明基, 1997, 「宣祖代 후반~仁祖代 초반 對明關係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金경록, 2000a, 「朝鮮初期 對明外交와 外交節次」, 『韓國史論』 44; 金경록, 2005a,

의 대중국 인식을 반영하는 징표로, 그에 대한 관리는 조선의 통치체제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 연구는 외교문서 연구의 연장선에서 시도되는 것이며, 외교문서가 가지는 외교정보로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한 국가의 대외관계는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문화 전반을 포함하는 국제관계의 변화를 외연으로 하여, 국가권력관계, 사회와 제도변화 등을 포괄하는 국내 상황을 내연으로 하는 복합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외교문서는 문서 자체 내용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생산단계를 통하여 대외정책의 형성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전달과 접수과정을 통하여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 보존체계를 통하여 대외관계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교문서에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받는 외교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공적 사행기록인 문견사건에 포함된 외교정보를 통하여 조선은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조선시대 외교정보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외교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외교문서의 성격을 살펴보고, 외교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에 따른 외교정보의 분류를 시도한다. 또한 수집된 외교정보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보고되고 분석되어 외교정책으로 활용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연구대상 시기는 조선시대를 통시대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는 외교정보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료상의 한계 때문이며, 사행이라는 외교제도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관계에서 외교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되어 국왕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 수립과정에서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수립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활용·재생산되었다. 외교정보의 대부분은 사행을 통해 수집되는데, 사행은 국왕명의로 외교문서를 매개로 시행되는 것으로 외교문서를 통하여 조선의 외교목적 전달 및 달성하였다. 또한, 사행은 사

「조선 후기 『同文彙考』의 편찬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32 ; 김경록, 2005b, 「조선 후기 사대문서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 ; 김경록, 2006a, 「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134 ; 김경록, 2007,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의 접수·보존체계」, 『한국사연구』 136.

행기간 동안 파악 및 수집된 외교정보를 聞見事件이라는 사행문서로 작성하여 승정원을 통하여 국왕에게 보고함으로써 향후 외교정책 수립에 활용하였다.

대외관계는 대내적 정치행위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을 통하여 조공체제하에서 기본적인 외교제도를 준수하며, 階序的인 조공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선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외교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함으로써 명분과 실리의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조선의 대중국 외교과정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⁴⁾

II.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환경과 외교정보의 종류

조선은 禮的 질서와 현실적인 國力을 바탕으로 중국과 조공체제를 형성하였다. 조선시대 대중국관계의 첫 대상국이었던 明은 조공관계를 각급 지방정부의 조공, 소수민족과 土官의 조공, 屬國의 조공, 기타 국가와 지역의 조공 등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는데, 外交는 內政의 외적 표현으로 명대 외교는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가 연장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⁵⁾ 결국 명대의 국제관계는 국내적인 조공의 외적 연장이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淸은 조공관계를 四夷의 朝貢國을 기준으로 東(朝鮮), 東南(琉球, 蘇祿), 南(安南, 暹羅), 西南(西洋, 緬甸, 南掌)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 국가에서 사신을 보내어 표문을 가지고 공물을 정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공체제를 통하여 청은 책봉을 시행하였다. 각 국가에서 嗣位하는 경우에는 청에 사신을 보내어 책봉을 요구하

4) 이 글은 외교정보에 대한 시론적인 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청시대의 특징적인 구분이 가능하면 명과 청을 구분하여 서술하지만, 외교정보의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 중국으로 통칭한다. 이는 이 글이 가지는 명백한 한계점으로 향후 관련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명·청의 구분을 하도록 한다.

5) 李雲泉, 2004, 『朝貢制度史論』, 新華出版社, 61쪽.

면 朝鮮, 安南, 琉球 등은 欽命 正·副使가 勅命을 받들어 出行하여 封爵하였다.⁶⁾ 즉, 명은 이전의 원대보다 치밀한 조공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청은 명대 조공관계를 계승하고, 세계제국으로서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등 좀 더 형식적인 측면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공관계의 형식적인 측면은 국제질서를 책봉국과 조공국으로 규정하고, 좀 더 엄격한 階序의 관계로 정착시켰다. 계서적인 국제질서에서 조선이 대중국 외교활동을 전개할 공간은 조공제도를 준수하는 범위로 한정되었다. 이에 간략하게 조선시대 정비된 조공제도를 살펴본다. 조공제도는 사행을 통하여 朝覲하고 貢獻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데, 사행은 대중국 사행과 대중국 사신접대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대중국 사행은 시기적으로 절행과 별행, 사행목적지에 따라 赴京使行과 遼東使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⁷⁾

현대의 외교관행에서 실무 외교관의 접촉을 통하여 일정한 의견조율이 가능하지만, 조선시대의 외교행태에서 실무 외교관 사이의 구체적인 접촉을 통한 외교적 목적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사신에게 실무교섭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臣子無外交”의 관념, 즉, 『禮記』의 “爲人臣者無外交 不敢貳君也”에서 유래하였다. 즉, 전통 동양사회에서 외교란 신하가 사신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자국의 군주에 대하여 危害한 마음을 품고, 사사로이 다른 나라 군주와 통교하는 것으로 지극히 경계하는 바였다. 이러한 인식에서 사신은 군주의 명령이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로 한정되었으며, 명·청대처럼 국가체제가 法規와 禮制로 구성된 시기에는 외교절차로 정착되었다.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형식은 사행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고, 사행원의 현실적인 외교활동이 제한되면서 조선의 외교목적을 밝히고,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모든 방식은 외교문서를 통하여 표현되고 접수되었다. 사행은 지참하는 외

6) 『大清會典』 卷56, 禮部, 主客清吏司, 賓禮.

7) 김경록, 2000a, 앞의 글, 24~27쪽. 목적지에 따른 구분에서 경사와 요동으로 구분하여 赴京使行과 赴遼東使行으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역사용어로서 부경사행은 보편적이며, 요동사행은 요동을 목적지로 한 사행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경사행과 요동사행으로 지칭한다.

교문서에 따라 사행명과 사행인원이 정해지며, 정해진 사행로를 따라 사행기간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좀 더 전형화된 외교제도는 조선의 대중국 외교정보 수집에 제한요소로 작용하였다. 제한된 외교정보 수집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은 대중국 사행을 중국의 대조선 사행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 횡수로 파견하였으며, 사신은 사행기간 중에 문견한 바를 세밀하게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대중국 외교정보는 조선이 대중국 외교사건의 발생에 따라 외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다양한 수집경로를 통하여 획득한 각종 정보이다. 외교정보를 통하여 조선은 조공국이 책봉국에 대한 외교라는 제도적 장애를 극복하고, 조선의 국가이익의 극대화라는 외교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조선시대 외교정보는 내용, 형태, 수집경로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서 정치·경제·군사·문화·사회 등의 분야별 구분과 황제·관료조직·민정 등의 계층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태에 따라서 문서·구술·서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집경로에 따른 정보의 분류는 정식 외교경로를 통하여 조선에 전달되는 정보, 중국에서 제공하지는 않지만 사행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 중국과 인접한 변경에서 채집한 정보, 표류인이나 귀화인, 교역인, 피로인, 중국에서 도망온 이들에 의한 정보, 제3국이나 세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취득된 정보, 각종 서적수입, 물품교역 등을 통해 파악된 정보 등 다양하다.

1_ 내용에 따른 분류

외교정보는 수록된 내용에 따라 분야별 분류와 계층별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분야별 분류는 정치·군사·문화(제도)·경제·사회 등으로, 계층별 분류는 외교정보의 내용상 대상자에 따라 황제·관료조직·민정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분야별 분류에서 정치는 주로 각신의 인사이동, 내란,⁸⁾ 嘉靖帝 시기의

8) 『중종실록』 권38, 중종 15년 1월 신묘. 성절사 서장관 朴紹의 문견사건에 寧王이 江

大禮議 논쟁과 같은 정쟁 등이다. 정세변화의 핵심이었던 인사이동, 권력층, 황제의 총애를 받는 인물,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인물들의 인사동향 등이 중심이었다.⁹⁾

군사는 몽고·여진·왜구 등의 침략상황, 정벌소식, 내란과 진압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중원의 군사상황은 조선의 안보에 직접 관련되므로 중시되었다. 특히 중국의 군사동향, 몽고의 중국 침입, 여진을 비롯한 요동지역의 군사동향 등은 국왕의 어람을 거쳐 의정부·병조에 하달되어 서북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등 군사정책에 반영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에 명군의 이동상황은 조선의 입장에서 최고 등급의 군사외교정보였기 때문에 사행은 필수적으로 구원군으로 파견된 명군의 이동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였다.¹⁰⁾

중국의 문화(제도)에 대한 정보는 조선의 문물제도 정비에 활용되었다. 이때 외교정보로 파악된 제도는 주로 居喪제도 등 의례관련 제도가 많았다. 복식에 관한 정보는 조공체제에서 중국의 복식규정은 조선의 복식규정에 준거사항이었다. 조선은 중국의 각종 복식규정의 변화양상에 주목하고 사행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의례관련 제도 이외에 刑罰제도 등에 관련한 자료는 조선의 형벌정책 수립에 활용되었다.¹¹⁾ 경제는 중국의 풍흉, 물품의 가격, 교역의 요구여부 등이며, 사회는 민심의 동향, 풍속, 유민의 발생여부 등이 주된 관심사였다.

계층별 분류는 조선의 최우선 관심사였던 황제관련 사항, 학문적 존경심과 부패적 폐단으로 엇갈리는 관료조직, 일반민들의 민정 등이 있다. 황제관련 정보는 조선의 대명인식과 대명정책의 결정에 중요한 자료였다. 일반적인 황제의 독서경향, 조회횟수 등도 있지만, 황제의 구체적인 언행을 파악하여 중국의

西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황제의 親征詔書가 내려지고 太監 張忠 등이 영왕을 사로잡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9) 『同文彙考』 補編, 卷1, 使臣別單1. 己丑 謝恩兼冬至行書狀官姜與載聞見事件; 『중종실록』 권53, 중종 20년 3월 계해·갑자·병인; 『명종실록』 권14, 명종 8년 2월 무진.

10) 『선조실록』 권33, 선조 25년 12월 기유.

11) 『同文彙考』 補編, 卷1, 使臣別單1. 丁未 冬至行書狀官李世翊聞見事件; 『중종실록』 권47, 중종 18년 4월 임신.

정세를 전망하였다.¹²⁾ 명대 황제의 향락적인 언행에 대해 자세히 파악한 조선은 당시 권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조선의 외교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황제의 교체는 조중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국왕의 큰 관심과 사행의 적극적 정보수집이 이루어졌다. 특히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여 私親을 宗統으로 삼는 경우에는 이것이 전례가 됨으로 인하여 조선에서 역대 장자계승이 아닌 사례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국왕과 지배층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다. 가정제의 대례의가 조선에서 의례적·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던 점은 이를 반영한다. 황제관련 정보의 경우, 조선 사신들의 눈에 비친 모습뿐만 아니라 중국 관원이나 중국인의 평가와 인식이 여과없이 수집되었다.¹³⁾ 황제에 대한 비판적인 사실을 문견사건이나 서계에 수록하였다가 문서가 중국에 노출되어 외교사건이 발생할 것에 대해 주의하기도 하였다. 조선의 문서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경우는 명대에는 요동도사를 통해 유출되는 일이 많았으며, 청대에는 친청세력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계하여 명중대에는 문서에 남기지 말고, 인견할 때 구두로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¹⁴⁾

황제관련 정보는 명·청의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명대 황제 정보는 대체적으로 황제의 정치적 무관심, 전횡, 탐욕 등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청대 황제 정보는 정치적 과단성과 근면함, 각종 정책의 추진성 등 긍정적인 내용이 많다. 이는 조명관계에서 조선의 사대인식과 대명인식을 구분하여 중화에 대

12)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1월 무인;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2월 을묘. 중종대 聖節使 李繼孟은 중종에게 황제의 향락적 행위, 조회 횡수, 황제에 대한 대신의 規諫여부 등 정덕제의 동향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였다.

13) 『중종실록』 권53, 중종 20년 3월 계해; 『중종실록』 권91, 중종 34년 8월 경오. 진하사의 서장관 鄭熊이 제출한 문견사건에 따르면, 書籍商 吳明이 大禮議에 관련된 가정제와 席書·桂萼·張璠·方獻夫, 閣老 毛琦·蔣冕, 예부상서 王俊, 이부상서 喬宙, 左侍郎 王偉 등에 대한 평가는 당대 중국인의 인식을 반영한다.

14) 『명종실록』 권22, 명종 12년 5월 을묘. 승문원에서 문견사건과 先來通事의 書啓가 유출될 위험을 보고하고 구두 보고하도록 건의하여 명종의 윤치를 받았다.

한 사대관계를 인정하지만 무능한 명의 모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반청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강희, 옹정, 건륭으로 이어지는 황제의 적극적인 활동과 능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¹⁵⁾

관료조직의 경우, 내각 대학사를 비롯한 학문적 존경심을 표시하는 정보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 목격담을 외교정보에 기록하였다. 특히 사행도중에 접하는 중국 관원의 부패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 보고하였다. 사행의 수레, 각종 패문의 발급, 물품의 검수, 금지물품의 규찰 등을 명분으로 중국 관원이 요구하는 각종 뇌물은 실제 사행의 큰 어려움이었다. 사행과정에서 접할 수밖에 없는 중국 관원의 탐학정도를 기록함으로써 향후 사행에 대비하고자 하였다.¹⁶⁾

2. 형태에 따른 분류

형태에 따른 분류는 문서, 구두보고, 서책 등이며, 가장 높은 신뢰도와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문서였다. 외교정보를 포함한 문서는 중국에서 조선에 보내는 외교문서, 문견사건과 같은 사행기록, 변방의 관원이 보고하는 장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외교문서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조선에 전달하는 정보이며, 외교사건의 전개과정, 중국의 외교목적, 요구조건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외교정보로서 가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향후 외교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식적인 증거자료로 남는다는 점, 중국의 대조선 정책의 형성 과정과 외교목적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가장 고급 수준의 정보였다.

조선에서 외교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 가운데 우선되는 바는 중국의 외교

15) 『同文彙考』 補編, 卷1~6, 使臣別單1~6. 순치제와 강희 초반까지는 황제관련 부정적인 모습이 보고되지만, 강희 13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각종 정책을 명민하게 추진하는 모습으로 부각되고, 특히 옹정 이후 건륭제는 조선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방하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16) 『중종실록』 권97, 중종 36년 12월 기묘; 『同文彙考』 補編, 卷1, 使臣別單1. 己卯 冬至行書狀官李元鎭聞見事件; 卷4, 使臣別單4. 癸卯 別遣譯官劉再昌金廈門等手本.

적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외교문서에는 중국의 외교적 의도, 외교정책 형성과정, 외교적 요구조건, 외교문제 등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외교문서, 변경의 정보수집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건사건등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특히 몽고·여진족 관련사항에서 외교문서는 공식적인 사항만 수록하여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행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정리한 문건사건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보고였다.¹⁷⁾

문서를 통한 외교정보 이외에 사행노정에서 접하는 중국의 관원과 민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다소 신뢰성이 낮지만, 사회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구술형태의 외교정보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단점 때문에 조선의 외교정책 결정에 확인작업이 필요하였다. 기타 조선의 문물정비와 지식획득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서책형태의 외교정보였다. 학문적 필요성과 의례 등에서 활용도가 높았던 외교정보이다.

3_ 수집경로에 따른 분류

수집경로에 따른 정보는 외교문서를 통한 정보, 중국에서 제공하지는 않지만 사행을 통하여 조선의 외교적 노력으로 수집한 정보, 중국과 인접한 변경에서 지방관이 채집한 정보, 표류인이나 귀화인, 교역인, 피로인, 중국에서 도망온 이들을 통한 정보, 제3국이나 세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취득된 정보, 각종 서적 수입, 물품교역 등을 통해 파악된 정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이 글에서 다루는 사행중심의 외교정보 수집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사행에서 인솔하여 귀국한 표류민은 다양한 외교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송환된 표류민을 통하여 풍속, 의복제도, 날씨, 학문, 國俗, 刑杖, 농사, 喪制, 貨幣, 婚姻, 山川, 왕궁 등 일본이

17) 『중종실록』 권98, 중종 37년 4월 기미, 몽고의 일족인 黃眼獐子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승문원은 진향사의 문건사건을 통해 “황안달자가 石州 등에 침입하여 어지럽혔다”라는 정보와 “吉囊獐子 28만 명이 忻州 등지에 들어와 노략질하였다”는 정보를 분석하여 같은 종족으로 판단하였다.

나 유구의 정보가 수집되기도 하였다.¹⁸⁾

또한 북경은 여러 국가에서 조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몽고, 여진, 일본, 유구, 안남 등지의 다양한 정보가 모이는 곳이다. 이곳에서 다른 국가의 사행과 접촉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국제정세의 판단과 조선의 외교정책 수립에 필수정보였다. 조선의 표류민이 유구에 도착하였다는 정보, 여진족이 조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에 건의한 정보, 왜구가 창궐하여 이를 토벌한다는 정보, 안남국의 정변이 발생하여 명의 토벌군이 준비 중이라는 정보, 강남출신 한인들의 청에 대한 정보, 여러 나라의 청에 대한 조공현황, 新墟에 대한 정보 등은 조선이 국제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외교정보였다.¹⁹⁾

먼저, 중국과 인접한 변경에서 채집한 정보는 변경의 戰況이나 세력 간 충돌, 정세변동사항 등 군사정보의 성격이 강하며, 지방수령이나 군사지휘관의 주도로 채집되어 중앙에 보고되었다. 둘째, 표류인이나 귀화인, 교역인, 피로인 등 중국에서 현지의 정세와 상황을 경험하고 이를 조선에 전달한 정보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확인되고 문견한 바를 채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표류인이나 피로인은 기본적으로 문견한 바가 매우 한정되고 조선 정부에 대해 중국으로 송환이나 억류 등의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대 포장되거나 잘못 알고 있던 정보를 검증 없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였다. 셋째, 일본이나 여진족과 같은 제3국이나 세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취득된 정보는 해당 세력의 정치·경제적 목적에 따라 왜곡된 정보가 상당한 수준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신뢰성에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넷째, 각종 서적수집이나 물품교역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정보의 신속성이라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분류된 외교정보 가운데 조선의 최대 관심사항은 내용상으로 정치, 계층별로 황제관련, 전달 경로상으로 외교문서에 해당하는 정보였다. 전통시

18) 『명종실록』 권3, 명종 1년 2월 무자.

19) 『중종실록』 권102, 중종 39년 2월 병술; 『同文彙考』 補編, 卷5, 使臣別單5. 庚辰 冬至行正使洪啓禧副使趙榮進別單; 卷6, 使臣別單6. 壬辰 冬至行正使順義君烜副使尹東昇別單; 補續, 使臣別單. 甲戌 冬至兼謝恩行書狀官李鐘穆聞見事件.

대 황제 중심의 국정운영체제는 황제를 중심으로 한 황실관련 사항의 중요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외교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데, 황제 명의로 발급되어 조선에 전달되는 문서는 등급이나 내용에서 가장 중시되었다.²⁰⁾ 기타 주된 내용은 황실관련 내용, 군사이동, 전쟁, 화포와 軍器의 운반 등 변방의 군사상황, 회동관에서 중국 관원과의 접촉을 통해 수집한 각종 정보, 중국 학자와의 학술논쟁, 여진족·몽고족의 동향, 중국의 정세동향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²¹⁾

Ⅲ. 대중국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의 수집활동

중국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으로 제공되는 외교정보는 외교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외교문서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외교정책 수립과정과 각 아문별 입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중국의 외교목적은 볼 수 있다. 이외에 사행이 수집한 정보 가운데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공식적인 사행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외교문서의 종합이라고 할 『同文彙考』에 수록된 사신별단은 정식 외교문서는 아니지만, 공식적인 사행기록으로 가치를 가진다. 사신별단은 정·부사의 별단, 서장관의 문견사건, 재자관·수역의 수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술방식에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에 제출되었던 공식

20) 『연려실기술』 별편, 권5, 사대전고, 皇朝喪事. 세종은 영락제의 승하 소식에 27일 동안 상복을 입고자 하였는데, 柳廷顯을 비롯한 신료는 홍무제의 遺詔를 내세워 3일간 입도록 주장하였던 사례가 있다.

21) 『중종실록』 권91, 중종 34년 8월 무자;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1월 무술. 부경사 행하는 동안 부사와 서장관이 동시에 죽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進賀使 李攄는 황제가 湖廣에 蔣皇后를 장사지내기 위하여 거동하여 興獻帝와 合葬하려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요동에서 중국인이 陣法을 연습하는 것을 宣傳官 李元祐, 權知承文院副正字 元虎變으로 하여금 살펴보고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였다.

사행기록은 이후 개별 사행원이 문집에 정리하는 사적 사행기록의 저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승정원에 기록제출의 의무가 없었던 사행원들은 좀 더 자유로운 형태의 사행기록을 문집에 남겼다.²²⁾

이러한 외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사행노정과 외교문서 행이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행노정과 외교문서 행이체계는 國內단계, 遼東단계, 北京단계로 구분된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외교문서를 전달하였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절차상 일반 행정문서 즉, 공문으로 인식하였다. 외교문서의 전달은 拜表단계부터 復命단계로 마무리되는데, 세부적으로 국내·요동·북경 등 권역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문서 생산절차와는 달리 전달절차는 明·淸의 시대적 특징이 두드러진다.²³⁾

요동단계에서 사행이 수집하는 외교정보는 공식적인 명대 요동도사, 청대 성경에서 접하는 중국의 공문, 중국 관원의 구두사항 등이다. 기타 비공식적으로 사행원이 접하는 일반인들의 동향과 소문 등이다. 이에 비하여 보다 많은 양과 신뢰성이 높은 정보는 북경단계에서 수집하였다. 이 때문에 사행은 북경에 체류하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다양한 소식을 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회동관의 관원이나 西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일반 문관들을 통해서 접하지는 못하였다.²⁴⁾ 북경에서 사행의 외교활동과 정보수집은 회동관이란 객관의 범주로 인하여 많은 제약이 있었다. 회동관 출입에 관련된 시대적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대 초기에는 사행의 회동관 출입에 일정한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가정 초년에 통사 金利錫이 書肆에서 ‘大明一統志’를 구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명의 엄격한 제약이 실시되었다. 김이석이 대명일통지를 구입한 사실을 인지한 예부 주객사낭중 孫存仁이 외국인이 구입할 수 없는 서책을 구입하였다고 지적하고 조선 사행의 회동관 출입을 엄금하였다.²⁵⁾

22) 김경록, 2006b, 「朝鮮時代 使行과 使行記錄」, 『한국문화』 38, 217~219쪽.

23) 김경록, 2006a, 앞의 글, 62~68쪽.

24)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1월 무인.

25) 『연려실기술』 별집 권5, 事大典故, 使臣.

회동관의 출입문제는 사행의 외교활동과 정보수집에 큰 제약이었다. 1534년(중종 29)에 사신으로 북경에 간 蘇世讓이 예부에 公文하여 이전처럼 출입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자, 예부상서 夏言이 황제에게 아뢰어 5일에 한 차례 사신과 서장관 등이 회동관을 벗어나 북경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지만, 종인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 賀至使 鄭士龍이 예부에 咨문을 보내어 舊例에 따라 회동관 출입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요구하여 허락한다는 성지를 받았지만, 예부낭중과 주사를 비롯한 관원들은 조선 사행의 출입에 제한을 두고자 하였다. 명 관료의 출입제한 경향은 지속되어 사행이 公事로 회동관을 출입할 때도 반드시 票帖이 있어야 가능하였다. 1547년(명종 2) 奏聞使 宋純도 예부에 정문을 제출하여 출입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여 허락을 얻었지만, 提督主事 復巖이 무분별한 출입의 폐단을 명분으로 회동관 담장에 가시로 된 침을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기도 하였다.²⁶⁾ 1556년(명종 11) 聖節使 尹釜가 귀국 후 명종에게 보고한 禮部 主客講吏司 提督主事 餘田의 帖文에 따르면 매매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 物貨의 출입은 稟議해야 가능하지만, 조선 사행원은 사리에 급급하여 館夫와 부정한 방법으로 銀物을 수수하는 등 사적으로 교역하다가 발각되어 사신의 체면을 손상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대체로 명대 예부는 조선 사행의 요청으로 부득이 출입을 허락하면서 내심 사행의 회동관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예부의 엄금 경향성은 사행의 무분별한 매매행위, 상역을 중심으로 한 금물의 구매 등이 실질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 金鑣가 『寒臯觀外史』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행이 자초한 측면도 있었다.²⁸⁾

명대의 북경에서 다양한 정보의 수집은 회동관을 벗어나 공식적인 활동이 가능하였던 통사의 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통사는 각종 외교문서와 사행문서를 전달하고, 해당 중국 문서를 접수하였으며, 회동관을 벗어나 담당 중

26) 『청세조실록』 권42, 순치 6년 정월 계해.

27) 『명종실록』 권21, 명종 11년 11월 병진.

28) 『寒臯觀外史』 卷1, “終有防禁之心 非但中廟時異世殊 亦由本國之人有以自取 可歎也已.”

국 관원을 만나 실무 외교교섭을 전개하였다.

한편, 조청관계에서 청의 대조선 정책의 변화과정은 사행의 정보수집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청은 1637년(인조 15) 삼전도에서 조선의 항복을 받은 뒤 入關 이전까지 고압적인 자세로 조선의 반청세력을 감시하고, 군사적인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후 순치제는 1645년(인조 23) 매년 네 차례의 사행을 동지사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외교적인 사안에 따라 파견되는 사행은 필요에 파견하도록 하였다.²⁹⁾

1649년(인조 27) 순치제는 조선 사행에 대한 특별한 조령을 발표하였다. 기존에 정사·부사·서장관을 모두 갖춘 사행에서 정사와 부사는 1명만 갖추어도 된다는 내용으로, 조선 사신으로 차정되는 대신이 노령에 먼 길을 오는 수고를 덜어준다는 이유였다.³⁰⁾ 구체적인 순치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선의 입장에서 사행의 형식적인 완화였기 때문에 사행파견에 따르는 부담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었다.

사행횟수나 형식보다 더 외교활동과 정보수집에 밀접히 관련된 것은 북경의 회동관 門禁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대는 대체로 문금이 엄하여 조명관계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지만, 청대는 문금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청의 입관 이전은 소현세자의 심양관 생활에서 알 수 있듯이 엄격한 감시와 문금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입관 이후 강희제가 등장하면서 문금은 점차 해제되어 강희 말년 이후에는 문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문금의 해제경향은 조청관계의 안정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1678년(숙종 4)에 발생한 오삼계를 주축으로 한 삼번의 난에 조선이 반청적인 외교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청의 입장에서 삼번의 난은 강희제 시기 최대의 국난으로 인식하고, 만주족에 반하는 여러 세력의 준동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이 당시 전혀 반청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강희제는 조선의 외교정책에 대해 신뢰를 보이며, 회동관의 조선관을 개조하여 左右廚

29) 張存武, 1987, 「清代中國對朝鮮文化的影向」,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灣商務印書館, 15~27쪽.

30) 『청세조실록』 권42, 순치 6년 정월 계해.

房에서 供饋하도록 하고, 조선 사신을 우대하였다.³¹⁾ 조선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는 회동관 문금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이어져 조선 사행은 명대와 달리 북경에서 행동의 제약이 거의 없이 활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로운 북경에서의 활동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사적 사행기록(연행록) 대부분에서 확인된다.

사행이 파악하는 외교정보 가운데 중국의 禁制로 인하여 수집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마찰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궁각 등과 같은 무기체계에 관련한 사항은 중국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엄금하였기 때문에 조선은 군사적 목적에서 필요한 궁각 등을 구입 내지 유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많은 경우, 이러한 중국의 엄금사항과 충돌되어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면 조선은 적극적인 변무활동을 통하여 관계악화를 방지하고자 하였다.³²⁾

사행기록에 수록된 외교정보는 좀 더 현실적인 상황분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행원이 가지는 대중국 인식과 당시 조공책봉체제의 구조적인 면을 보여준다. 조선은 대중국관계에서 조공책봉체제라는 한계에 대해 많은 현실과 명분 사이의 괴리로 인해 갈등구조를 가진다. 이는 시대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명·청대의 차이는 더욱 분명하지만, 명대에도 이념적 사대의 대상과 현실적으로 부패한 모습을 보이는 명나라는 조선 사행기록에 극명하게 나타난다. 조선시대 사행기록은 중화주의적인 화이관에 입각하여 대명·대청인식에 차이점을 보인다. 대명인식의 경우, 전통적인 중화주의를 표방한 것에 대해 일정하게 동의하면서도, 전제군주적인 성향으로 전개되는 점, 명의 행정통치체계에서 발생하는 부패상, 양명학으로 전환되어 흐르는 사상적 흐름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대청인식의 경우, 이민족으로 군림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청나라의 선진문물

31) 『숙종실록』 권7, 숙종 4년 3월 정축.

32) 『성종실록』 권75, 성종 8년 1월 병진. 성절사행이 매매금지된 궁각을 매입하여 귀국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궁각 매입을 도와준 伴送使 金智가 錦衣衛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황제가 여진족과 몽고족에 유출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무마시켜 더 이상 외교사건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궁각과 같은 금지물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나라 관원을 통하여 처리하였으며, 관련 정보가 여진족과 몽고족에 누출되는 것을 명나라에서 경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에 대한 동경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사행기록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사행기록에서 대청인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발견된다는 점은 조선의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연암이나 담헌의 사행기록에는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稅政의 문란과 관리의 부패문제 등 청나라 內政의 문란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현실성 없는 북벌에 대한 비판의식에 기반하였다. 이러한 공식적인 사행기록뿐만 아니라 사적 사행기록(연행록)을 통해 사행이 북경을 비롯한 중국에서 어떠한 정보 수집 활동을 전개하였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관원을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행은 주로 통사들을 통하여 중국의 행정문서를 傳寫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행정문서는 조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문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세 변화에 관련된 문서, 황제의 동정에 관련된 문서, 군국에 관련된 문서, 반란이나 국제정세에 관련한 문서, 각종 제도변화와 예제에 관련한 문서 등 매우 유용한 자료였다. 이들 문서를 수집하고 전사하는 임무는 행동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었던 通事가 전적으로 수행하였다.³³⁾

외교정보 수집의 큰 영역 중 하나는 중국 문서의 필사였다. 중국 문서는 공문을 의미하며, 중국의 각종 정책결정과 의사결정 과정이 고스란히 포함된 것이기에 이를 필사하여 조정에 보고함으로써 조선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주로 필사한 문서는 칙서·조서 등 황제 문서와 육부의 각종 자문·조회 등 행정문서, 관원들의 상소·題本 등 상달문서, 通考司의 朝報 등 공식문서, 通報·奇別 등 군사용 공문 등 다양하였다.³⁴⁾

33) 김경록, 2000b, 「조선초기 통사의 활동과 위상변화」, 『한국학보』 101, 60~67쪽. 태종대 賀正使 金萬壽가 복명하자 通事 宋成立이 行在所의 兵部衙付를 傳寫하였고, 황제의 조서가 반포되기 전에 초본을 입수하여 이를 필사하기도 하였으며, 중종대에는 巡按山東監察御史의 奏本과 등극조서 등을 謄書하여 보고하였다.

34)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9월 무진; 『명종실록』 권22, 명종 12년 4월 임인; 『同文彙考』 補編, 卷1, 使臣別單1. 甲寅 進賀兼冬至行書狀官洪萬鍾聞見事件. 몽고의 공마가 상품이 아니라는 朝報를 조선 사신이 필사하여 문견사건으로 보고하여 향후 명에 보내는 공마에 대한 정책이 반영하였으며, 왜구에 대한 명 관원이 올린 題

IV. 대중국 외교정보의 보고절차와 보존체계

사행의 대중국 외교정보의 보고절차는 ‘수시보고’와 ‘復命 후 보고’로 구분할 수 있다. 수시보고는 사행과정에서 수집한 정보가 긴급하게 국왕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형식은 장계나 서계 형식으로 선례통사를 통하여 보고되었다. 복명 후 보고는 귀환 후 국왕을 알현하며 올리는 보고로 聞見事件과 구두로 보고하였다.

사행은 사행과정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수시로 狀啓와 書狀으로 국왕에게 보고하였는데, 실록을 비롯한 자료에서 ‘馳啓, 書狀, 狀啓’ 등의 용어로 기재되어 있다. 장계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선례통사를 선발하여 조선에 보내어 보고하는 것으로 긴급사안(시간의 촉박함), 중요사안, 중국 사신의 출래 등이다.

① 시간의 촉박함은 주로 중국 사신이 출래하는 것에 관련되거나 중국에서 급한 사건이 발생하여 조선에 알리는 것으로 聖節使의 先來通事 金利錫이 사행도중 비로 인하여 북경에 도착하는 날짜를 맞추기 어려웠던 사정과 예부에서 내년부터 미리 성절사의 출발기일을 정하도록 언급한 사실을 보고한 사례 등이 있다.³⁵⁾

② 중요사안은 주로 황실에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다. 중국 정세나 상황의 급변은 필수적으로 조선에 보고되어야 하는데, 가정제의 등극초기에 있었던 다음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본다.³⁶⁾ 명의 정덕제가 죽고 가정제가 등극

本을 문견사건으로 파악한 뒤 명에 陳奏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奇別은 하행문의 일종으로 특정사실에 대해 해당 관원이나 관부에 통보하는 문서로 임명·차송 등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중종대 賀登極使 李惟清이 조선에 파견되는 登極頒詔使의 임명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한 문서가 기별이며, 조선 사신은 기별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통사를 보내어 관원에게 거듭 확인을 받는다. 청대 조선 사신은 문견사건에 각종 청 공문을 필사하여 관련 자료로 제시하였다.

35) 『중종실록』 권55, 중종 20년 10월 을묘.

36) 『중종실록』 권43, 중종 16년 10월 병술.

하자 조선에 등극사실을 통보하는 등극사가 파견되게 되었다. 조선은 황제의 교체라는 점에서 대명관계에 중요사안으로 인식하고 이미 사행 중에 있던 사은사를 통하여 명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사은사는 遼陽(요동도사)에 도착하여 太皇太后와 中宮의 책봉여부를 요동의 大人 甯寶에게 물어 책봉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후 북경에 도착하여 다시 탐문하여 황제가 殯宮에 있고 나이가 16세로 어려 중궁을 책봉하기 어렵다는 정보를 얻었다.

명 황실의 태황태후와 중궁책봉이 중요한 점은 중종대 조명관계에서 새로운 황제에 대한 조선의 외교적 입장 때문이었다. 종계문제, 국경문제, 수우각 수입문제, 사망한 정덕제가 파견한 명사의 횡포와 요구 등 여러 가지 외교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가정제에 조선의 우호적인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으며, 시기에 맞는 사행과 방물을 통해 이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황제에게 하등극사를 파견하면 의례적으로 황후에 대한 방물이 동반되는데, 황후가 책봉되었는가는 외교절차상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사행과 방물진헌을 위한 책봉여부 확인은 사은사가 귀국하는 길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하등극사도 요동에 도착하여 다방면으로 탐문하였다. 종합된 정보는 아직 책봉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났지만, 조선 사신은 요동과 북경의 거리상 차이를 고려하여 태황태후의 방물을 모두 정문에 기록하여 요동도사에 전달하고, 북경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방물의 진헌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행이 요동도사에 정문할 때, 태후의 방문을 정문한 것을 요동도사에서 북경의 예부에 주문으로 보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행의 입장에서 태후의 방물을 가져왔다고 요동도사에 신고하고, 북경에 도착하여 방물을 태후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예부는 아직 책봉이 되지 않은 태후에게 방물을 진헌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명분으로 방물의 진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 사행의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된 것이다. 결국 조선 사행은 통정사를 통하여 정문을 제출하여 正德帝의 中宮이 비록 현재 位號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으레 책봉될 것이므로 방물을 封進함이 禮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③ 중국 사신의 출래는 신속하게 보고되어야 조선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이 확보되므로 출래예상 시기와 사신의 신상정보는 상세히 파악되어 보고되었다.³⁷⁾ 이는 조중관계에서 사행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신접대에 관련된 사항으로 조선의 준비와 중국의 외교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였기 때문이다. 사신은 누구이고, 언제 출발하며 조선에 언제 도착할 예정인가는 사행의 필수 보고사항이었다.³⁸⁾ 정덕제와 가정제의 교체기간 중 사행은 등극을 반포하는 조사의 출래에 관련한 사항을 세세히 파악하고자 친분이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였다. 당시 사은사는 통사를 시켜 친분이 있던 唐阜에게 문의하여 대항황제의 발인을 한 뒤에 칙서를 받아 출발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어 발인날짜, 安葬날짜, 祔廟날짜 등을 감안하여 부모 이후 출발할 것이라고 조선에 보고하였다.

선례통사의 보고내용은 중국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관련사항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행은 사행과정에서 접하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행활동과 외교활동을 결정하였으며, 명확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복잡하고 엄격한 중국의 문서행정체계에서 원활한 사행활동과 외교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비단 조선에 보고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사행에 관련된 활동도 사행이 수집하는 외교정보에 큰 영향을 받았다. 사행의 수시보고는 선례통사

37) 『同文彙考』 補編, 卷9, 詔勅錄: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9월 무진; 『명종실록』 권23, 명종 12년 10월 을유. 賀登極使 李惟清이 북경에서 登極頒詔使 임명 여부를 파악하고, 翰林院修撰 唐阜를 正使로, 兵科給事中 史道를 副使로 삼고, 하사품은 국왕에게 紵絲表裏 10벌과 粧花絨錦 4段, 왕비에게 저사포리 6벌과 장화용금 2단을 내려주고, 9월 12일에 勅命을 받아 20일 전에 출발할 것이라고 狀啓로 보고하였다. 장계에 唐阜는 文學이 있고 갑술년의 과거에 장원한 자이며, 史道는 정축년 과거의 進士出身이라는 사항까지 포함하였다. 명종대 奏請使 趙士秀는 사행목적이었던 종계문제에 관련한 외교활동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명 관원과의 접촉과정뿐만 아니라 예부에 제출한 公文, 예부의 回咨, 膽書한 『회전』의 小單 등을 모두 수록하여 보고하였다. 청대 파견되어 오는 사신에 대해 사신규모, 북경 출발일자, 지참문서 등 자세한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同文彙考』 조직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38) 『通文館志』 卷4, 事大下, 勅使行, 牌文. 패문에는 사신의 관직, 성명, 지참한 문서, 公幹(公務·慶賀·冊封·查審·傳詔·弔祭 등), 발행일시 등이 명시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는 『同文彙考』 補編, 卷9, 詔勅錄에 명시되어 있다.

를 통하여 의주부사에게 전달되면, 의주부사가 평안도관찰사에게 전달하고, 평안도관찰사가 승정원에 보고하여 국왕이 최종 접수하였다.³⁹⁾

사행과정에서 보고하는 장계와 달리 사행이 종료된 시점에서 국왕에게 수집된 각종 외교정보를 종합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聞見事件이다. 일명, ‘聞見單子, 聞見別單, 手本’ 등으로 불리는 문견사건은 서장관이 종합하여 제출하였다. 서장관이 보고하는 문견사건은 승정원을 통하여 국왕에게 전달되고, 국왕의 批答이나 啓下 형식으로 담당 관원에게 다시 내려져 외교정책에 반영되었다.⁴⁰⁾

문견사건은 사행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외교정보를 총정리한 것으로 복명 이후 국왕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문견사건의 내용 이외에 황제의 동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회동관 출입문제, 황제가 주재하는 제사의식, 서책교역, 인삼교역, 행정문서체계 등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국왕 알현시 구두 보고내용은 문견사건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⁴¹⁾ 이처럼 문견사건은 사행의 외교활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보고되었다. 선조 사후에 광해군의 즉위는 종법상 문제로 인하여 명의 책봉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외교현안이었다. 이에 앞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 순서였다. 조선은 주청사 이정구를 파견하여 세자책봉의 封典을 획득하고자 노력하였다. 주청사뿐만 아니라 유사한 시기에 파견된 모든 사행은 사행명과는 상관없이 봉전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성절사의 서장관으로 부경하였던 閔德男의 문견사건을 통해 조선 사행의 봉전획득을 위한 외교활동을 정리해 본다.

먼저 북경의 옥하관에 도착한 성절사행은 上通事 李善吉과 押物官 宋禮修

39)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7월 을묘. 중종대 중국 조정에서 명사의 귀국을 재촉하는 일로 요동에 移咨하여 문서가 금명간 조선에 전달될 것이라는 陳慰使·進香使의 書狀을 義州牧使 李芾가 접수하고, 이를 평안도관찰사에게 公牒으로 보고하자 관찰사 柳暉年는 狀啓로 이를 승정원에 보고하였다.

40) 김경록, 2006b, 앞의 글, 217~219쪽.

41) 『일성록』 순조 8년 3월 20일(병진). 순조대에 동지사행에서 돌아온 사신 일행을 소견한 자리에서 순조가 사행 중 별도로 들은 것이 있는가 하고 질문하자 부사 임한호가 서장관의 문견별단 이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아뢴 사실에서 확인된다.

등으로 하여금 表文, 方物, 貢馬를 예부에 押領하였다. 이때 儀制司 郎中 蔡獻臣이 조선에서 왜 臨海君을 세우지 않고 光海君을 세웠는가를 묻자 이선길과 송예수는 임해군의 狂暴과 광해군의 仁孝 때문에 민심이 광해군에게 있어 세자로 삼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당시 북경에 체류하고 있던 奏請使 李廷龜, 千秋使 韓壽民, 聖節使 安克孝 등은 聯名으로 예부에 呈文하여 1593년부터 1603년까지 네 번에 걸쳐 봉전을 주청하였던 전례를 열거하고, 임진왜란시 구원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후사를 책봉하여 조선의 안위를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사행의 주장에 대해 예부는 장자상속의 원칙이 만고의 常經이고 天朝의 家法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였다.⁴²⁾

공적 사행기록의 내용과 사행이 복명한 뒤 계달하는 내용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승정원에 제출하여 어람을 거치는 공적 사행기록에는 사행절목에 따른 구체적이고 소상한 내용이 수록되었지만, 국왕을 알현하는 자리에서는 다소 소략하거나 중요 사안을 위주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사행기록이 더 많은 외교정보를 포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종이 사은사 李師純의 문견사건을 보고 통사 김자안이 계달하지 못한 사항을 찾아 거듭 확인하고 상세한 보고를 강조하였던 사례, 성종이 천추사행의 서장관 房玉精이 제출한 문견사건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방옥정을 추국하도록 한 사례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⁴³⁾

문견사건은 書啓형식으로 6~7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규례였다. 사신이 국왕을 알현하고 구두로 문견한 바를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문견사건을 제출하지 않으면 서장관을 推考하였다.⁴⁴⁾ 또한, 사행기간에 작성된 문견사건은 차후에 일체의 개작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사행기간 중 문견된 바를 정확하게

42) 『선조실록』 권181, 선조 37년 11월 을사.

43) 『문종실록』 권5, 문종 1년 1월 갑진; 『성종실록』 권285, 성종 24년 12월 경오; 『선조실록』 권63, 선조 28년 5월 계유. 명나라 載禮部郎中이 통사 김자안에게 조선의 지성스러운 사대에 대해 황제가 특별히 賞賜를 더하여 내렸다고 말하였던 사실을 김자안이 계달하지 않자, 문견사건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였던 사건이다.

44)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6월 8일(병술); 15년 6월 15일(임자); 『인조실록』 권35, 인조 15년 6월 무술.

보고해야 한다는 점과 귀국 후 정치적 의도에서 이를 개작하여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⁴⁵⁾

이러한 문건사건은 단순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문원에서 『聞見事件膽錄』으로 정리하여 향후 외교분쟁에 증빙자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에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였다.⁴⁶⁾ 청의 압력이 강하였던 인조 후반에 사행의 문건사건에 쓰여진 ‘胡’자 하나도 다시 고쳐 적었던 사례처럼 문건사건은 공적 사행기록으로 등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내용이나 字號에 신중을 기하였다.⁴⁷⁾ 이처럼 외교활동 전반과 각종 외교정보가 정리된 문건사건에 대한 국왕의 신뢰는 매우 높았다. 이는 공적 사행기록의 신뢰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선조는 문건사건과 다르게 구두로 보고하였던 上通事를 추국시킨 일도 있었다.⁴⁸⁾

중국에서 외교정보가 수집되면 이를 분석하고,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었다. 일례로 명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도망한 군사들을 추쇄하려 한다는 정보를 수집한 조선은 各道에 移文하여 遼東에서 도망하여 온 軍人을 推刷하였다. 이는 명사의 출래 이전에 이들을 돌려보냄으로써 외교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선의 노력이었다. 각도에 이문된 10일 만에 조선은 刑曹典書 陳義貴로 하여금 漫散軍 林八刺失里를 압령하여 遼東으로 보냈다. 漫散軍을 推刷하기 위해 출래하였던 명사를 林畔站에서 만난 陳義貴는 만산군을 인

45)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25일(을축).

46) 『중종실록』 권97, 중종 37년 3월 병오;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3월 을미. 명 康壽皇太后 초상 때 天壽山으로 발인한 이를 뒤에 조선의 진위사와 진향사가 도착한 사례, 莊肅皇后 봉서 때 진위사와 진향사가 梓宮이 入山, 安葬되고 禱廟되어 几筵마저 철수한 뒤에 도착한 사례 등을 『문건사건등록』에서 확인하고 해당 사행의 발행일자를 앞당기도록 건의하였다. 명종대 동지사의 서장관 김억령이 聞見事件을 올리자 명종은 좌찬성 홍섬으로 하여금 검토하여 대처하도록 하였다. 健儲에 대한 雲南主事 海瑞의 題本을 수록한 문건사건을 검토하여 詔使의 출래에 앞서 영접 업무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되자 홍섬은 사직소를 올렸다.

47)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3월 11일(임자).

48) 『선조실록』 권163, 선조 36년 6월 신묘.

도하고, 명사가 조선에 들어올 명분을 제거하였다.⁴⁹⁾ 주로 외교정보는 정치·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명의 대여진 정책과 여진의 정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경에서 여진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국경지방관이 보고한 군사정보와 함께 활용되었다.

조선은 주로 사행을 통해 수집·분석된 외교정보를 등록형식으로 정리하여 보존하였다. 이는 신뢰도 높은 외교정보를 수록한 외교문서와 동일하게 문견사건을 공적 사행기행으로서 ‘資考據’의 목적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聞見事件謄錄』을 외교문서집이었던 『승문원등록』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본다면 보존방식은 謄錄형식으로 작성함으로써 열람에 편리를 도모하고, 여러 부를 간행하여 여러 관아에서 참고할 수 있었으며, 안전하게 영구보존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은 건국 이후 외교관련 각종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존함으로써 외교분쟁 발생시 외교정책과 외교활동의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보존체계는 15~16세기의 『吏文』, 『槐院謄錄』과 17~19세기의 『同文彙考』, 『同文考略』 등으로 지속되었다. 외교문서는 자국의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조선시대 사대문서는 현대적인 개념의 외교문서와는 조공체제라는 국가관계하에서 차이가 있다. 외교문서의 격식에 조공체제에서 규정되는 평등하지 못한 관계 설정이 전제되어야 했으며, 책봉국에서 제시하는 문서규식에 일방적으로 조공국은 따라야 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조선은 외교문서를 당시의 국제관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조선의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외교문서 관리체계를 통하여 다양한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전거를 마련하였으며, 효과적인 대외정책을 수립하였다.

점차 조선은 대외관계의 전범이라고 할 외교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외교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대청 외교문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과 영·정조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출판사업, 청의 대조선 정책의 유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조선의 대청관

49)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2월 임술·임신·무인.

계에서 직사접대 기록의 정리, 사대문서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을 개선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同文彙考』가 편찬되었다. 정조대 편찬된 종합외교문서집인 『同文彙考』 補編의 외교사안에 ‘使臣別單’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 후기에 들어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의 보존체계가 일원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 조중관계에서 외교사안이 발생하면 외교목적이 정해지고, 외교목적에 따라 외교문서가 작성되고,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사행명이 정해지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구분한다면, 『同文彙考』에서 제시된 외교문서의 구분방식은 외교활동의 구분방식이자 외교정보의 구분방식이라 할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행과 사신접대를 포함한 외교활동이 대중국관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구분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V. 맺음말

외교문서의 연구는 구체적인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찬반입장은 대외관계사 연구의 폭을 확대시킬 것이다. 또한 외교사안을 파악하여 외교 당사자 양국의 요구사항과 절충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상대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모호한 개념으로 개인문집에 기록된 대외인식이 아닌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중국·일본에 대한 인식은 외교문서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의식상의 문제와 달리 현실 정치외교적으로 조선의 대외정책은 또한 외교문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외교문서의 형식과 종류, 판독의 제약은 자칫 조선과 중국, 조선과 일본의 외교정책을 잘못 이해하는 오류를 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 국경문제의 경우, 犯越과 疆界 사안으로 조선과 청 사이에 다양한 외교문

서가 교환되었으며, 치열한 외교활동이 전개되었다. 청대의 경우, 국경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鳳凰城主가 가장 직접적인 지방관으로 현황에 대한 보고와 의견 개진이 있고, 이를 盛京章京과 盛京禮部·兵部·戶部の 다양한 입장이 충돌 및 조율되어 북경의 예부·병부·호부로 전달되고, 이를 종합하여 내각을 통하여 황제에게 보고된다. 이에 대한 재조사와 지시사항이 하달되면, 다시 보고와 의견개진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황제가 결정하여 사안이 처리된다. 이에 조선의 지방 관원이 평안감사에게 보고를 하고, 이를 狀啓로 의정부에 올리면 의정부의 논의과정을 거쳐 국왕에게 전달된다. 국왕의 재조사와 청에 주장할 의견조율 지시가 내려지면 재보고와 의견개진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이 외교문서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다. 명확한 외교문서 판독능력이 없다면 자칫 중간단계에서 나온 의견이 조선이나 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 이해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외교문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급속한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인하여 대외관계의 밀접한 연관성은 오늘날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우호협력관계의 진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역사왜곡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한중관계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 가고 있다. 기록문화의 전통으로 인하여 조선시대의 외교문서는 『吏文』, 『槐院謄錄』, 『同文彙考』로 정리되어 세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교문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왕조실록을 비롯한 연대기자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구체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이해하여 향후 대외관계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정치, 군사, 문화, 사상, 사회사 연구에 기초적인 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으로 기존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소홀하였던 조선시대 대외관계사 분야의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에 대한 시론적인 정리를 하였다. 외교활동에 대한 국내 정치·사상적 입장의 차이는 외교활동의 복잡성으로 표출되었으며, 국왕을 비롯한 정치세력은 외교사안을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외교가 내치의 외적 표현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 글을 통하여 조선시대의 대외관계를 분석하는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개념

의 새로운 도입을 기대한다. 대외관계를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외교사건의 발생에서 해결 및 외교정책 시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단편적인 사건을 통하여 통시대적 이해기준으로 확대해석하는 학술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조중관계의 근본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에 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외교문서 자체에 대한 연구를 기반하므로 향후 대외관계사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외교문서 판독·이해의 기반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로 조선시대 무역과 경제문제, 영토문제 등에 집중되었던 한중관계사의 관심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조선시대 대외관계사의 장기 지속적인 현안을 파악함으로써 한중관계사의 기본성격과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으로 각종 외교정보를 포함한 외교문서를 명확히 분석함으로써 외교사안의 시대별 정리와 성격파악을 통하여 중국의 역사왜곡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조선시대 외교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가 朝中關係의 실제 외교절차와 상호 대외정책 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는 조선의 대외인식, 특히 대중국 인식과 정책을 파악하는 단서가 될 것이며, 조공체제의 국제관계에서 조선이 국가존립과 국가운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사료〉

『광해군일기』, 『국역 담헌서』, 『국역 열하일기』, 『同文彙考』, 『명종실록』, 『선조실록』,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燃藜室記述』, 『月沙集』, 『인조실록』, 『일성록』, 『典律通補』, 『중종실록』, 『태종실록』, 『通文館志』, 『稗官雜記』, 『寒臯觀外史』, 『大明會典』, 『大清會典』, 『명선종실록』, 『명태조실록』, 『명태종실록』, 『명효종실록』, 『청세조실록』, 『淸會典事例』.

〈국내논저〉

- 권선홍, 2004,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김경록, 2000a, 「朝鮮初期 對明外交와 外交節次」, 『韓國史論』 44.
- 김경록, 2000b, 「조선초기 통사의 활동과 위상변화」, 『한국학보』 101.
- 김경록, 2004, 「조선시대 사신접대와 영접도감」, 『한국학보』 117.
- 김경록, 2005a, 「조선후기 『同文彙考』의 편찬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32.
- 김경록, 2005b, 「조선후기 사대문서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
- 김경록, 2006, 「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134.
- 김경록, 2007a,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의 접수·보존체계」, 『한국사연구』 136.
- 김경록, 2007b, 「中宗反正이후 承襲外交와 朝明關係」, 『韓國文化』 40.
- 金九鎭, 1990, 「朝鮮 前期 韓·中關係史의 試論: 朝鮮과 明의 使行과 그 性格에 대하여」, 『홍익사학』 43.
- 金松姬, 1998, 「조선초기 對明外交에 대한 一研究-對明使臣과 明使臣 迎接官의 성격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55·56合集.
- 金順子, 1999, 「麗末鮮初 對元·對明關係 研究」,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김재문, 1992, 「조선왕조의 법전상의 고문서와 한국법연구」, 『정신문화연구』 15권 1호.
- 김한규, 1982, 『고대 중국적 세계질서 연구』, 일조각.
-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 김현영, 1993, 「조선시대 실록의 편찬과 정부기록의 보존」, 『기록보존』 6.
- 南權熙, 1986, 「架閣庫考」, 『서지학연구』 1, 서지학회.
- 柳承宙, 1991, 「朝鮮後期 朝·淸 貿易小考」, 『국사관논총』 30.
- 李相玉, 1969, 「對明 學的交流에 대한 一考察」, 『중국학보』 10.

- 李賢淑, 1996, 「16~17世紀 朝鮮의 對中國 輸出政策에 관한 연구」, 『弘益史學』 6.
- 閔德基, 1996, 「寧波의 亂과 朝鮮·日本·明의 관계」, 『重山鄭德基博士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 박원호, 1990, 「永樂年間 明과 조선간의 女眞問題」, 『아세아연구』 33.
- 박원호, 1992, 「宣德年間(1425~1435) 明과 조선간의 建州女眞」, 『아세아연구』 35.
- 朴仁洙, 1997, 「華夷之辨과 중국민족주의」, 『퇴계학논총』 3집.
- 박준호, 2003, 「‘홍무예제’와 조선 초기 공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22.
- 박준호, 2003, 「公文書 行移體制와 着名·署押」, 『청계사학』 18.
- 박충석·유근호, 1980, 『조선조의 정치사상』, 평화출판사.
- 신석호, 1959, 「조선왕조 개국 당시의 대명관계」, 『국사상의 제문제』 1집, 국사편찬위원회.
- 이선홍, 2005,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규, 1993, 「明·淸史書의 朝鮮 ‘曲筆’과 朝鮮의 ‘辨誣」, 『五松이공범교수정년기념 동양사논총』, 지식산업사.
- 이성규, 1995,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정문길 외 엮음,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이춘식, 1998, 『중화사상』, 교보문고.
- 全海宗, 1966, 「韓中 朝貢關係考-韓中關係史의 鳥瞰을 위한 導論」, 『동양사학연구』 1.
- 전해중, 1977,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 全海宗, 1978, 「解說」, 『同文彙考』 국사편찬위원회.
- 주취란, 1978, 「朝·明 朝貢 關係에 關한 研究-조선王朝 建國 初期를 中心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승희, 1987, 「한국 고문서에 대하여-조선시대 공문서를 중심으로」, 『기록보존』 창간호.
- 최승희, 1999,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 韓明基, 1997, 「宣祖代 후반~仁祖代 초반 對明關係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명기, 2002, 「17, 8세기 韓中關係와 仁祖反正-조선후기의 ‘仁祖反正 辨誣’ 문제」, 『한국사학보』 13.
- 洪性德, 1995, 「丁酉倭亂 以後 明日停戰協商과 朝明關係」, 『전북사학』 18.

〈외국논저〉

- 高明士, 1983, 「從天下秩序看古代的南韓關係」, 『中韓關係史論文集』,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 徐杰舜·韋日科 編, 1992, 『中國民族政策史鑑』, 廣西人民出版社.
- 孫書磊, 2005, 「明代公文制度述略」, 『南京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 王曾才, 1972, 「中國對西方外交制度的反應」, 『清季外交史論集』, 臺灣商務印書館.
- 張士尊, 2002, 「明代遼東都司軍政管理體制及其變遷」,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5.
- 張士尊, 2004, 「清代盛京移民與二元行政管理體制的變遷」,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4.
- 張存武, 1987, 「清代中國對朝鮮文化的景向」,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灣商務印書館.
- 陳連開, 1994, 『中國民族研究初探』, 知識出版社.
- 陳潮, 1996, 「傳統的華夷國際秩序與中韓宗藩關係」, 『韓國研究論叢』第2集,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
- 何芳川, 1998, 「華夷秩序論」,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6期.
- 邢義田, 1981, 『天下一家：中國人的天下觀』, 劉岱.
- 那波利貞, 1936, 「中華思想」, 岩波講座『東洋思潮』, 岩波書店.
- 原田環, 1997, 「清と朝鮮に從屬關係について」, 『朝鮮の開國と近代化』, 溪水社.
- 糟谷憲一, 1992, 「近代的外交體制的創出—朝鮮の場合を中心に」, 『アジアのなか日本史Ⅱ：外交と戦争』, 東京大學出版會.

[ABSTRACT]

The diplomatic documents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diplomatic information Gather-Storage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Kim, Kyungrok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in traditional East Asia was based on a Tribute system (朝貢體制). Relations with China were carried out in the form of sahaeng (使行) being sent to China and of receive China envoys (使臣接待) coming to Joseon. The development of an issue, setting diplomatic goals, granting a name of sahaeng, and deciding the right time and size comprised the procedures of sahaeng.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diplomatic documents proceeded step by step in production, delivery, reception, and custody. They were classified the Joseon and the China document in first stage of reception. On the subject of production, the state document was classified as the institutional and personal things in the era of Ch'ing and Ming.

The collection activity of the diplomatic information was related closely to the activity of the diplomacy which is the important with the transmit of the diplomacy document. A diplomacy document's to reflect the diplomacy policy with the politics situation of China was confidence of a diplomatic information is high.

Especially, as the governing system of China, was strictly based on documentation, the justification of sahaeng for delivering documents of the Joseon Dynasty King was emphasized, while individual diplo-

matic activities of sahaeng's members were restricted. Due to such restriction, Tongsa (通事), based on language ability, acted as practical diplomats. While the diplomatic role of Tongsa increased, messengers and other staffs had enough time to experience various cultures during the period of sahaeng, and kept these accounts for the sahaeng record (使行記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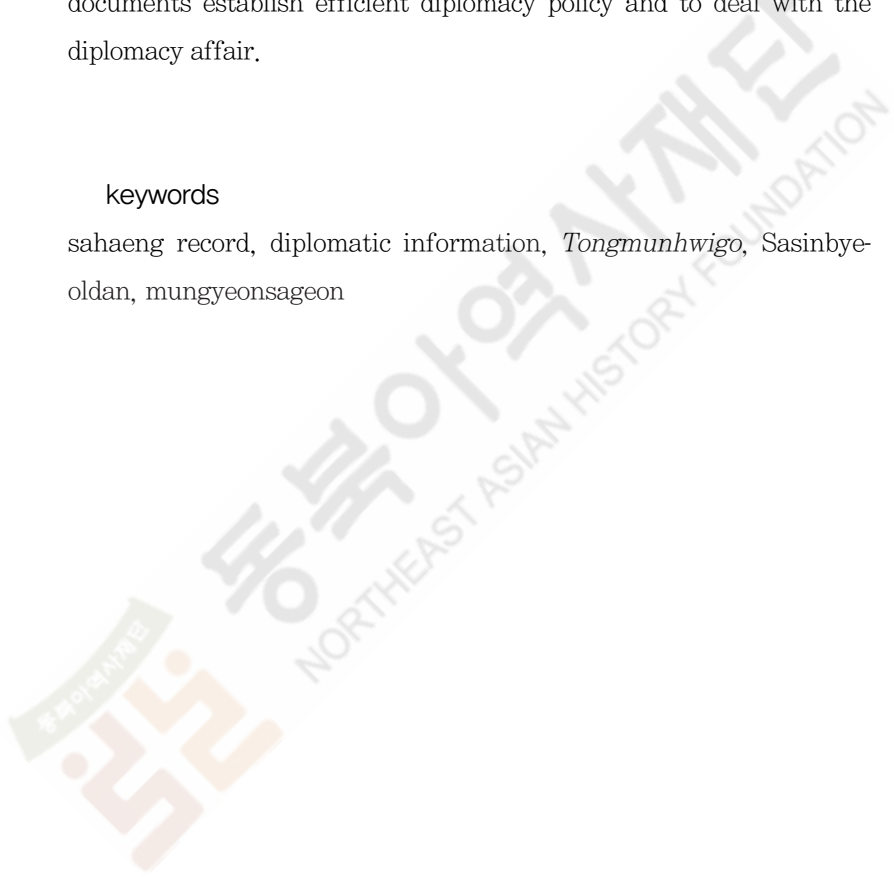
Although Sasinbyeoldan (使臣別單), which is recorded in the diplomatic documentation of Joseon's *Tongmunhwigo* (『同文彙考』). Sasinbyeoldan consisted of the byeoldan of sasin, the mungyeonsageon (聞見事件) of seojangkwan, and the subon (手本) of yeogkwan (譯官), and was not restricted to any method of description. The official sahaeng record submitted to sengjeongwon (承政院) formed the bases for private sahaeng records that were arranged by individual sahaeng's members, and the sahaeng's members, who did not have the responsibility to submit records to seungjeongwon, left sahaeng records in collections more freely. The service that receive, store and preserve the diplomatic documents hold a key post in Joseon, unlike other state documents. It was important that these documents had a democratic gravity to China. Also, They reflect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foreign policy to China.

The document issuance procedures of china was the reception of Joseon. A prompt report was most important in the reception procedures. In order to this purpose, the role of Sunrhyetongsa (先來通事) was emphasized. The preservation was a form of registration, since it was impossible that all documents were preserved. A few forms were organized, such as *imun* (『吏文』) in the early of Joseon, *Seungmunwon deungnok* (『承文院瞻錄』) in the 15~16th century, and *Tongmunhwigo* (『同文彙考』) in the late of Joseon. While these documents were the original

copy, they have historical importance in terms of summarizing the foreign affairs. The storage of diplomatic documents made full use of the foreign affairs, a diplomatic information and policy. Joseon collected a diplomatic information and compiled a collection of diplomatic documents establish efficient diplomacy policy and to deal with the diplomacy affair.

keywords

sahaeng record, diplomatic information, *Tongmunhwigo*, Sasinbyeoldan, mungyeonsageon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위안부'의 정체성

- 여자 군속의 종군간호부와 비교 연구 -

신영숙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20세기는 전쟁의 세기라고도 한다. 특히 일제의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일본은 물론 식민지 사회 전체를 국가 총력전체제로 돌입하게 만들었다. 1934년 일본 육군성은 “전쟁은 창조의 아버지, 문명의 어머니”라고 공언하며¹⁾ 국민 총동원 체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 이후 1945년 패전까지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으로 동원된 피해자와 전시 사망자, 부상자 등 전쟁의 피해는 실로 말할 수 없이 컸다.

일제 전쟁시기 여성 동원은 대체로 여자 정신대와 '위안부'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때 동원된 여성은 종군간호부는 물론, 군대의 식사와 빨래 등을 하는 잡역부도 적지 않았는데, 이들은 이른바 여자 군속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 투고일 2009년 3월 30일, 심사일 2009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4일.

1) 陸軍省, 1934, 『國防の本義とその強化』, 近代女性文化史研究會, 2001, 『戦争と女性雑誌 1931年~1945年』, 東京: ドメス出版, 2쪽[中嶋邦, 『戦争と女性雑誌: 一九三一年~一九四五年』によせて 재인용].

이들 여성은 자신들이 군속 신분인지조차 모른 채 일방적인 ‘노력 봉사’라는 미명으로 노동을 착취당하였을 뿐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일제강점하강제 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동위’로 약칭함)가 신고받은 여자 군속이 50여 명이란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이 글에서는 전쟁과 여성 문제, 특히 일제의 총력전 체제 속에서 군 ‘위안부’의 정체성을 여자 군속인 중군간호부의 실체와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여성사의 연구 시각으로 군 ‘위안부’ 피해자의 정체성을 논할 때, 당시의 중군간호부 여성과 비교·검토함으로써 같은 전쟁 여성 피해의 성격이 좀 더 선명해질 뿐 아니라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에도 일정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글의 내용과 구성은 첫째, 여자 군속에 대해 알아본 후 군속으로서의 중군간호부를 먼저 살펴본다. 둘째, 중군간호부의 동원과 전장에서의 생활실태, 셋째, ‘간호부’란 미명으로 동원된 후 ‘위안부’가 된 여성, 또는 실제 간호부 생활을 한 ‘위안부’ 피해 여성, 명부상에 간호부 또는 傭人으로 기록된 여자 군속(‘위안부’) 등을 추적하여, 군 ‘위안부’의 군속 신분 여부를 가늠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둔다. 무엇보다 군 ‘위안부’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상과 그 성격을 밝히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동시에 현재 한국 여성사학계에서 거의 전무한 여자 군속, 중군간호부의 연구가 이후 진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한 자료로는 첫째, 『매일신보』 등 당시 신문, 여성잡지와 기타 잡지, 루스[留守]²⁾명부 등 군 관계 자료가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성과물뿐만 아니라 일본의 戰史나 ‘위안부’ 증언집, 당시 중군간호부와 군인 등의 관련 증언, 수기 등이다. 특히 1990년대 전후 일본에서 나온 여자 군속, 중군간호부의 수기 등 이미 나온 증언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강동위’에 접수, 처리된 여자 군속 등 전시 여성 피해 내용의 자료들이다. 이상의

2) 루스(るす)란 留守의 일본어 표기로 “부재중 집을 지키거나 지키는 사람, 육군 본대가 아닌 외지의 근무”를 뜻함. 주 138 참조.

문서자료 이외에 필요한 경우,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을 다시 확인·보충하였다. 또한 최근 일본의 하야시 히로후미 교수가 발견한 영국 공문서 자료도 군속 '위안부'라는 사실을 검증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위안부'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의 미비 탓으로, 여전히 군속으로서의 '위안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가 앞으로의 심화 연구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II. 여자 군속의 동원 실태

여자 군속을 알기 위해 먼저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박경식은 강제동원에 대해 일찍이 제일 조선인을 주목하고 자료 발굴, 해석에 초석을 놓은 바 있다.³⁾ 정혜경의 연구와 다수의 강제연행 관련서들은 본 연구를 위한 기본서들로 참고할 바가 크다.⁴⁾ 또한 강동위가 펴낸 수기와 증언집 등은 본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2008년의 군속 구술집, 『조선이라는 우리나라가 있었구나』,⁵⁾ 태국 포로수용소 포로감시원 등 4명의 군속 수기집, 『남방기행』 등은 군속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 외에도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외, 강정숙, 우쓰미 아이코[内海愛子] 등의 연구에서 군속의 개념, 동원 총수, 동원 배경, 지역, 기간 등에 대해 다양하고도 구

3) 박경식, 2008, 『조선인강제연행의 기록』, 고즈윈.

4) 김영달, 2003, 『조선인 강제연행의 연구』, 明石書店; 조총련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편저, 『조선인강제연행조사의 기록』(관동편 등); 정혜경, 2003, 『일제말기 조선인강제연행의 역사-사료 연구』, 경인문화사; 정혜경, 2006,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I: 일본편』, 선인 등.

5) 일본, 중국, 동남아의 15명의 구술 중에서 김갑천, 「오지게 배가 고파서 머리가 쑹쑹 빠지고」, 249~276, 279~281쪽, 해제 등에서 일제하 조선인 군속과 군무원의 성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체적인 설명을 접할 수 있다.⁶⁾ 군 '위안부' 관련 연구는 그 동원 배경이나 생활 실태 등에 대해서 이미 나름대로 많이 되어 있어 여기서는 간단히 후술할 것이다.⁷⁾

1_ 여자 군속 동원정책과 배경

군속이란 군대 구성원을 말하며, 육해군에 복무하는 군인 이외의 사람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군속은 준군인으로 군사법제하에서 군무에 복무하는 점에서는 군인과 다르지 않으나 전쟁의 주인공은 군인이다. 군속이 군에 종속되는 신분이지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군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군속 신분은 문관 안에 보통 교관, 기술관, 법관, 감옥관, 통역관, 간호부, 사정관, 경부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屬, 촉탁원, 雇員 및 용인(수위, 간호부, 소사, 급사, 마부, 소방부 등)도 군속에 포함되어, 이들은 육해군의 요구에 따라 작전지에서 노동한다. 따라서 선박운항에 종사하는 선원도 신분상 육군 또는 해군 군속이며, 비행장설영대원(토목작업원), 여성 타이피스트, 조리사, 이발사, 야전우편국 직원 등의 군속도 있다.⁸⁾

중군간호부를 포함하여, 군병원에서 일하는 기록계 여성 등도 당연히 군속

6) 山田昭次·古庄正·口雄一, 2005, 『朝鮮人勞動動員』, 岩波書店; 강정숙, 2005, 「일제 말기 조선인 군속 동원-오키나와로의 연행자를 중심으로」, 수선사학회, 『사림』 제23호; 内海愛子, 2007, 「強制連行に關する歴史認識と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 『한일민족문제연구』 12호; 김명환, 2008, 「1943-1944년 팔라우 지역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 『한일문제연구』 14호; 윤종일·김은식, 2007, 「태평양전쟁 말기 마샬군도의 일본군 현황과 조선인 군속의 실태-밀리섬 조선인 학살 사건을 중심으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김도형, 2006, 「태평양전쟁기 격전지와 조선인 희생자에 관한 연구-뉴기니아지역을 중심으로」, 강동위; 남경희, 2005, 「1930-40년대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한인의 이주와 강제연행」, 국민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등.

7) 예컨대 吉田裕·松野誠也 編集·解説, 2001, 『15年戦争期 軍紀·風紀關係資料』, 東京: 現代史料出版.

8) 일본 육해군 사전에 따라 정리된 강동위의 군속 규정. 百懶孝, 1990, 『事典 昭和戦前期の日本: 制度と實態』, 吉川弘文館, 265쪽 참고.

이다. 준군속의 경우 노무원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이는 전쟁이 격화될수록 인력수급면에서 애매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⁹⁾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군속의 강제동원은 그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1939년 9월~1942년 1월의 모집, 1942년 2월~1944년 8월 관알선, 1944년 9월~1945년 8월 징용 등 시기 별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동원체제의 변화 과정을 '계획동원'에서 '임시동원'으로, '정예군비'에서 '대중군비'로¹⁰⁾ 그 특성을 설명하면서, 일본 육군의 공급원이 영세 경영의 多勞農業이란 점이 강조된 바 있다.¹¹⁾

〈표 1〉 1944년 말 산업과 병력 동원 비율

	일본	미국	소련	독일	영국
군수산업	39	35	35		
민수산업	21	48	32		
농업	48	17	23(33?)		
생산연령 인구 대비 병력동원	11	15	24	32	19

* 출처 : 동원개사, 11쪽에서 인용(단위 %).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하 일본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과 생산구조의 특수성이 병력 동원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함으로써, 군속 동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전시총동원체제로의 변화는 장기전에 따른 생산체제와 병력체제 병행으로 필연적인 것이었다.

9) 정혜경, 2003, 앞의 책 ; 정혜경, 2006, 앞의 책 등 참조.

10) 大江志乃夫 編·監修(解説), 1988, 『支那事變大東亞戰爭間 動員概史』, 東京 : 不二出版(『十五年戰爭極秘資料集』 第9集. 이하 '동원개사'로 표기함). 1946년 여름에 쓰여진 이 자료의 저자는 참모본부의 편제동원과 동원반 소속 참모로 추정되며, 특히 역사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편찬 동기도 밝히고 있다.

11) 大江志乃夫 編·監修(解説), 1988, 위의 책, 38~45쪽.

한편 준병력동원인 군속에 대한 연구에서는 1940년 11월 ‘해군징용공원규칙’, ‘해군공원징용실시요령’, ‘해군공원징용잡업에 관한 건’ 등을 통해 1942년 1월 공원 모집 등 대다수가 해군설영대에 편제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다.¹²⁾ 또한 뉴기니아에 처음 1,700여 명의 한인 군노무자들이 해군 군속이라는 명목으로 파송되었고, 초기의 한인들은 비전투원으로 강제 동원되었다.¹³⁾

1943년 6월 고원은 만 18~60세, 용인은 만 14~60세로 군속의 연령제한이 있었다. 그 안에서 급사는 만 12~20세, 從僕은 만 14~25세, 전화수는 만 14~55세, 理事生(해난사고 심판 등에 관계하는 사무직) 및 기공사 등은 만 15세~65세이다. 해군 군속에 여성들도 포함되었는데, 신체건강하고, 특수 기능을 가진 자는 소속 장관의 인허를 받아 사용 가능하였다.¹⁴⁾ 결국 전쟁 말기 인력 동원은 12~60세의 남녀 모두가 대상이었으며,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 군에 동원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여성 동원¹⁵⁾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군대 내 현역병 비율이 낮은 데서 불가피했다. 즉 1945년 초 일본의 생산연령인구의 동원 병력 비율은 11%로 다른 참전국 독일 31%, 소련 24%, 미국 15%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일본에서는 생산연령인구의 71%가 전시 노동력으로 동원되었다.¹⁶⁾ 이 같은 애로를 돌파하기 위한 중요 정책이 바로 여성 동원이었다. 처음에는 미혼 여성으로 제한하기도 하였지만, 이미 ‘여성의 병역면제’라는 메이지헌법에 따라 여성 군속 동원은 종전 때까지 계속된다.¹⁷⁾

이는 당시 국민의 평준화를 촉진하는 내셔널리즘과 함께 ‘남성은 전선, 여성은 총후’라는 경계선을 절대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여성다운 전시 공헌’을

12) 윤종일·김은식, 2007, 앞의 글, 5~8쪽.

13) 김도형, 2006, 앞의 글, 7쪽.

14) 강동위 군속 해설 자료 참고.

15) 吉田裕, 2005, 「日本陸軍과 女性兵士」, 早川紀代 編, 『軍國の女たち』, 吉川弘文館, 112~113쪽.

16) 이에 비해 독일 53%, 미국 60%, 소련 61%, 영국 66%이다. 吉田裕, 2005, 위의 글, 113쪽.

17) 吉田裕, 2005, 앞의 글, 114~116쪽.

칭찬하며 젠더의 역학관계가 중시된 것이다. 이 같은 보편적 젠더 인식은 일본에서 좀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¹⁸⁾ 즉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군사를 후원하는 여성은 '전장을 운택하게 하는 恤兵品', '출정에 용기를 주는 여성' 등 조국어로 상징되었으며, 전장의 군대에 대해 기대와 애정의 증거를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었다. 약한 여성을 국가와 함께 보호하는 것은 남성이고, 이에 '싸우는 남성의 치어리더는 여성'이란 것이 공약화된 것이다.¹⁹⁾

더 나아가 일본은 전쟁 말기 여성 병사 도입까지 검토하지만, 실현은 보지 못한다. 군 상층부는 가족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에 대한 우려로 적극 반대했고, 그 외에도 일본 국민 관습상의 문제 또는 여자 능력에 대한 입장 등에 따라 간호부와 약간의 방공통신대, 그리고 후방근무부대에 여성을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²⁰⁾ 1945년 6월에 공포된 의용병역법에는 17~40세 여성을 의용병으로 복무키로 하였다. 그래도 야스쿠니신사에 5만 7,000여 명의 여성이 합사되었고, 그 대부분은 대동아전쟁의 중군간호부, 군속, 학도동원 등으로 나간 여성 사망자들이었다.²¹⁾

2_ 여자 군속의 실상과 조선인 여자 군속

총력전체제 아래 여성 동원은 일상화되었고, 중군간호부 등 병원 외에 육군병기창, 조병창 등에서 일하는 여자 군속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육군피복본창에서 모집한 여성 근로자의 자격은 만 15세 이상 30세 미만이고, 미혼의 지조 견고한 애국여성인데, 신문광고가 나가자 응모자가 쇄도했다.²²⁾ 또한 1943년 병기창의

18) 佐佐木陽子, 2001, 『總力戰과 女性兵士』, 靑弓社, 27~28쪽.

19) 若桑みどり, 1995, 『戦争がつくる 女性像』, 筑摩書房; 吉田裕, 2005, 앞의 글, 115~116쪽.

20) 동월개사, 12쪽.

21) 吉田裕, 2005, 앞의 글, 117쪽.

22) 기간 1년, 영속 근무 가, 군속 대우, 육군공제조합(의료) 가입, 기숙사·식당 완비, 구매회 등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早川紀代 編, 2005, 『軍國の女にち』, 吉川弘文館, 133쪽.

사무원은, 여자 을종의 경우 중등 졸 이상 또는 경험자로 17세 이상 만 30세까지, 월수 45엔 정도로 다수의 여자를 모집하였는데, 기혼 여성도 포함되었다.

전시 여성은 아마토 나데시코[大和撫子, 일본 여성의 美稱]라는 미명 아래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여성이 될 것, 정신근로에 돌입할 것 등이 강요되었다. 또한 '야스쿠니의 모, 군국의 모' 등으로 불리며, 젠더의 경계가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고, 성별 분업의 재편은 가속화되어 갔다.²³⁾ 이 같은 상황에서 조선인 여자 군속의 동원 실상은 어떠했을까. 강동위에 신고된 여자 군속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강동위의 통계는 진행 중에서 오는 약간의 오차가 있으나, 여기서는 다만 신고 내용에 주목한다.

〈표 2〉 위원회의 여성 피해신고자

항목	인원 수	비고
총 신고 여성	1,730	남자도 다수 있음
여자 군인?	19	군속 등을 군인으로 신고
군속	47	
노무자	1,093	여자정신대 등
위안부	340	

* 2008. 6. 9 현재 통계.

여자 군속 신고자 47명 중 2008년 7월 현재 군속으로 판정 완료 또는 확인된 사람이 29명이다. 그 중 공식적인 자료가 있는 여성이 14명이다. 그 중에 남자 5명을 제외한 여자 9명 중 간호사 4명, 교환원 1명, 정신대 2명, 이사생 1명이 있고, 확인된 조병창의 군속 1명이 있다. 이로써 조선인 여자 군속에도 간호부가 가장 많고, 그 밖에 사무원·교환수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최전방에서 부상군인 치료뿐만 아니라 교환수, 이사생 등 기능직과 식사, 빨래, 하역 등 잡역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이다.

23) 早川紀代 編, 2005, 위의 책, 134쪽.

〈표 3〉 여자 군속 중 피해판정자

여자 군속 중 판정받은 사람(유자료자)	47명 중 9명
간호사	4
교환원	1
이사생	1
정신대	2
조병창 (확인자)	1

그 사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43년 여성청년단으로 강제 징용되어, 경남 진해 해군병참부 시설부에서 조선인 노동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일을 했다는 군속 박모씨, 그는 해군 군속자명부에 1945년 8월 20일 해월된 이사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다른 박모씨도 일본 지바현에서 바느질학교를 졸업한 후 정신대에 끌려 나가지 않기 위하여, 1943년 겨울 일본 요코스카 [横須賀] 다테야마[館山] 해군포술학교의 군속시험에 합격한 후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였다.²⁴⁾

정모씨는 1944년 소학교 5학년경에 일본인 교사의 핍에 따라 군속에 지원, 조선남선제17방면군 인천조병창 부대의 루스명부에 工員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는 온종일 서서 탄환이 제조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불량품을 골라내는 일을 했다고 한다. 같은 장소에서 30명 정도의 공원들이 작업을 하였는데, 일본에서 온 여자들이 많았다. 20명 정도 기숙사에서 함께 기거했는데, 세끼 식사는 불량했으며, 밤 근무는 하지 않았다. 외출한 기억은 없고, 군인들이 지킨 것 같다. 8월 15일 해방되던 날에는 모두 광장에 모아 일왕의 항복선언을 듣게 하고 공장 문은 폐쇄되었으며 당연히 더 이상 일은 하지 않았다.²⁵⁾

이렇게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조선 여성도 전쟁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들

24) 1946년 3월 귀환한 그는 동원자 12명 중 자신은 유일한 한국인이었다고 한다.

25) 끌려간 시기를 남편은 1944년이라고 하였다. 가서 일정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후 공원으로 배치 받은 듯. 간호사로 간다고 일본인 선생이 감언이설하였다고 한다(면담 일시 장소, 2008. 8. 19 자택).

도 식민지 '이등국민'으로 국가와 군에 종속 또는 예속의 강도가 높아져 갈 뿐이었다. 다만 일본 여성의 경우 군속 등으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거나 자기를 계발함으로써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어쨌든 여성과 전쟁이란 관계에 심각한 모순 또는 사회적 관계의 착종이 일어나고 있었다. 예컨대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여자 군속을 대표하는 중군간호부는 군속 용인이었으나 일반 군속과 달리 은급 대상이 못 되었고, 간호부장도 判任官에 임하지 않으면 은급에서 제외되었다.²⁶⁾ 또한 1945년 6월, 16세로 만주 鶏寧의 군인회관에 타이피스트로 근무한 여성은 패전 후 당시 여성에 대한 폭행 경험을 증언하면서, “약자를 구하지 않은 은급제도”는 남방 각지의 포로감시원이 전범으로 된 예와 식민지 조선인을 배제하여 부당하다는 지적도 한 바 있다.²⁷⁾

이처럼 전시체제에서 민족문제, 젠더문제는 물론 여성 계층 간의 문제도 드러난다. 즉 중군간호부에도 일본적십자중군간호부로 정식 군속에 편입된 구호간호부와 육군간호부의 차이뿐만 아니라 용인이나 간호학교생 등으로 임시 간호부에 동원된 피해자 내부 간의 신분차이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중군간호부와 군 '위안부'란 어찌하면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었고, 다른 한편 남성 군인들 눈에는 여전히 하나의 여성, 즉 성적 희롱(폭력)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황군' 체제 속의 군인과 군속, '위안부'로서의 여성이라는 관계를 규정하는 특성이라 할 것이다. 그들은 전쟁은 국가를 위해 당연한 것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남성 군인과 여성 군속 사이의 성차별, 불평등, 여성 인권문제 등은 재고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²⁸⁾

26) 판임관이란 임관한 하사관을 말한다. 千田夏光, 1975, 『從軍看護婦』, 東京: 雙葉社, 174쪽.

27) 朝日新聞社 編, 1991, 『女たちの太平洋戦争 1: 被害者そして加害者』, 1, 58~70쪽.

28) 이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때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사에서는 1991년 수기 4,000여 점을 정리, 자료로 보존해 놓았다. 千田夏光, 1975, 앞의 책; 朝日新聞社 編, 1991, 『女たちの太平洋戦争 2: 敵は日本人だった』; 朝日新聞社

Ⅲ. 중군간호부의 동원과 생활

1. 일본의 중군간호부

여자 군속인 중군간호부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군의 체제, 특히 위생부대, 군병원 등과 연계해 보아야 한다. 일본 육군의 위생기관은 야전위생장관부(육군성의무국) 아래 군군의부의 육군병원, 야전화물창 위생재료부, 야전방역 급수부, 환자수송대, 병참위생부(본부·병참병원), 군직할부대 위생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의부에는 다시 사단군의부 소속 방역급수부, 야전병원, 위생병원, 위생대가 있고, 그 하부조직으로 차량중대, 담가[垣廻]중대 등이 소속되어 있다.²⁹⁾ 또한 후방육군병원에는 병참병원, 야전예비병원(간호부), 야전병원(위생병) 등이 포진하고 있다.³⁰⁾ 그 밖에도 전시에는 환자요양소, 환자수용소, 환자집합소 등이 수시로 세워졌다. 그 사이를 병원선이 오가며 환자, 의약품, 간호부 등을 수송하였다. 배에 적십자 표시를 하면 폭격을 못하게 되어 있으나, 전쟁이 격화되면 무시될 때가 더 많았다.³¹⁾ 중군간호부들은 육(해)군병원, 야전병원, 병원선 등 전선을 오가며 교대로 환자들을 치료·간호한 것이다.³²⁾

編, 1992, 『女たちの太平洋戦争 3 : 暗い青春の日々』, 東京: 朝日新聞社

29) 第七二兵站病院記録集編纂事務局, 1981, 『隊員 手記-第七二兵站病院』, 467쪽 참조.

30) 創價學會婦人平和委員會 編, 1981, 『從軍看護婦編 白衣を紅に染めて』, 東京: 第三文明社, 250~251쪽.

31) 口泉, 1970, 『明暗南十字星』, 講談社出版 참조. 저자는 하버드대학 대학원 건축과 졸업, 직장인으로 1943년 중군하여 야전병원에서 만난 '일적중군간호부'(164~166)와 '귀환'(168~170) 등 군속의 체험을 상술.

32) 위원회의 『남방기행』, 36쪽에는 무로마루 병원선에 대해, 그리고 139쪽에는 병원의 의무조수로 근무한 생활기록 등이 나온다. 또한 大嶽康子, 1979, 『병원선·야전병원』, 일본간호협회출판회에는 중국의 애국·구호반 활동, 기록계의 篤志간호부도 참고할 만하다.

중군간호부는 일본적십자사의 간호부와 육해군이 직접 모집한 간호부로 크게 둘로 나뉜다.³³⁾ 이들은 흔히 일본적십자구호간호부(흔히 줄임말로 日赤이라 일컬음)와 일반육군간호부(줄여서 陸看으로 칭함)로 불리고³⁴⁾ 그 안에 특시간호부, 임시간호부[臨看], 징용간호부, 보조간호부, 간호부조수 등 다양하게 세분되기도 한다.³⁵⁾

육군병원, 병원선 등지에서 간호부, 여자 군속, '위안부'는 간호뿐만 아니라 빨래, 환자와 물자 운반 등 군대 내 각종 잡업에 대차 없이 종사해야 하였다.³⁶⁾ 전쟁이란 특수 상황과 일본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관 등으로 여성 내부의 차이에 대한 생각은 있을 수 없었다. 단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뿐으로 군국주의에 이용당하였으며,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간호부 부족은 일상적이었다. 정식으로 교육받은 일적구호간호부, 이를테면 정규직 간호부들조차 자신의 공지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지 못함으로써 이들 역시 젠더상의 차별을 실감해야 했다.³⁷⁾ 그 중에는 당시 군 장교 등의 심한 불법행위³⁸⁾에 때로는 집단적인 저항 또는 법적 대응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중군간호부는 여성으로 그 역할과 위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겠다. 첫째, 군인-간호부 사이의 간호와 위안의 성적 대상이었으며,³⁹⁾ 둘째,

33) 龜山美知子, 1983, 『近代日本看護史』I・II, ドメス出版 참고.

34) 창가학회부인평화위원회 편, 1981, 앞의 책에는 붉은색의 소집영장을 받고 출정하는 일본적십자사 파견 구호간호부와 육군성에 속하는 육군병원 등 국가기관 등에서 지원자를 전지나 일본의 육군병원에 배속한 중군간호부로 구분하고 있다.

35) 中西淳郎, 1973, 『近代看護婦史考』 참고.

36) 谷川美津枝, 1989, 『女たちの遙かなる戦場, 従軍看護婦たちの長がった昭和史』, 光人社, 11쪽. 구호간호부장의 수기에는 1942년 11월, 조선인 위안부와 같은 화물수송선에 승선, 최전선인 메이묘우 병참병원 생활에서 환자의 배변용 휴지 대신 나뭇잎 수집하는 일까지 나온다.

37) 중군간호부의 전후 보상문제 등에 대해서 남성 군속과 비교하여 비판적인 고찰이 이미 잘 나와 있다. 内藤壽子, 2005, 『戦争と看護-従軍看護婦の位相』, 早川紀代編, 『軍國の女たち』, 52~75쪽 참조.

38) 1944년 5월 16일 수마트라 군법회의. 군의대좌가 전지 강간미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사례 등.

39) 性問題研究會 編, M. ヒルシュフェルト・高山洋吉 譯, 1956, 『戦争と性』, 東京: 河出書房 참조.

애국을 위한 희생정신의 담지자로,⁴⁰⁾ 구호반 간호부들은 직접 전쟁에 참가한 유일한 부인부대였다.⁴¹⁾ 당시 '일본 여성의 진수'라는 미명 아래 포대재료의 재생공작, 세탁, 소독, 재활용 등 물자 절약과 검약 실천하는 여성들의 희생정신이라고 강조되었다.⁴²⁾ 전시체제 아래 이들이야말로 미혼 딸로 효성 또는 가족애의 표상이었으며, 가부장제 '황군'체제의 최우선 희생제물이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동원된 간호부도 적십자사를 통해 간 경우와 육해군의 모집을 통해 동원된 간호부들이 있다. 식민지 여성으로 동원되어 간 과정은 다양할 수 있으나,⁴³⁾ 그들도 정신대나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여성의 이중피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빈곤여성에게, 성적 대상으로 그래도 '백의의 천사'라는 미명으로 동원되고 희생되어 간 것이다.⁴⁴⁾ 이들을 전쟁사 또는 군대사 안에 위치짓는 연구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1) 중군간호부의 자격과 편성

중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에 걸쳐 연평균 약 2만 6,000명의 중군간호부가 출정하고, 그 중 일적간호부만 1,080명이 전사했다.⁴⁵⁾ 일적간호부는 1868년 동

40) 岡田禎子, 2006, 「よろこびの船(少)―病院船從軍記」, 從軍看護婦たちの大東亞戰爭刊行委員會 編, 『從軍看護婦たちの大東亞戰爭―私たちは何を見たか』, 祥傳社, 57~80쪽 참고.

41) 岡田禎子, 2006, 위의 글, 58쪽.

42) 岡田禎子, 2006, 앞의 글, 78~80쪽, 이 글은 「病院船從軍記」로 1943년 2월 主婦之友社에서 처음 발간됐다고 한다.

43) 예를 들면 오키나와의 히메유리부대의 간호부 조수로 1945년 3월에 입대한 경우 등이 있다. 中西淳郎, 1973, 앞의 책, 52쪽.

44) 일본의 중군간호부 기록은 적십자사의 간호부 중심으로 회고록 등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자료는 거의 없다. 이 역시 전쟁에 동원된 간호부들이 자신들을 드러낼 어떤 명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탓도 있다.

45) 일적 본사가 발행한 『遺芳錄』에 있는 적십자 간호부만 확실하게 명부에 기록이 남아 있다. 그 외에는 중군간호부로 정리된 것이 없어 당연히 사망자 수도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醫療文藝集團 編, 1968, 『白の墓碑銘―從軍看護婦の記録』, 314쪽.

경부대병원에서 시작된 이래 계속해서 일본의 군사적 요청을 강하게 받으면서 확립, 발전해 갔다.⁴⁶⁾ 청일·러일 두 차례의 전쟁기에 간호부의 사회적 지위는 크게 높아지고 간호부 지망생은 증가했다.⁴⁷⁾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전쟁 패배까지 간호부의 대부분은 속성교육을 통해 나오기도 하였다. 간호부의 신분·지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은 1915년에야 처음 간호부규칙이 만들어진 이후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러 여자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일정하게 보장받게 된다. 여전히 빈곤층 자녀를 주된 공급원으로 발전해 온 간호부는 저임금·과중노동에 내몰렸으나 군인과 같이 전쟁을 통해 애국의 길과 자신의 신분상승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복합적 양면성을 갖는다.

일본은 전쟁에 부족한 의료인을 채우고자, 1941년 후생성은 간호부 최저 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낮추고 1944년에는 16세로 더 낮추었다. 양성소의 전국적 파급도 태평양전쟁 개전경부터이다. 간호부 양성 규칙은 “간호부 생도는 수학년간 오로지 여기에 종사하고, 또 졸업 후 2년간 병원에서 간호부 업무에 복무하고, 이후 20년간은 신상에 하등의 이동이 생겨도 국가 유사시에 접하면 급히 본사의 소집에 응하고, 환자 간호에 진력할 것을 맹서할 것”이었다.⁴⁸⁾ 이 규칙이야말로 육친과 이별을 강제하고 그들을 전장으로 내모는 데 더할 나위 없는 빌미가 되었다.

일적은 히로시마 또는 시모노세키에 집결하여 반을 편성하였다. 1개 반은 대체로 현 단위로, 몇 명의 부장과 20명 전후의 간호부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육간은 현 단위로 소수의 한 반을 만들고, 몇 개 반이 모여 부대장(軍醫)을 중심으로 한 부대에 편성되었다. 간호부 소속 부대는 부대장 군의 아래 몇 명의 군의와 약제관, 위생병 그리고 간호부반으로 구성된다.⁴⁹⁾ 대체로 중증환자 10명에 1명의 간호부 비율이라고도 하였지만,⁵⁰⁾ 전황이 나빠질수록 간호부의 부담

46) 醫療文藝集團 編, 1968, 위의 책, 315~317쪽.

47) 醫療文藝集團 編, 1968, 앞의 책, 318쪽.

48) 醫療文藝集團 編, 1968, 앞의 책, 319~320쪽. 이 규칙은 1955년 1월까지 40년간 살아 있었다.

49) 笹井ヒサ子, 1997, 『女子軍屬從軍記』, 門眞: 笹井ヒサ子 (비매품).

이 커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심지어 특시간호부들은 노장군에게 수혈까지 하였다.⁵¹⁾

중군간호부의 자격은 고등여학교 졸업, 간호부양성소 3년을 공부한, 의식이 높은 엘리트로 자부심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그러나 전장의 비참함은 전쟁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변해 자부심은커녕 전쟁 말기의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의식과 생활 면에서 크게 변화하여 갔다.⁵²⁾

2) 간호부의 동원과 생활

적십자사는 전시의 상병자(부상과 병자), 포로, 난민 등의 전쟁희생자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 민간구호단체이다. 당시 일적간호부들은 육군병원 등에서 활동하였는데, 긴급시에는 유자녀 기혼여성도 국가의 명령으로 전지 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였다.⁵³⁾

일적간호부는 서서히 증가하는 데 비해 陸看은 1941년 급상승한다. 그전까지 비슷한 숫자에서 거의 배로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육간 자체의 증가뿐 아니라 일적에 비해 그렇다는 것으로, 총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⁵⁴⁾ 이미 언급한 '대중동원, 임시동원'을 잘 반증해 주는 것이다.

흔히 '육군간호부'라 불리는 간호부 안에는 용인(임시공) 등도 포함되고, 日赤과 별도로 陸看생도의 모집은 계속되었다. 대동아전쟁 종결까지 그 총수

50) 남방제1육군병원에서는 말라리아 환자가 많은 야근에 환자 60명을 간호부 2명이, 티프스·赤痢[레리] 등 전염병 병동에는 환자 200명에 간호부 2명·위생병 2명이 감당하였다. 中村丹, 1982, 「シンガポールにて」, 元陸海軍從軍看護婦の會, 『從軍回想の記』, 75쪽. 또한 のぐちたい 著, 1985, 『日赤十字社看護看護婦の從軍記-戦いの白衣は遠く』, 北風書房, 59쪽에는 간호부 1명에 3명의 조선 부인이 간호조수의 이름으로 배치. 그들은 일본어를 조금 아는 여성들로 주로 식사 도우미, 구토 오물처리 등에 종사하였다.

51) 醫療文藝集團 編, 1968, 앞의 책, 289~296쪽.

52) 창가학회부인평화위원회 편, 1981, 앞의 책, 251~252쪽.

53) 창가학회부인평화위원회 편, 1981, 앞의 책, 249~250쪽.

54) 동원개사, 제11장, 「女子の使用について」, 442~443쪽.

〈표 4〉 일본의 종군간호부 수

연도	일본적십자사 구호간호부	육군간호부	계
1937	2,943	3,500	6,443
1938	3,118	4,000	7,118
1939	4,846	5,000	9,846
1940	6,246	6,500	12,746
1941	7,845	13,500	21,345
1942	8,659	15,000	23,659
1943	10,359	16,800	27,159
1944	13,161	18,000	31,161
1945	15,368	20,500	35,868

* 출처 : 동원개사, 443쪽 표 인용.

* 육군의 숫자 단위로 보아 대략의 수입을 알 수 있다.

는 거의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적십자사 파견 구호간호부의 경우 1937년 7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총수가 부장 1,888명, 간호부 2만 9,562명인데, 군 명령에 따른 것으로 거의 정확하다고 한다.

군속의 선서를 한 간호부들의 대우는 구호간호부장이 하사관(오장에서 조장까지)에 준하고, 구호간호부는 일반병사(이등병에서 병장까지)에 준하였다.⁵⁵⁾ 군은 군대와 같은 행동과 노동을 그녀들에게 요구하면서, 끝내 언급도 없는 군속이 바로 종군간호부였다.⁵⁶⁾

1942년 전쟁이 확대되면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학도, 임시, 속성, 보조,⁵⁷⁾ 특수, 특지, 포츠담간호부, 인스턴트간호부 등 실로 다양한 간호부들이 나온다. 그 밖에도 근로간호부와 간호부 역할을 하는 위생병 등도 있다. 이 중에 특히 포츠담간호부 등은 포츠담선언이 나온 후에 간호부도 아닌 사람을 간

55) 千田夏光, 1975, 앞의 책, 173~174쪽.

56) 야전병원에서의 간호부 생활은 宮琦清隆, 1956, 『野戰看護婦』, 東京ライフ社에 자세하다.

57) 구호간호부 1명에 조선인 보조간호부 3명이란 수기도 나와 있다.

호부로 명부에 등재하면서 생긴 별칭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臨看, 인스턴트 간호부 등도 거의 간호부와 무관한 여성들이거나, 전장 현지의 여성을 대부분 간호부처럼 등재한 경우가 많았다. 전쟁 말기 임시간호부는 부대별로 자의적으로 서류상 양산된 셈이다.

이렇게 되면 1945년 8월 19일 남자 군속은 영국 측에서 결정한 억류지로, 여자 군속은 임시간호부로 병원으로 가야 했다. 여자 군속을 임간으로 한 것은 적십자법을 지키면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⁵⁸⁾ 야마토분원(大和分院, 부대 근처 육군병원의 분원)의 간호대에는 “藝者나 商社의 직원, 군에 속해 있는 누구든 당시 싱가포르에 있던 여성은 대부분이 임시간호부가 되었고, 그 수가 300명 정도였다. …… 분원에서 간호부 교육용 교재 만드는 일에 종사하며, 간호대 사무실에서 일하였다.”⁵⁹⁾ 즉 황급한 전장에서 임간이 된 군속 여성은 일적간호부와 별도로 간호대에 소속하여 일상적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⁶⁰⁾

이들은 남방의 제1육군병원 치쿠시[筑紫]분원에서 전염병 병동에 근무하는 예와 같이 환자 수송선의 간호업무 외에도 루스[일종의 숙직과 같음] 근무까지 밤낮 없이 일하였다.⁶¹⁾ 결국 종군간호부들은 자신들의 고유업무 외에 방공훈련, 운송 등은 물론 루스 업무까지 맡아 하였던 것이다.

58) 笹井ヒサ子, 1997, 앞의 책, 114~130쪽 참고. 군속=임간의 생활기록이 자세하다. 교육대가 편성되어 영어회화도 배우고 단가회, 연예회 개최 등 취미활동 등, 복원 과정의 생활, 일본 패전으로 임신한 간호부, 17세의 여자 급사의 자살 시도 등 구체적으로 상술되어 있다(155~157쪽).

59) 笹井ヒサ子, 1997, 앞의 책, 130~144쪽. 교재에는 인간 내장의 배포도 등 그림도 그려, 약 200명 임간의 교과서를 급하게 제작한 후 교육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60) 笹井ヒサ子, 1997, 앞의 책, 133~139쪽.

61) 後藤晴代, 1982, 『從軍記, 南方第1陸軍病院』, 元陸海軍從軍看護婦の會, 『從軍回想の記』, 102~103쪽.

2. 조선의 종군간호부

1) 종군간호부 교육과 자격

조선의 종군간호부 동원실태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의 관보, 『매일신보』 관련 기사와 이꽃메의 『한국근대간호사』를 참고해 볼 수 있다. 1914년 최초로 간호부와 산파의 면허에 관한 법률(간호부 규칙, 산파 규칙 등)이 나오고, 식민지 시대 간호부와 조산부 양성을 위한 교육이 본격화된다.⁶²⁾ 1917년 3월 ‘일본적 십자사 조선본부 간호부 양성규정’이 반포되었는데, 적십자사 간호교육은 ‘傷者, 병자의 간호에 관한 학술과 적십자사업 및 육해군 위생근무의 요령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선총독부의원, 대구와 평양 자혜의원 등 3개 관립의원에 간호교육을 위탁하고,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과과정에서 일본적십자사 교육을 따랐다.⁶³⁾

1927년에는 일반 가정의 기혼여성들에게도 지원 자격을 주어 그 범위를 넓혔다.⁶⁴⁾ 1932년 간호부 수는 대학부속병원에 150명, 의학전문부속의원에 40여 명, 세브란스병원에 80명, 기타 사설병원에 수명씩 있었는데, 그들은 대개 보통학교를 나와 간호부양성소에서 1~2년간 전문기술을 익히고 현직에 근무하였다.

전시 동원의 대표적 간호학교는 일본적십자사 조선병원 간호부양성소였다. 1935년 일본적십자사 전국지부 병원장협의회에서 “특히 간호부 전시교육에 대한 구체적 방침 논의”⁶⁵⁾가 있었고,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에서 “대동아 전쟁에 대비코자 구호간호부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갑종은 17세 이상 20세 미만, 고등여학교 졸업자 대상으로 3년간 교육하였으며, 을종은 14세 이상 20세 미만, 고등소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여학교 2년 수료 이상인 자를 대

62) 이꽃메, 2002, 『한국근대간호사』, 한울, 65쪽.

63) 이꽃메, 2002, 위의 책, 77쪽.

64) 『매일신보』, 1927. 10. 5.

65) 이꽃메, 2002, 앞의 책, 205쪽.

상으로 2년간 교육하였다. 재학 중에는 기숙사에 수용하여, 식비와 피복 지급, 매월 수당도 지급되었다.⁶⁶⁾

1938년 시작된 조선인 중군간호부는 전시 간호학교의 확충을 위해 1939년 2월 관련규정을 개정, 총독인가 아래 공주, 춘천, 해주 등의 도립의원에서 양성소 설치로 가능해졌다.⁶⁷⁾ 1940년부터는 간호학교를 지정하여, 무시험으로 면허를 취득케 하였다. 즉 평양 해군공제조합병원 부속 간호부산과양성소를 비롯하여, 1944년 인천 육군조병창 육군병원간호부양성소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이 새로 지정을 받았다. 이는 1915~1939년까지 25년간 10개소가 지정된 데 비해 1940~1944년 사이 5년간 10개소나 지정된 것이다. 또한 1944년 7월에는 '自給自戰 태세 확립'의 물적·인적 전력증강에 혈안이 되어 교육전반에 학도 전시동원체제로 돌입하고, 일반 여학생에게도 간호교육을 실시하였다.⁶⁸⁾ 뿐만 아니라 1944년 12월에는 13세 이상 고등여학교 제2학년 수업자 또는 초등학교 고등과 수료자 정도를 입학시킨 일반 중등학교에서 조선총독부의 지정을 받으면 졸업 후 무시험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하였다.⁶⁹⁾ 1944년 12월~1945년 6월, 51개 공립고등여학교와 여자사범학교 등 모두 68개 여자중등학교가 간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론수업은 줄이고 실습을 늘였다.⁷⁰⁾ 이는 1942년 간호부 면허 발급 연령이 18세에서 17세로, 1944년 12월에는 16세로 더 낮추어진 데 따른 것이다.⁷¹⁾ 이 같은 면허 자격의 완화는 무엇보다 사실상 동원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66) 「백의의 천사들, 조선본부서 모집」, 『매일신보』, 1942. 1. 15.

67) 『조선총독부 관보』, 1939. 12. 15.

68) 『매일신보』, 1944. 5. 9.

69) 『조선총독부 관보』, 1944. 12. 1.

70) 이미 1942년, 전 여학교에 구호과를 신설하고, 가사과 교육요목 중 일상위생, 전염병구급법, 소독 등 위생구호교육을 집중 실시하였다. 『경성일보』, 1942. 7. 11;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 2006,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下)』, 明石書店, 544쪽에서 재인용.

71) 이꽃메, 2002, 앞의 책, 200~201쪽.

2) 조선 중군간호부의 동원 실상

1930년대 후반 이후 전시체제하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간호부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즉 일제는 조선의 젊은 여성들에게 일본적십자사의 조선지부, 육군병원 등을 통하여 '나오라 백의천사'라는 표어 아래 중군간호부를 모집, 동원해 갔다. 이미 중군간호부는 전쟁분위기 고양에 선전선동용 여성보건의료인으로 '백의의 천사', '내선일체 미담', '순정의 꽃' 등으로 칭송되었다. 특별히 전선의 야전병원에 동원된 사례로 1933년 3월,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소속의 일본인 간호부 20명이 임시 제20구호반에 편성되어 5개월간 만주지방 봉천의 위수병원에서 일하다 돌아온 예가 있다.⁷²⁾

또한 1937년 10월에는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소속 篤志간호부 50명이⁷³⁾ 제176구호반과 제177구호반에 편성되어 만주로 파견되었다가 1938년 4월,⁷⁴⁾ 1939년 4월에 각각 귀환하여⁷⁵⁾ 당시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1941년 12월, '의료관계자 징용령'에서 간호부의 징용기준과 징용 때 "사용 또는 급료, 기타의 종업 조건"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1942년 10월 '의료관계자 징용령 시행규칙'과 관계규칙이 실시됨에 따라 조선총독이 발행하는 '징용 영장'을 받은 간호부는 위생에 관계되는 총동원 업무를 해야 했다.⁷⁶⁾ 다시 1944년 8월 '조선의료령'의 표면적 목적은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체력의 향상 도모"⁷⁷⁾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총독부가 의료인을 장악한 후 동원의 편의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실제로 1942년 갑종 모집에 101명 지원 38명 합격, 을종에 212명 지원 55명 합격한 중에 한국인이 갑종에 6명, 을종에 10명 포함되었다.⁷⁸⁾ 1944년에는 면

72) 『매일신보』, 1933. 8. 2.

73) 『동아일보』, 1937. 10. 1.

74) 『동아일보』, 1938. 4. 13, 4. 15 ; 이꽃메, 2002, 앞의 책, 211쪽.

75) 『동아일보』, 1939. 4. 8 ; 『매일신보』, 1939. 4. 8.

76) 『매일신보』, 1942. 10. 18.

77) 『매일신보』, 1944. 8. 13.

78) 이꽃메, 2002, 앞의 책, 206쪽

허가 있으면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17세 이상 29세 미만을 대상으로 '임 시구호간호부'가 모집되어, 3개월간 적십자사에서 교육받은 후 일선에 배치되었다.⁷⁹⁾

이미 언급한 바대로 1938년에 일본적십자사 규례가 개정되고, 조선인 간호부도 전쟁에 동원 가능하게 되었으나⁸⁰⁾ 일본적십자사 소속으로 조선인 여성들은 1943년에야 처음 동원된 것이다.⁸¹⁾ 조선군 군의부에서도 조선인 간호부를 선발하여, 필리핀에 중군한 사례 등이 다수 있다.⁸²⁾ 동시에 후방에 남아 있는 조선 간호원들도 방공연습과 전쟁에 관한 후방 일에 시간을 소비하였고, 병원이나 학교 일은 할 수 없었다.⁸³⁾ 그러면서 "간호하는 일은 전사가 아니더라도 여자의 일이다. 일반간호부의 면허를 가진 자를 모집해서 다시 적십자사에서 3개월간 교육을 시켜 파견하는 만큼 간호부 면허를 가진 사람은 물론 그 외 없는 사람도 지원하여 충성을 다하기를 바람"⁸⁴⁾이라고 선전, 동원하였다. 실제 강동위에 신고된 중군간호부 여성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본다.

이들은 우선 동원 방법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로 현지 채용되었거나, 입대 후 간호교육을 수개월 이상 받은 경우도 있다. 황모씨는 동원령에 따라 당시 학생들이 군복제조공장이나 비행장 등에 동원되는 가운데 간호교육에 응한 후 속성간호부가 되었다.⁸⁵⁾ 자료상 간호부 생도였던⁸⁶⁾ 그는 봉천에서의 간

79) 『매일신보』, 1944. 4. 1

80) 『매일신보』, 1938. 8. 7.

81) 『매일신보』, 1943. 4. 14.

82) 『기독교 신문』, 1943. 2. 17.

83) 이꽃메, 2002, 앞의 책, 212쪽. 간호원이 사무원처럼 의사 보조수단으로 전락하고, 간호는 환자의 친지가 담당하였다.

84) 「가정과 문화, 장부 못지않게 백의천사 되어 제일선에, 이락신씨 담」, 『매일신보』, 1943. 11. 23 인용.

85) 大原 子, 1987, 『悲しみは松花江に流して看護婦たちがみだ二つの戦争』, 東京: にじ書房; 興城みどり會, 1975, 『はるかな興城陸軍看護婦生徒の手記』, 興城陸看護生の會 등 중국의 중군간호부 생활이 황씨의 구술과 거의 같다.

86) 루스명부(관동군직할육군병원) 160쪽. 1945. 6. 21 봉천육군병원 편입, 간호부 생도로 표기, 1945. 8. 25 해용 기록.

〈표 5〉 중군간호부(‘강동위’ 신고자)

	기간	장소	자료상 신분	복원	교육	비고(자료)
반B	1942. 1~ 1945. 12	대만 육군병원, 필리핀 병참병원	적십자구호 반	하와이 포 로수용소	경북여고, 서 울적십자병원	부로명표
황H	1943. 10~ 1945. 9	만주국봉천육군 병원	간호부 생도 (속성간호부)	팔로군, 조 선인민회 도움	대련고등중학 교, 흥성간호 부양성소	루스명부
전J	1943. 12~ 1945. 5	동만총성 훈춘 현립병원	육군간호부 (임시)		편입 1년 후 월급 발령	루스명부
소S	1944. 4~ 1945. 5	상해 남시육군 병원, 중지(상해) 제173병참병원	견습간호부 용인(군속)	전병사	상해에서 중학교 졸업	피징용사망 자연명부

* 출처 : ‘강동위’ 자료와 황모씨 면담(2008. 8. 25 자택), 전모씨 면담(2007. 6. 5 자택) 자료.

호부 생활을 구술하였다.⁸⁷⁾ 소모씨는 당시 주소지 중국 상해에서 중학교 졸업 후 1944년 4월 간호부로 입대하고, 병원 근무 중 병사하였다. 1945년 5월 급성 신장염으로 병사한⁸⁸⁾ 그는 견습간호부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⁸⁹⁾ 현지 채용 후 견습간호부 수업 중 전신권태, 下痢[설사] 등으로 또한 심신의 과로와 영양부족 등 저항력 감소가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이다.⁹⁰⁾

한편 전모씨는 1943년 12월~1945년 5월 동만총성 훈춘(琿春)현립병원의 육군간호부로,⁹¹⁾ ‘임시육군간인(군속)계’에도 1945년 3월 육군간호부로 기재되어 있다. 그는 구술에서 간호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이 바로 병원에

87) 봉천 병원 생활은 내과 병동, 주로 결핵환자가 많았고, 부상병들의 상처에서 구더기 나오는 것도 수없이 많이 보았다. 간호복을 다 입었고, 흰 모자도 썼다. 간호부장이 4명 있었고, 엄격했지만, 간호원들에게 인정도 베풀었다. 일요일에 가족 등 면회는 되었고, 외출은 별로 못했다. 월급은 받은 일이 없다(루스명부에는 공탁금 기재). 조선 군인, 환자도 더러 있었다.

88) 피징용사망자연명부에는 용인으로 사망 기록.

89) 중국지나파견군 제13군 직할부대의 루스명부, 100쪽.

90) 병적전시명부에 군속 채용, 사실증명서에도 군속(용인)으로 병원근무 이력이 기록되어 있다.

91) 관동군 제1방면군 제3군 직할부대 독립훈성 제132여단 루스명부.

취직, 실습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런 경우 임시간호부에 해당될 것이다.

전후 중군간호부들은 정부의 은급이 아닌 적십자사에서 위로금을 지급받았다. 결국 전장의 여성들 중 일적간호부는 상층부에 위치하면서도, 전시 국가 체제에서는 최하위의 '위안부'와 별 차이가 없는 위치에 놓인 셈이다. 이른바 '황군'의 구조는 전후에도 일정하게 적용되고 있다. 간호부 자신들도 자긍심을 가지면서 국가에 대해 눈과 입을 다물다가, 1990년대에 들어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가 되어서야 자신들이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인 걸 들여다보게 되고, 최소한 전쟁 재발은 막아야 한다는 역사의식에 눈뜨게 된 것 같다.

예컨대 전장의 질병에서조차 군인들은 전쟁으로 인한 부상, 전염병 등과 성병을 구분하였는데, 간호부는 병이 나도 공적 상해와 사적 부주의에 대해 애매하게 적용하였으며, 소집에 응한 것[應所]을 어디까지나 지원으로 교묘하게 은폐하여 국가 책임을 회피하고 은급 불가를 정당화한 것이다.⁹²⁾ 최근 일본에서 「붉은 천사」라는 영화를 놓고 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⁹³⁾ 이는 곧 중군간호부의 사회적 위치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결국 여성은 간호부든 '위안부'든 국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중요한 문제 의식, 곧 사회적으로 젠더 문제를 의식·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2) 군속 은급에 대해서 여기서 상술할 수는 없지만, 일본 후생성은 전후 참전 군인과 군속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93) 内藤壽子, 2005, 앞의 글 참조. 간호부 출신 여성들도 영화 「붉은 천사」에 대해, 즉 자신들의 신분이나 역할에 대해 상반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종군간호부와 일본군 ‘위안부’

1. 종군간호부가 된 여자 군속

1942년 전장의 확대와 패전이 짙어갈수록 종군간호부에 버금가게 일반 여성들도 간호부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종전 전후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례로 당시 귀환하지 못한 잔류자들은 1946년 11월경 인도네시아 치카잔에 이동되어, 농장 창고에 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때도 일반 군속의 여자들을 간호부로 근무시켰다. 이는 종전 후 군속업무는 거의 중단되고, 간호부 일은 늘어남을 반영한 것이다. 즉 종전 전에는 간호부도 잡업 등 용인과 같은 군속 업무에 동원되어, 간호와 잡업을 겸하는 꼴이었으나, 종전 후에는 주로 간호 업무에 대부분의 여성이 동원되었다.

대체로 이들은 특수간호부로 호명되었고, 임간(9병원), 용인(10병원) 등으로 루스명부에 기록되었다. 그 안에 ‘위안부’도 들어가 있었다 하겠다. 그중에는 실제 간호부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처음부터 용인(군속) 간호부로 종군한 여성과 ‘위안부’ 중에서 속성, 임시, 特志간호부 등으로 변신한 여성이 명부상으로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명부상 여성 군속에 대해 일일이 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간호부, 임간, 용인 정도로 몰아 적은 것은 패전 前後의 극히 편익적인 작업 처리방식, 또는 여성의 일이나 신분에 대해 무관심 또 무시하는 당시의 젠더의식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들을 인스턴트간호부 또는 포츠담간호부라고도 부른 것은 단지 전쟁과 남성만을 기준으로 간호부 신분이나 역할 자체도 희화화하여 여성을 경시한 용어라 하겠다. 그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본다.

첫째, 사이판 공습 당시 남흥수산의 사무원이 간단한 부상 치료를 맡아 하였다.⁹⁴⁾ 또한 미쓰비시상사의 여직원이 연합군 점령 때 특지간호부로 명부에

94) 醫療文藝集團 編, 1968, 앞의 책, 286쪽.

등재되었다.⁹⁵⁾ 또 다른 예로 1944년 12월 말경 급속하게 작전이 변경되자 바타바타와 마닐라를 포기하고, 루손섬 북북 산악지대로 도망가는 제14방면군 사령부는 군위안부 200 수십 명을 처치하기 곤란하였다. 일부 후방 참모 중에는 그녀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미군에게 그녀들이 잡힐 경우, 치욕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함께 북부 산악지대로 데려가게 된다. 이때 그들을 작전부대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특지'간호부, 즉 간호부 자격은 없지만 그 일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 기특[奇篤]한 부인으로 남방제12육군병원에 편입시켰다.⁹⁶⁾ 비슷한 사례인지 분명치 않지만, 중국 북만주에서도 특지[篤志]⁹⁷⁾간호부들은 많이 존재하였다. 기본적으로 병든 군인에게 여성은 간호부든 아니든, 마음씨 좋은 여성으로 군인들을 안정, 위로, 회복시켜 주는 천사로 비쳤을 것이며, 당시 군의 여성관을 최소한 반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간호부 부족 현상이 속성, 보조, 근로간호부 등을 계속 편입시켰다. 「학도간호부」란 글에서는 중군간호부의 부족으로 17세에 속성간호부로 갔다고 한다.⁹⁸⁾ 또 다른 예로 종전 무렵 남방의 한 병원부대에는 원장 군의 대위 이하 장교·하사관병 약 110명과 육군간호부 약 60명, 보조간호부 약 50명, 兵補(현지인) 약 5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일반인을 포함한 근로간호부 20개반이 편성되었다.⁹⁹⁾ 또한 여자 군속과 일본인 창부 등도 특지간호부로 제5병원 내에 보호되고 있었다.¹⁰⁰⁾ 이들은 실제 간호부 노릇을 한 사람과 입원 환자

95) 越智青海, 1967, 『狂亂のシンガポール』, 原書房, 259~269쪽.

96) 千田夏光, 1975, 앞의 책, 110쪽. 그러나 전쟁에 동원된 여성들이 패전 상황의 군에서 무참히 버림을 당하는 것은 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구술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다.

97) '특지'란 마음씨가 도타움을 뜻하며, '특志'는 잘못이라고도 지적하기도 한다.

98) 醫療文藝集團編, 1968, 앞의 책, 266쪽.

99) 1945년 8월 22일 현지 제16군이 종전을 발표. 자바 방위 의용군이 해산되고, 인도네시아공화국 군대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각과의 兵補, 보조간호부, 현지 사용인은 해용되었다. 병보도 보조간호부도 후일 대부분 신설군대에 편입되는데, 보조간호부에게는 간호학졸업증서를 수여하였다. 岸本種義, 1979, 『南五戰史』, 南五會, 222쪽.

100) 岸本種義, 1979, 위의 책 참조.

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결국 병원에는 정규간호부 외에 여자 군속, 창부가 함께 거주하였다. 이 같은 제5육군병원에서 종전 때 약 3,000명의 환자와 550명의 여자 군속(간호부 193명 포함)이 싱가포르에 고립되었다. 자카르타 의과대학 군정부 교수 이하 일본인 간호부, 일본인 부녀자 등을 남방 제5육군병원에 배속한 것이다.¹⁰¹⁾

셋째, 인스턴트·포츠담간호부¹⁰²⁾가 있다. 이들도 임간과 비슷하지만, 종전 전후 상황을 잘 반영한 용어라 하겠다. 포츠담선언 발표 후 당시 포로가 되어, 주둔군의 명령에 따라 방공호 파기, 활주로의 바리케이드 정비 등 작업에 위생병과 함께 간호부도 동원되었다. 이때 현지 일본인 부인들도 병원에서 근무하며, 거의 무자격자인 그들을 포츠담간호부라고 불렀다. 동시에 원래 간호부는 모두 포츠담婦長이 되었으며, 이들은 종전 후 10개월간 9개소의 병원을 이동할 정도였다고 한다.¹⁰³⁾

그 밖에도 루스 업무의 일환으로 8월 1일부 일본인 일반 여자와 병참 부녀자 400여 명이 육군간호부로 채용되기도 하였다. 동시에 9월 1일부로 군정감부 여자 직원 250여 명의 육군간호부 배속으로 직원의 수는 종래의 2배인 1,300여 명이 되어, 루스명부 작성은 철야작업을 해야 했다.¹⁰⁴⁾ 그 안에는 창부로 불린 ‘위안부’도 들어가, 그들이 疑似군속 또는 준군속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진다.

2. 군 ‘위안부’도 종군간호부

한편 많은 ‘위안부’가 전지에 오면 무시힘으로 간호부가 되었다고도 한다.¹⁰⁵⁾

101) 애지현 간호부 제327구호반 間宮靜子 수기, 1980, 『あいち從軍看護婦の記録』, 일본적십자사 애지현 지부, 185쪽, 194~195쪽. 그는 1942년 3월, 자바섬 바타비아 제100병참병원에 배속되었고, 8월 중순 자바의 제5육군병원에 근무하였다.

102) 作本照子, 1986, 『やっぱり青春-私の俘虜記』, 34~37쪽의 ‘포츠담간호부’ 참조. 倉澤愛子 소장자료.

103) 間宮靜子 수기, 1980, 196~197쪽; 『第五陸軍病院史』, 187쪽.

104) 岸本種義, 1979, 앞의 책, 199쪽.

즉 “그들은 간호부가 될 예정으로 전지에 중군한 것 같다. 나와 같은 (해군)군속이다. 특수간호부는 ‘香具師의 말하는 풀’¹⁰⁶⁾을 연상케 한다. 해군들은 위안소에 상륙했다고 말하였다.”¹⁰⁷⁾ 결국 전장의 남녀 사이에는 “몸이 성한 군인은 ‘위안부’와, 병든 군인은 간호부와”, 즉 전장의 여성과 군인의 관계 맺기가 공식적으로 성립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무시함으로 간호부가 되기 위해 ‘위안부’들이 전지로 왔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설명이 됨으로써 간호부와 ‘위안부’의 구별은 더욱 모호해져 갔다.

군 ‘위안부’들의 기왕의 증언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예컨대 문옥주는 1942년 7월 군속으로 군대 식당에서 일하게 된다면,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¹⁰⁸⁾ 방콕에 도착한 ‘위안부’들을 집합시키고, 일종의 구두시험을 본 후 아유타야의 육군병원에 들어갔다. 하루 2시간씩 간호부 교육을 받고 새 제복도 지급받아 바로 병동에 투입된 후 말라리아, 뎅기열, 피부병, 결핵 등 환자의 열을 재고 군의관의 명령대로 투약하였다.¹⁰⁹⁾ 일적간호부들과 경쟁하며 열심히 일하였는데, ‘위안부’였던 것을 안 그들 간호부와 맞서 싸우기도 하였다.¹¹⁰⁾

1944년 8월 북부에서는 중국군의 공격으로 부상병조차 총을 들고 싸웠고, 민간인은 진지 구축, 밥 짓기, 연락 등으로 군에 협력해야 했다. 여기에서는 ‘위안부’들도 탄환이나 식료품을 나르고, 죽창으로 싸우다가 죽기 직전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다.¹¹¹⁾ 1945년 3월 만달레이가 연합군에 점령되자, 4월 말 사령부 전원이 게이샤, 하녀, 요리사까지 데리고 타이로 탈출하는 와중에 군복을 입은 ‘위안부’와 간호부들은 거의 구분이 안 되었고, 그 중에는 일본인 ‘위안부’도 있었다고 한다.¹¹²⁾

105) 河東三郎, 1989, 『ある軍屬の物語-草津の墓碑銘』, 思想の科學社, 70~74쪽.

106) 香具師는 やし라고도 하는 떠돌이 상인을 말하며, 解語花는 즉 기생·창부를 뜻한다.

107) 河東三郎, 1989, 앞의 책, 75~76쪽.

108) 모리카와 마치코 지음, 김정성 옮김, 2005, 『미얀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 아름다운 사람들, 65쪽.

109) 모리카와 마치코 지음, 김정성 옮김, 2005, 위의 책, 142~143쪽.

110) 모리카와 마치코 지음, 김정성 옮김, 2005, 앞의 책, 146~150쪽.

111) 모리카와 마치코 지음, 김정성 옮김, 2005, 앞의 책, 해설편, 203쪽.

112) 모리카와 마치코 지음, 김정성 옮김, 2005, 앞의 책, 204~205쪽.

강무자¹¹³⁾도 13세(1940)에 코롤병원 뒤의 위안소에 갔다.¹¹⁴⁾ 병원이 있으므로 간호부처럼 봉대나 감아주고 군인들 옷을 빼는 곳인가 생각하였으나, ‘위안부’였다. 식사도 군인이 해 주고 샷주는 물론 생활품 일체를 군에서 배급받았다. 다른 부대에서 군인들이 오기도 하고 사이판 등 여자가 없는 다른 섬에 위안 출장도 군인의 인솔하에 갔다. 그때 “우리는 폭격으로 다친 군인들을 치료하기도 했다”¹¹⁵⁾

손판임은 직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핑에 일본을 거쳐 라바울-뉴기니아-필리핀에 와서 육군야전병원에서 임시간호원 노릇을 강요당했다고 한다.¹¹⁶⁾ 병원에 3개월만 있으면 배를 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미군 점령하에 우리들의 신분이 탄로나면 일본의 체면이 깎일 것이라고 염려해서 우리를 간호원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임시간호원 옷을 입고 모자도 쓰고 마크도 붙였다. 우리는 거기서 환자들 치료도 해 주고, 봉대도 빨고, 약도 날랐다. 잠은 병원의 숙소에서 잤다”고 하였다. 병원장은 이들에게 미군 장교가 와서 뭘 주더라도 웃지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상의 증언들은 하나같이 종전시 ‘위안부’를 간호부로 만들었다는 증언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 은폐를 위해, 또는 실제 ‘위안부’ 환자도 간호부로 기록된 예는 일적간호부 구술에도 많이 나온다. 일적구호간호부 이시하라¹¹⁷⁾는 제118병참병원에 도착하였다. 국방색 셔츠와 중군용 몸빼를 입고 량군을 철수할 때, ‘위안부’와 음식점 여성들도 똑같이 군복, 군화, 전투모를 써서 구분할

113) 강무자, 1997, 「파라오의 폭격 속에서 살아나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군위안부들』 증언 2집, 43~68쪽.

114) 그 집을 암호처럼 ‘가네모토 빵빵가루’라고 불렀다고 한다. ‘빵빵가루’는 군속 증언집에도 그대로 나온다.

115) 강무자, 1997, 앞의 글, 62쪽.

116) 손판임, 『증언 2집』, 79쪽.

117) 石橋澄子, 1989, 「恨みは深しシッタン河」, 谷川美津枝, 『女たちの 遙かなる戦場, 従軍看護婦たちの長がった昭和史』, 東京: 光人社, 21~23쪽. 필자는 일적 화가산 지부 제490구호반의 간호부였다.

수 없었다.¹¹⁸⁾ 더욱이 영국군 포로 당시 일본군의 소문에는 “장교간호부는 제 1선에서 연이어 퇴각시키고, 이 같은 포로집단에서는 어떻게 일자리에 놓기 위해 僞간호부로 육군병원에 집어넣고, 밤에는 눈을 피해 몸을 팔게 하였다”¹¹⁹⁾ 고도 한다.

일적 북해도지부 제316반 구호간호부의 구술에는 병참병원에 젊은 여성이 맹장염으로 입원, 남자만 있던 병실에 그녀는 본부에서 온 장교의 매우 예쁜 ‘위안부(娼)’였다. 라바울의 육해군 장교 이용 위안소(요정)에서 ‘일하던’ 1명이었을 것이다.¹²⁰⁾ 이 경우 ‘위안부’의 환자 기록에는 당연히 ‘위안부’ 대신 자동적으로 여성 군속, 간호부 등으로 기록되었다. 일제는 이에 대해 알고도 모른 척하였다. 절대 그 신분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다.¹²¹⁾

결국 ‘위안부’를 간호부화한 것은 패전 무렵, 의도하지 않은 상황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임기응변, 임시방편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 반면 처음부터 간호부처럼 동원되고, 간호부로 인식된 ‘위안부’ 그리고 의무병(군속) 등으로 인정된 ‘위안부’도 없지 않았다. 지역적으로는 중국¹²²⁾과 인도네시아 등 남방 그리고 시기 문제 등 이후 더 치밀한 조사와 분석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118) 이시하라, 1989, 앞의 글, 26쪽. 남방 밀림으로 쫓겨다닐 때 특히 심하여, 간호부 들조차 흰 제복은 눈에 띈다고 군복을 입었고, 거의 남녀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였다는 구술은 비밀비재하다.

119) 이시하라, 1989, 앞의 글, 39~40쪽.

120) 谷川美津枝, 1989, 앞의 책, 제3話 「南方戰線-玉碎」, 窪田マツエ, 「南十字星の輝く戦場で」, 87쪽.

121) 피해자들도 여자정신대와 군속(임간, 용인, 고원 등)을 혼동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군 ‘위안부’와의 경계도 분명치 않은 예는 한국에서 특히 심하다. 이에 대한 여성사 또는 젠더사 연구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122) 大嶽康子, 1979, 『病院船・野戰病院』, 日本看護協會出版會. 중국 전선에서의 일적 애국-구호반 활동, 기록계에서 篤志간호부의 활동이 나옴.

V. 군위안부와 군속 : 명부의 여성들

1. 군속으로서의 '위안부'

일본군이 가해자로서 군 '위안부' 동원을 증언한 예는 진작부터 있었다. “그에 따르면 군위안부로의 강제연행은 ‘황군위문조선여성정신대동원에 관한 건’이라는 군의 명령에 기초한 것이다. 잔인무도한 강제연행이 군명령을 통해, 행정의 하부기관을 통해 행해진 것이다”¹²³⁾ 또한 전지와 충후를 연결하는 일본 후방 여성들은 일본의 전황이나 군인들의 처신에 대해 무자각하지 않았다. 군인 남편의 엽서에 술과 위안소 출입을 앓는다고 했다는 소식에 주목하고, 이미 1942년 1월부터 싱가포르에 위안소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¹²⁴⁾ 일본의 여성들은 이미 위안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¹²⁵⁾

또한 '위안부'를 간호부와 마찬가지로 여자 군속으로 볼 수 있겠다는 언급도 이미 있었다. “8월 1일자로 싱가포르 주둔 일본 해군의 '위안부' 제도와 관련하여 고용된 사람들은 101호병원의 민간인 고용인으로 임명한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간호보조원으로 임명한다. 그 밖의 지시는 제1남방원정대의 지시에 따른다.”¹²⁶⁾ 동시에 2007년 5월 하중문 교수는 처음으로 '위안부'를 군속으로 볼 수 없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¹²⁷⁾ 즉 위안소는 군사시설이고, 업자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속 혹은 그에 준하는 군의 구성원(준군속이라 할 수 있

123) 栗栖哲男, 1992, 「なぜ女子生徒に手榴弾渡した」, 朝日新聞社 編, 『私たちの太平洋戦争 3 : 暗い青春の日々』, 朝日新聞社, 34~35쪽

124) 島利榮子, 2004, 『戦時下の母, '大島静日記' 十年を読む』, 展望社 참조.

125) 早川紀代 編, 2005, 앞의 책, 139쪽. 이는 곧 '위안부' 여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과 같다.

126) 조지 히스, 1995, 『위안부』, 174쪽에서 인용.

127) 하중문, 2007, 「군의 작전과 조직체계 하에서의 위안소, 위안소 업자」, 『강제성이란 무엇인가』 한국정신대연구소 국제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38쪽, 이 세미나에서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도 '위안부'의 여자 군속 신분에 대해 일정하게 수용한 바 있다.

음)이었다고 한다. 결국 그에 예속된 '위안부'도 군속 또는 군의 구성원으로서의 신분 규정이 자연스레 유추되는 것이다.

일본의 남자 군속의 증언에서도 '위안부'는 군속과 같았다. 패전 후 영국군의 지시에 따라 수마트라에서 귀환을 위한 작업대가 편성되고, 루스명부 작성에 시급히 대응한 부대에는 약 20명의 여성이 귀환 대기상태에 있었다.¹²⁸⁾ 그 중에는 전쟁 초기부터 종전까지, 4년간 고락을 함께한 '위안부'가 언급되고 있다.¹²⁹⁾

또한 군의관의 증언에는 파견군참모부장이 나가사키[長崎]현 지사에게 요청, 위안부단을 초청한 바 있다. 당시 각 군단은 거의 모두 위안부단을 수행하여 병참의 1분대로 하였다. 제6사단의 경우 위안부단이 동행하면서 강간죄가 사라졌다면서, “'위안부'는 부대에 따라서는 흡사 대원과 같다”고 하였다.¹³⁰⁾ 부대원과 같은 '위안부'란 바로 군속과 같다는 뜻이다.

“중국군은 약탈은 해도 강간은 않는다, 일본군은 약탈은 안 해도 강간은 한다”¹³¹⁾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군의 전시 강간은 일상화하다시피 하였고, '위안부'에 대한 강간은 소수의 지식층 장교급을 제외하고는 합법적 행위로 인식할 정도였다. 때문에 죄의식은커녕 단지 전쟁 수행의 일환으로 여겼다면, 이 역시 '위안부'가 준군속에 해당했기(해당한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바로 '황군'에 의한 제도적 강간이 성립하고, 군에 소속된 '위안부'는 여자 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을 부대에서 '의무병'이라고 칭했습시다. 너희들은 군대다. 군대 중에서도 의무병이다. 의무병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¹³²⁾라고 했다. 이는 1944년 10월경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제1신시가

128) 下崎吉三郎, 1991, 『南方での想い出』, 松前町(北海道), 170~171쪽, 278쪽. 저자는 歩兵第3聯隊 留守隊 근무자로, 싱가포르에 위안소가 개설되고 여성들이 왔다고 증언했다.

129) 下崎吉三郎, 1991, 위의 책, 283쪽.

130) 稻葉正夫 編, 1970, 『岡村寧次大將資料 戰場回想編』, 原書房, 302쪽.

131) 稻葉正夫 編, 1970, 위의 책, 314~315쪽.

132) 김서령, 2007, 『여자전』, 푸른역사, 100쪽에서 인용.

〈표 6〉 '위안부'가 군에서 한 노역

업무	명수	백분율(%)
간호	25	13
세탁	61	31.8
노역	9	4.7
군사훈련	19	9.9
합계	114	59.4

* 출처 : 여성부, 2002, 『통계자료집』 참고.

지에 내렸을 때, 여성에게 군이 처음 한 말이라고 중국에서 2004년 귀국한 김 수혜(가명)가 증언하였다.

여성부에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192명 중 114명(59.4%)이 간호(25명, 13%), 세탁(61명, 31.8%), 노역(9명, 4.7%), 군사훈련(19명, 9.9%) 등을 경험함으로써 신분에 관계없이 여자 군속 역할을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미 강정숙은 전 군의의 증언을 재인용하여, “소화 15년에는 관동군으로 편제되어 …… ‘관동군여자특수군속복무규정’은 두꺼운 규정서로 상세한 규정이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 소위 ‘위안부’ 취급 규정으로 여자 특수군속이라는 것은 조선 빼인 것입니다. 관동군보급감부라는 것이 있고 ‘위안부’의 ‘보급’의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¹³³⁾라며, ‘위안부’가 여자 특수군속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전 통신교육대원의 증언에서도 ‘위안부’를 ‘관동군전시특별정신대’라고 하였다. 이 같은 예가 군 ‘위안부’ 전체에 다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간호부를 포함한 여자 군속과 ‘위안부’가 당시 군대 사회에서 혼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란 것 외에 여성 안의 차이를 별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결국 전쟁에 동원된 모든 여성은 이를테면 여자 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33) 강정숙, 2005, 『일제권력기관의 조선인 군 '위안부' 동원-고문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논집 9,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삶과 민족운동』, 231~286, 264쪽.

2_ 루스명부의 '위안부' 여성

이 글에서는 특히 남방제7방면군의 제9병원과 제5병원 루스명부에 등재된 피해 여성, 그들 중에 여성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일별해 본다.¹³⁴⁾ 피해자 중 사망자의 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도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위안부'가 군속으로 등재된 예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명부의 남방제9병원(富 제10310부대)은 1942년 10월 수마트라 팔렘방에 설치된 남방군-제7방면군-제25군 예하 직할부대로 군의부장(소장) 아래 육군군의(대좌) 병원장의 관할 아래 남부 수마트라 전반의 위생업무에 종사하였다.¹³⁵⁾ 1942년 11월 남방군총사령부에서 육군간호부 23명을 배속받았으며, 1943년 12월 남방군총사령부에서 일본적십자사 제484반(효고 지부) 부장 1명, 서기 1명, 간호부 20명, 使丁 1명이 배속되었다. 종전 때는 남부 수마트라 주둔 부대 여자 군속 전원을 임시간호부로 전속하였는데, 그때 팔렘방 주정청의 일본인 2명, 남수마트라 특설통신대 2명, 팔렘방 해행사 6명, 동 대만인 5명 등이 1945년 8월 22일에 전입되었고, 동시에 제7방면군에서 임시간호부 354명을 배속받았다.¹³⁶⁾ 그 안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부녀자(상사 중업원, 업자 등)들이 임시간호부에 채용·편입되었던 것이다.¹³⁷⁾

당시 군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루스명부,¹³⁸⁾ 사망자연명부, 해군군속명부,

134) 古屋五郎, 1989, 『南方第九陸軍病院』, 東京: ほるぷ出版 참고.

135) 제10육군병원은 같은 시기에 수마트라 메단에 설치되었다.

136) 제5병원에 근무한 애지현 간호부 간궁정자의 수기, 222쪽. 그 중 조선인 84명의 임간이 들어 있다.

137) 남방군제9육군병원 복원명부에는 군인·군속 합 714명이 등재, 군속 191명 중 조선인 여성 71명이 임간으로 기록, 총인원의 10%에 해당된다. 루스명부의 84명의 임간 중에 71명이 복원된 것이다. 복원이란 전시 태세에 있는 군대를 평시 태세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138) 루스명부는 본대 근무자가 아닌 외지 육군 근무자를 대상으로, 종전을 앞둔 혼란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육군 루스사단에서 작성하였다. 그 중 1945~1949년 조선인만 따로 뽑아 재작성된 명부를 1993년 10월 일본 정부 후생성에서 사본으로 인도받아 한국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 아직 그 실체가 다 파악되지 못하였다.

〈표 7〉 남방제7방면군 육군(병원)의 루스명부의 여성들

부대, 병원	직종	인원수	발령날짜
5병원	간호부	82	1945. 8. 1
9병원	임간	85	1945. 8. 22(84명), 23(1명)
10병원	용인	142	1945. 8. 11(3명), 8. 30(36명), 8. 31(103명)

병상일지, 부로명부, 신상조사표, 복원명부 등이 있다. 그 자료에 간호부 등 군속으로 기록된 여성들 중 이미 군 ‘위안부’로 커밍아웃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강동위에 신고하여 ‘위안부’ 피해자로 판정을 받은 여성이 있는 것이다.

위의 3개 육군병원 이외에도 25군사령부의 용인, 48사단 위생대의 간호부 등에 조선 여성이 있으며, 이들의 출신지, 연령 등은 참고로 볼 수 있다.¹³⁹⁾ 전체적으로는 용인이 가장 다수이며, 임간(임시간호부)과 간호부가 비슷한 수이다. 발령 날짜는 1945년 8월 1일부터 31일 사이로 전세가 불리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무차별 동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종전 후 처리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의 등재 가능성은 이미 본 바이다. 결국 이들은 병원이나 부대 등의 사정 또는 부대장의 명령에 따라, 날짜와 신분상(용인, 간호부, 임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 이미 신분이 확정된 여성들을 살펴보면 최소한 여성부 등록자(생존, 사망), 야스쿠니 합사자, 다른 명부 등 자료에 중복 등록된 사람들이 있다. 즉 루스명부상의 여성부 등록자(11명)와 강동위에 위안부와 군속 등 신고자(14명)

139)

나이	인원수(명)	출신도 / 인원수(명)	
10대(16~19)	10	강원 3	
20대	274	경기 31	
30대	13	경북 97	경남 90
미상	23	전북 12	전남 35
		충북 4	충남 13

〈표 8〉 병원별 루스명부상의 위안부(여성부 등재자)

제10병원 용인	김모씨 등 7명		비고
제9병원 입간	배모씨 등 3명	양모씨(판정자)	이모씨(추정자)
제5병원 간호부	서모씨 1명		

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다.

이미 '위안부' 피해자 김모씨(제10병원)는 간호부 모집이라는 사기 취업의 유인으로 군 '위안부'에 동원된 대표적 사례이며,¹⁴⁰⁾ 양모씨(제9병원)는 간호부 노릇을 한 적이 없다고 구술하였으나, 명부(1947년 9월 남방과 남방반 수마트라계 작성)에는 제9육군병원 입간으로 해용되었다. 그는 이 자료에 따라 강동위에서 처음 '위안부' 피해 판정을 받은 여성이며, 위안소에서 사무원(조바) 생활도 하였다. “싱가포르로 갔다가 수마트라라는 섬으로 갔다. 1년 반인가 2년이 못될 때 너무나 진저리가 나서 내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표 받는 일을 했다.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남자가 표를 받다가 내가 하게 되자 그 사람은 그만두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해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또 다른 여성부에 등재된 피해자 최모씨¹⁴¹⁾는 1939년 중국 한구 등지에서, 1942년 25세에 싱가포르에서 수마트라 메단으로, 다시 고도라지아(쿠타라자)라는 시골의 위안소를 갔는데, 주위에 경비대, 야전병원, 헌병대 등 여러 부대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병원부대에서 밥을 가져다줘서 먹었다. 주 1회 성병 검사도 받았다.

140) 김모씨는 1945년 8월 31일 남방제10육군병원에 편입, '위안부' 피해자이지만, 명부상 신분은 육군 군속으로 기재. 『증언 2집』, 84~99쪽. 패전 후 보름쯤 지나 싱가포르 제10육군병원으로 적십자가 그려져 있는 차로 실려 갔다. “그곳에는 이미 우리 같은 여자들이 300명 정도 와 있었다. 일본 군인들은 우리에게 간호 훈련을 시켰다. 호박을 갖다 놓고 주사를 놓아보라고 가르쳤고, 병원 청소도 시켰다. 피검사를 받은 후 걸핏하면 피가 모자라는 환자를 위해 피를 뽑았다.”

141) 한국정신대연구회, 1993,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군위안부들 - 증언 1집』, 197~211쪽 중에서 204쪽의 「낮에는 간호부, 밤에는 위안부로」 참조.

“전쟁이 과열되어 군인들이 많이 죽어 나가자 군에서는 위안소 여자들을 간호원으로 썼다. 5명 정도가 차로 15분 거리의 큰 야전병원에 파견, 치료도 해 주고 빨래도 …… 밤에 돌아와 군인을 상대하였다”¹⁴²⁾고 증언했다. 간호부가 모자라 ‘위안부’ 일과 병행해서 간호부 일도 해야 했다. 그는 제10병원 루스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위안부’로 신고한 한모씨는 제5병원에 1945년 8월 1일 간호부로, 1945년 7월 30일 남방제1육군병원에서 병사하여, 야스쿠니에 합사됐다고 루스명부에 기록되어 있다. 신고한 가족이 ‘위안부’라고 주장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현재로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안부’로 신고한 이모씨는 ‘위안부’ 생활 2년 3개월 정도로 추정하고, 팔렘방 제1·2명월관에 있었다고 하나¹⁴³⁾ 1945년 10월 18일 복원명부에 따르면, 임시간호부에서 해용되었다. 그는 제9병원 루스명부에 임간으로도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치매 상태로 증언이 불가능하고, ‘위안부’로 확인할 단서가 없다. 또한 군속으로 신고한 제9육군병원의 임시간호부 안모씨도 1946년 1월 전병사(위귀양)하여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다. ‘위안부’ 가능성은 추정할 뿐 확인할 수가 없다.

위의 피해자 이외에도 루스명부의 여성 군속들의 다수가 ‘위안부’였음이 확인 가능하다. 1945년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 간호부, 인부, 주부로서의 여성 역할은 고정적이지 않았고 격전지에서는 거의 모든 여성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 대해 별다른 구분 없이 명부에 군속으로 등재한 예는 이미 상술한 바와 같다. 또한 신상조사서 자료에도 임시간호부로 남방군의 군인구락부 명월관 사무원(해군군속, 1945. 8. 22)이 기재된 예가 있는데,¹⁴⁴⁾ 이는 송복

142) 한국정신대연구회, 1993, 위의 책, 208쪽.

143) 팔렘방 명부에 제1·2명월관의 여자 군속은 대부분 ‘위안부’ 여성이라는 진술에서 이분도 그 중의 한 명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는 강동위의 강정숙 조사관의 조사에 의거한 것이다.

144) 훗본 씨는 1946년 7월 신상신고서에는 종전 당시의 직업이 제2명월 군인구락부 사무원으로 기재, 루스명부에는 1945년 8월 22일 제9병원의 임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섭의 팔렘방 명부자료와도 일치한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히로시 히로후미 교수의 자료와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¹⁴⁵⁾

VI. 맺음말

이상에서 (준)군속으로서의 군 '위안부' 정체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여성도 군속으로 동원되어 각종 지난한 일에 종사하였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군간호부였고, '위안부'도 군에 전적으로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간호부 못지않게 비중 있는 여자 군속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군간호부에는 일본적십자사의 구호간호부와 바로 육해군에 지원한 간호부들이 있다. 당시 지원이라는 것은 단지 명분일 뿐, 실제로는 이른바 전시 '황군' 체제에서 강제동원이나 다름없었다. 더욱이 이들은 군인과 군속, 군속 안에서의 남녀 성차별뿐만 아니라 간호부 내부에서조차 차별적인 위계질서가 존재하였다. 특히 전쟁 말기 임시로 편입된 수많은 간호부 여성들 속에는 '위안부'도 당연히 포함됨으로써 그 차별은 중층적으로 가중된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최악의 조건과 가장장제적 여성관에 빠져 있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대차 없이 그저 여성일 뿐이었다. 군은 여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단지 여성 집

145) 「패전 후 '위안부'를 간호부로」, 일본 共同通信, 2008. 6. 19 配信, 6. 20, 일본 각 지 주간 게재. 패전 직후 일본 해군이 일본인 '위안부'를 군병원의 보조적 간호부로 고용하라고 명한 통달이 영국 공문서에서 판명됨. 이로써 연구자들은 '위안부'가 간호부로 고용된 때의 신분이 군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본 당국이 '위안부'의 존재를 연합국 측에 은폐하고자 한 가능성도 당연히 지적된 바 있다.

단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들이 작성한 군 명부에서 군속 여성의 신분을 엄격하게 구분해 낼 수는 없다.

셋째, ‘위안부’를 군속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게 한 요인은 성노예로서뿐만 아니라 전황의 열세에 따른 인력부족, 또는 일본군 패퇴상황에서의 처리문제(은폐인가, 최소한의 배려인가), ‘위안부’ 환자의 수용 등은 물론 병원부대, 또는 포로수용소 안에서의 집단생활과 노동력 동원 등 다양한 형태로 불가피한 것이었다. 또한 복원과 귀환 과정에서도 군은 ‘위안부’를 어쩔 수 없이 편입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위안부’는 여자 정신대와는 달리 처음부터 여자 군속 또는 준군속으로 당연히 군의 직접적인 관리 통제하에 있었다. 군대에 소속되어 성노동뿐 아니라 여러 필요한 노동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 기록에 신분상 ‘위안부’로 표기된 예는 하나도 없다. 다만 미군 포로수용소의 조사 기록에서 ‘위안부’ 표기가 드물게 나올 뿐이다. 동시에 루스[留守]명부 등에 인간·용인 등으로 표기된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생존자 증언 등에 힘입어 최근 확인될 뿐이다.

이상의 사실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위안부’가 육군제도 속에 편입되어 군속화했음을 의미한다. 군 ‘위안부’를 합법적·제도적 군속이라고 하기에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패전 당시 분명한 군속 신분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군위안부의 정체성 논의는 민간 상업행위였을 뿐이라며, ‘위안부’ 제도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보상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피해자 여성의 정체성,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후 좀 더 치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후일을 기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자료〉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총독부 『관보』 등(1931~1945).

송복섭(팔렘방)명부, 俘虜名簿 등 귀국자 명부, 1946.

日本 陸軍省, 1946, 留守名簿(南方軍 제7方面軍) 및 자료.

日本 陸軍省, 1945~1946, 南方第9陸軍病院 復員名簿, 病床日誌 등 戰時 자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5~2007, 『여자군속 신고 및 조사자료』.

〈논문 및 자료집〉

여성부, 2002, 『군위안부 통계자료집』.

日本の 戰爭責任資料센터 · 女性の 戰爭과 平和資料館, 2007, 『韓日間の 歴史問題의 解決方案에 關한 研究-日本軍 慰安婦問題 解決을 위하여』, 동북아역사재단위탁 연구최종보고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전시체제기 조선의 사회상과 여성동원-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자료집.

하중문, 2007, 「군의 작전과 조직체계 하에서의 위안소, 위안소 업자」, 『강제성이란 무엇인가』 한국정신대연구소 국제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한국근현대사학회 · 동북아역사재단, 2007, 「일제식민지배의 폭력성과 일본군 '위안부」, 서울 프레스센터 회의실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西野瑠美子, 1997. 5. 23, 「我が見る 海南島 軍病院の慰安婦たち」, 『週刊金曜日』.

荻野富士夫, 1994, 「富山縣の勞務慰安婦について-強制連行と慰安婦の接點」, 『戰爭責任研究』, 동계호.

川田文子 · 大森典子, 2008. 6, 「慰安婦問題 · 何が問われているのか」, 『世界』 779號.

〈단행본〉

윤명숙, 2003, 『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人軍隊慰安婦』, 東京 : 明石書店.

정진성, 2004, 『일본군성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정신대연구회, 1993 · 1997 · 1999,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증언집 1~3, 한울.

조지 힉스, 전경자 · 성은애 역, 1995, 『위안부』, 창작과비평사.

高橋功 編, 1972, 『ある野戦病院の記録』, 東京 : 金剛出版.

- 高橋三枝子, 1983, 『戦争と女たち』, 東京: ドメス出版.
- 古屋五郎, 1989, 『南方第九陸軍病院: 南十字星の下に 慟哭・痛憤の戦時記録』, 東京: ほるぷ出版(解説: 家永三郎).
- 谷川美津枝, 1989, 『女たちの遙かなる戦場: 従軍看護婦たちの長かった昭和史』, 東京: 光人社.
- 龜山美知子, 1983, 『近代日本看護史 I-II』, 東京: どめず出版.
- 近代女性文化史研究会, 2001, 『戦争と女性雑誌 1931年~1945年』, 東京: ドメス出版.
- 近代戦史研究会 編, 1966, 『女の戦記』第6・11巻, 東京: 浪速書房.
- 吉田裕・松野誠也 編集・解説, 2001, 『十五年戦争期軍紀・風紀関係資料』, 東京: 現代史料出版.
- 南五會 編, 1975, 『南五戦史』, 東京: ウニスガ.
- のぐちたい, 1985, 『戦いの白衣は遠く: 日本赤十字社救護看護婦の従軍記』, 東京: 北風書房.
- 櫛木1(地方世話部), 1956, 『復員者の 栞』, 東京.
- 大江志乃夫, 1982, 『昭和の歴史 3・天皇の 軍隊』, 東京: 小學館.
- 大岳康子, 1979, 『病院船・野戦病院』, 日本赤十字中央女子短期大學同窓會 編, 東京: 日本看護協會出版會.
- 大原 子, 1987, 『悲しみは松花江に流して 看護婦たちがみだ二つの戦争』, 東京: にじ書房.
- 島利榮子, 2004, 『戦時下の母・‘大島静日記’十年を読む』, 東京: 展望社.
- 稲葉正夫編, 1970, 『岡村寧次大將資料・戦場回想篇』, 東京: 原書房.
- 東京新聞社會部・地方部 編, 1995, 『戦争と平和とわが子に伝える私の戦後50年』第3集.
- 東京草の實會 編, 1978, 『シリーズ戦争の証言 9: わかれ 妻と娘の戦争体験』, 東京: 太平出版社.
- 木村宏一郎, 2001, 『忘れろれた戦争責任』, 東京: 青木書店.
- 山田昭次・古庄正・ 口雄一, 2005, 『朝鮮人労働動員』, 東京: 岩波書店.
- 衫山里つ子, 1941, 『従軍看護婦の手記』, 東京: 湯川弘文社.
- 森松俊夫, 1991, 『圖説陸軍史』, 東京: 建帛社.
- 三浦秋水・鈴木秋子, 1992, 『女と戦争 第1巻: 戦争と婦人-軍國の婦人』第24巻, 大空社.

- 三浦裕史, 1996, 『軍制講義案』, 東京: 信山社出版.
- 西井弘之 編著, 2007, 『ルソン島の野戦病院全滅記: 鐵兵團・バレット峠・死の彷徨』, 東京: 文藝社.
- 笹井ヒサ子, 1997, 『女子軍屬從軍記』, 門眞: 笹井ヒサ子.
- 性問題研究會 編, M. ヒルシュフェルト・高山洋吉 譯, 1956, 『戦争と性』, 東京: 河出書房.
- 守屋ミサ, 1998, 『從軍看護婦の見た病院船・ヒロシマ: ある養護教諭の原體驗』, 東京: 農山漁村文化協會.
- 安齊貞子, 1953, 『野戦看護婦』, 東京: 富士書房(남편 宮崎清隆, 1956, 東京: 東京ライフ社, 복간).
- 岩隈フキヨ, 2007, 『ビルマ從軍看護婦の記録: 南十字星の見える丘に立ちて』, 北九州: きかんし出版センター.
- 鈴木裕子・山下英愛, 2006,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下, 東京: 明石書店.
- 元日赤從軍看護婦の會, 1985, 『日本赤十字從軍看護婦: 戦場に捧げた青春』, 東京: 元日赤從軍看護婦の會.
- 越智春海, 1967, 『狂亂のシンガポール』, 東京: 原書房.
- 醫療文藝集團 編, 1967, 『白の青春-一人の看護婦手記』, 東京: 東方出版社.
- 醫療文藝集團 編, 1968, 『白の墓碑銘-從軍看護婦の記録』, 東京: 東方出版社.
- 日本赤十字社 愛智縣支部編輯委員會 編, 1980, 『あいち 從軍看護婦の記録』.
- 作本照子, 1986, 『やっぱり青春-私の俘虜記』, 倉澤愛子 소장본.
- 戦時下勤勞動員少女の會 編, 1997, 『記録-少女たちの勤勞動員-女子學徒・挺身隊勤勞動』, 東京: BOC出版部.
- 崎護, 1976, 『シンガポール占領秘録』, 東京: 原書房.
- 早乙女 勝元, 1998, 『戦争を語りつぐ: 女たちの證言』, 東京: 岩波書店.
- 朝日新聞社 編, 1991, 『女たちの太平洋戦争 1: 被害者そして加害者』, 東京: 朝日新聞社.
- 朝日新聞社 編, 1991, 『女たちの太平洋戦争 2: 敵は日本人だった』, 東京: 朝日新聞社.
- 朝日新聞社 編, 1992, 『女たちの太平洋戦争 3: 暗い青春の日々』, 東京: 朝日新聞社.
- 朝日ジャーナル, 1985, 『女の戦後史 2・昭和30年代』, 東京: 朝日新聞社.
- 早川紀代 編, 2005, 『軍國の女たち』, 東京: 吉川弘文館.

- 『從軍看護婦たちの大東亞戰爭』刊行委員會 編, 2006, 『從軍看護婦たちの大東亞戰爭：私たちは何を見たか』, 東京：祥傳社.
- 佐佐木陽子, 2001, 『總力戦と女性兵士』, 東京：青弓社.
- 中島邦, 1992, 『女と戦争 別冊：近代日本における女と戦争：「女と戦争」シリーズよせて』, 東京：大空社.
- 中西淳郎, 1973, 『近代看護婦史考』.
- 創價學會婦人平和委員會 編, 1981, 『從軍看護婦編 白衣を紅に染めて』, 東京：第三文明社.
- 創價學會女性平和文化委員會 編, 1983, 『語ってよ, かあさん娘たちの戦争體驗ルポルタージュ』, 東京：第三文明社.
- 妻木新平, 1941, 『妻の從軍』, 東京：春陽堂書店.
- 川名紀美, 1982, 『女も戦争を担った』, 東京：冬樹社.
- 川田文子, 2005, 『イアンフとよばれた戦場の少女』, 東京：高文研出版.
- 千田夏光, 1975, 『從軍看護婦』, 東京：雙葉社.
- 口たかし, 1970, 『明暗南十字星：軍屬從軍譜』, 東京：講談社出版サービスセンター.
- 平林久枝 編, 1992, 『強制連行と從軍慰安婦』, 東京：日本圖書センター.
- 河東三郎, 1989, 『あの軍屬の物語—草津の墓碑銘』, 東京：思想の科學社.
- 河東三郎, 1992, 『ある軍屬の物語』, 東京：日本圖書センター.
- 興城みどり會編著, 1975, 『はるかなる興城：陸軍看護婦生徒の手記』, 町田：興城陸看護生の會.
- Jun Yoo, Theodore 2008, *The Politics of Gender in Colonial Korea : Education, Labor, and Health, 1910–1945*,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BSTRACT]

The Identity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s during
the Asia-Pacific War : A Comparative Study of Military
Nurses as Civilian Women in the Military

Shin, Youngsook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dentity of “comfort women” who were mobilized as civilian employees in the military as well as military nurses during the Asia-Pacific War. In order to accomplish this research, I will first start out by examining civilian workers in the Japanese military (軍屬) and concepts and categories such as “preparatory troop attachments (準軍屬).” In addition,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actual conditions of military nurses as civilian employees,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dentity of military nurses and “comfort women.” Through this kind of study, it hopes to recognize the experiences of these women and the historical specificity behind military “comfort women.” In addition, this research seeks to contribute to Korean-Japanese relation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coming up with an acceptable solution by straightening out this distorted history and through the teaching of history in an upright manner. I will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

First, during the Asia-Pacific War, women were also drafted as civilian employees and they carried out various difficult tasks. The military nurse (i.e. a Red Cross nurse attached to the army) was the

most representative among them. Because the military “comfort women” were under the complete control of the army, they were no less considered as female civilian employees and one can argue that they were quite important in the army.

Second, among the various nurses in the army, there were those who worked under the Japanese Red Cross and those who supported the military and navy respectively. If this support was considered simply a moral duty, forced mobilization actually continued during wartime and under the Japanese imperial military system. In addition, sexual inequality not only existed between the sexes among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a discriminatory system also existed among nurses. In particular, at the end of the war, many of these “comfort women” were enlisted as temporary nurses and the discrimination between them only increased their burden day by day. However, in war, women have always occupied the worst positions because there is little change because everything is designed from a patriarchal perspective. Simply put, the Japanese military neglected women and generally treated them without any distinction. Therefore, one cannot possibly divide and distinguish the identity of the women strictly from the register of names on the roster.

Third, the fact that “comfort women” were drafted as civilian employees, they weren’t simply sex slaves especially with the war situation being inferior, the lack of manpower, and the hasty administrative decisions made for them during the final stages of Japan’s defeat and retreat (e.g., covering up, or at least providing care). For example, admitting “comfort women” patients naturally meant sending them to the military base hospital or making them live in a group and conscripting them as laborers in the prisoners of war camps. There

were various methods that were unavoidable. It also seems like there was a possibility of transferring them which became inevitable with demobilization and subsequently with repatriation and the like.

Finally, from the start, “comfort women” were described as female civilian employees or a “preparatory troop attachments,” and they were directly under the management of the army. They belonged to the army and were not only engaged in simply sexual slavery, but engaged in a wide range of hard labor which the army assigned to them. But in the Japanese army, their identity as “comfort women” was never recorded. Only from the investigation of records of the prisoners of war camps by the United States Military do the markings of “comfort women” appear, albeit rarely. In addition, in the register (留守名簿) of the Japanese army camp, markings such as temporary extra nurse or employee (傭人) is used and it can be owed to a few testimonies of these stricken survivor’s that these identities have been confirmed.

Such evidence does point to “comfort women” being civilian employees because of their designated place in the military system. Military “comfort women” were legally and systematically viewed as military nurses and even if there was doubt, they were definitely considered military civilian employees after the war. Such discussion about the identity of “comfort women” does lend support in applying pressure to some Japanese governors, who have always denied their historical existence. The identities of these women victims, human rights issues, and the likes must be analyzed in more detail than before and one can only pledge that such research will continue in the future.

keywords

female civilian employee, Red Cross nurse attached to the army (i.e., military nurse), military “comfort women,” temporary special military nurse, Japanese imperial military system, register of names



한일 역사갈등 극복을 위한 국가 간 역사대화의 성과와 한계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

이신철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I. 머리말

1982년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가 한국 사회에 처음 대두되면서 한일 양국은 깊은 역사인식의 차이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후 양국 간에는 그 차이를 메우고 공동의 역사인식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2001년 등장한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중학교 교과서 역사왜곡은 한국 사회의 대응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두 나라가 본격적인 역사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면 1980년대의 무조건적이고 '전 국민적'인, 관 주도의 대응방식은 이미 낡은 것이 되었다. 시민사회는 양심적인 일본 시민사회와 손을 맞잡고 '역사왜곡'에 맞섰고, 중국의 '시민사회'와도 연대의 길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2003년 말부터 한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동북공정'이라는 복병이 나타나 중국과는 본격적인 역사대화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일본의

※ 투고일 2009년 3월 30일, 심사일 2009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4일.

식민·침략문제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역사대화는 활발해졌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개별 국가 간 역사인식의 충돌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동북아 역사문제로 시야를 넓히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2000년대의 이 같은 변화는 분명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반한 것이 틀림없다. 관 주도의 대응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일본 시민사회의 양심적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대의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세계사적 안목이 길러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한일 간의 교류를 왕성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단순한 대항논리에서 벗어나 대안을 직접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대안적인, 그리고 공통의 역사인식을 담은 책들이 적지 않게 출간되는 성과를 이룩하기도 했다.¹⁾ 이 중에는 이미 1980년대에 시작하여 10여 년의 교류 끝에 만들어진 것도 있었고, 2001년의 파동 이후 시작된 교류의 산물도 있었다. 그 중에 한중일 공동의 대안 교과서는 후자였다.

민간차원의 교류와 대안이 활발히 제시되는 한편에서, 정부 간 대응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1980년대에는 양국이 주로 포괄적인 교류기구의 창설과 활동에 관심을 보였다면,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구체적인 역사대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2002년 출범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사실상 한일 양국 간 역사대화의 본격적인 출발이었고, 2005년 이 기구가 제출한 공동보고서는 정부 간 역사대화의 시금석이 되었다.

국가 간 역사대화의 중요성은 이미 독일과 폴란드, 독일과 프랑스의 예에서 증명되었고, 한일 간에도 그러한 노력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독일의 사죄에 기반한 주변국과의 역사대화가 유럽공동체

1) 한일공동통역사교재제작팀, 2005, 『조선 통신사』, 한길사;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05,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신문사;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 2005,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울; 전국역사교사모임 외, 2006, 『마주 보는 한일사』, 사계절 등이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의 밑바탕이 되었듯이, 일본의 사죄와 식민주의 청산을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역사대화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국가 간 역사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높여 준다.²⁾

그럼에도 한일 정부차원의 역사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시민 간 역사대화에 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 사이에 많은 비평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다소 의외의 상황이다.³⁾ 현재에도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진행되는 중이고, 이 기구의 활동에 대한 정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중 눈에 띄는 것은 신주백의 연구, 기무라 간[木村 幹]과 정나미의 공동연구이다. 신주백은 동아시아형 교과서대화라는 틀 속에서 한일 간에 진행된 교과서 관련 모임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 속에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를 개괄적으로 분석했다.⁴⁾

기무라 간과 정나미의 연구는 정나미의 석사학위논문에서 기초한 것으로, 지도교수인 기무라 간과 공동저작했다. 기무라 간은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3분과 연구협력자로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의 논문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민간차원의 역사대화 그리고 국가 간 역사대화로서 1990년대의 한일역사포럼(한일역사연구촉진공동위원회)의 활동과 한일역사

2)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과정에서 역사문제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이들이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기봉, 2006, 『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푸른역사.

3) 이 중에 가장 많은 비평의 대상이 된 것은 『미래를 여는 역사』이다. 이 책에 대한 비평은 참가 당사자들의 회고와 비평(신주백, 2006, 『동아시아 역사 만들기』, 『창작과 비평』 132, 여름호 ; 오비나타 스미오[大日方純夫], 2006, 『한중일 3국 공통역사교재 제작에 있어서의 논의점』, 『歷史科學』 185 등), 한중일 학자들의 비평(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 2006, 『동아시아사의 가능성』, 『창작과 비평』 131, 봄호 ; 귀용후[郭永虎], 2005, 『評 동아시아의 근현대사』, 『歷史敎學』 502)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한중일 삼국을 넘어 유럽과 미국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알랭 들리센(Alain Delissen), 『신적벽대전-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에 대해서』,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o. 4, 2007. 이 글들은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 편, 2008, 『동아시아에서의 역사인식의 국경 넘기』, 선인에 실려 있다.

4) 신주백, 2008a, 『동아시아형 교과서대화』의 본격적인 모색과 협력모델 찾기 (1993~2006)』,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 편, 『동아시아에서 역사인식의 국경 넘기』, 선인.

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⁵⁾ 이들이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한일 간 역사대화가 아직 역사적 사실 확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양국의 민감한 여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스스로 해방을 쟁취했다는 ‘해방의 신화’에 기반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결론은 일면 타당한 면이 없지 않지만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의 연구가 전체적으로 일본 사회나 학계의 움직임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본 중심적 시각은 한일 민간차원의 역사대화에 참여했던 특정 연구자가 한국의 교과서 개편방향, 나아가 한국의 역사연구 방향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처럼 과대 해석하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⁶⁾

이 글은 앞선 연구성과들을 활용하고 비판하면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한일 양국의 대응과정, 그리고 기구의 구성과정과 문제점, 현재의 위상 등을 정리하고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1기 공동위원회가 내용은 보고서의 개괄적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한일 시민사회 간 대화 성과와의 접목 가능성, 한중일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인식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좁은 의미에서 정부 간 또는 국가 간 역사대화는 당국자 간의 협의나 실천,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연구자나 기구 간의 대화를 의미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정부가 구성원의 인선이나 장기적인 재정지원을 포함한 간접지

5) 木村幹·鄭奈美, 2008, 「『歴史認識』問題と第1次日韓歴史共同研究を巡る一考察」(一)·(二), 神戸大學大学院國際協力研究科, 『國際協力論集』 第16卷 第1・2號.

6) 예를 들어, 1980년대부터 민간차원의 역사대화에 참여했던 정재정이 한일 역사대화(1990년대 초반 한일역사교과서연구회 활동)의 경험을 반영하여 한국의 교과서 집필기준인 「국가교육내용전개의 준거안」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식의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이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 내 사회변동과 연구동향의 변화가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국가 간 역사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그러한 분석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원을 하는 경우도 정부 간 역사대화의 범주로 볼 수 있을 것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순수한 민간차원의 교류가 아니면서 정부 당국이 깊이 개입한 경우는 모두 국가 간 역사대화의 범주로 보았다.

II. 한일 국가 간 역사대화의 前史

한일 정부 간 역사대화는 역사가 그리 짧지만은 않다. 가능성만으로 따진다면 최초의 시도는 1965년에 있었다.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그해에 국제 유네스코가 프랑스-알제리, 독일-폴란드와 함께 한국-일본 간의 ‘국제 교과서 대화’를 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유네스코가 ‘국제 교과서 대화에 관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일본 연구자들이 국가개입에 대한 거부감과 한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세워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⁷⁾ 유네스코가 중재하는 역사대화를 민간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한일관계나 한국 측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국가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도는 한일 간 최초의 국가 간 역사대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국가 간 역사대화는 오랫동안 시도되지 않았다.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쟁점이 된 것은 역시 1982년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가 불거졌을 때였다. 한일 양국은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한일문화교류기금을 설립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⁸⁾ 물론 이 기금은 양국의 전국경제인연합의 기금 출연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설립

7) 木村幹·鄭奈美, 2008, 「『歴史認識』問題と第1次日韓歴史共同研究を巡る一考察(一)』, 神戸大學大學院國際協力研究科, 『國際協力論集』第16卷 第1號, 169쪽.

8) 한국 측은 1984년, 일본 측은 1983년 12월 출범했다.

당시부터 한일의원연맹의 지원과 원조가 있었다는 점, 외교부와 외무성 소관의 재단법인(공익법인)이라는 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간 대화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일한문화교류기금이 2002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설립 이래 일본 측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⁹⁾ 넓은 의미에서 이 기금의 설립은 정부 간 역사대화의 밑바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으로 이 기구는 1986년 4월 처음으로 한일합동학술회의를 개최한 이래 2008년 말까지 22회의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학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대화의 당사자이기도 하다.¹⁰⁾

1990년대가 되면서 양국 간에는 새로운 역사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한국의 한국교육개발원과 일본의 국제교육정보센터 간에 학술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1991년 첫 회의를 가진 이후 1994년과 1995년에 서울과 도쿄에서 연이어 회의를 개최했다.¹¹⁾ 두 기관은 각각 다른 나라의 교과서에 실린 자국의 이미지를 수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역사대화의 창구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일 정부 간 역사대화는 199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추진되었다. 배재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의 일부 지식인과 외교전문가들이 대화를 통

9) 한국 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파견된 6~7명의 공무원과 2~3명의 외부 전문위원으로 사무국을 구성하고 있다.

10) 이 시기에 민간차원의 역사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 측의 주도로 한일 역사연구자들 사이에 공동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일본 上越教育大學의 加藤章 등이 한국 측의 이원순·이민호·최덕수 등과 함께 해외학술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서울과 동경을 오가며 1987~1989년까지 4회에 걸쳐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일본국과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 서술에 관한 기초적 연구'라는 제목 아래 진행된 이 공동연구는 양국 역사교육관계자에 대한 권고안과 『공동교과서』의 시안을 마련한다는 큰 목표를 세우고 진행되었지만, 목표달성에는 성공하지 못했다(日韓歷史教科書研究會, 1993, 『教科書を日韓協力で考える』, 大月書店, 34쪽; 木村幹·鄭奈美, 2008, 7, 앞의 글, 171쪽).

11) 신주백, 2008a, 앞의 글, 59쪽.

해 양국 국민감정을 순화하고 문화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신뢰관계를 쌓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1993년 4월 ‘한일포럼’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양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같은 해 11월 경주에서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한일포럼을 제안하는 형식을 취해 결성에 이르게 되었다.¹²⁾ 한일포럼 첫 회의는 12월 6, 7일 양일에 걸쳐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그런데 이 포럼은 “양국 간의 현안문제들을 민간주도로 지식인끼리 허심탄회하게 논의, 미래지향적인 동반관계 구축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래지향의 동반관계 구축’이 주요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포럼의 첫 의제는 한일 국내정치 변화와 외교정책, 아태지역의 정치안보관계 속의 한국과 일본, 아태지역의 경제관계 속의 한국과 일본, 한일 간 협력증진 방안 등이었다.¹³⁾ 포럼의 구성원들도 정계 5명, 관계 4명, 재계 5명, 학계 9명, 언론계 5명 등으로 구성되었다.¹⁴⁾ 말하자면 이 기구는 역사문제를 빌미로 출발했지만, 한일 당국자와 지도자 그룹의 의견교환 창구 역할을 하는 정치적 기구인 셈이다. 이 포럼은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일 정부 간의 본격적인 역사대화는 일본에서 1994년 사회당 정권이 출

12) 「오늘 첫 회의 ‘한·일 포럼’ 배재식 한국측 회장(월요초대석)」, 『한국일보』, 1993. 12. 6.

13) 『한국일보』, 1993. 12. 7.

14) 출범 당시의 한국 측 구성원 28명과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경향신문』, 1993. 11. 28). 정계 : 김윤환 한일의원연맹회장, 정재문 국회의무통일위원장, 김덕룡 정부1 장관, 조순승·이부영 의원(민주) ; 관계 : 김시중 과학기술처장관, 정종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홍순영 외무차관, 이동훈 상공자원부차관 ; 재계 : 최중현 선경그룹 회장, 구자경 럭키금성그룹회장, 조석래 효성그룹회장, 김중원 한일그룹회장, 박상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학계 : 배재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회장), 안병준 연세대학교 교수(간사), 최상용 고려대학교 교수, 김형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김경원 사회과학원장, 차동세 산업연구원장, 현인택 세종연구소장, 손주환 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숙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언론 : 이문희 한국일보편집장, 남시욱 동아일보상무, 유근일 조선일보논설위원실장, 성병욱 중앙일보논설주간, 이청수 한국방송공사해설위원장 ; 자문위원 : 강성구 문화방송사장, 윤세영 서울방송사장, 나용배 의원(민자당),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

범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는 1995년 8월 15일 종전 50년을 맞아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연설은 이후에 ‘무라야마 담화’로 불리며,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차원의 대표적인 사과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¹⁵⁾ 그런데 당시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던 자민당 출신 관료들은 노골적으로 총리의 발언에 반대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부총리 겸 외무대신과 문부대신이 직접 나서서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전쟁을 미화했다. 급기야 무라야마 총리 자신도 10월 5일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산당의 요시오카 요시노리(吉岡吉典) 의원이 ‘한일합방조약의 강제성을 묻자, “한일합방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어 수립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해 물의를 일으켰다.¹⁶⁾ 당시 이 발언은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 사과까지 한, 사회당 당수 출신의 총리가 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한국 측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문제의 본질은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 문제였다.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체결 당시에도 ‘이미’라는 문구의 삽입과 그 해석을 두고 논란을 벌였던 문제였다. 양국은 상대의 해석을 암묵적으로 양해하고 문제를 덮어 덮으로써, 조약 체결에 성공했었다. 일본 측은 조약 체결 당시부터 “당시에는 형식적으로 어떻게 유효하게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종전이 됨에 따라 이미 이 조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그 해석을 되풀이한 것이었다. 반면 한국 측은 “한일합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만큼 이 조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했다.

15) 무라야마 총리는 한편으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민간차원의 배상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시아여성기금은 한국 측 관련단체와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사죄발언이나 아시아여성기금은 이후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 사회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16) 『경향신문』, 1995. 10. 11.

1995년은 종전 50년이면서 한일협정 체결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당시 김 영삼 대통령은 우호적인 미래관계를 강조하고 있었고, 이 문제를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당시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한 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정부는 욕을 먹더라도 냉정한 자세를 견지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냉정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일본 정부나 지식인들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¹⁷⁾ 결국 한국 정부는 무라야마 총리 발언에 대한 취소 또는 공식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공노명 외무장관을 통해 야마시타 신타로[山下新太郎] 주한 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무라야마 총리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감의 뜻과 함께 기본조약의 해석을 재고해 달라는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는 선에서 문제를 무마했다.¹⁸⁾

무라야마 총리의 발언이 양국관계를 급속히 냉각시키고 있던 이때,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당시 총무청 장관의 망언이 터져 나온 것이다. 그는 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식민지시대에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는 발언을 해 양국 간의 관계를 긴장시켰다. 한국의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자 그는 곧바로 자신의 발언을 취소했지만,¹⁹⁾ 무라야마 총리는 그를 해임하여 한국 측의 이해를 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15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한국 측은 일본 측에 역사인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책의 하나로 한일 민간차원의 ‘공동 역사인식을 위한 역사공동연구회(가칭)’를 만들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일본 측도 거기에 동의했다.²⁰⁾ 나아가 한국 측은 공동의 연구결과를 교과서에도 반영시켜 나가자고 제의했고, 일본 측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²¹⁾

17) 『세계일보』, 1995. 10. 13.

18) 『세계일보』·『한겨레』, 1995. 10. 13.

19) 『한국일보』, 1995. 11. 9.

20) 『한국일보』·『한겨레』, 1995. 11. 16.

21) 『동아일보』, 1995. 11. 16·20. 당시 연구결과와 교과서 반영이라는 한국 측의 주장

양국 외무장관의 합의 내용은 곧이어 열릴 한일 정상회담의 정지작업 성격이었고, 18일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연구위원회의 설립이 합의되었다. 다만, 회담에서는 순수 민간차원의 기구로 만든다는 합의에 그쳤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회담으로 넘긴 상황이었다.²²⁾ 이렇게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첫 공동연구기구의 출발이 예고되었다.

공동연구기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처음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한일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던 배재식 교수의 인터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무장관 회담 두달 전인 9월, 제3회 한일포럼 참석을 위해 내한한 일본 측 회장 오와다 히사시[小和田恒, 주유엔 일본대사]와 나눈 대담 와중에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역사전문가 공동위원회 설치”를 아이디어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오와다는 ‘흥미 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양국관계를 한국과 일본이라는 양국에만 국한해서 본다든지 기브 앤드 테이크, 혹은 제로섬 관계로 보는 시각을 청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과 “오히려 앞으로는 상대국의 변영이 자국의 변영과 안정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²³⁾

두 사람의 대화에서 당시 양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한국 측은 일본의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한일역사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다면, 일본 측은 한일관계의 상호관계나 미래관계를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의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한일포럼의 양측 회장이 주고받은 이 대화는 한일 역사분쟁 해결의 대안으로 정부 당국에 건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공동연구와 교사교류의 움직임 등도 공동연구기구 합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비교사·비교 역사교육연구회’와 한국의 역사교육연구회 사이의 학술교류, 1991년과 1992년 2년간 진행된 일본의 ‘일한역사교과서연구회’와 한국의 ‘국제교과서연구소’

에 대해 일본 측이 동의했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지만, 실은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2) 『동아일보』, 1995. 11. 20.

23) 『동아일보』, 1995. 9. 5.

간의 학술회의 같은 것이다.²⁴⁾ 1995년 8월 13일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일공동수업연구회'의 교사교류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었다. 이 모임에는 두 나라 교사 40여 명이 참가해, 교단에서 부딪히는 고민을 토론했다. 더구나 이 모임은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공동연구회를 개최하고, 향후 한일 근현대사와 환경문제 등 공동관심사를 주제로 특별활동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교과서를 만든다는 장기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다.²⁵⁾

1995년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된 공동기구 설립안은 그동안 다양하게 진행되었던 당국 간 교류와 민간차원의 교류에서 공통으로 제기되고 있던 공동연구와 공동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들이 반영되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 같은 흐름에 독일-폴란드 간의 역사대화 모델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1995년의 공동연구기구 설립 결정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공동연구기구의 설립 결정이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였다는 점이다. 당시 김영삼 정권의 기본적 시각은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5년 한일

24) 1995년 이전의 민간 역사대화의 경험은 두 가지가 주목할 만하다. 1982년 결성된 일본의 사회과교과서집필자간담회를 통해 독일·폴란드의 역사대화 경험을 고민해 오던 니시가와 마사오(西川正雄) 등을 중심으로 주변국가와의 역사대화가 제기되면서 민간차원의 교류가 모색되었다. 이들은 '비교사·비교역사교육연구회'를 결성하고 한국의 역사교육연구회와 학술교류를 시작했다. 이들의 학술심포지엄은 5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고, 범위가 북한과 베트남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적인 것이었다. 이 모임과는 별도로 1990년 일본의 '일한역사교과서연구회'와 한국의 '국제교과서연구소'가 결성되어 상호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1991년 3월 첫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1992년 3월과 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일본 측은 1993년 3월 보고서 발표와 함께 해체했고, 한국 측은 1994년 12월 공동보고서 발간 후에도 독자적인 국제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이들 모임에 관해서는 신주백, 2008b, 『한일 간 역사대화의 모색과 협력모델 찾기(1982~1993)』,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 편, 2008, 앞의 책, 29~42쪽.

25) 『한겨레』, 1995. 8. 14. 이 연구회의 일본 쪽 모임은 1994년 11월 도쿄지역 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 시민들이 결성하였다. 한국 측 모임은 일본 요코하미국립대에 유학 중 이들과 교류했던 안준모 교사(36·부천고)의 주도로 1995년 3월 결성되었다.

기본조약 체결 관련 외교문서 중 가급적 많은 자료를 공개하기로 하고, 12월 중순 한일 아주국장회의 때 일본과 실무교섭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11월 26일 “최근 과거사 망언파문을 계기로 양국에 설치하기로 합의된 역사공동연구회 활동을 돕기 위해서도 수교교섭 관련 자료가 대폭 공개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관련 자료들이 30년이 경과해 올해 공개대상이 된다”며 “최근 외교문서 공개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개 방침을 정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²⁶⁾

문제는 이런 결정들이 일본 측의 충분한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일본 정부는 역사공동연구가 어디까지나 민간주도여야 함을 강조했다. 정부주도의 공동연구가 진행된다면 “과거의 조약 등과 쌍방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다른 문제에 알력이 생기는 것은 필연”이라는²⁷⁾ 입장을 취했다. 일본 측은 공동연구가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논리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부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함께 한국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 또한 일본의 역사인식을 일반적으로 ‘바라잡아 주어야 한다’는 인식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이 모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합의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쉽겠느냐는 점이 지적되었다.²⁸⁾ 또 공동연구의 결과가 실제로 교과서 등에 반영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가 순수 민간차원에서만 구성된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기도 했다.²⁹⁾ 일본 측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우려들은 모두 일본 학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위원회가 얼마나 바

26) 『한국일보』, 1995. 11. 27.

27) 『朝日新聞』, 1996. 12. 2; 木村幹·鄭奈美, 2008, 「『歴史認識』問題と第1次日韓歴史共同研究を巡る一考察(二)」, 神戸大學大学院國際協力研究科, 『國際協力論集』第16卷 第2號, 123쪽.

28) 『동아일보』, 1995. 11. 20.

29) 『동아일보』, 1995. 11. 16.

로잡아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과, 정치적 개입 없이 교과서 수정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얽혀 있었다. 한일 간 역사논쟁의 해결은 역사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장기간에 걸친 공동연구의 축적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 또한 교과서 개정에는 정부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또한 권위 있는 연구성과들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집필자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 측의 주장 두 가지 모두가 지나치게 성급한 문제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사회에 광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국 측의 우려와는 별개로, 1996년 1월 출범 예정이었던 공동연구기구는 같은 달 한일 과거사 문제에 적극적이던 무라야마 총리가 물러나고,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가 새 총리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논의 자체가 뒤로 밀리게 되었다. 하시모토 총리는 1995년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식민지배를 미화한 『대동아 전쟁총괄』을 발간한 극우단체인 '전쟁유족회' 회장을 지내다가 한일 간에 과거사 파동이 일자 같은 해 11월 사임했던 경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또 매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며 과거전쟁이 일본의 침략전쟁이라고 단순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온 인물이었다.³⁰⁾

그의 이력과 정치성향은 공동연구기구의 출범을 힘들게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1996년 6월 23일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다시 한 번 공동연구기구의 설립이 확인되었다. 양국 정상은 빠른 시일 내에 민간지식인 각 5명씩으로 역사연구회의체를 구성해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³¹⁾ 그러나 공동연구기구의 실질적인 협의는 계속 늦추어졌고, 그해 11월 23일 양국 외무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서 다시 만나 1996년 말이나 1997년 초 양국의 대표위원 3명이 회담을 갖고, 1997년 초 1차 전체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³²⁾

30) 『국민일보』, 1996. 1. 6.

31) 『경향신문』, 1996. 6. 24.

32) 『세계일보』, 1996. 11. 24.

기구의 발족을 위한 첫 공식회의는 1997년 7월 15일에서야 개최되었다. 이틀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는 ‘한일역사연구촉진공동위원회’(일본측 명칭 日韓歴史研究促進に關する共同委員會)³³⁾ 운영위원회라는 이름하에 진행되었다. 한국 측에서 지명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장, 유명익 연세대학교 교수(국사편찬위원), 일본 측에서 스노베 료조[須之部量三] 교린대학교 객원교수(전 주한대사), 야마모토 다다시[山本正] 일본국제교류센터이사장, 오키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양국관계에 관한 역사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양국 역사연구·역사연구 문헌·역사를 둘러싼 양국 간 교류현황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차원의 역사연구를 촉진시켜 나갈 것에 합의했다.³⁴⁾

이후 위원회는 10월 12~13일 서울에서 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각각 13명의 위원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³⁵⁾ 위원 인선이 완료된 것은 해를 넘긴 1998년 3월이었다. 한국 측은 지명관 위원장, 유명익 연세대학교 한국학 석좌교수, 유근일 조선일보 논설주간(이상 운영위원), 김리나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김문환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성병욱 중앙일보 주필, 이기동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만열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이문희 한국일보 상임고문, 이원순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정구종 동아일보 편집국장, 차하순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등을 위원으로 구성했다.³⁶⁾ 한국 측 위원 구성은 여전히 학술연구보다는 일본 측과의 의견조율이나 정치적 대화에 무게 중심이 있는 인선이었다.

반면에 일본 측은 일본무역진흥회 아시아경제연구소 소속 연구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교 소속의 위원들로 구성했다. 물론 그렇다고 일본 측이

33) 언론에는 한일역사공동추진위원회, 한일역사공동위원회 등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34) 『서울신문』, 1997. 7. 17.

35) 『서울신문』, 1997. 10. 13 ; 『한국일보』, 1997. 10. 14.

36) 『동아일보』, 1998. 3. 15. 1차 전체회의(1차 한일역사포럼)가 개최될 당시에는 지명관·유명익·유근일이 운영위원이었고, 위원에서 이만열과 이태진이 빠지고 정재정이 추가되었다. 일본 측 위원명단은 木村幹·鄭奈美, 2008, 앞의 글 참조.

한국 측보다 연구에 적극적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역사포럼에 참여했던 정재정은 일부 일본 측 위원들의 경우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없었다고 회고했다.³⁷⁾

1998년 9월 26일과 27일 마침내 ‘한일역사연구촉진공동위원회’ 1차 전체 회의가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개최되었다. 동시에 1차 ‘한일 역사포럼’이 진행되었다. 양국 정상은 공동역사연구기구의 설립에 합의한 지 3년여 만이었다. 양국은 회의에서 근현대사에 대한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해 상호 연구·교육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 역사 전문가 양성, 사료센터 정비 등의 대책수립에도 합의했다.

표면적으로 위원회는 역사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위원회의 앞날은 순탄치 않았다. 우선 일본 측은 위원회의 활동이 “양국의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양국 관계를 연구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³⁸⁾ 교과서 개정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도 분명했다. 1997년 7월 일본 문부성은 한일 공동으로 역사교과서를 연구하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제의를 거부했다. 거부의 이유는 “정부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³⁹⁾

일본 측의 소극적 태도는 당시 자민당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전후 재평가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민당은 1993년 ‘역사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1995년 8월 15일 발표했다. 거기에 따라 일본에서는 자유주의 사관에 기반한 역사교과서 개정운동이 일어났다. 1997년 1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결성되고 중학교 교과서 집필운동이 본격화되었다.⁴⁰⁾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이러한 상황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37) 木村幹·鄭奈美, 2008, 앞의 글, 125쪽.

38) 『한겨레』, 1998. 9. 29.

39) 『문화일보』, 1997. 7. 31.

40) 자민당의 역사검토와 새역모 등에 관해서는 타와라 요시후미[俵義文] 저,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역, 2001, 『철저검증 위험한 교과서』, 역사넷 ; 이신철, 2007,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이런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정부자료공개, 쟁점에 대한 견해차 해소, 교과서 개정추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⁴¹⁾ 결국 양국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이다.

‘한일역사연구촉진공동위원회’는 2000년 5월까지 지속되었다. 두 번의 전체회의와 ‘역사포럼’을 통해 이들이 얻은 결론은 역사문제는 전문적인 역사가와 연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1999년 가을 한국 유성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최종보고서 및 제언」을 다음 해 5월 양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 제안 중 가장 주목되는 후속조치는 양국의 전문적인 역사연구자들 사이에 교류의 마당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⁴²⁾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의 차하순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와 일본의 기바타 요이치 도쿄대학 교수가 중심이 되어 2001년 한일역사가회의가 창립되었다. 이 모임은 한국사 전공자뿐 아니라 서양사·중국사 연구자들도 대거 참가시켜 좀 더 폭넓은 시야에서 한일 역사를 연구한다는 방침을 표방했다. 또한 “교과서 문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 역사인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⁴³⁾

이후 한일역사가회의는 2008년 현재까지 매년 1회 개최되고 있고, 최근에는 회의의 전야제격으로 진행된 원로들의 강연을 묶어 『역사가의 탄생』을 펴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모임 역시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거나 교과서 분쟁의 대안을 위한 한일 간 역사대화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한일 간의 본격적인 역사대화는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새롭게 전개되었다.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과 21세기 아시아평화」, 『한일 근현대 역사논쟁』, 선인 등 참조.

41) 『문화일보』, 1998. 10. 12.

42) 국제역사학한국위원회, 2008, 『역사가의 탄생』, 지식산업사, 머리말 참조.

43) 『한겨레』, 2001. 6. 28.

Ⅲ.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출범과 구성원

200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간의 역사분쟁에서 그 이전과 확연히 다른 측면은 정부 간 역사대화가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2001년 3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새로운 역사』(扶桑社)가 통과되면서 교과서 문제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을 구성하고(4월 12일), 5월 8일에는 35개항의 구체적인 수정 요구사항을 담은 「수정요구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⁴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 속에 양국 정부는 물밑대화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문제가 발생한 지 7개월여 만에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한일 간의 민간기구를 통한 역사연구로 문제를 해결할 것에 합의했다. 공식적인 합의는 2001년 10월 15일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합의에 따라 2002년 5월 25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이하 공동연구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동연구위원회는 이전에 양국 사이에 설치되거나 시도되었던 한일문화교류기금, 외곽 기구 간 협의, 한일포럼, 한일역사포럼, 한일역사가회의 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질적인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형식면에서 공동연구위원회는 정치적인 지원체(또는 개입기제)가 분리되어 제도화되었다는 특징을 지녔다. 정부 당국자들이 지원위원회라는 이름의 기구로 빠져나감으로써 공동연구위원회의 학술적 기능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반면에 지원위원회의 설치는 정부의 개입을 공식화하는 효과를 지니기도 했다. 두 기구 간의 소통 방법은 공동연구위원회 소

44) 한국정부는 1982년에도 「수정요구안」을 전달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에 관해서는 이신철·장신, 2001, 「2001년 한국의 교과서 운동과 향후 전망」, 『역사문제연구』 제7호 참조.

속의 학자 중 일부를 지원위원회에도 소속시키는 방식으로 마련하였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기구가 한일관계의 과거사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는 점이다. 기존의 협의체들이 주로 미래관계나 현안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거나, 사회 전반적인 문제, 또는 역사일반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었던 반면, 이 기구는 한일관계사의 입장에서 과거 문제, 특히 20세기 지배와 저항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다. 이 같은 변화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전문 역사연구자들의 직접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양국이 공유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점은 두 번에 걸친 유네스코의 중재가 실패하였음에도, 양국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공동기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이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은 것은 연구결과의 교과서 반영 문제였다. 한국 측은 여전히 결과물의 교과서 반영을 주장했고, 일본 측은 난색을 표했다. 이 기구의 출범 당시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양국의 차이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했다.⁴⁵⁾

일본이 한국과의 역사연구를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공동역사연구기구의 설립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제1기 공동연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을 때, 그 역할이나 결과물에 대한 양국 정부의 평가는 공개되지 않았고, 민간의 평가도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이즈미에 이어 총리직에 오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06년 10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공동역사연구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는 두 달 만인 12월 26일 중일공동역사연구위원회가 출범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과 일본 간의 공동기구 구성에는 합의가 있는 후 출범까지 7개월 정도가 걸린 데 비해 중일 간에는 불과 두 달여의 시간만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넓게 보자면, 한일 간에는 1995년 한일 정상회담의 합의로부

45) 『연합뉴스』·『한겨레』·『경향신문』·『동아일보』, 2001. 11. 16.

터 무려 7년여의 세월이 걸린 일이었다. 한일 간의 공동연구기구 설립과정에서 일본이 기술적인 방법을 익혔고 그것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당시 한일 간에는 공동연구위원회 제2기 출범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일본 측의 무성의로 그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한국과의 경험을 통해 그 정치적 효용성이 갈등요소보다 크다는 점을 느꼈기 때문에 중국과의 공동연구를 제안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 측이 한국처럼 교과서의 개정을 비롯한 일본의 역사인식의 '수정'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한일 간에 공동연구위원회 제2기 출범은 제1기를 마무리하면서 암묵적으로 동의되었던 사항이었고, 2005년 6월 20일 개최되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제2기 출범을 공식 합의한 바 있었다.⁴⁶⁾ 2005년 12월에는 한국 측이 이태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일본 측이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 교수를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⁴⁷⁾ 그럼에도 일본 측은 제2기를 출범시키지 않았고, 2006년 9월 새롭게 정권을 잡은 아베 총리는 위원장을 비롯한 제2기 위원들을 새롭게 인선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2006년 12월에 이르러 아베 정권은 지한파로 알려진 오코노기 교수를 대신해 도리우미 야스시[鳥海靖] 도쿄대학 명예교수를 위원장에 내정했고, 한국 측도 제1기 때 위원장대리를 역임하였던 조광 교수를 위원장으로 새로 내정했다.⁴⁸⁾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은 이태진 위원장 내정자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반면, 일본 측은 그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사실을 통해 제2기 공동연구위원회의 출범 지연이 “인선의 혼란 등 오로지 일본 측의

46) 「한일역사공동연구위 3년 결산-1기 한일 역사공동연구 뭘 남겼나」, 『동아일보』, 2005. 6. 1; 『매일경제TV』 2005. 6. 20.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신철, 2007, 「일본의 우경화 노선 강화와 한·일 역사논쟁-아베정권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0집 참조.

47) 『서울신문』, 2005. 12. 24.

48) 『共同通信』, 2006. 12. 26; 『세계일보』, 2006. 12. 27.

사정이 원인”⁴⁹⁾임을 주장해 정치적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 국가 간의 공동연구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문제에 국가의 개입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측이 한국사 관련 학회에 공문을 보내 대상자를 추천받는 형식을 취하고 교육부가 인선에 개입하는 형태를 띤 반면, 일본의 인선과정은 베일에 가려져 있고, 정권과 외무성의 개입에 대한 소문만 나도는 형편이었다. 제1기 공동연구위원회의 경우 한국 측은 운영계획과 인선과정을 교육부가 학계의 의견과 추천을 받아 주도했다. 또한 사무국을 교육부 관료들을 포함하여 독자적으로 구성했다. 반면 일본 측은 외무성이 관할하고 있던 일한문화교류기금에 사무국 역할을 맡겼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 동아시아과에서 작성했다.⁵⁰⁾ 일본 측은 민간주도의 연구를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이 사안을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이 공동연구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보다 더 정치적이라는 것은 출범과정의 신중함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구성에서도 엿볼 수 있다. 공동연구위원회의 구성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제1기의 경우 3분과(근현대사 부분), 제2기에서는 3분과와 교과서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분과와 위원회의 구성에서 양국의 입장차이가 미묘하게 드러난다.

한국 측은 제1기 출범 당시에 역사학자는 1명뿐이었고, 정치학자가 3명이 있었다. 곧이어 양국에서 1명씩이 추가될 때, 역사학자 1명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중간에 역사학자 1명과 정치학자 1명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중도 하차했다. 그리고 1명의 정치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이들을 대신해 2명의 역사학자가 보충되었다. 결국 마지막에는 역사학자 4명으로 분과를 구성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처음에 역사학자 1명, 정치·외교학자 3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역사학자 1명이 보충되었고, 정치학자 1명이 유엔차석대사로 파견되면서 중도 하차했다. 정치학자의 후임은 인선되지 않았다.

49) 「사설 : 우쓰노미야 일기, 괴로운 역사의 귀중한 증언」, 『朝日新聞』, 2007. 3. 1.

50) <http://www.jca.apc.org/asia-net/library/news020305.shtml>; 木村幹·鄭奈美, 2008, 앞의 글, 129쪽에서 재인용.

〈표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전공별 구성

분과	전공	한국		일본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위원장		역사	역사	정치	역사
1분과(고대사)	역사	3	3	3	3
2분과(중세사)	역사	3	3	3	3
3분과(근현대사)	역사	4	3	2	2
	정치·외교	(1)		2(1)	1
	기타		1(국제법)		1(경제사)
교과서위원회 (교과서소그룹)	역사		5		4
	정치·외교	미설치		미설치	1
	기타				

* 제1기 3분과의 경우 처음에 4명(양국 모두 역사, 정치 각 2명)으로 출발했다가 2002년 11월 역사학자 각 1명씩을 추가해 5명이 되었다. 중간에 한국 측 3명(역사1, 정치 2), 일본 측 1명(정치)이 사퇴했다. 이 중 한국 측이 2명의 역사학자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역사학자 4명이 되었다. () 안은 중도 사퇴 후 보충하지 않은 위원 숫자.

** 교과서소그룹은 일본 측 명칭.

양국 모두 출발시에는 역사학자가 1명뿐이었고, 1명씩이 보충되었을 때도 5명 중 3명이 정치·외교 전공자로 역사학자의 비중이 같았다. 다만, 일본 측 위원들 중 2명은 고이즈미 정권의 외교 고문역할을 하던 인물로 좀 더 정치적 활동과 비중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성격을 차지하더라도 이후 위원들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양국 위원 구성에는 그 비중이 변화가 생겼고, 시간이 갈수록 한국 측 역사학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게다가 한국 측은 출범 직전 정치학 전공의 위원장을 내정했다가, 역사학계와 시민단체들의 항의에 부딪혀 역사학자로 교체했던 전력이 있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본다면, 제1기 위원회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 정부 모두 이 위원회에 정치·외교적 성격을 부여하면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 측에서 가급적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는 시민사회나 역사학계의 입장이 점차 반영되어 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근대 이후

한일관계에 대해 한국 측은 식민지배의 문제로 축약되는 역사인식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일본 측은 식민지 시대의 정치·외교적 성격규명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역사분쟁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일본 측이 역사인식의 공감대 형성보다는 양국 역사분쟁의 완충적 공간으로 위원회를 활용하고 싶어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 측은 연구결과의 교과서 반영이나 일본 중학교 교과서 연구 등을 주장하면서 정치·외교적인 성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면에서는 점차 실질적인 역사인식의 접근을 향해 가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2기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양국의 입장차가 ‘교과서위원회’의 설치를 둘러싸고 충돌하였다. 우선 교과서위원회가 분과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것은 교과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꺼린 일본의 입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위원회 명칭도 거부하고 소그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용어 사용에서도 교과서연구팀의 위상을 격하하려는 일본 측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정서는 2005년 6월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표출된 바 있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는 제2기 공동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산하에 ‘교과서연구위원회’를 설치해 양국이 역사교과서를 공동연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사전 실무협의 과정에서 ‘공동연구 결과를 반드시 교과서 기술에 반영하자’는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1년 후소샤(扶桑社)의 역사왜곡 사태와 2005년 자민당 핵심세력의 후소샤 교과서 채택 지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가 교과서 서술에 직접 개입해 줄 것을 직설적으로 요청했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를 둘러싼 한국 국민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며 그 위에서 미래를 향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양국 미래관계에 중요하다”라거나,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나라 간에는 전체를 보면서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교류를 확대시키면서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원칙적이고 우회적인 답변만 되뇌었다.⁵¹⁾ 제2기 공동연구위원회 교

과사위원회의의 명칭과 위상은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교과서 문제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는 그 구성원들의 전공분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 측은 모두 역사학 전공자로 배치하면서도 정부기관에서 오랫동안 교과서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구성원에 포함시켰다. 반면에 일본 측은 4명의 역사학자와 1명의 정치학자를 배치했다. 한국 측이 교과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사업의 토대마련 의지를 내보인 반면, 일본 측은 교과서 문제의 '학술적'·'정치적' 접근, 즉 완충적 기능만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의 시각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우선 한국 측이 교과서 문제를 주로 근현대 한일관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한국 측은 20세기 한일관계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사이면서 한국의 저항운동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 일본 측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교과서 문제는 곧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문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문제보다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즉 세계사적 관점에서 제국주의 시대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현재 공동연구위원회를 바라보는 한국 측의 입장은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교과서 반영을 성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일본 측은 민간차원의 학술적 연구를 내세우면서도, 그 결과의 정치적 파장이나 완충기구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치학자들을 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각 차이의 극복문제는 결국 현재의 공동연구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국가 간 역사대화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한국 측은 끊임없이 식민지 사과와 범죄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51) 『동아일보』, 2005. 6. 21.

없을 것이고, 일본 측은 식민지 수혜론 또는 식민지 근대화론적 시각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측이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한국 교과서의 일본 관련 서술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간 역사대화에서 상호인식이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러한 상황은 이미 제2기 공동연구위원회 교과서위원회의 대립 상황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일 국가 간 역사대화가 다음 단계의 성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구성이나 주제선정의 과정에서 양국의 정치적 시각 차이를 줄여야만 한다. 일본 측은 한국이 왜 그리 식민지 경험과 그 극복 노력을 중요시하는지, 왜 그것을 교과서 문제와 동일시하는지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한국 측은 식민지 지배의 범죄사실만이 한일 역사논쟁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 교과서의 일본 인식에 관한 연구 강화는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결국 세계사적 의미에서, 또는 제3자적 시각에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노력이 한일 양국에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과 주변국의 역사대화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독일의 전쟁범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정한 위에서 진행된 역사대화가 실질적인 화해의 길을 열어 주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 측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제3국의 시각에서 인정할 수 있는 보편성의 문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 때 역사대화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 일본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교육 노력이 그러한 결과를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위원들의 인선과정과 분과 설치과정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IV. 공동연구위원회의 연구방법과 결과물

제1기 공동연구위원회는 2002년 5월 25일부터 2005년 3월 26일까지 3년간 6회의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각 분과별로는 1분과 20회, 2분과 12회, 3분과 14회의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 중 1분과는 11회의 연구발표회, 2회의 좌담회, 3회의 편집회의를 진행했다. 2분과는 4회의 연구발표회와 2회의 편집회의를 진행했다. 3분과의 경우 9회의 연구발표회와 한 차례의 비평회를 개최했다.⁵²⁾

그 결과 공동연구위원회는 연구결과를 여섯 권의 보고서로 내놓았다. 제1권은 고대사(1분과), 제2권과 제3권은 중세사(2분과), 제4·5·6권은 근현대사(3분과) 편으로 이루어졌다. 각 분과별 게재 형식은 각각의 특징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형태로 구성되었다.

1분과의 경우에는 주제논문, 좌담회, 후기의 형식을 취하였다. 2분과의 경우에는 연구사, 주제논문과 각 논문에 대한 토론 녹취문, 부록 논문의 순서로 배치했다. 그리고 2분과는 다른 분과와 달리 한일 양측의 논문을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 게재했다. 3분과의 경우에는 각 주제별 논문과 거기에 대한 비평문을 순서대로 수록했다.

각 주제논문은 1분과의 경우에는 한일 연구위원 각 3명, 전체 6편의 논문을 실었다. 2분과와 3분과는 공동연구원(일본 측 명칭 : 연구협력자)을 두어 주제논문을 추가했다. 2분과는 한일 각 4명 총 8명의 논문을, 3분과의 경우에는 한국 11명, 일본 12명, 총 23명의 공동연구원 논문을 게재했다. 각 보고서에 실린 글을 분과별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각 분과별로 최종보고서에 실린 논문(연구사, 주제논문, 보조논문)의 숫자는 각각 6개, 18개, 31개이다. 그리고 좌담과 토론문이 각각 4개, 비평문이 26개,

52) 이하 정보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한일역사공동연구 보고서』 제1권~제6권 참조.

〈표 2〉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공동보고서 분과별 논문 게재현황

형식 \ 분과	1분과		2분과		3분과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연구사			3	4	1	1
주제논문	3	3	4	4	13	14
보론			1	2	1	1
토론문(녹취)			4			
비평문/답변					14/9	12/8
좌담회(녹취)	3+1					
후기	3	3				
합계	16(6+6+4)		22(8+10+4)		74(38+36)	

* 1분과 좌담회 녹취록 3개는 주제논문별 토론, 나머지 하나는 총론적 토론.

** 합계 () 안의 숫자는 한국·일본·공동논문의 수.

비평문에 대한 답변이 17개이다. 1분과와 2분과는 좌담과 토론회의 형식을 빌려 논문에 대한 상호 토론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실었다. 특히 1분과는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까지 진행했다. 반면, 3분과의 경우는 비평회를 개최하기는 했지만,⁵³⁾ 그 결과를 보고서에 실지는 않았다. 다만, 각 연구위원들이 주제논문을 자신들의 담당주제에 따라 나는 다음 각각 비평문을 달았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각 논문의 작성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달기도 하고 달지 않기도 했다.

연구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각 분과는 대주제와 소주제의 선정 과정이나 활동의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했고, 각 분과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주제 선정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그 차이가 좀 더 명확해진다. 제1기 공동연구위원회에서 다룬 전

53) 비평회는 2005년 2월 4~5일 양일간 도쿄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각 논문 집필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양측 연구위원 7명만이 참석했다(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앞의 책, 제4권, 14쪽).

〈표 3〉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연구주제

분과	대주제	비고
1분과 (고대사)	4세기의 한일관계(광개토대왕릉 비문) 5세기의 한일관계 6세기의 한일관계(가야)	두 명의 Guest Speaker가 고고학 분야와 관련된 보고를 진행했다.
2분과 (중세사)	위사 임진왜란 조선통신사	각 4명씩의 공동연구원을 두어, 연구사와 주제논문 각 1편씩을 연구했다.
2분과 (근현대사)	근대한일관계 연구사 근대한일 간의 상호인식 한일 간의 조약 문제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그 근대화 러일·청일전쟁과 한반도 식민지배의 구조와 조선인의 대응 식민지배와 사회 변화 식민지배와 경제 변화 전시체제하의 총동원 조선주둔 일본군 한일국교 정상화 한일경제교류 북일관계의 제 문제	* 총 11명의 공동연구원을 두고 전체 주제를 소화했다. * 대주제 중 연구사와 상호인식은 상호 비평문을 작성하지 않았다. * 13개 주제명은 처음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서 일부 문구가 수정되었다. 여기에는 보고서에 실린 주제명을 소개한다. (예,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근대화 →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그 근대화) ⁵⁴⁾

* 한일 양측은 각기 대주제와 연관된 소주제와 외부연구자를 지정하여 독자적인 연구발표회를 진행했다. 한국 측은 그 결과를 『한일관계연구논문집』(전 10권, 경인문화사, 2005)으로 발간했다.

체 대주제는 〈표 3〉과 같다.

각 분과별로 본격적인 연구발표와 토론을 진행한 시기는 상이하다. 1분과의 경우는 2차 공동회의(2002. 7. 13)에서 연구주제를 확정하고 3차회의(2002. 10. 29) 때 이미 연구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2분과의 경우는 2차회의(2002. 7. 7)에서 주제는 확정하였지만, 이후 두 차례의 회의에서 연구발표 형식과 회의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발표 토론은 4차회의(2003. 3. 21)에 가서야 시작되었다.

54) 양측의 초기 합의 주제명은 신주백, 2008a, 앞의 글, 77쪽 참조.

3분과의 경우는 주제와 합의과정이 가장 험난했다. 2차회의에서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을 합동조사하는 등 출발은 순조로운 듯이 보였지만, 3차회의에서 통역의 자격문제로 회의는 유회되었다. 당시 일본 측은 두 차례나 한국 측 통역으로 참가한 사람의 활동이 교과서 관련 시민단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통역자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회의는 유회되었다. 한국 측 위원들은 이 같은 일본의 태도를 매우 부당한 것으로 여겼다. 정나미의 설문조사에서 일본 측의 과민한 태도가 한국 측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 연구위원도 있었다.⁵⁵⁾ 결국 3분과는 6차합동분과회의(2003. 5. 24)에 이르러서야 정상적인 발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⁵⁶⁾ 합동연구회의 주제와 형식을 합의하는 데 전체 3년의 연구기간 중 1년, 전체 14회의 합동회의 중 5회가 필요했던 것이다.

1분과를 제외한 두 분과는 주제선정과 향후 회의 진행형식 등의 문제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분과의 경우가 민감한 것은 교과서 문제의 대부분이 근현대 역사인식에 집중되어 있었고, 식민지배와 관련한 현안들이 각 방면에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3분과의 주제선정은 거의 대부분의 쟁점사항들을 연구주제로 삼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이 점은 위원회의 장기 존속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를 전부 검토해야 한다는 부담이 제1기 위원회에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범한 주제선정은 주어진 시간 내에 연구를 완료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3분과의 경우에는 아홉 차례의 회의를 통해 13개의 주제를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도 위원회의 활동기한을 1년간 연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양측은 사료집과 연표 등의 부가 작업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시간상의 제약으로 공동의 결과물을 생산해 내지 못했다.⁵⁷⁾ 계획되

55) 木村幹·鄭奈美, 2008, 앞의 글, 130쪽.

56) 각 회의의 간단한 내용은 위원회 각 보고서 앞쪽의 분과별 활동보고 참조.

57) 한국 측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사료집과 연표를 발행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일 과거청산 소송자료집』(전 10권, 경인문화사, 2005)을 간행했고, 『러시아 신문 '새시대' 기사자료집』 등의 비매품 자료집을 간행했다. 또 한국역사공동연

었던 토론회는 비평회로 대체되었다. 그마저 위원과 공동연구원이 모두 참석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평을 수행할 수 없었다. 집필자 없는 토론은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3분과는 각 연구위원들의 비평문을 주고받고 거기에 대한 필자들의 답변을 신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같은 시행착오는 향후 주제선정이나 그 진행방법의 변화가 필수적임을 말해 주고 있다.

반면에 1분과와 2분과의 경우는 좌담회와 후기, 토론문 등을 통해 한일 양국 연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차이점을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내는 결과물을 내놓았다. 1분과의 좌담회 내용은 각 시대별 논문에 대한 비평형식의 토론과 '새로운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를 위한 좌담회'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좌담 녹취록 뒤에는 연구위원 6명이 공동연구 활동을 마친 소감을 실었다. 2분과의 경우에는 토론문을 통해 당시의 격했던 토론현장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이들 세 분과의 활동이나 결과물은 한일 양국 간 처음으로 시도된 역사대화가 가지는 몇 가지 한계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전면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의 문제이다. 이는 형식에 대한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용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 측은 공동연구위원회의 출발이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교과서 문제가 본질이며, 장기적으로는 공통의 역사인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연구에서 그것은 스스로의 발언과 연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다.

한국 측 조동걸 위원장은 "교과서 문제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일반 역사적 인식과 이해에 대한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 것을 위원회의 태생적 '문제점'으

로 지적했다. 또 그로 인해 “역사교과서에서 제시된 모든 문제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⁵⁸⁾ 위원회의 목표가 교과서 문제의 해결 또는 그 문제의 소재를 밝히는 데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 측은 교과서 문제보다는 공통의 역사인식을 위한 기초연구를 강조했다. 일본 측 미타니 다이이치로[三谷太一郎] 위원장은 “공동연구는 처음부터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 사이에 행해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좀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상위와 대립을 통해 하나의 ‘학문공동체’가 생겨난다고 한다면 그 문화적 또는 문명적 의의는 극히 크다”는 말로 제1기 위원회의 성과를 평했다. 또한 그는 자신도 참여했던, 1969년 일본과 미국 간에 진행된 ‘일미개전전 10년의 일미관계사’ 연구의 성공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미 쌍방 연구자가 완전히 개인으로 참가하여, 1국사적 관점을 초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가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⁵⁹⁾

제1기 공동연구의 결과는 역시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차이가 드러났고 충돌이 야기되기도 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1분과의 경우에는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충돌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표면적으로 그것은 한국 측 위원들의 발언에⁶⁰⁾ 대해 일본 측이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었다. 그

58)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앞의 책, 「한국측 위원장 서문」.

59)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앞의 책, 「일본측 위원장 서문」. 그가 소개한 책은 『일미관계사-개전에 이르기까지의 10년』 전4권, 동경대학출판회, 1971; *Pearl Harbor As Hist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

60) 김현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연구회가 시작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역사교과서의 왜곡문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고구려사 문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도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 문제, 그것도 결국은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처럼 역사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앞의 책 제1권, 499쪽.
노중국: “모임의 시발점 자체는 일본 중·고등학교 교과서 문제가 촉발제가 되어서 이런 모임이 가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연구회를 진행해 오면서 한일 양국의 학자들 사이에 이런 학술적인 모임이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앞의 책, 503쪽.

러나 좀 더 심층적으로는 이들이 동일한 주제를 두고 긴 시간을 토론했을 뿐 아니라, 현장답사를 통한 교류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한다. 연구위원들의 개인적 성향도 물론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분과의 적극적인 활동은 2005년 2월 공동연구위원회가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면담시간을 가졌을 때, 총리가 직접 1분과의 연구 결과를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다만, 그는 1분과의 경우 한일 간 역사인식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언급해 연구결과를 과대해석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언급은 한일 간 역사인식의 대립보다 공통점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연구위원회의 성과를 치하한 성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한일 간 역사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본 측의 논리를 두둔하는 성격이 강했다.⁶¹⁾ 1분과의 경우도 임나일본부설과 같은 민감한 쟁점에서는 양측의 인식이 좁혀지지 않았음에도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서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이즈미 총리의 언급은 한일 간 공동연구가 한일 역사대립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치성을 부여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분과의 경우에는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해 아예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문제의 발단은 두 번째 연구발표회(제7차 한일합동회의, 2003. 9. 20)에서 한국 측 공동연구원이 교과서의 서술 문제를 직접 발표문에 언급한 것이었다. 일본 측은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교과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합의사항에 어긋나는 사항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합의서에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기술에 대해서, 뭐가 발언을 한다는 것은 써 있지 않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국 측은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과 공동연구위원회가 교과서 문제로 인해 발족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오랜 논란

61) 필자는 공동연구위원회 한국 사무국 전문위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은 필자의 기억에 근거한 것이다. 다음 날 한일의 언론들은 고이즈미 총리가 제안한 한일 정상회담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의 일부 언론만이 작은 기사로 고대사분과의 연구결과에 한일 간 차이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루었다.

끝에 회의는 1시간 정도 정회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회의는 속개되었지만, 일본 측은 녹음을 정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⁶²⁾

2분과의 경우 상호 감정대립은 이후에도 표출되었다. 제3회 연구발표회(제9차 한일합동회의, 2003. 12. 20)에서 한문중 공동연구원의 발표가 있은 후 일본 측 공동연구원 이토[伊藤幸司]는 발표문의 논문인용 형식을 문제 삼았다. 이토 자신이 논문에서 인용한 사료들을 발표자가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논란 끝에 발표자가 논문 수정시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일본 측은 “이토씨의 연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논리는 세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는 것은 좀 …… 논문을 작성하신 방법에 꽤 문제가 있다”, “역사학 연구에 있어서의 태도 문제”라는 등 자극적인 발언을 계속했다. 한국 측도 “논문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쓰신 분이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했으면 됐지, 지금 여기에서 무얼 원하시는 겁니까”라는 감정적인 발언이 튀어나왔다.⁶³⁾

2분과의 이 같은 충돌은 3분과의 활동이나 전체회의 석상에서도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었다. 통역자의 자격 문제, 회의 내용의 기록, 사무국 요원(한국 측 전문위원 포함)의 회의참가 문제 등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 측은 통역자의 경력까지 문제 삼았는데, 이는 통역자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통역에 참가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민감한 태도임이 분명했다. 한 위원의 지적처럼 그것은 신뢰의 문제였다. 이 사건은 비록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두 차례나 발생했다는 점과 일본 측이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후 위원회 공동연구의 분위기를 상호 불신과 대립의 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에 충분했다.

일본 측의 이 같은 태도는 중간평가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한국 측이 노트북을 이용해 기록하고 있는 것에 항의해 회의를 중단시킨 사례에서도 확인된

62)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앞의 책 제2권, 245~251쪽.

63)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앞의 책 제2권, 167~175쪽.

다.⁶⁴⁾ 결국 이 문제는 일본 측 위원장이 공식 사과하는 파행으로 마무리되었다. 일본 측이 기록에 특히 민감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록의 공개는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했다는 점과 당시에 사무국 요원을 비롯한 양국의 참석자들이 자체적인 요약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불신에 기초한 지나친 대응이었다.

지나치게 민감한 한일 양국의 태도는 공동연구위원회 전체 분위기를 항상 긴장관계로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연구보고서에서 비교적 충돌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난 1분과의 경우에도 좌담회 기록은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풀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분과의 경우에도 불필요한 조사나 간단한 말실수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1·2분과의 좌담회나 토론문의 수정은 있을 수 없었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통상 공동연구나 토론문을 보고서나 단행본 등에 실는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일정한 수정을 가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1기 위원회가 가졌던 이 같은 문제는 제2기의 활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오히려 교과서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 더 노골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2008년 6월 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차 전체회의 직전의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인식차이가 그대로 공개되었다. 당시 일본 측은 회의 모습 기록을 위한 언론사의 간단한 촬영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정재정 한국 측 총간사는 기자회견에서 공동연구위원회 “출발의 배경이 바로 역사교과서가 발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제2기 위원회가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하라다 다마키(原田環) 일본 측 총간사는 다른 분과와 달리 근현대사를 다루는 제3분과에서는 연구주제를 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사실과, 그것이 “교과서 대조 확인 작업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제 식민시대에 대해) ‘억압과 저항’이라고 하는 것 같은 지금과 같은 역사인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인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64) 공동연구발표회 및 제5차 전체회의(2004년 6월 4일, 서울 올림픽아 호텔).

이에 대해 주진오 제3분과 한국 측 간사는 “억압과 저항이라는 부분을 연구함과 동시에 그 밖에 다양한 부분을 함께하겠다는 것이지 아까 표현상에서 ‘억압과 저항이 아닌’ 이런 식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그 자리에서 비판했다. 당시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용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양국 간 역사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던 시점이라 더욱 민감한 반응들이 터져 나왔던 것이다.⁶⁵⁾

공동연구위원회로 표상되는 양국 간 역사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어떻게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공개된 제1기의 연구방식은 실질적인 공동연구로 보기 어렵다. 엄밀히 말해, 매번 다른 주제를 두고 공동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것을 모아놓은 정도이다. 물론 1·2 분과의 경우에는 그나마 토론을 통해 서로의 차이점이 좀 더 명확해졌지만, 3분과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된 토론만이 진행되었고, 그 토론의 내용도 공개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 상호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1기의 연구성과물이 잘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관계사 연구를 어떤 차원에서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도 과제로 제기되었다. 한국사 전공자와 일본사 전공자가 적절한 선에서 배합되었을 때, 또는 상대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공동연구의 효과도 커진다는 사실이 위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⁶⁶⁾

그 밖에 공동연구나 주제의 접근방식에서도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토론이나 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공동연구는 아직 요원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상호인식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을 모색하려는 시도도 중요한 방법론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도는 이미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일 시민사회 간 역사토론

65) 「한일역사공동위, 교과서 문제로 가시밭길」, 『YTN 뉴스』, 2008. 6. 8.

66)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앞의 책 제1권, 「새로운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를 위한 좌담회」, 496~511쪽.

의 경험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⁶⁷⁾ 2005년을 전후해 한일 시민사회가 내놓은 공동연구의 결과물들이 장기간의 연구와 수없이 많은 토론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결과물은 상호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보다 공통점만을 강조한 것이 오히려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그런 공통점의 발견이 대부분 일본의 제국주의적 범죄행위와 전쟁범죄에 대한 비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 간 대화에서 양국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앞으로의 역사대화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경험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양국이 공통의 역사인식에 접근해 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일본 측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일정하게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향후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 논의에서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욱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국가 간 역사 대화와 시민차원의 역사 대화의 경험 공유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공동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 가운데 시민사회 차원의 교류 경험을 가진 위원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대목이다. 개인의 경험 또한 위원회의 활동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제1기 공동연구위원회의 경우에 정재정과 오코노기 마사오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시민사회 차원의 역사 대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첫 정부 간 역사 대화라고 할 수 있는 한일역사포럼에 참여 경험을 가진 위원은 한국 2명(이만열, 정재정), 일본 3명(오코노기 마사오, 요시다 미쓰오[吉田光男], 하라다 다마키) 총 5명이었다. 이전에 한일 역사 대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경우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다 자율적인 시민차원의 교류 경험을 가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67) 이 글에서는 한일 시민사회 간 역사 대화의 성과물과의 비교를 시도하지 못했다. 이 두 결과물들에 대한 분석과 상호 비교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여기서는 분량상의 제한으로 다음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그런데 제2기 위원회에 정재정이 총간사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반면, 일본 측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던 오코노기 마사오가 정권에 의해 탈락했다는 사실은 일본 정부가 시민차원의 교류보다 국가차원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1기 위원회에서 기존의 역사대화 경험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합과 상호 이해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역시 국가 간 대화의 한계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 간 대화의 경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 차원의 대화 경험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제기된다.

시민사회와 국가차원의 역사대화의 경험교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적인 교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민사회의 교류 경험을 국가차원의 공동연구위원회 속에 활용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나 간담회 같은 것을 공식화하여 의사소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한일 양국의 학계 의견을 광범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연결된다. 학계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위원의 인선과정에 정부 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연구자(또는 연구협력자)에 대한 인선과정에서도 좀 더 객관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공동연구자들의 역할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제1기의 경우 연구결과물에 그들의 저작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의 선발과정에 연구위원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작용했다는 지적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⁶⁸⁾

위원 인선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위원회 활동의 공개성이다. 현재까지 위원회는 활동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들의

68) 이러한 문제점은 일본이 특히 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木村幹·鄭奈美는 설문조사 결과 연구협력자들의 인선에 인맥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木村幹·鄭奈美, 2008, 앞의 글, 128쪽).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위원들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연구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양국 간 또는 국가별로 주제별 쟁점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각국은 분과별로 소규모 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좀 더 확장하여 학술연구자들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학술회의 형식을 도입할 필요가 제기된다. 최소한 연구결과에 대한 공동토론회가 공개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쟁점에 대한 상호 인식의 접근을 위해서도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차원의 역사대화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도 가능하게 하여 현재의 단기 공동연구위원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V. 맺음말

한국과 일본의 국가 간 역사대화는 1982년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이 발단이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02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구성으로까지 이어졌다. 양국 간에 실질적인 공동연구기구가 설립되기까지는 실로 오랜 기간이 필요했다. 1995년 11월 양국 정상 간에 공동연구기구의 설립이 최초로 합의되었음에도 온갖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양국 간의 역사인식 차이가 그만큼 컸던 것이다. 그나마 1980년대 초부터 한일문화교류기금의 설립, 한일 정치가·기업가·언론인·학자 등으로 구성된 한일포럼, 한일의 역사가들로 구성된 한일역사가회의, 외곽기구를 통한 실무차원의 교과서 수정협의 등의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2년 양국은 한일공동연구기구의 설립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 측은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런데 제1기 위원회의 연구결과는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점에서 한국 측의 주장은 현실성을 가지지 못했다. 다만, 제2기 위원회에서 교과서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장기적으로 더욱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국가가 지원위원회나 사무국의 형태로 개입하고 있는 조직상의 특징도 장기적으로는 문제 해결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공동연구위원회의 독자적 연구기능이 명확히 전제되고 국가의 역할은 순수 지원에만 한정될 때만 가능한 이야기이다.

반면, 일본 측은 민간의 연구는 연구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국가가 교과서의 내용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은 공동연구위원회의 연구성과나 활동 그 자체의 정치적 효용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측은 한일, 중일 간 역사분쟁의 실질적 해소보다는 일본의 국가적 이해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술적 연구를 통한 유화국면의 조성을 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제1기 공동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와 현재까지의 제2기 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한일 간의 입장은 충분히 드러났고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공동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몇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기 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보고서와 위원회의 활동은 양측 입장 차이가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 입장보다는 일본의 입장에 가까운 결과로 귀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공동의 보고서에 일본 측의 입장을 충분히 담은 연구결과물들이 같은 비중으로 실렸다는 사실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측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인식을 공식적으로 — 정확히는 한국 사회에 — 국가차원에서 표명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측 역사왜곡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를 책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정임에 틀림없고, 연구와

토론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오히려 국가 간 역사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교과서 분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동연구위원회에서 교과서 관련 쟁점을 직접 다룰 수 있고, 교과서 개선의 대안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한국 교과서에 대한 성찰과 연구이다.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의 교과서나 역사인식의 문제를 거론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가 학술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국사 관련 교과서 제도나 서술상의 문제점들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공동연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공동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스스로 애국주의와 국가주의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가의 개입과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느끼는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공동연구위원회는 활동 전반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그러한 부담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특히 일본 측 위원들이 그러한 경향을 농후하게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과정에서 쟁점별로 한일 연구자들에게 공개된 형태의 토론회를 수시로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연구위원들에게 ‘국가대표’라는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 장기 지속적인 그리고 일관된 계획 속에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는 양국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단기적이고 분절적인 공동연구위원회가 가진 한계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비록 외교적인 또는 충돌적이지 않은 성격의 것이긴 하지만, 몇몇 모임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에서도 장기 지속적인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제2기 공동연구위원회 종료 후 또는 그 이전에 한일 간에 공개적인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기존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기적

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공동연구위원회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매우 많다. 또한 국가 간 역사분쟁은 주권, 국민, 영토라는 근대 국민국가의 3요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각국 정부의 대응은 대립적일 수밖에 없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한일 정부 간 역사대화가 갈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하다. 양국 정부 간의 역사대화는 상호 신뢰와 상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바탕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그러한 대립과 갈등은 이미 양국 시민사회 간 역사대화의 경험들에서 그 해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대화 당사자들 간에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공통의 역사인식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시민사회 간 대화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공통의 인식 찾기에 치중하고 있는 점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 정부 간 역사대화의 성패는 시민사회 간 대화의 성과들을 공동연구에 얼마나 잘 적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유럽의 역사대화 경험이 독일의 전쟁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그것이 유럽의 국가들에게 수용되어 가는 과정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일의 국가 간 역사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대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아직 공동연구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고민이 논의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또한 한일 간 역사대화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참고문헌

- 국제역사학 한국위원회, 2008, 『역사가의 탄생』, 지식산업사.
- 귀용후[郭永虎], 2008, 「評 동아삼국의 근현대사」, 『歷史教學』 502.
- 김기봉, 2006,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푸른역사.
- 신주백, 2006, 『동아시아 역사 만들기』, 『창작과 비평』 132 여름호.
-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 편, 2008, 『동아시아에서의 역사인식의 국경 넘기』, 선인.
- 이신철, 2007,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과 21세기 아시아평화」, 『한일 근현대 역사논쟁』, 선인.
- 전국역사교사모임 외, 2006, 『마주보는 한일사』, 사계절.
- 한국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위원회 제3분과, 2006, 『근현대 한일관계 연표』, 경인문화사.
- 한일공동역사교재제작팀, 2005, 『조선 통신사』, 한길사.
-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 2005,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한일역사공연구 보고서』 제1권~제6권.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2005, 『대일 과거청산 소송 자료집』 전 10권, 경인문화사.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위원회 제3분과, 『러시아 신문 ‘새시대’ 기사자료집』.
-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05,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신문사.
-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 2006, 「‘동아시아사’의 가능성」, 『창작과 비평』 131 봄호.
- 木村幹·鄭奈美, 2008, 『歷史認識 問題と第1次日韓歷史共同研究を巡る一考察』(一)·(二), 神戸大學大學院國際協力研究科, 『國際協力論集』 第16卷 第1·2號.
- 알랭 들리센(Alain Delissen), 2007, 「신적벽대전-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에 대해서」, *Vingt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o. 4.
- 오비나타 스미오[大日方純夫], 2006, 「한중일 3국 공통역사교재 제작에 있어서의 논의점」, 『歷史科學』.
- 타와라 요시후미[俵義文] 저,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역, 2001, 『철저검증 위험한 교과서』, 역사넷.

[ABSTRACT]

The fruit and the limit of historical dialogue
betwee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Korea-Japan
Joint History Reach Committee

Lee, Sincheol

This writing is the analysis of historical dialogue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has been started from the historical distortion of Japanese textbook in 1982, especially focused on “dialogues” of both nations governmental dimension.

The historical dialogue of both nations governmental dimension passed by a lot of trial and error and continued to composition of Korea-Japan joint history reach committee in 2002. It published the thesis as form of report about result for 3 years, and second activities has started in 2007. Especially it's correct that second activities made historical dialogue of both nations to be great forward in that it started treat the textbook problem between Korean & Japan though the various political consideration of both nations.

It has been taken long time to establish the actual joint research institution between both nations indeed. Although founding of joint research organization between both nations leaders was greed in November 1995, there is nothing to go through all the complications.

The history recognition difference between both nations between was big that much. Even so, it was possible because it goes through the founding of Korea-Japan culture exchange fund, Korean-Japanese

forum which is configured with politician, the enterpriser, journalist, scholar of Korea and Japan, Korean-Japanese historians conference which is composed with Korean-Japanese historians, the textbook amendment discussion of practical level through fringe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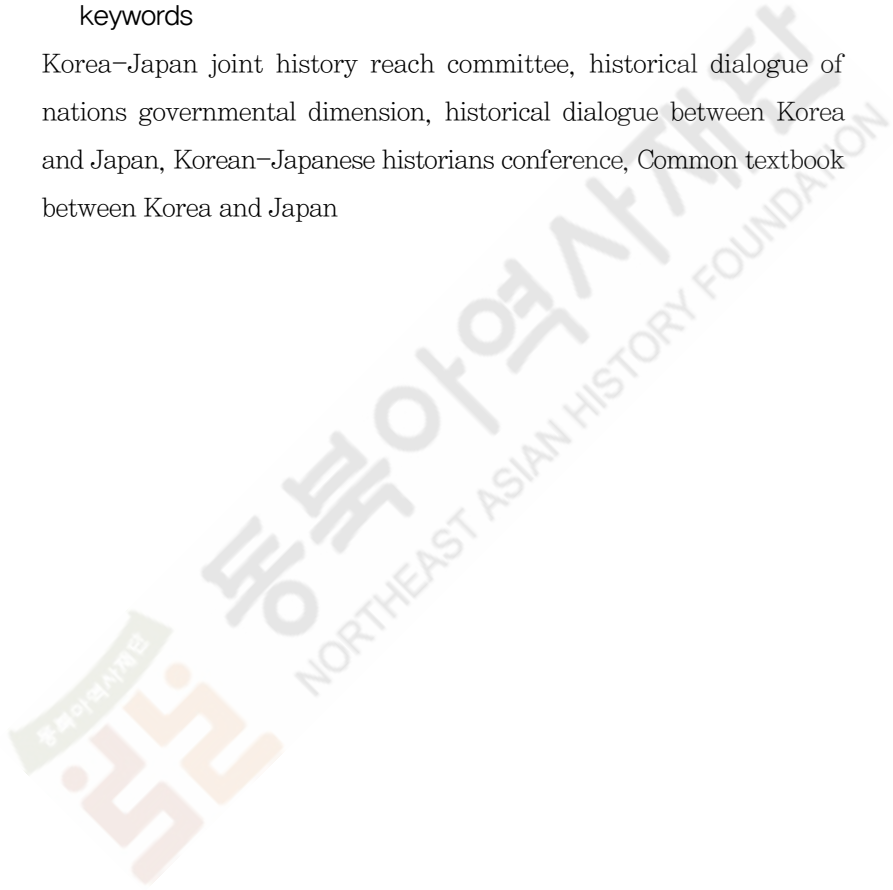
Meantime, the both nations succeeded to found the Korean-Japanese joint research organization, but still are having the difference of the recognition. The Korea side is standpoint that hope to grope the plan to reflect the research result to the textbook but the Japan side is standpoint that the nonofficial research must be exist as itself. In other wards, the nation will not be able to intervene to the contents of the official approval textbook. The report of joint research commission reveal of thlimit that the members of the both nations cannot escape ect tnationalism or retriotism, and shown contents of important historical iss is standpothe both nations. And it displayed well how much big difference between shownother isplhe research resinterpretation of the both nations to advancs ofto the common recognition. Such problems havenition, conqo ring sympathy expansion and long tethethrough the electof thrhoess of the study commissioneth natopening to the phistce bothsearch f the bothnt t ,ethrough sThematic security of continuous joint research.

It's necessary to pay attention in point that it will be able to forecast already the solution possibility of the opposition and discord between the both nations with the experiences of historical conversation between the civic societies of both nations. The possibility like that was proven from historical conversation experience of Europe. It finally will be the way of to reveal a method to pile up mutual trust and difference and find a community. The success and failure of historical conversation between the both nations as Korean-Japanese

governmental depend on how could apply that possibility in joint research well.

keywords

Korea-Japan joint history reach committee, historical dialogue of nations governmental dimension, historical dialogue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n-Japanese historians conference, Common textbook between Korea and Japan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제 1·2 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
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제1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연구실장이 수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 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참고문헌(필요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5호(2009. 9)

초판 1쇄 인쇄 2009년 9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09년 9월 30일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인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